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269-01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2022. 12.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주]정 P&C 연구소

- 목 차 -

I . 과업 배경 및 목적	1
1. 과업 배경	1
가.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1
나. 살처분보상금 규정	6
다. 살처분보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9
2. 과업 목적 및 내용	12
가. 과업 목적	12
나. 과업 내용	13
II . 과업 수행 결과	15
1.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15
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15
나. 살처분보상금 가축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른 비교	23
(1) 돼지	23
(2) 산란계	27
(3) 육계	34
(4) 오리	42
2. 해외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49
가. 일 본	50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50
(2) 살처분 보상금 주요내용	53
(3)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57
(4) 일본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70

(5) 사양위생관리기준	76
(6)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	88
(7) 축산 경영재건보험	102
나. 호 주	109
다. 유럽연합	119
라. 영 국	122
3. 생산자 단체 의견수렴	126
4. 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기준 설문조사	129
5. 예방적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개선방안	141
6. 살처분 보상금제도 개선방안	142
가. 단기적 개선방안	142
나. 장기적 개선방안	163

[첨 부]

1.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에 따른 가축평가액 비교	167
2.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방법(살처분보상금관련)	244
3. 일본의 가축방역 호조기금지원 사업 실시요령	248
4.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ADRA)의 규정	261
5. 유럽연합의 가축방역관련 비용에 대한 관리 규정	317
6.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기준 설문조사 결과	353

요 약

- 본 연구용역은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보상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방역기준 준수 유도, 가축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없는 항목은 감액항목에서 제외 및 방역관련 중요성, 고의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및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감 확대
-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평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 시세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음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장은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 단, 전년동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시세대비 $\pm 15\%$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시세 변동폭의 영향이 가장 적은 최초 발생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방적 살처분 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가축의 살처분시점 기준 전월평균시세와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살처분 당일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살처분 당일의 변동요인으로 인한 시세의 변동폭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농장주가 당일시세에 따라 살처분 시기에 대해 비협조적일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축전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은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 가치(시세)를 기준을 보상을 실시하였고, 국내의 생계안정자금과 소득보존자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보상금(생산비 + 경영비 + 기타비용), 경영(호조사업 + 민간보험), 감액(방역기준적용)
 - 호주: 보상금(시장가격), 질병종류별 차등지원(정부와 산업계가 질병종류별 기금 조성)
 - *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정부 80%+업계 20% 비용부담, ASF: 정부 50%+업계 50% 비용부담
 - 네덜란드: 보상금(시장가격), 중앙정부의 가축위생기금 활용
 - 독일: 보상금(상한액지정), 농업소득손해 보험, 사육두수 및 신고허위보고(감액)

- 스페인 : 축종별 고정된 보상금, 소요비용(보험회사 연합체에 위탁, 정부 보조금)
- 덴마크 : 보상금(시장가격),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 영국 : 보상금(시장가격/분기별 자료갱신), 감액은 없음, 최대 100%보상

□ 살처분 보상금 상·하한선(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은 상한선 100분의 80과 최초신고 농장 상한선 100분의 90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가축평가액에서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여도 감액 기준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대부분의 발생농장들이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감액·경감 항목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감액기준 적용을 통한 경영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감액 기준 적용에 대한 하한선 기준설정이 필요함
- 살처분 농가의 감액비율은 일정하게 적용되지만 동일한 감액비율을 적용받은 농가들에 대한 가축 평가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감액비율에 따라 2~10배 이상의 감액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감액비율을 차등적용 시킬 필요가 있음

□ [축종별 사양·방역관리 기준 개발을 통한 감액 기준 적용]

- 국내에서 축종별 사양·방역관리기준에 대해 농장주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장에 대해 평가하고 서명한후 지자체에 제출하므로써 농장 자체 방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만약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액기준 적용하므로써 보다 자발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일본사례- 사양위생관리기준 적용을 통한 감액기준 적용] 일본의 축종별 사양위생관리기준은 2020년 10월 이전에는 26개 항목였던 것을 2020년 10월이후에 35개 항목으로 개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대해 관리항목별 준수여부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 42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및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질병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1~5점 부여하였음

-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항목 개선방안] 설문조사한 항목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점수에 대해 80점이상

은 현재 감액비율 유지하고, 80점 미만은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감액비율을 개선하였음

- 감액비율항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서도 낮게 산출되어 현행 감액비율대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에서도 낮게 산출되어 현재 감액비율 20%보다 5% 낮춰 15%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살처분보상금 경감기준 항목 개선방안]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기준 방역관련 항목이 존재하는 축산농장의 인증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 경감기준 항목을 개선하였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농장」, 「동물복지 인증농장」,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해당 종사자 및 가족 등이 방역교육을 2년에 2회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방역점검을 위한 전화예찰시 최근 3년동안 90%이상 성실히 응답한 경우」 등 경감항목을 신설하여 10% 경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브루셀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동일한 경감 기준을 적용

- 브루셀라병은 농가 단위 살처분이 아닌 개체별 살처분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 신고 이후 2개월(잠복기)간 신고건에 대해 최초 신고를 인정

□ (가축방역기금 및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성 강화와 국가 재정 부담 저감을 위한 일정비율을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가축 방역 기금을 조성

○ (가축방역기금 조성 : 농가 50%, 보조 50%) 국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질병발생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축종별) 농가가 부담하는 기금 조성(농가 50%, 보조 50%).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매몰 및 방역비용, 대규모 질병발생으로 인한 기금 부족시 다음연도 재원으로 충당. 계약대상농가는 제 18조(질병관리등급)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농가이면서 중점방역관리지구 포함되지 않는 농가

- (가축재해보험) 국내 가축 재해보험에 특정 질병 발생에 따른 재입식 및 경영자금 지원, 농가에서 축종별 사육규모별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경영안정대책, 수급조정, 가격안정대책 및 정부수집·제공에 활용
- (생계안정비용 개선) 예방적 살처분농장의 자발적 방역참여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연간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생계안정비용 지불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불 방법을 현행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에서 연간 평균 소득기준의 20~25%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시작되는(살처분시기~재입식기간 동안) 시기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음
- (육계 : 생계유통가격과 위탁생계가격 이원화 적용) 육계의 살처분 보상금 평가에 있어 계열화 업자와 계약에 의해 생산하는 위탁농가는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하고, 유통상인에게 납품하는 육계농가의 경우 생계유통가격으로 이분화하여 적용
 - 육계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위탁생계가격과 유통상인의 생계유통가격 등 두 가지로 발표 이 중 전체 생계 유통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위탁생계가격을 배제한 채 할인 가격이 많고 유통물량의 5%에 불과한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보상기준으로 합당치 않음.
- (살처분보상금 분기별 발표) 살처분 보상금의 투명성 확보 및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축종별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가축평가액을 발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기적으로 축종별, 규모별, 살처분 두수별로 분류하여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유관기관에 공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책임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육규모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 하한선 설정) 사육규모에 따라 살처분 농가의 감액비율은 일정하지만, 감액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살처분 농가의 감액비율은 일정하게 적용되지만 동일한 감액비율을 적용받은 농가들에 대한 가축 평가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감액비율에 따라 2~10배 이상의 감액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감액비율을 차등적용 시킬 필요가 있음

I.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가.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발생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생산시스템, 사육규모, 질병 발생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에서는 축산물생산액의 약 20%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회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약 1조원에 이르고, 구제역은 9회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은 약 5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의해서도 약 38만두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및 매몰처분 하였고, 이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보상,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 등 막대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염병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농촌(축산농가) 방문이 제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 축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규모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민소득이 증대되어 국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사육규모가 규모화되고 사육형태가 밀집화되어 가축방역이 축산업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이 소규모 부업형태에서 탈피하여 규모화, 전업화 등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초반에 축산진흥정책 수립되어 해외에서 종축도입 및 가축 증식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축산업의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다수의 밀집 사육형태로 전환되었지만 방역·위생관리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질병의 발생양상도 다양해지고 집단적

인 발생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적 개방화에 따른 가축질병의 확산으로 국내에 해외 악성전염병이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유입될 우려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가축질병은 크게 법정 가축전염병과 일반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 가축 전염병은 제 1종(15종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 2종(24종 : 소브루셀라, 소해면상뇌증(BSE), 돼지오제스키병 등), 제 3종(5종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총 44개종의 질병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가축 전염병 목록을 A 질병(15종)과 B 질병(80종)으로 구분하였으나, 2004년 육생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부터 단일 목록으로 통합해서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축종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시·도 방역기관에 보고) 소사육농가에서는 총 25,311두(3,286호)로 매년 4천건이상이 보고되고 있고, 오리는 총 24,535수(147호)가 발생하였고,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발생하였다. 닭은 총 3,715,908수(1,646호)로 매년 200년가 이상에서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양돈농가에서는 997호에서 100,414두가 발생하였다.

[표 1]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통계(단위 : 발생두수(농가수))

연도	소	오리	닭	돼지
2017	4,567 (672)	212 (41)	377,301 (216)	8,249 (146)
2018	4,653 (642)	23,554 (12)	1,344,879 (198)	35,266 (274)
2019	5,001 (601)	709 (5)	1,525,898 (209)	28,441 (187)
2020	4,004 (516)	55 (27)	226,040 (228)	4,429 (80)
2021	4,025 (537)	3 (45)	205,266 (373)	6,323 (92)
2022(01~10)	3,061 (318)	2 (17)	36,524 (240)	17,865 (218)
합 계	25,311 (3,286)	24,535 (147)	3,715,908 (1,464)	100,573 (997)

[자료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하며, 이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었다.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2003~2018년 기간 동안 살처분 수수는 8,214만수로 직접적인 피해액만 1조 7천여억원으로 비공식 집계되었으며, 특히 2016~2017년 살처분 수수가 3,787만 수로 가장 많았으며 살처분 보상은 1조 이상의 진행되었다. 2017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농가수는 308농가이며, 경기도에서 73개 농가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건수는 177건이 발생하였다



[그림 1] 2020년~2022년 11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177건 발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 발생시 즉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바이러스는 정상적으로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려서, 또는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007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이 지역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됨으로서, 현재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 풍토병으로 존재한다. 또한,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집단이 널리 감염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첫 발생을 시작으로 28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재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2] 2020년~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발생현황(28건발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은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무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병원체는 Picornaviridae Aphthovirus, 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이는 7개의 혈청형 즉 A, O, C, Asia1, SAT1, SAT2, SAT3형으로 분류되며 이 주요 혈청형은 다시 80여 가지의 아형으로 나뉜다.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또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난다.

국내에서는 2011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하여 2011년 5월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는 5,000여 농가에서 150,871두, 돼지는 1,823호 농가에서 3,311,968두를 살처분하였고 직접적 피해만 약 3조원 가까이 손실을 발생했음.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중에 있다.



[그림 3] 2019년~현재까지 구제역 농가발생현황(3건발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살처분보상금 규정

- (지급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에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목적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 확대를 막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두고 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및 보상금 관련 내용인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지급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48조 제1항에는 가축의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다.

- (지원기준) 시·군·구 보상금평가반*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금 액수 결정(보상금 등 지급요령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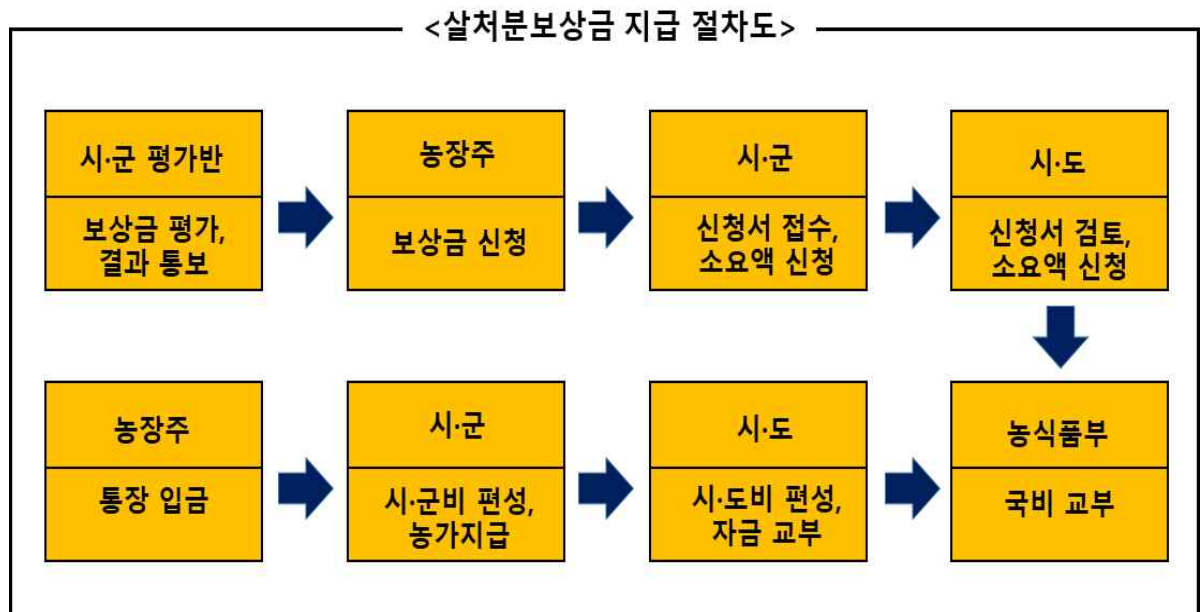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반장(시군 축산과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공중방역수의사 등 5명 이내로 살처분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사육농장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동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제 1종 법정 가축전염병 이외의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등의 경우 살처분 대상 사육농장의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대상농장의 신고시점, 발병시점, 소독사항,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여부,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축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여부, 살처분 조치의 이행여부,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해야 한다.

□ (보상금 지원 예산) 국비 80%, 지방비 20%

살처분 보상금의 지원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80%와 20%로 하여 지급한다. '20년에는 641억원, '21년에는 1,953억원이 집행되었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반장(시군 축산과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공중방역수의사 등 5명 이내로 살처분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내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농장주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구가 검토하여 지급절차를 밟게 된다.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구성) 시·군·구에 반장을 포함한 5인 이내 구성

보상금 평가반원은 공무원과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평가반원의 자격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로 구성되며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담당하고, 반원은 평가반장이 위촉된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살처분 보상금의 평가기준은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 평균시세 $\pm 15\%$ 초과시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시점으로 하여 방역 의무(소독 등) 위반시 추가 감액 실시한다. 다만, 시군별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중 최초 신고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을 시점으로 하여 감액을 실시한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금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때 평가반장은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전달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살처분보상금 제도개선 의 필요성

□ [현황] 살처분보상금 평가 적용기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당일 시세 기준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최초 발생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 동월 평균시세 $\pm 15\%$ 초과시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에 한함), 뉴캐슬병은 가축의 평가액의 80%, 결핵(사슴)은 60%를 지급하고, 그 외는 전액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초 신고 농가,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등은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 가축평가액의 감액은 방역기준 미준수, 방역시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신고 지연, 살처분 미이행 등 방역위반 건별 5~100% 감액하고 있고, 가축평가액의 경감은 외관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고한 경우, 출입기록, 전화예찰, 살처분명령 이행 등 방역조치 협조 등 우수 방역농가는 10%를 경감하고 있다.

□ [검토배경] 축산단체는 살처분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축산단체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 측면에서는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있어 농가 자율방역 제고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표 2, 3).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농장대비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조정과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 보상금의 경감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대상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농가 방역 책임도 강화하면서 자율방역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관련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살처분보상금 제도의 개선방향은 축산농가의 방역책임도 강화하면서 불가피한 손실은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71-6)에도 포함되었다.

[표 2]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감액사유

질병	연도	농장	감액건수	감액 사유
아프리카 돼지열병	'21년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소독조 미설치 4건, · 기타 방역기준 미준수 3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0~'21	109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계열화사업자 의무 미준수 1건 · 축산업 미등록 2건 · 적정 사육두수 초과 2건 ·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미흡 10건 · 방역시설 미흡 43건 · 축산차량 관련 미흡사항 10건 · 기타 방역기준 미준수 129건 · 의심축 신고 지연 2건

[표 3]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감액비율(단위: 호, %)

구분	계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100%
○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5 (100.0)	-	1 (20.0)	<u>4*</u> <u>(80.0)</u>	-	-	-	-	-	-
○ 조류인플루엔자										
닭	소계	55 (100.0)	11 (20.0)	<u>17</u> <u>(30.9)</u>	<u>16</u> <u>(29.1)</u>	6 (10.9)	3 (5.5)		1 (1.8)	1 (1.8)
	산란계	46	10	<u>14</u>	<u>12</u>	6	3			1
	종계	6	1	<u>1</u>	<u>4</u>					
	육계	2		<u>2</u>						
	토종닭	1							1	
오리	소계	48 (100.0)	11 (22.9)	<u>18</u> <u>(37.5)</u>	<u>6</u> <u>(12.5)</u>	4 (8.3)	6 (12.5)	2 (4.2)		1 (2.1)
	종오리	16	4	<u>6</u>	<u>1</u>	3	2			
	육용오리	32	7	<u>12</u>	<u>5</u>	1	4	2		1
메추리	3 (100.0)	1 (33.3)		<u>1</u> <u>(33.3)</u>	1 (33.4)					
관상조	2 (100.0)				2 (100.0)					
혼합사육	1 (100.0)					1 (100.0)				
계	109 (100)	23 (21.1)	<u>35**</u> <u>(32.1)</u>	<u>23**</u> <u>(21.1)</u>	13 (12.0)	10 (9.2)	2 (1.8)	1 (0.9)	1 (0.9)	1 (0.9)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21~30% 감액이 가장 높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20%이상~30% 감액이 53.2%로 가장 높음

□ [현행제도의 문제점]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보상금 평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격 변동(급등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 발생 전월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농가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확산차단 대책에 협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농가의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

브루셀라병 등 세균성 질병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개선이 필요하다.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과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있고, 감액에 따른 경감기준이 매우 미흡할 실정이다. 그러므로 살처분보상금 감액 항목별로 중요성, 고의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감액비율을 조정을 조정해야 한다. 현행 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은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농가의 방역 준수를 위한 방향으로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에 대한 경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2. 과업 목적 및 내용

가. 과업 목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농장의 살처분보상금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산정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기준 개선을 위해 방역관련 유관기관(방역담당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액 항목별 중요성, 고의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감액 항목 및 비율을 조정하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살처분 보상금제도 조사를 통한 국내 살처분 보상금 산출기준, 살처분후 경영재건, 생계지원 및 방역조치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할 계획이다.

방역 책임성 강화와 예방적 살처분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1.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 관련제도 조사

2. 호주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보상제도 조사

3. 유럽연합(EU) 및 EU회원국의 가축질병 보상제도 조사

4. 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생산자단체 의견 조사

5.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방안 도출

[그림 4] 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 목적

나. 과업 내용

□ 「가축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가축 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살처분 농가의 가축 평가액 적용 시세를 최초 발생 전월시세, 최초발생 전월기준 3개월 평균시세, 전월시세에 대한 가축평가액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 「살처분보상금 평가액」 감액·경감기준의 설문조사

살처분보상금 평가액 감액·경감기준 개선을 위해 방역관련 유관기관(방역담당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액 항목별 중요성, 고의성, 효과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경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브루셀라병 조기 신고」 유도 방안 모색




브루셀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현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동일한 경감 기준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예방적 살처분농가」 적정 소득보전 방안 모색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경우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방역정책 협조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소득에 대한 적정수준 보전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회원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제도 조사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제도 및 산출기준 조사하고, 살처분후 경영재건, 생계지원 및 방역조치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내 살처분보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살처분 후 축산경영 재건지원	방역조치
<p> 일본 (농림수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호조지원사업 · 축산경영재건(돼지, 산란계, 육계 및 오리) 보험 조사 · 축산경영재건보험(소득보전보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준 및 규정, 조직 · 축종별 납부 및 지급 기준
<p> 호주 (농업수자원부 및 주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유형별 분류 조사 및 생산자 부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가축 질병 대응협정(EADRA)의 주요 내용 조사 · 가축 질병 대응계획(AUSVETPLAN)의 관리 및 운영, 주요 내용 조사
<p> 유럽연합 (보건 · 소비자보호 총국과 농업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준 및 규정, 조직 · 축종별 납부 및 지급 기준

살처분 보상금 규정 및 산출기준	평가 및 감액
<p> 일본 (농림수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축의 수당금 및 특별수당금 제도 조사 · 돼지, 육우, 젖소, 오리 및 육계, 산란계의 평가기준 · 축종별 감액 기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별(돼지, 육우, 젖소, 가금 사양관리 기준) 조사 · 축종별 살처분 가축의 감액기준 조사
<p> 호주 (농업수자원부 및 주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보상제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유형별 각 기관과 생산자 부담비율 조사
<p> 유럽연합 (보건 · 소비자보호 총국과 농업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보상제도 조사 · 영국, 덴마크의 살처분 보상제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감액기준 조사

[그림 5] 선진국의 살처분보상금 제도조사

II. 과업 수행 결과

1.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 살처분 보상금 개요

○ (사업 목적)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소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1.10.14. 대통령령 제 32023호)의 제11조(보상금 등)에 근거하여 지급이 이루어짐

* (지급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지원 기준) 시·군·구 보상금 평가반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금 액수 결정(보상금 등 지급요령 준용)

* 평가반 : 반장(시군 축산과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공중방역수의사 등 5명 이내로 평가반 구성

○ (지원 비율) 국비 80%, 지방비 20%

연도	'17	'18	'19	'20	'21
집행액 (억원)	2,453	867	1,321	641	1,953

* BSE 관련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은 국비 100%

○ (지급 기준) 살처분 당일 시세 기준. 다만 AI, 구제역, ASF의 경우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적용

* 단,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시세 $\pm 15\%$ 초과시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 (감액기준) 양성농장(발생농장) 20% 감액, 방역규정(소독 등) 위반시 5~80% 감액

- (경감기준) 외관상 증상이 나타난 날 신고한 경우, 출입기록, 전화예찰, 살처분명령 이행 등 방역조치 협조 우수농장의 지자체 추가시 경감

*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장, CCTV 확인결과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농장(10% 감액)

□ 살처분 보상금 지급규정

구 분	세부 내용
규 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에 근거
목 적	『가축전염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 확대를 막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내 용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은 『가축전염예방법』의 살처분보상금 관련 내용인 제 20조, 제 21조, 제 23조, 제 48조, 제 49조와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12조에 따라 “① 살처분한가축, 소각 및 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②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③ 살처분한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 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

구 분	세부 내용
규 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48조 제1항에는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급 대상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 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 검사, 주사, 주사 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 ○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 사육농가의 수급권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 명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중에서 병성감정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 제한된 자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 살처분보상금의 세부지급기준

세부사항		보상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	100%	3조4의 5항 (중점방역관리지구)
나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	80%	15조 제1항 제1호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다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부상당한 가축	정상 가축과 출하가격의 차액	15조 제1항 제1호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라	죽거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의 경우		19조 제1항 제1호 (격리와 가축사육 시설의 폐쇄명령 등)
	1) 수의사 2) 축산 관련 종사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 7호 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상한액 기준 x 이동제한일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 7호 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 상한액 기준 x 이동제한일수	
마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경우	100%	20조 제1항 및 제2항(살처분명령)
	돼지열병, 브루셀라(소만 해당)	80%	
	결핵병(사슴만 해당)	60%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축의 경우	100%	
	1) 최초 신고 농가 2)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3)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4) 그 밖의 경우	90% 90% 80%	
바	살처분 명령에 근거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경우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100%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의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	80%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	100%	
	1) 최초 신고 농가 2)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3)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4) 그 밖의 경우	90% 90% 80%	

	세부사항	보상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 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 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살처분명령에 따라 살처분해야 하는 가축 전염병에 해당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생산물	100%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아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등에 따라 가축이 격리, 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한 경우	100%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도축장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기간 중 1일 평균 도축두수)×해당 도축장의 최근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70퍼센트(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비율)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차	마목에 따른 가축, 바목에 따른 가축의 생산물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카	보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얻은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2항(사체의 처분제한)

□ 살처분보상금의 감액기준

세부사항		감액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	사육제한 명령의 위반	100%	제3조4 제5항 (중점방역관리지구)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제5조제3항(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10%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60%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10%	
다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5조제6항(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1)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10%	
	2)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60%	
라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 은 경우(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한 가 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만 해당)		제6조2제1항 및 제6조2제3항(계약사 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1)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10%	
	2)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10%	
	3)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 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	
마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 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1)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음 기준일의 다 음날 신고한 경우 가) 닭 또는 칠면조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날 또는	10%	

세부사항		감액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1) 육계 :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 (2) 산란계 :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이상 저하 (3) 육용종계 :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4) 산란종계 :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이상 저하 (5) 칠면조 :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나) 닭×칠면조외의가축농장에서가축전염병이발생한경우:해당가축전염병발별증상이외관상최초로발생한날 2)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날 신고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의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의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5)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40% 60%	
바	13조 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20%	제13조3항(역학조사)
사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주사×면역 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100% 5% 5%	
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20%	제17조제1항(소독설비 및 실시)
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5%	제17조제2항(소독설비 및 실시)
차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중 다음을 위반한 경우	20%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세부사항		감액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 등)
카	다음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의6제1항(방역 기준의 준수)
	1)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	
	2) 일제입식×출하또는휴지기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육계 및 육용오리의경우로 한정)	20%	
	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타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19조제1항제1호 및 2호 (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파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19조의2제1항(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살처분 명령)
	1)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10%	
	2)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30%	
	3)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60%	
거	오염물건의 소각, 매물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1) 오염물건의 소각, 매물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를 위반한 경우	20%	

세부사항		감액비율	가축전염병 예방법
너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 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로 한정)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름		
	1) 2회 발생	20%	
	2) 3회 발생	50%	
더	3) 4회 발생	80%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0%	축산법 제22조
1)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평가액 다만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00%		

□ **살처분 보상금 경감기준**

제48조제4항(보상금 등)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 1등급	10%
	2) 2등급	5%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0%
다	가축 출입기록 작성·보관 및 전화예찰 등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및 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10%

나. 살처분보상금 가축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른 비교

(1) 돼 지

(가) 돼지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 성장단계, 암·수별 살처분보상금 평가 방법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포유자돈(원/두)	→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이유자돈(원/두)	→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원/두)	→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비육돈(원/두)	→ 자돈가격(30kg기준)+(당해 체중-30kg)× [110kg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비육돈가(115kg)	→ 지육평균시세 × 출하체중(115kg) × 지급율(76.7%)
이유자돈 구간금액(원)	→ 자돈(30kg)가격 - 포유자돈 기본가
이유자돈 증체단가(원)	→ 이유자돈 구간금액/이유자돈 구간체중(22.5kg)
비육돈 구간금액(원)	→ 비육 생산원가 - 포유자돈 생산원가
비육돈 증체단가(원)	→ 비육돈 구간금액/비육돈 구간체중(82.5kg)
비임신돈(원/두)	→ 후보돈 구입비+추가손실비+종부전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임신돈(원/두)	→ 비임신돈 가격+임신태아가치
후보돈(원/두)	→ 후보돈 구입비+종부전 사육비
옹돈(원/두)	→ 후보옹돈 구입가격

□ 전국 돼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시세(제주제외, 탕박기준, 원/kg))

구분	평균시세(원/kg)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2,905	3,663	4,386
2월	3,236	3,527	4,135
3월	3,895	4,083	4,273
4월	4,273	4,626	5,251
5월	5,100	4,990	6,385
6월	4,715	5,204	5,859
7월	4,868	5,138	5,613
8월	4,298	5,363	5,920
9월	4,725	5,374	5,596
10월	4,012	4,573	-
11월	4,219	5,273	-
12월	4,215	5,129	-

(나) 돼지 살처분보상금 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시기를 ‘20년 6월, ‘21년 6월, ‘22년 6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축평가액 적용 기준은 현행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전월기준 3개월 평균시세, 최초발생당월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최초 발생시점			비고
	① ' 20년 6월	② ' 21년 6월	③ ' 22년 6월	
㉠	5월 평균시세	5월 평균시세	5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3~5월 평균시세	3~5월 평균시세	3~5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6월 평균시세	6월 평균시세	6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7월 평균시세	7월 평균시세	7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8월 평균시세	8월 평균시세	8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9월 평균시세	9월 평균시세	9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 A-농가의 성장단계별, 암·수별 살처분 두수

사육단계/종돈	생후일령(주)	구간 kg	살처분두수(두)
자돈			
포유자돈	~4		316
이유자돈	4~8		316
자돈(30kg)	9~10		159
육성돈			
40kg	10~11	10	76
50kg	12~13	20	93
60kg	14~15	30	84
70kg	16~17	40	156
80kg	18~19	50	28
90kg	20~21	60	14
비육돈			
100kg	22~23	70	135
110kg	24~25	80	231
115kg	26	85	29
종돈			
임신돈			140
후보돈			10
응돈			4

(다) 분석 결과

□ 돼지 살처분 평가액 비교 분석

○ '20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시 가축평가액

구 분	①-㉠	①-㉡	①-㉢	①-㉣	①-㉤	①-㉥
	'20년 5월 평균시세	'20년 3~5월 평균시세	'20년 6월 평균시세	'20년 7월 평균시세	'20년 8월 평균시세	'20년 9월 평균시세
지육단가 (원/kg)	5,100	4,423	4,715	4,868	4,298	4,725
평가액 (천원)	561,684	514,057	534,600	545,363	505,267	535,303
비율(%)	100.0	91.5	95.2	97.1	90.0	95.3

○ '21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시 가축평가액

구 분	②-㉠	②-㉡	②-㉢	②-㉣	②-㉤	②-㉥
	'21년 5월 평균시세	'21년 3~5월 평균시세	'21년 6월 평균시세	'21년 7월 평균시세	'21년 8월 평균시세	'21년 9월 평균시세
지육단가 (원/kg)	4,990	4,566	5,204	5,138	5,363	5,374
평가액 (천원)	553,946	524,117	569,000	564,357	580,186	580,960
비율(%)	100.0	94.6	102.7	101.9	104.7	104.9

○ '22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시 가축평가액

구 분	③-㉠	③-㉡	③-㉢	③-㉣	③-㉤	③-㉥
	'22년 5월 평균시세	'22년 3~5월 평균시세	'22년 6월 평균시세	'22년 7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	'22년 9월 평균시세
지육단가 (원/kg)	6,385	5,303	5,895	5,613	5,920	5,596
평가액 (천원)	652,084	575,966	617,613	597,774	619,371	596,578
비율(%)	100.0	88.3	94.7	91.7	95.0	91.5

‘20년 6~9월 돈가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돼지고기의 수요 약세로 인해 보합세로 나타났고, 2022년 상반기의 돈가는 2011년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30%정도 감소하였던 기간이후로 가장 높은 돈가를 나타내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년 6월, ‘21년 6월, ‘22년 6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0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20년 3~5월 평균시세, ‘20년 6월 평균시세, ‘20년 7월 평균시세, ‘20년 8월 평균시세, ‘20년 9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1.5, 93.2, 97.1, 90.0, 95.3%로 조사되었다. ‘21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21년 3~5월 평균시세, ‘21년 6월 평균시세, ‘21년 7월 평균시세, ‘21년 8월 평균시세, ‘21년 9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4.6%, 102.7%, 101.9%, 104.7%, 104.9%로 조사되었다. ‘22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22년 3~5월 평균시세, ‘22년 6월 평균시세, ‘22년 7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8.3%, 94.7%, 91.7%, 95.0%, 91.5%로 조사되었다.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 평가액 적용기준을 현행 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적용하였을 경우 연도에 따라 등록폭이 ±10%범위 내에 있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또한 해당농장의 방역조건에 따른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전월 평균시세 또는 3개월 평균시세중 높은 시세를 적용]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살처분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등록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월평균시세와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살처분 당일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일 도매시장 출하두수, 살처분 당일의 변동요인이 많아 시세의 변동폭이 크고, 또한 농장주가 당일시세에 따라 살처분 시기에 대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산란계

(가)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병아리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10주령 이상의 경우 현재 주령별 기준이 없는 관계로 10~70주령은 시물레이션 데이터에서 산란중추(10주)의 금액(대한양계협회 제공)을 사용하였으며, 70주령이 넘어서면 노계로서 적용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20주령부터 산란을 시작하며, 25주까지 산란율이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78주령이 지나면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본 과제에서는 78주령을 최대 경제성이 있는 산란계로 계산하였다. 계란의 경우 왕란, 특란, 대란으로 구분하여 (사)대한양계협회 월별 금액을 이용하였다.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산란용 원종계 · 종계	초생추 ~ 27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27주령 이상 ~ 70주령 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78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산란용 실용계	병아리 ~ 10주령 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10주령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10주령 이상 ~ 21주령 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2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
	21주령 이상 ~ 78주령 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78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산란계 주령별 가격 산출식

구 분	산 출 식
병아리	병아리 시세
1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1]$
2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2]$
3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3]$
4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4]$
5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5]$
6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6]$
7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7]$
8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8]$
9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9]$
10주령	10주령 시세(70일령)
11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1]$
12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2]$
13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3]$
14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4]$
15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5]$
16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6]$
17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7]$
18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8]$
19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9]$
20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10]$
21주령	21주령 가격(생산비+잔존가치)
2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
23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
24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3]$
25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4]$
26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5]$
27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6]$
28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7]$
29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8]$
30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9]$
31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0]$
3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1]$
33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2]$
34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3]$
35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4]$
36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5]$
37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6]$
38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7]$
39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8]$
40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9]$
41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0]$
4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1]$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사)대한양계협회의 최근 3년간 산란 실용계 병아리 및 산란중추(10주), 계란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21주령은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 산란계 시세자료

연도/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산란중추 (10주)				계란			
		10주	20주	21주	78주 이상	왕란	특란	대란	
2019년	8월	900	3,500	12,404	13,294	375	131	118	105
	9월	988	3,450	12,716	13,643	392	140	127	115
	10월	1,000	3,613	12,935	13,867	415	132	119	110
	11월	1,050	3,700	14,395	15,465	576	115	108	104
	12월	1,050	3,700	14,237	15,291	782	129	121	116
2020년	1월	1,050	3,700	14,185	15,233	857	126	117	112
	2월	1,050	3,700	14,105	15,146	547	113	107	102
	3월	1,050	3,850	14,335	15,383	891	141	134	130
	4월	1,050	3,900	14,516	15,578	444	125	117	112
	5월	1,050	3,900	14,411	15,462	328	118	110	104
	6월	1,050	3,856	14,235	15,273	226	118	106	94
	7월	1,050	3,700	14,079	15,117	229	131	116	101
	8월	1,050	3,700	14,132	15,175	271	146	131	116
	9월	1,050	3,700	14,527	15,610	144	165	149	129
	10월	1,050	3,700	14,580	15,668	123	157	142	130
	11월	1,050	3,700	14,422	15,494	127	150	138	133
	12월	1,050	3,811	14,612	15,692	128	153	143	139
2021년	1월	1,213	4,038	15,577	16,731	163	185	176	170
	2월	1,379	4,586	17,101	18,352	105	200	192	185
	3월	1,638	5,900	18,441	19,695	139	195	186	180
	4월	1,750	7,222	19,657	20,901	115	198	189	182
	5월	1,761	7,400	19,730	20,963	128	205	196	189
	6월	1,850	7,400	19,862	21,108	163	206	197	190
	7월	1,850	7,400	19,809	21,050	318	203	194	187
	8월	1,850	7,000	18,961	20,157	377	201	187	172
	9월	1,838	6,900	18,492	19,651	413	190	174	156
	10월	1,750	6,900	18,070	19,187	442	164	152	140
	11월	1,750	6,900	17,991	19,100	421	161	152	145
	12월	1,706	6,900	18,255	19,390	454	160	151	145
2022년	1월	1,650	6,113	17,599	18,748	269	155	148	143
	2월	1,550	5,600	17,034	18,177	185	150	145	139
	3월	1,550	5,400	16,913	18,064	219	167	162	155
	4월	1,550	5,400	17,097	18,267	291	174	170	163

[자료 : (사)대한양계협회]

(나)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시기를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축평가액 적용 기준은 현행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전월기준 3개월 평균시세, 최초발생당월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최초 발생시점			비고
	① '19년 11월	② '20년 11월	③ '21년 11월	
㉠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1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3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4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 B-농가의 산란계 수수 및 계란수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계란수(개)
산란계주령별수수(수)		
산란계실용계	3주령	26,637
	20주령	18,290
	100주령	17,347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특란	23,100
	대란	2,460

(다) 분석 결과

□ 산란계 살처분 평가액 비교 분석

○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19년 10월	'19년 8~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평가액 (천원)	296,980	290,714	327,522	328,805	328,978	321,635	334,269	329,447
비율(%)	100.0	97.9	110.3	110.7	110.8	108.3	112.6	110.9

○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20년 10월	'20년 8~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평가액 (천원)	324,716	322,574	321,683	326,264	350,816	385,889	426,082	460,701
비율(%)	100.0	99.3	99.1	100.5	108.0	118.8	131.2	141.9

○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21년 10월	'21년 8~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평가액 (천원)	433,115	442,903	431,257	435,771	413,093	395,131	392,684	397,651
비율(%)	100.0	102.3	99.6	100.6	95.4	91.2	90.7	91.8

산란계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이 대부분이며, 조류 인플루엔자는 특성상 11월~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21년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축종으로서 2020년 42건이었던 발생횟수가 2021년 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계란 품귀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

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하였다. '19년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7.9%, 110.3%, 110.7%, 110.8%, 108.3%, 112.6%, 110.9%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낮게 조사되었다.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발생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9.3%, 99.1%, 100.5%, 108.0%, 118.8%, 131.2%, 141.9%로 조사되었다.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100으로 하여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2.3%, 99.6%, 100.6%, 95.4%, 91.2%, 90.7%, 91.8%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재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pm 10\%$ 내에 범위로 조사되었다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산란계 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는 있지만 현재 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적용하였을 경우 연도에 따라 등록폭이 $\pm 10\%$ 범위 내에 있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또한 해당농장의 방역조건에 따른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전월 평균시세 또는 3개월 평균시세중 높은 시세를 적용]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살처분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등락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월평균시세와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살처분 당일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일 도매시장 출하두수, 살처분 당일의 변동요인이 많아 시세의 변동폭이 크고, 또한 농장주가 당일시세에 따라 살처분 시기에 대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육계

(가) 육계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 육계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생계유통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육용실용계 병아리 가격은 (사)대한양계협회 월별 육용 실용계의 병아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육계의 경우 일령별 가격은 병아리시세, 산지가격, 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육용 원종 계· 종계	초생추 ~ 31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31주령	→ 생산바진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31주령 이상 ~ 70주령 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70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 계	사육단계	→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 /평균출하일령]× 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 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 출하일령이후)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 기준 산정)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육계의 기준 금액은 최근 3년간 육용 실용계 병아리 및 육계(대, 중, 소)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대한양계협회 자료를 이용하였다.

○ 육계 시세자료

연도/월	육용실용계 병아리(원/수)	육계(원/kg)				30일령 평균시세(원/수)	
		대	중	소	평균		
2019년	8월	358	1,235	1,281	1,381	1,299	2,163
	9월	483	1,013	1,105	1,205	1,108	1,537
	10월	470	1,344	1,436	1,536	1,439	2,220
	11월	320	2,216	2,258	2,315	2,263	3,797
	12월	320	1,216	1,308	1,408	1,311	2,200
2020년	1월	320	1,182	1,243	1,343	1,256	2,108
	2월	320	1,264	1,356	1,456	1,359	2,280
	3월	320	1,220	1,300	1,400	1,307	2,193
	4월	320	1,012	1,104	1,204	1,107	1,858
	5월	320	964	1,056	1,156	1,059	1,777
	6월	320	1,173	1,254	1,354	1,260	2,114
	7월	320	1,319	1,393	1,493	1,402	2,353
	8월	320	1,351	1,417	1,517	1,428	2,396
	9월	383	1,413	1,429	1,529	1,457	2,445
	10월	358	1,108	1,200	1,300	1,203	2,019
	11월	320	1,284	1,352	1,452	1,363	2,287
	12월	464	1,531	1,623	1,723	1,626	2,728
2021년	1월	633	1,998	2,055	2,155	2,069	3,472
	2월	820	1,630	1,644	1,722	1,665	2,794
	3월	683	1,435	1,527	1,568	1,510	2,534
	4월	487	1,463	1,555	1,655	1,558	2,614
	5월	376	1,261	1,353	1,453	1,356	2,275
	6월	370	1,231	1,323	1,423	1,326	2,225
	7월	509	1,744	1,836	1,936	1,839	3,086
	8월	420	1,691	1,724	1,824	1,746	2,930
	9월	458	1,412	1,442	1,542	1,465	2,458
	10월	483	1,966	2,021	2,121	2,036	3,416
	11월	342	1,349	1,382	1,482	1,404	2,356
	12월	353	1,560	1,652	1,752	1,655	2,777
2022년	1월	458	1,933	2,025	2,125	2,028	3,403
	2월	808	1,964	2,056	2,156	2,059	3,455
	3월	845	2,303	2,395	2,495	2,398	4,024
	4월	770	2,184	2,276	2,376	2,279	3,824

(나) 육계 - 살처분보상금 분석결과

육계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시기를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축평가액 적용 기준은 현행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전월기준 3개월 평균시세, 최초발생당월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최초 발생시점			비고
	① '19년 11월	② '20년 11월	③ '21년 11월	
㉠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1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3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4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 C-농가의 육계 살처분 수수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주령	10,000

(다) 분석 결과

□ 육계 살처분 평가액 비교 분석

○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육계 평가액

구 분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19년 10월	'19년 8~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평가액 (천원)	26,900	24,096	41,170	25,200	24,280	26,000	25,130	21,780
비율(%)	100.0	89.6	153.0	93.7	90.3	96.7	93.4	81.0

○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육계 평가액

구 분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20년 10월	'20년 8~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평가액 (천원)	23,765	27,720	26,070	31,924	41,045	36,140	32,165	31,006
비율(%)	100.0	116.6	109.7	134.3	172.7	152.1	135.3	130.5

○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육계 평가액

구 분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21년 10월	'21년 8~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평가액 (천원)	38,985	33,880	26,982	31,303	38,605	42,625	48,690	45,940
비율(%)	100.0	86.9	69.2	80.3	99.0	109.3	124.9	117.8

육계의 가격 패턴을 보면 매년 11월부터 가격이 증가하여 1월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다가 하절기 바캉스 시즌 및 초복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가격이 증가하는 계절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육계의 가축평가액을 분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

시세인 '19년 10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9.6%, 153.0%, 93.7%, 90.3%, 96.7%, 93.4%, 81.0%로 조사되었다.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과 비교한 결과 각각 116.6%, 109.7%, 134.3%, 172.7%, 152.1%, 135.3%, 130.5%로 조사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6.9%, 69.2%, 80.3%, 99.0%, 109.3%, 124.9%, 117.8%로 조사되었다.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육계 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는 있지만 현재 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적용하였을 경우 연도에 따라 등록폭의 범위가 다른 축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행기준인 최초 발생 전월시세에 전년도 동월 평균시세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또한 해당농장의 방역조건에 따른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전월 평균시세 또는 3개월 평균시세중 높은 시세를 적용]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살처분 시점의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등락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월평균시세와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살처분 당일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일 도매시장 출하두수, 살처분 당일의 변동요인이 많아 시세의 변동폭이 크고, 또한 농장주가 당일시세에 따라 살처분 시기에 대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계 공시가격은 계열화사업자의 위탁생계가격과 유통상인의 생계유통가격 등 두 가지로 발표되는데, 이중 전체 생계 유통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위탁생계가격을 배제한 채 할인가격이 많고 유통물량의 5%에 불과한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보상기준으로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개선대책으로 육계의 살처분 보상금 평가에 있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생산하는 위탁농가는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하고, 유통상인에게 납품하는 육계농가의 경우 생계유통가격으로 이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오리

(가) 오리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 오리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 적용하였다. 오리 병아리 시세와 10일령, 42일령(3kg)으로 설정하여 일령별로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육용 오리 · 종오리	병아리	→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 거래가격
	오리 병아리 ~28주령 미만	→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 기준 주령 단위 산정
	28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28주령 이상 ~78주령 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 주령 단위 산정
	78주령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 오리	병아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병아리~41일령	→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42일령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조사·발표가격 기준
	43일령 이후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kg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 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조사 산지가격 기준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오리 일령별 가격 산출식

구 분	산 출 식
병아리	병아리 시세(오리협회 조사가격)
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
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
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
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4
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5
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6
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7
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8
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9
1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0
1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1
1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2
1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3
1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4
1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5
1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6
1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7
1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8
1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19
2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0
2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1
2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2
2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3
2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4
2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5
2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6
2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7
2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8
2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29
3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0
3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1
3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2
3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3
3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4
3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 - 병아리시세) / (43일령 - 1일령)] × 35

구 분	산 출 식
3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6
3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7
38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8
39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9
40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0
41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1
42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2
43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3
44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4
45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5
4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6
4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7
48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8
49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9
50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0
51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1
52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2
53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3
54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4
55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5
5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6
5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7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사)대한오리협회의 병아리시세와 42일령(3kg) 기준 가격을 활용하였다.

○ 산란계 시세자료

연도/월		1일령새끼오리가격 (원)	43일령가격 (원)
2019년	8월	800	6,755
	9월	800	7,010
	10월	800	7,252
	11월	800	7,220
	12월	800	7,100
2020년	1월	800	7,100
	2월	800	7,100
	3월	800	7,100
	4월	800	5,603
	5월	800	5,203
	6월	800	5,867
	7월	800	6,768
	8월	800	6,800
	9월	800	6,800
	10월	800	6,800
	11월	1,043	7,133
	12월	1,200	7,329
2021년	1월	1,200	7,842
	2월	1,200	9,050
	3월	1,200	10,152
	4월	1,200	11,017
	5월	1,200	10,642
	6월	1,200	10,110
	7월	1,200	10,484
	8월	1,200	10,910
	9월	1,543	10,910
	10월	1,700	10,910
	11월	1,723	10,910
	12월	1,800	10,910
2022년	1월	1,800	10,910
	2월	1,800	10,910
	3월	1,729	10,910
	4월	1,710	10,910

[출처 : 한국오리협회]

(나) 오리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별 분석결과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시기를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축평가액 적용 기준은 현행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전월기준 3개월 평균시세, 최초발생당월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최초 발생시점			비고
	① '19년 11월	② '20년 11월	③ '21년 11월	
㉠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1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3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4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 D-농가의 오리 살처분 수수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	10,000
	42일령 오리	5,000

(다) 분석 결과

□ 산란계 살처분 평가액 비교 분석

○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19년 10월	'19년 8~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평가액 (천원)	182,962	176,435	182,114	178,935	178,935	178,935	178,935	139,268
비율(%)	100.0	96.4	99.5	97.8	97.8	97.8	97.8	76.1

○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20년 10월	'20년 8~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평가액 (천원)	170,985	170,985	177,015	180,403	193,997	226,006	255,206	278,127
비율(%)	100.0	100.0	103.5	105.5	113.5	132.2	149.3	162.7

○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시 가축 평가액

구 분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21년 10월	'21년 8~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평가액 (천원)	269,543	272,061	269,278	268,393	268,393	268,393	269,209	269,428
비율(%)	100.0	100.9	99.9	99.6	99.6	99.6	99.9	100.0

오리의 가격 패턴을 보면 매년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공급량의 증감에 따라 가격 패턴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월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다가 하절기 바캉스 시즌 및 초복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가격이 증가하는 계절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19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6.4%, 99.5%, 97.8%, 97.8%, 97.8%, 97.8%, 76.1%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재 규정이 높게 조사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0%, 103.5%, 105.5%, 113.5%, 132.2%, 149.3%, 162.7%로 조사되어 현재 규정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은 각각 100.9%, 100.9%, 99.9%, 99.6%, 99.6%, 99.9%, 100.0%로 조사되어 현재규정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오리 평가액 적용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는 있지만 현재 규정인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적용하였을 경우 연도에 따라 등락폭이 ±10%범위 내에 있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또한 해당농장의 방역조건에 따른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전월 평균시세 또는 3개월 평균시세중 높은 시세를 적용]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살처분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등락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월평균시세와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 국가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규정

구분	보상기준	재원	감액기준	근거
한국	-시세기준 -생계안정자금 -소득보존자금	국비(80%)+지방비(20%)	(양성농가) 20%감액 (방역미흡시) 5~100%감액 경감기준	가축전염 병예방법
일본	-생산비 ¹⁾ + 경영비 + 기타비용* * 기타비용 : 매몰처 분 등 비용	(생산비) 국비(100%)지원 (경영) 호조사업 ¹⁾ +민 간보험 ²⁾	(발생농장) - 0~100% 감액 - 사양 위생 관리기준 - 질병 발생 조기 통보의 실시 - 질병 확산 방지에의 협력	가축전염 병예방법
호주	- 시장가격	- 질병별 종류별 정 부, 산업계 차등부 담	- 질병에 다른 차등적용(산업 계 부담)	가축질병 대응계획
네덜란드	- 시장가격	- 가축위생기금(중앙 정부)	- 방역위생기준 위반시 일정비 용 부담 - 임상증상발현 50%감액	가축위생 · 복지법 규정
독일	- 소 두당 3,000유 로 보상, 돼지 1,300유로 - 농업소득손해보험	- 가축질병기금(중앙 정부와 주정부 공 동조성)	- 가축질병 신고이전폐사 50% 감액 - 두수허위보고, 신고의무등 위반시 감액	가축 질병법
스페인	- 보상액은 고정(시 장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축산보험	- 보험 (보조금+보험회사)	- 농장방역 연1회점검 - 고정가 지불	가축 위생법
덴마크	- 시장가격 - 손실보상금 20% - 보험	- 정부	- 부정적 보상금 수령 환수	동물 보호법
영국	- 시장가격(분기별 보상가격 갱신)	- 정부	- 감액은 없음	-

* 일본 축종별 평가액 산정 : 도도부현에서 가축평가만이 산정, 가축방역 호조기금 : 축산경영지원 대책, 정부(50%) + 생산자(50%) 부담[산정기준 : (고용+지대+감가상각비+기타 고정비) × 보정계수(비사육기간)], 경영지원호조금, 소각·매각 등 호조금, 민간보험(농업협회법인 등) : 생산자별 사육두수에 따른 보험금 납입

가. 일 본

(1)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

□ 법령 :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교부 또는 부담

○ 제58조 : 살처분 가축의 수당금

※ 가축전염병 예방법 58조 : 살처분 가축의 수당금

1. 다음에 해당하는 가축 또는 관련 물품의 소유자(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그 명령의 때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 각 호에 정하는 금액(당해 가축의 평가액을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서 제외 금액)을 수당금으로 교부한다. 다만, 가축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다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해야 할 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켜야 한다.
 - (1).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 환축(다음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환축이 되기 전에 있어서의 해당 가축의 평가액(그 액수가, 가축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한다.)의 1/3
 - (2). 브루셀라증, 결핵, 요네병 또는 말 전염성 빈혈에 걸렸기 때문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 환축에 있어서는, 동조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해당 가축의 평가액(그 액 가축의 종류마다 전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할 때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한다.)의 4/5
 - (3).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살해된 의사환축에 있어서는, 의사환축이 되기 전에 있어서 해당 가축의 평가액의 4/5
 - (4). 제4조의 2제3항 또는 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망한 동물 또는 사산, 혹은 유산한 동물의 태아에 있어서는, 해당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시에 있어서의 해당 동물의 평가액 또는 사산 또는 유산을 하기 전에 태아의 평가 금액의 전액
 - (5). 제23조(동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항 제 3호에 있어서 동일)의 규정에 의해 소각하거나 매각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각 전의 해당 물품의 평가액의 4/5
2. 다음에 해당하는 가축 또는 관련 물품의 소유자에 대해, 전항의 수당금 외,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액수를 특별 수당금으로서 교부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람, 그 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해야 할 특별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특별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한 환축에 있어서는, 환축이 되기 전에 있어서 해당 가축의 평가액의 2/3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한 의사환축에 있어서는, 의사환축이 되기 전에 있어서 해당 가축의 평가액의 1/5
 - (3).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소각 또는 매각 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각 전의 해당 물품의 평가 금액의 1/5
3.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4호의 동물 및 그 태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에 내거는 동물, 시체, 태아 또는 물품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대신에게 전항의 의견을 구청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선정한 3명 이상의 평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9조 : 살처분 가축등 소각·매몰교부금

※ 가축전염병 예방법 59조: 살처분 가축등 소각·매몰교부금

국가는 제 21조 제 1항 또는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각한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의 시체 또는 물품 소유자에게 소각 또는 매각에 필요한 비용의 1/2을 교부한다.

○ 제60조 : 가축 전염병 예방비 부담금(도도부현 또는 가축방역원이 범집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 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 : 가축 전염병 예방비 부담금

국가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가축 방역원이 이 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담한다.

- (1) 가축 방역원의 여비의 전액(가축 전염병(제6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질병을 포함한다)) 이외의 기생충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2)
- (2) 제58조 제5항의 평가인의 수당 및 여비의 전액
- (3) 고용 수의사에 대한 수당의 1/2
- (4) 예방액의 구입비 또는 제조비의 전액

- (5) 우역 예방액 이외의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구입비 또는 제조비의 1/26.
 - (6)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약품의 구입비의 전액(가축 전염병(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질병을 포함한다.) 이외의 기생충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2)
 - (7)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위생 자재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1/2
 - (8)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소독에 필요한 비용(제 6호의 약품의 구입비 및 전 호의 위생자재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제외한다.)의 1/2
 - (9) 농림수산성 대신이 지정하는 소각 또는 매각에 필요한 비용의 1/2(지정가축의 소각 또는 매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액)
2. 국가는 도도부현 지사가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 또는 이출의 금지 또는 제한,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행사의 개최 또는 일업의 정지 혹은 제한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목, 교배 등 살 혹은 후란의 정지 혹은 제한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도도부현이 가축, 그 시체 또는 물품(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가축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에 대해서 해당 금지, 정지 또는 제한에 기인한다. 가축 등에 관한 매출의 감소액 또는 사료비 그 외의 보관, 수송 혹은 처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증가액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상당하는 액수를 교부할 때는, 해당 교부한 금액의 1/2를 부담 한다.(지정가축의 보상금)

○ 제 60조의 2 : 지정 가축 보상금 등(지정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의 교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 2항 : 지정 가축 보상금 등**
- 1. 국가는 그 소유하는 지정가축을 제17조2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살처분 또는 동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 가축의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생산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통상 생존할 손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각, 또는 매립으로 지정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 소각 또는 매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교부한다.
 - 3 지정 가축에 관련된 손실의 보상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초기 단계의 조치에 관한 재정상의 조치)

(2) 살처분보상금 주요내용

① 가축 전염병 예방비 부담금

-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실시
 - ㉠ 가축 검사 등에 필요한 자재비,약품비
 - ㉡ 돼지열병 백신의 구입비 및 접종에 필요한 자재비
 - ㉢ 소독 포인트의 운영 등 소독에 필요한 경비
 -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만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축 등의 소각 및 매립에 필요한 경비
 - ㉤ 이동 제한 등에 의한 농장 매출의 감소액 등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부담

② 환축 처리 수당금

-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가축에 대한 비용과 사체의 소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교부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환축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비용 등과 병행해서 특별 수당금을 교부하고,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가축(지정가축)에 대해서는 평가액 전액을 지급되는 보상금

③ 일본의 가전법에 따른 환축 및 의사환축에 대한 수당금과 특별수당금

수당금 : 환축 1/3, 의사환축 4/5

- 가축전염병 예방법(1951년)에 근거하여 방역조치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축 전염병 발생시 환축 및 의사환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오염물품의 소각등에 의한 비용

특별 수당금 : 환축 2/3, 의사환축 1/5

- 2011년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전액을 교부
- 환축 및 의사환축에 대해 평가액 지급 (이하, 「폐사축 등 수당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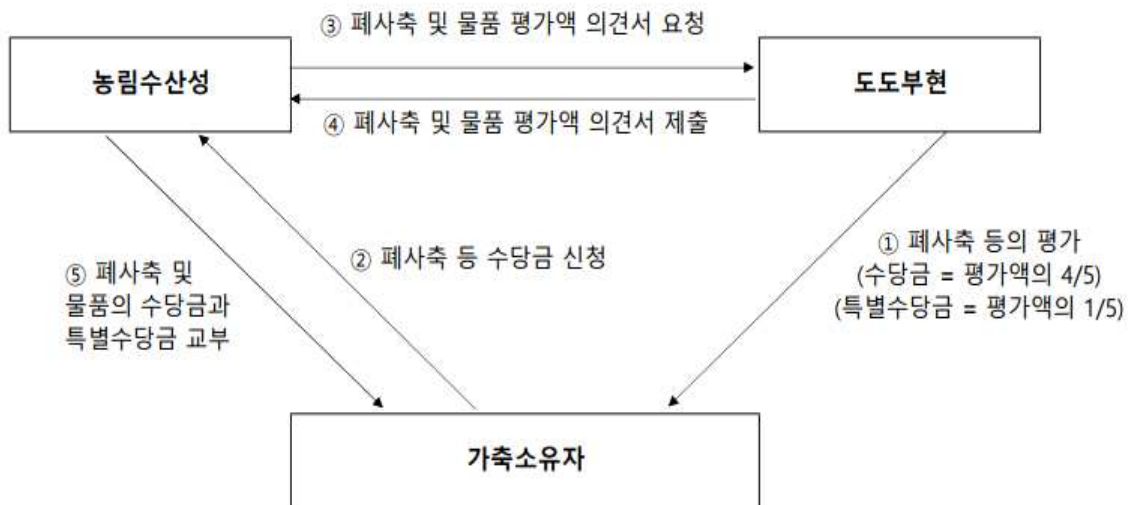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한 농장

- 환축 : 수당금 1/3 + 특별수당금이 2/3, 의사환축 : 수당금 4/5 + 특별수당금 1/5)의 수당

※ 지정가축

-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환축·의사환축외에 별도로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지정할 수 있음. 지정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2항(지정 가축보상금) : 10/10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함
- 구제역(FMD)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질병
- 농림수산장관과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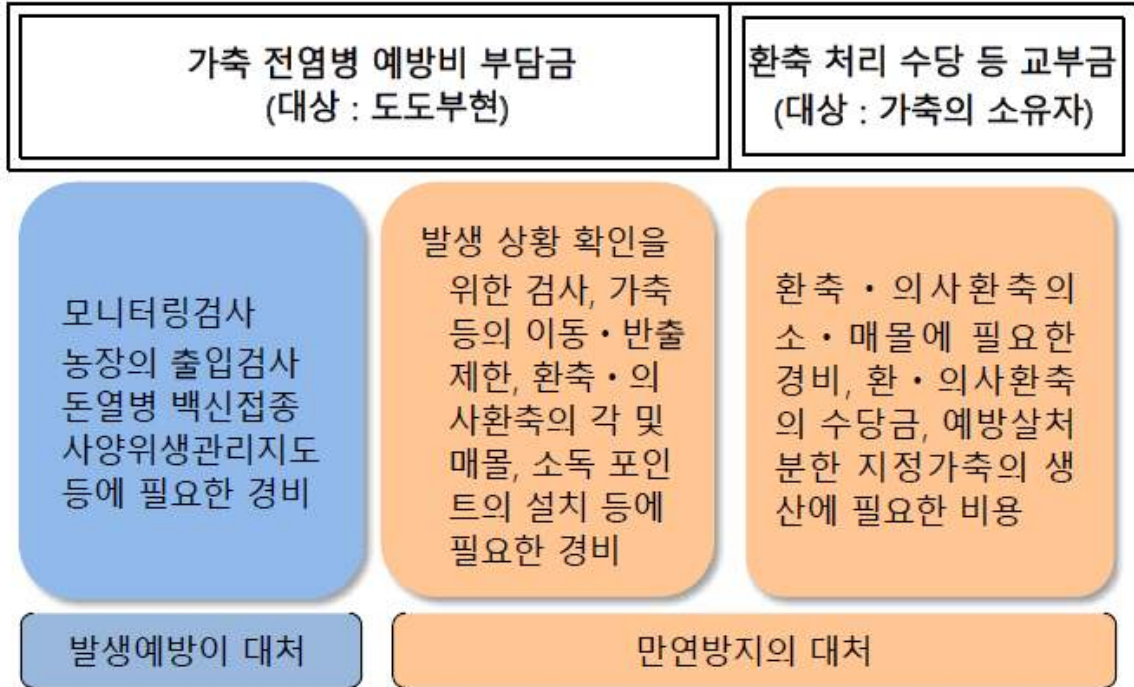
□ 수당금과 특별수당금 지급 절차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2 관계(지정 가축 보상금 등)

- 지정가축 : 환축이나 의사환축이 아닌 살처분 대상 가축을 보상하기 위한 지정가축 [예방적 살처분 가축]
- 가전법 제 32조에 의한 『가축 등의 이동 제한』 : 확산방지
- 가전법 제 32조에 의한 『가축 집합시설의 개최등의 제한』
- 가전법 제 32조에 의한 『방목 등의 제한』

□ 부담금 및 교부금



□ 가축전염병 예방비 교부내용

내 용	부 담 율 등	교부 대상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8조(폐사축 등 수당금) 동물 또는 물품의 소유자에 대한 수당금 등의 교부		
(1) 환축의 살처분 수당금 (2)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또는 말 전염성 빈혈의 환축 살처분 수당금 (3) 의사 환축의 살처분 수당금 (4) 검사 등의 사고축(폐사축 또는 사산,유산 태아)에 대한 수당금 (5) 소각 또는 매몰한 물품에 대한 수당금(부저병 등) (6) 살처분한 환축에 대한 특별수당금 (7) 살처분한 의사환축에 대한 특별수당금 (8) 소각 또는 매몰한 물품에 대한 특별 수당금	평가액의 1/3(상한액 있음) 평가액의 4/5(상한액 있음) 평가액의 4/5 평가액의 10/10 평가액의 4/5 평가액의 2/3 평가액의 1/5 평가액의 1/5	개인 (소유자)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9조(폐사축 등 소각 매몰비 교부금) 동물의 사체 또는 물품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각 매몰비용 교부		
(1)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의 소각 또는 매몰에 필요한 비용 (2) 오염 물품의 소각 또는 매몰에 필요한 비용	1/2 1/2	개인 (소유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가축 전염병 예방비 부담금) 지사 또는 가축 방역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1) 가축 방역원 여비 (2) 평가인의 수당 및 여행비 (3) 고용 수의사 수당 (4) 우역 예방액의 구입비 또는 제조비 (5) (4) (6) 이외의 동물생약제의 구입비 또는 제조비 (6) 가축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는 농수 장관이 지정하는 동물 생약제의 구입비 또는 제조비 (7)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품의 구입비 (8)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위생자재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9) 가축 이외의 동물의 검사, 주사, 투약 등에 필요한 비용 (10)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소독에 필요한 비용 (11)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소각 또는 매몰에 필요한 비용 (12) 특정 가축 등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액 또는 비용증가 금액에 상당한 부담	10/10(기생충예방은1/2) 10/10 1/2 10/10 1/2 10/10 10/10 (기생충병 예방은 1/2) 1/2 1/2 1/2 1/2 1/2 (지정 가축은 10/10) 1/2	도도부현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2(지정 가축 보상금 등) 지정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교부		
(1) 살처분한 지정가축에 대한 보상금 (2) 지정 가축의 사체의 소각 또는 매몰에 필요한 비용 (3) 지정 가축의 사료비 그 외의 사양에 필요한 비	평가액의 10/10 10/10 10/10	개인 (소유자)

(3)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① 가금 평가액

- 가금의 평가액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인 것이 확인되기 전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 해당 가금이 환축 및 의사환축인 것은 고려하지 않음
- 평가액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가금의 도입가격에 도입한 날로부터 환축 또는 의사환축인 것이 확인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생산비(통계자료 이용 산출)를 가산하고, 이에 산락공용 잔존기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가산 또는 감산을 시행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살처분에 앞서 가금 평가액의 산정에 참고하기 위해 살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개체 사진 촬영(체격)
- 농림수산성은 도도부현에서 가금 평가액의 산정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즉시 평가액을 산정하고 계산하여 지불

㉠ 육계(브로일러) 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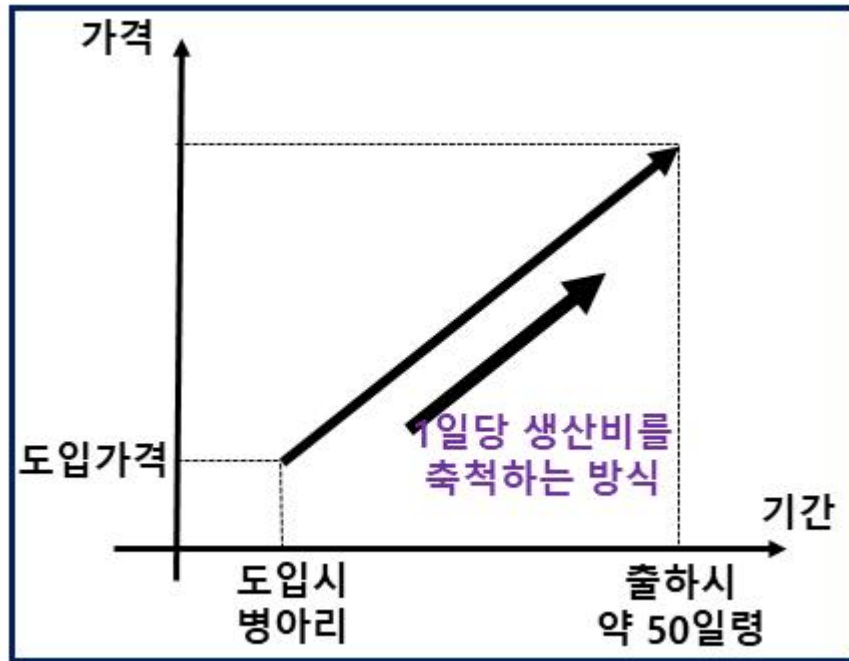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therefore \text{육계병아리 도입가격} + \text{비육경비}(1\text{일당 생산비} \times \text{사육일수})$$

- 육계병아리 도입가격 및 비육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 : 육계병아리 도입에 든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1일 생산비 : 해당농장 장부로 확인된 사료비, 물재비(수도광열비, 의약품비 등), 설비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을 토대로 산정
- 사육일수 : 육계병아리를 도입한 날로부터 환축 또는 의사 환축으로 판정된 날까지의 일수

예) 육계(브로일러)를 출하 시(50일령)에서 평가

도입가격	+	(1일당 생산비×육성일수)		
75엔	+	9엔	×	50일
				= 525엔



[육계 평가방법]

㉠ 산란계 평가액

【산란능력의 전성기까지】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산란계병아리 도입가격 + 육성경비(1일당 생산비 × 사육일수)

- 산란계병아리 도입가격 및 비육경비 산정방법
- - 도입가격 : 산란계병아리 도입에 든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1일 생산비 : 해당농장 장부로 확인된 사료비, 물재비(수도광열비, 의약품비 등), 설비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을 토대로 산정
- 사육일수는 산란계병아리를 도입한 날로부터 환축 또는 의사 환축으로 판정된 날까지의 일수

【산란능력의 전성기부터 산란폐계 때까지】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산란전성기 가격 - (1일당 감소비 × 산란전성기의 사육일수)

○ 산란 전성기 가격 및 1일당 감손비 산정방법

- 산란 전성기 가격 : 산란계병아리 도입가격 + 산란전성기까지 육성경비(1일당 생산비×사육일수)

* 일반적인 산란전성기는 210일령이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품종의 산란전성기의 일령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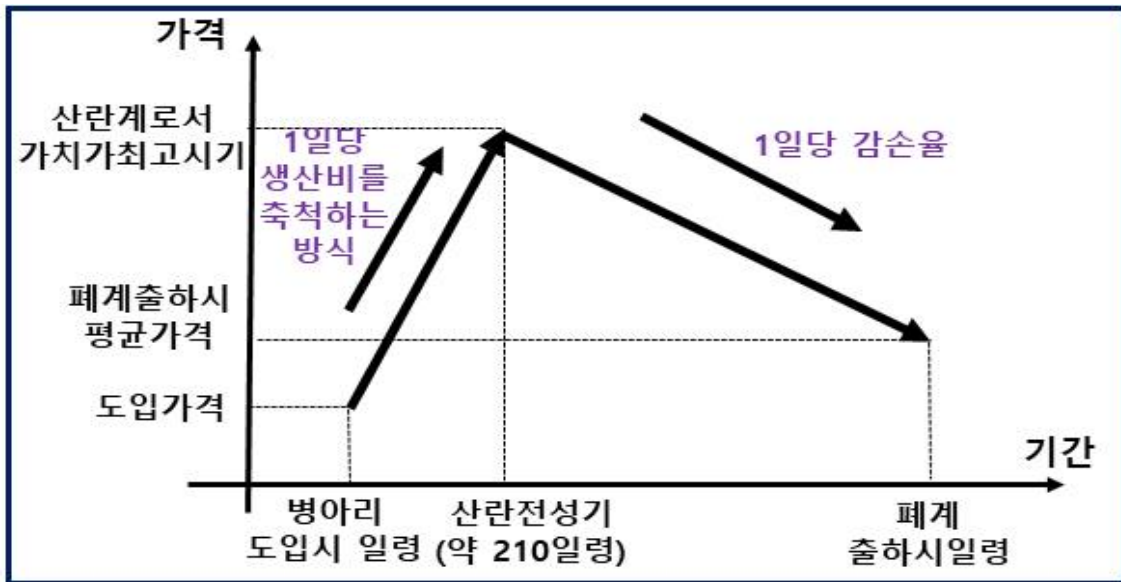
○ 1일당 감손비 : (산란 전성기 가격 - 산란폐계 출하 시 평균가격) ÷ (산란폐계 출하 평균일령 - 산란 전성기의 일령)

- 해당농장의 장부를 활용하여 산란폐계의 출하시 평균가격 및 산란폐계 출하 평균 일령 산출

예) 산란계를 산란 전성기(약 210일령)에서 평가

도입가격(120일령) + 1일당 생산비 × 육성일수
 933엔 + 6엔 × (210일-120일) = 1,472엔

※ 생산비 및 생산비에 관한 통계지표는 각 도도부현 자체가 산정하는 최근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이것이 없을 경우 농림수산성의 전국 평균 통계자료를 활용



[산란계 평가방법]

② 돼지 평가액

㉠ 비육돈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자돈의 도입 가격 + 비육 경비(1일당의 생산비 × 사양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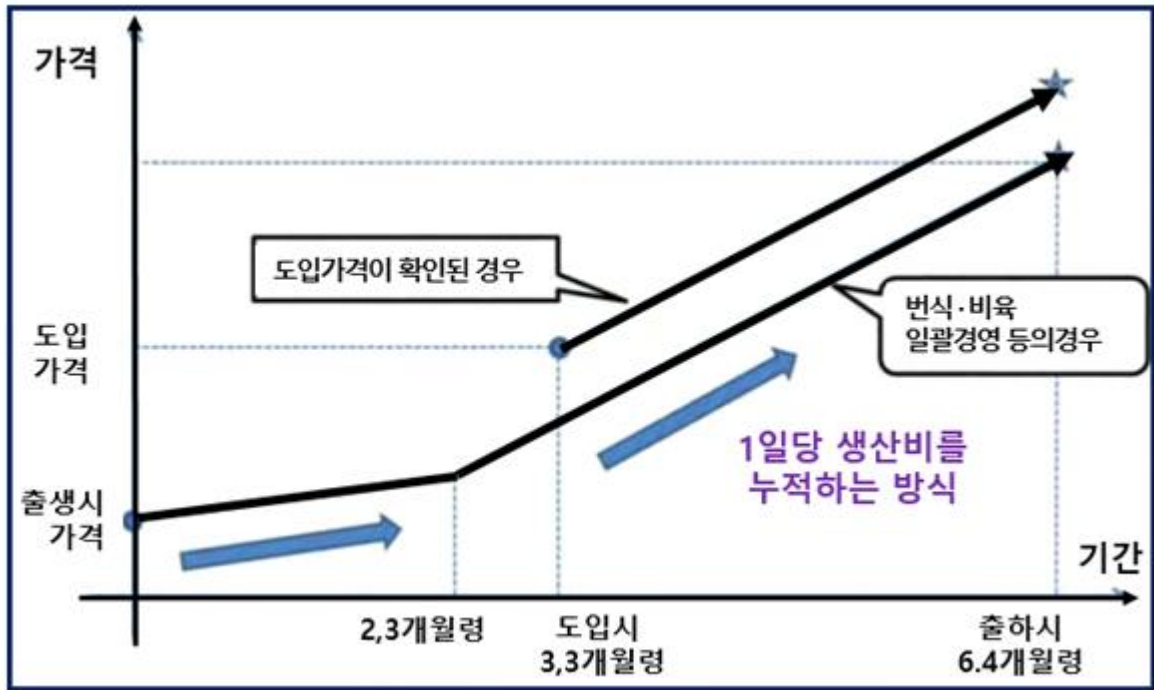
- 자돈 도입가격 및 비육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위탁농장, 육성·비육농장) : 자돈 도입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자가생산(일괄농장) : 전년도 비육돈생산비(생산비)의 9/100로 산정
- 1일 생산비
 - (전체 생산비-자돈 생산비) ÷ 비육일령(평균 출하일령)
- 육성·비육전기(생시~70일령) 1일 생산비 : 1일 생산비의 50%
- 육성·비육후기(71~출하일령) 1일 생산비 : 1일 생산비의 130%
- 사양일수
 - 위탁농장, 육성·비육농장 : 자돈도입~환축,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기간
 - 자가생산(일괄농장) : 자돈 생시~환축,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기간

※ 1일 생산비 산출

- 자돈 생산비(전국 평균)
총 생산비 31,903엔 × 비육돈 생산비의 9% = 2,871엔
- 비육돈의 1일당 생산비(전국 기준)
(총생산비31,903엔 - 자돈생산비2871엔) ÷ (비육기간 6.4개월 × 30.4일) = 149 엔
- 육성·비육전기 : 1일당 생산비(0~2.3개월령) : 1일당 생산비의 50%=75엔
- 육성·비육후기 : 1일당 생산비(2.3~6.4개월령) : 1일당 생산비의 130%=194엔

예) 비육돈 출하시 평가(6.4개월령)

- 100일령 자돈도입 : 위탁농장, 육성·비육농장
 - 도입 가격* + (1일당 생산비 × 사양 일수)
15,220엔 + (194엔 × (6.4개월 - 3.3개월) × 30.4일) = 33,503엔
 - * 이 산정 예에서는 농업 물가 통계를 이용하여 도입 가격을 설정
- 일괄사육 농장
 - 자돈 생산가격 + 1일당 생산비(육성·비육전기+육성·비육후기) × 사양 일수
2,871엔 + ((75엔 × 2.3개월) + (194엔 × 4.1개월)) × 30.4일 = 32,295엔



[비육돈 평가방법]

㉠ 모든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미경산돈(번식용 모돈, 후보돈)】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therefore [\text{후보모돈 도입가격} + \text{육성경비}(1\text{일 생산비} \times \text{사양일수})] \times \text{수태가산금}$$

○ 후보모돈 도입가격 및 육성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 : 후보모돈 도입에 든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도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거래가격으로 확인

* 품종(순종, F1), 용도 등을 구분하여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최근 1년간)

○ 1일 생산비 : 비육돈의 1일 생산비 활용

○ 사양일수 : 모돈 도입일~환축,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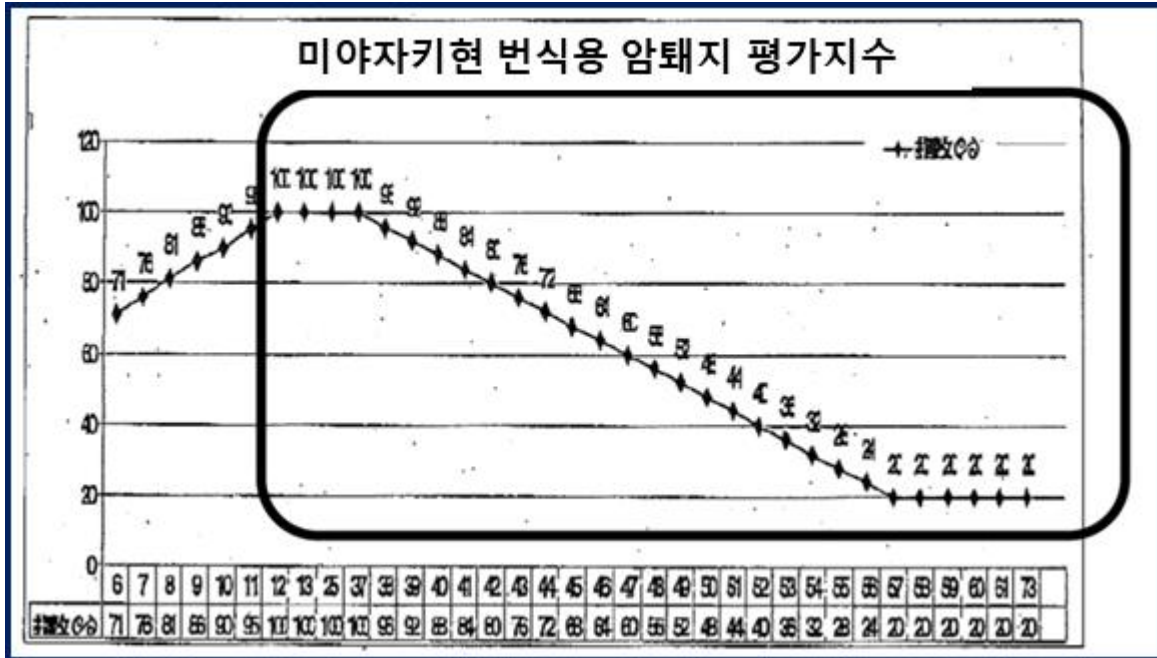
○ 수태가산금 : 임신돈은 모돈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경산돈(번식용 모돈)】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초산돈 기준가격(평가액) × 평가지수/100] × 수태가산금(120%)

- 초산돈 기준가격 : 후보모돈 도입가격+육성경비(1일 생산비×사양일수)
- 평가지수 : 초산돈 평가를 100으로 했을 때 연간 가치의 감소분을 지수화 하였음 (각 도도부현의 가축공제금 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산정)



[번식용 모돈 평가지수(미야자키현)]

- 1일당 생산비 : 비육돈 1일당 생산비 활용
- 수태가산금 : 임신돈은 모돈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예) 번식용 모돈의 초산시(임신돈) 평가방법

[(후보돈 도입가격 + 1일당 생산비 × 사양일수) × 수태가산금]

[(55,280엔 + 194엔 × (12개월-3.3개월) × 30.4) × 1.2 = 127,779엔]

③ 비육우 평가액(와규, 교잡종 및 유용종)

㉠ 비육우 평가액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송아지의 도입 가격 + 비육 경비(1일당의 생산비×사양 일수)

○ 송아지 도입가격 및 비육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 : 송아지 도입 비용 → 가축시장 구입전표를 확인

- 송아지 자가생산이나 확인불가→ 해당농장이 통상 이용하는 가축시장의 동일한 품종(흑모, 화우종 등), 용도(비육용등)의 평균 거래가격(최근 1년간 가격), 혈통(부, 모 혈통)을 고려한 비용 적용

※ 품종 : 와규(부, 모에 대한 능력), 교잡종(부에 대한 능력), 유용종(부, 모 고려하지 않음)

※ 혈통을 고려 가산액 : 해당 개체의 어미소는 혈통등록기관에서 평가한 점수, 아비소 능력에 대해 도도부현이 산정한 유전능력(육종가)

○ 1일 생산비 : (총생산비-송아지 생산비) ÷평균비육기간

○ 사양일수 : 송아지 도입일~환축, 의사환축 판정일까지 기간

※ 품종별 1일 생산비 산출

○ 거세 어린 비육우 1일 생산비(전국 평균)

$965,996\text{엔(총생산비)} - 523,902\text{엔(송아지비)} \div (20.2\text{개월} \times 30.4\text{일})(\text{비육기간}) = 720\text{엔}$

○ 교잡종 비육우 1일 생산비(전국평균)

$583,148\text{엔(총생산비)} - 195,223\text{엔(송아지비)} \div (19.2\text{개월} \times 30.4\text{일})(\text{비육기간}) = 665\text{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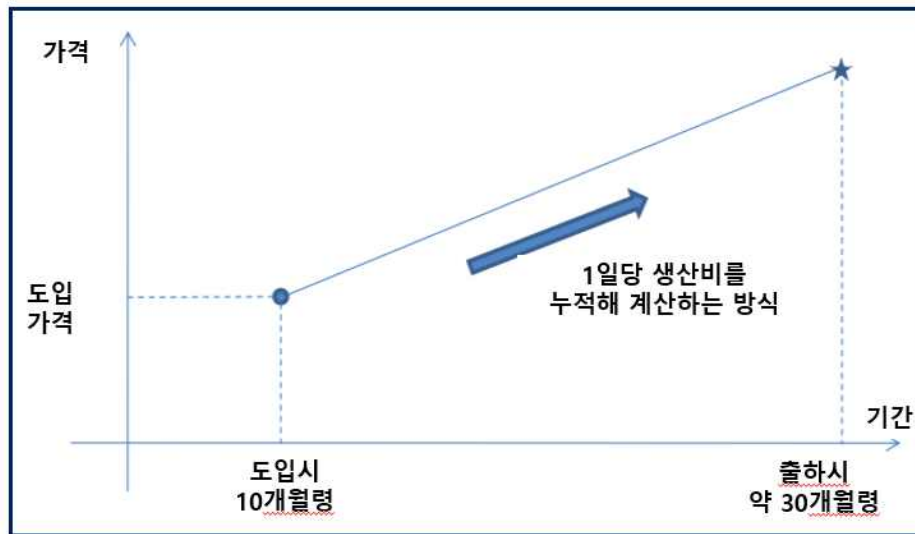
○ 젖소 암소 비육우 1일 생산비(전국 평균)

$338,437\text{엔(총생산비)} - 104,769\text{엔(송아지비)} \div (14.6\text{개월} \times 30.4\text{일})(\text{비육기간}) = 527\text{엔}$

예) 비육소(와규)를 출하 시(30개월령) 평가

○ 도입가격 1일 생산비 × 사양일령

$[393,773\text{엔(전국의 화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720\text{엔}] \times (\text{약 } 20\text{개월} \times 30.4\text{일}) = 831,533\text{엔}$



[비육우 평가방법]

㉞ 와규 송아지 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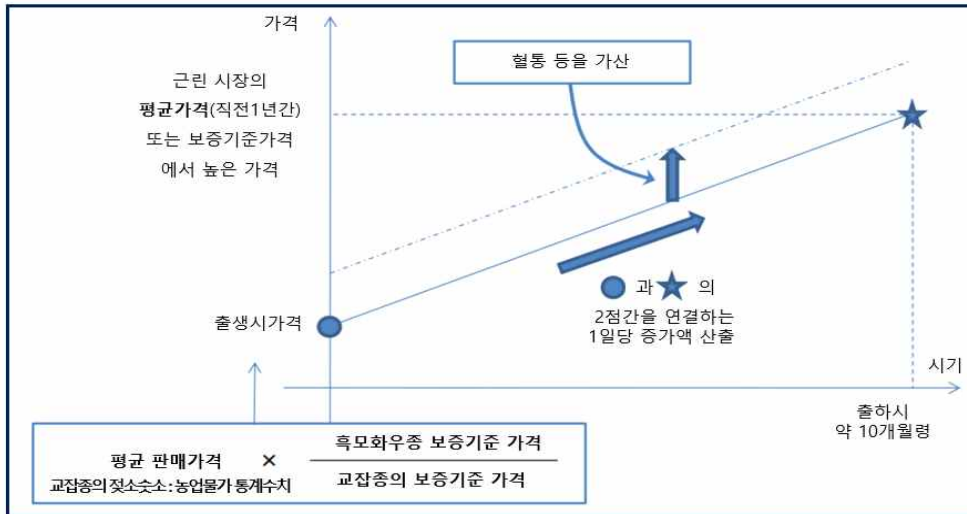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출생시 가격 + 사양일수 증감액(1일 증가액×사양 일수)+부·모소 가산금

- 출생시 가격(농업물가 통계자료 활용)
 - 젖소 송아지(교잡종) ×(흑모화우 보증기준가격÷교잡종 보증기준가격)
- 사양일수 증감액(농업물가 통계자료 활용)
 - 시장평균가격 또는 흑모화우종의 보증기준가격-출생시가격) ÷평균출하일령
- 사양일수 : 송아지 생시일령~환축, 의사환축 판정일까지 기간
- 부·모소의 가산금
 - 해당 개체의 어미소는 혈통등록기관에서 평가한 점수, 아버소 능력에 대해 도도부 현이 산정한 유전능력(육종가)

※ 와규송아지 평가액

- 출생시 가격 : 95,730엔(젖소송아지(교잡종) × 310,000엔(흑모화우 보증기준가격)
 ÷181,000엔(교잡종의 보증기준가격) = 163,957엔
- 사양일수 증감액 : 387,400엔(와규송아지(거세)의 평균판매가격) - 출생시 가격 163,957 엔)
 ÷ (육성기간 10 개월×30.4 일) = 735엔



[와규 송아지 평가방법]

㉔ 젖소 송아지 또는 교잡종 송아지 평가액(수컷)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출생시 가격 + 육성일수 증감액(1일 증가액×육성 일수)+부·모 가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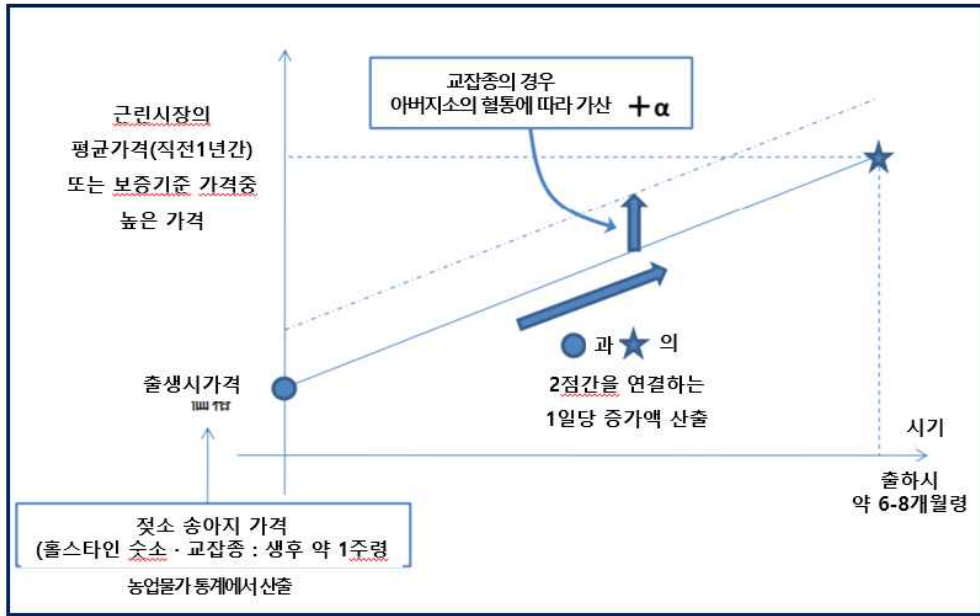
- 출생시 가격(농업물가 통계자료 활용)
 - 젖소 송아지(홀스타인 수컷 7~10일령) 또는 교잡종 송아지(생후 7~10일령)의 최근 1년간 평균 거래가격
- 육성일수 증감액(농업물가 통계자료 활용)
 - [비육용 젖소(6.5개월령) 또는 비육용 교잡종(8개월령) 평균판매가격-출생시 가격]÷육성기간
- 사양일수 : 송아지 생시일령~환축, 의사환축 판정일까지 기간
- 교잡종 부·모소의 가산금(교잡종)
 - 아버지 능력에 대해 도도부현이 산정한 유전능력(육종가)

※ 젖소송아지 평가액(농업 물가 통계 활용 산정)

- 출생시 가격 : 26,310엔(젖소송아지(홀스타인종 수소 약 8.5 일령) 평균판매가격)
- 육성일수 증감액 : 101,300엔(비육용 젖소수소 (홀스타인종 : 약 6.5개월령) 의 평균판매가격)
 - 26,310엔(출생시 가격) ÷ (6.5개월 × 30.4일)(육성기간) = 380엔

※ 교잡종 송아지 평가액(농업 물가 통계 활용 산정)

- 출생시 가격 : 73,440엔(교잡종 송아지 약 8.5 일령) 평균 판매 가격)
- 육성일수 증감액 : 161,300엔(비육용 교잡종교잡종 : 약 8개월령) 의 평균판매가격) - 73,440엔(출생시 가격) ÷ (8개월 × 30.4일)(육성기간) = 361엔
- 부·모 가산금 : 아버지의 유전능력(육종가)



[젓소 또는 교잡종 송아지 평가방법]

㉔ 젓소 송아지(암컷)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출생시 가격 + 육성일수 증감액(1일 증가액×육성 일수)

- 출생시 가격(농업물가 통계자료 활용)
 - 홀스타인 순종 암컷 최근 1년간 평균 거래가격(6일령)과 근린시장에서의 평균거래 가격(최근 1년간, 약 10개월령)을 사용하여 역산
- 1일당 증가액
 - 홀스타인 순종 암컷 최근 1년간 평균 거래가격(6일령)과 근린시장에서의 평균거래 가격(최근 1년간, 약 10개월령)을 사용
- 육성일수 : 송아지 생시일령~환축, 의사환축 판정일까지 기간

㉔ 비육우 생산용 번식우(화우)의 평가액

【미경산우 평가방법(비육우 생산용 암소, 화우)】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번식우 도입가격 + 육성경비(1일 생산비 × 사양일수)] × 수태가산금

○ 번식우 도입가격 및 육성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 : 번식우(미경산우) 도입에 든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도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자가생산)→ 해당농장이 통상 이용하는 가축시장의 동일한 품종(흑모, 화우종 등), 용도(비육용 등)의 평균 거래가격(최근 1년간 가격), 혈통(부, 모 혈통)을 고려한 비용 적용

* 품종(흑모 화우종 등), 용도(번식용) 등을 구분하여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최근 1년간)

- 1일 생산비 : 거세 육성 비육우의 1일 생산비 활용
- 사양일수 : 번식우 도입일~환축,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기간
- 수태가산금 : 번식우 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 화우(외규) 미경산우 평가액(초산시 24.5개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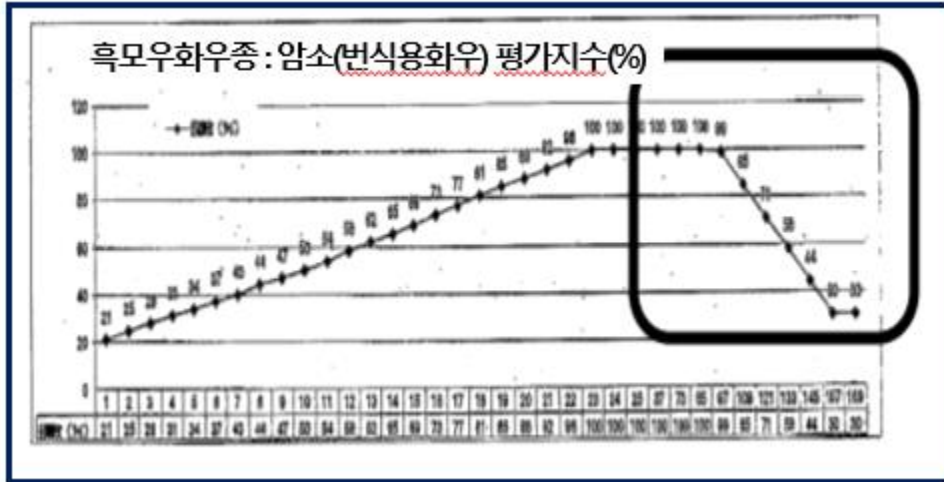
○ {382,600엔(번식우(화우) 평균구입가격) + [720엔(1일 생산비) × (24.5개월-9.5개월) × 30.4일] (사양일수)}(육성경비) = 853,104 엔

【경산우 평가방법(비육우 생산용 암소, 화우)】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 [초산시 기준가격(평가액) × 평가지수/100] × 수태가산금(120%)

- 초산시 기준가격 : 번식우 도입가격+육성경비(1일 생산비×사양일수)
- 평가지수 : 초산시 평가를 100으로 했을 때 연간 가치의 감소분을 지수화 하였음 (각 도도부현의 가축공제금 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산정)



[번식우 생산용 암소(화우) 평가지수(미야자키현)]

- 1일당 생산비 : 거세 육성 비육우의 1일 생산비 활용
- 수태가산금 : 번식우 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 젖소 생산용 번식우(홀스타인)의 평가액

【미경산우 평가방법(젖소)】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therefore [\text{번식우 도입가격} + \text{육성경비}(\text{1일 생산비} \times \text{사양일수})] \times \text{수태가산금}(120\%)$$

- 번식우 도입가격 및 육성경비 산정방법
 - 도입가격 : 번식우 도입에 든 비용 → 구입전표를 확인
 - 도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자가생산) → 해당농장이 통상 이용하는 가축시장의 동일한 품종(흑모, 화우종 등), 용도(비육용)의 평균 거래가격(최근 1년간 가격), 혈통(부, 모 혈통)을 고려한 비용 적용
 - * 품종(유용종), 용도(착유 번식용) 등을 구분하여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최근 1년간)
- 1일 생산비 : 생산비조사에서 젖소 수컷의 1일 생산비 활용
- 사양일수 : 번식우 도입일~환축, 의사환축으로 판정된 기간
- 수태가산금 : 번식우 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 젖소 생산용 평가액(초산시 26개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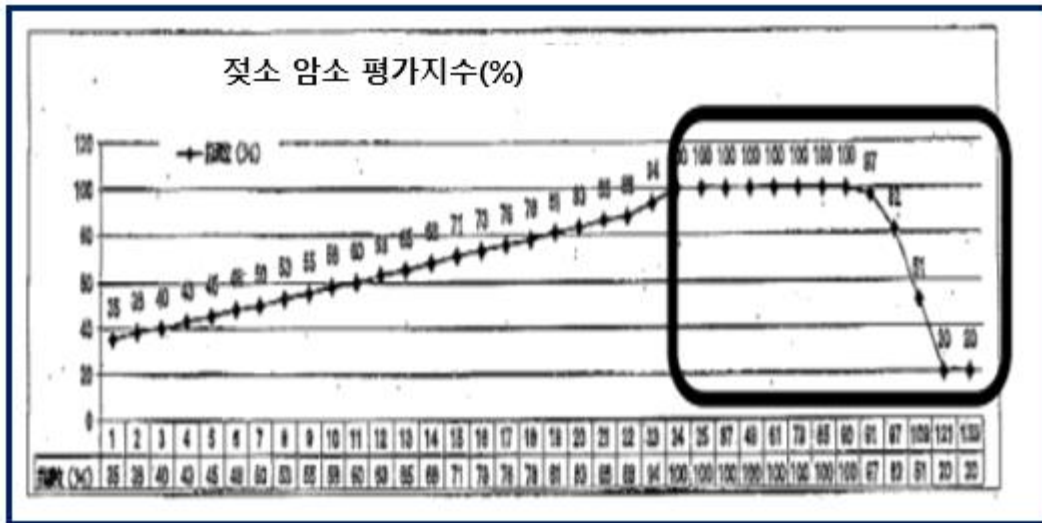
$$\text{○ } \{141,000\text{엔}(\text{번식우 도입가격}) + [546\text{엔}(\text{1일 생산비}) \times (26\text{개월}-6\text{개월}) \times 30.4\text{일}(\text{사양일수})] (\text{육성경비})\} = 562,320 \text{ 엔}$$

【경산우 평가방법(비육우 생산용 암소, 화우)】

□ 평가액의 기본적인 산정 방법

$$\therefore [\text{초산시 기준가격(평가액)} \times \text{평가지수}/100] \times \text{수태가산금}(120\%) \times \text{산유능력 가산금}$$

- 초산시 기준가격
 - 비임신우 도입 : 번식우 도입가격+육성경비(1일 생산비×사양일수)
 - 임신우 도입 : [번식우 도입가격×초산까지 생산비(1일 생산비×초산까지의 생산비)+육성경비(1일 생산비×사양일수)]
- 평가지수 : 초산시 평가를 100으로 했을 때 연간 가치의 감소분을 지수화 하였음 (각 도도부현의 가축공제금 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산정)



[번식우 생산용 암소(젖우) 평가지수(미야자키현)]

- 미경산우 임신우 도입
- 1일당 생산비 : 젖소 1일 생산비(생산비조사 활용)
- 수태가산금 : 번식우 가치의 20%를 가산(단, 수의사 임신감정 확인)
- 산유능력 가산금 : 산유능력이 지역내 평균산유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
 - 가산금 : 해당소의 연평균산유량 - 해당지역 평균산유량)×계약유가 × 수익률
- ※ 젖소 검정등의 개체 자료나 해당 농장의 평균 산유량 활용

(4) 일본의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 살처분보상금 감액

- [감액]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은 ㉠ 사육위생관리기준의 미준수, ㉡ 조기통보위반·허위보고 등 발생 ㉢ 만연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수당금·특별수당금을 감액하여 교부.
- 가축 전염병의 발생 또는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수당금 및 특별 수당금의 전부(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감액), 또는 반환(환수)시키는 사례가 많음
- 교부금 감액 또는 반환(환수)의 대상자는, 이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됨

【감액 및 고려사항】

- 첫째, 가축 사양 위생 관리의 상황[첨부 사양관리기준 참조]
- 둘째, 질병 발생 조기 통보의 실시 상황
- 셋째, 질병 확산 방지에의 협력 등의 상황

※ 살처분보상금 감액

○ 사양위생관리기준 위반

- 위생관리구역 전용 의복·신발 착용 등 교차 오염 방지 대책 불철저
- 위생관리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차량 내 교차오염방지대책 불철저
- 계곡의 물을 사용할 때의 소독이 철저하지 않음
- 축사에 출입할 때의 손 소독(장갑교체)이 철저하지 못한 상태
- 가축 축사간 이동 시 통로 소독 불철저
- 축사에 증장비·외바퀴 차량 등을 반입할 때의 소독 불철저

○ 조기통보 위반

- 사고두수 증가 등의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보건위생소에 대한 통보 지연

○ 허위보고

- 조기발견·만연 방지를 위해 가축보건위생소가 실시하는 보고 징구 시에 허위 보고 실시

- [감액결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상황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감액률을 결정. 허위 보고는 더 악질적인 것으로, 감액률이 높아짐

※ 돼지열병 발생 사례에서는 감액률은 2%~24%이지만 감액률에 상한은 없음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양계장 교부금 감액 사례

감액비율	감액 사유
10% 이하	- 농장 출입 시 손 소독이나 장갑교체 미시행과 농장 차량 소독시설 미비, 미시행- 6%감액
10% ~ 20%	- 축사 출입 시 소독시설, 축사별 신발 미비치, 축사지붕, 벽의 손상 상태 방치 농장 울타리 파손 방치- 14%감액
20% 이상	- 사양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소독실시 기록과 보관, 매물지의 미확보, 위생관리 구역 출입 축사전용 의복, 신발 등의 미비치 축사지붕, 벽의 손상상태로 야생 동물 침입가능성 방치(20%)

□ 돼지열병 발생 양돈장 교부금 감액 사례

감액비율	감액 사유
특별수당금 10% 감액	- 가전법 제 52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가축폐사나 질병증상 시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건위생소 관계자의 농장 출입거부와 질병발생 보고 지연 - 질병증상 가축두수 증가 시 유사산두수 증가 상태에서 가축보건위생소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무단으로 가축을 외부로 이동함.
수당금 및 특별 수당금 20% 감액	- 위생관리 구역 전용 의복과 신발의 갱의 및 교체를 하지 않고 출입, 축사전용 의복, 신발 미착용, 가축 이동시 이동전용 도로를 사용하지 않음.
수당금 및 특별 수당금 24% 감액	- 사양 위생관리 구역 경계의 불명, 농장펜스 미설치, 축사출입 시 손소독, 장갑교환, 전용 의복, 신발 미사용 - 질병증상 보이는 가축을 가축보건위생소에 1주일 이상 보고지연



□ 살처분보상금 감액사례

- 일본 가전법의 사양위생관리기준이 2020년(레이와 2년) 10월에 개정되어, 기존의 26개 관리 항목이 35개 항목으로 보강되었음
- 사양위생관리 기준 개정에 따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장에서의 발생 원인, 새로운 사양관리 관리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관계 각료 회의」가 2020년(레이와 2년) 12월 9일에 개최되었고 그때 발표된 자료를 요약하였음. 기본적으로 가전법의 폐사축에 대한 수당금이나 특별 수당금의 감액 기준은 개정된 사양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감액 사례

사례	지역	위생관리구의 출입구			계사 출입구		야생동물 대책	
		기준13	기준14	기준15	기준20	기준21	기준24	
		손소독, 장갑교체 불충분	경의 장화 교환 불충분	차방소독 불충분	손소독, 장갑교체 불충분	장화 교환 불충분	야생조류 방지네트 불충분	벽, 천정의 손상
제 1사례	香川県			●		●		●
제 2사례					●	●		●
제 3사례					●	●	●	●
제 4사례					●	●	●	●
제 5사례						●		●
제 6사례			●		●			
제 7사례		●	●		●	●		
제 8사례								●
제 9사례	福岡県			●	●			●
제 10사례	兵庫県			●	●	●	●	●
제 11사례	宮崎県			●	●			
제 12사례	宮崎県						●	●
제 13사례	香川県				●	●		●
제 14사례	香川県		●		●		●	●
제 15사례	宮崎県						●	●



- (감액사례-1) 농장내 연락 체제의 불철저·허위보고 : 전염병의 조기 발견이나 만연 방지를 목적으로, 농장의 관리자는 가축의 폐사나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보건위생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돼지열병(CSF)이 발생한 지역에서 농장 A는 농장내의 연락체제가 철저하지 못해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수당금(평가액의 1/5)은 지급되지 않았음
- (감액사례-2) 다른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 · 야생 동물에 대한 대책 불충분 · 사체의 방치 : 가축의 소유자는 축산 관련 다른 시설에 들어가면 위생 관리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함. 돼지열병(CSF)이 발생한 지역에서, 농장 E의 관리자는 스스로 자기 양돈장의 사양 관리를 실시하면서,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야생 멧돼지의 포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음. 또, 가축의 소유자는 사료 보관 장소에 야생 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농장 B의 관리자는 주변 농장에서 제공한 야채 쓰레기를 먹이로 위생 관리 구역 밖에 두고 보관하고 야생 동물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했음. 게다가 배설물의 처리·청소도 되지 않고, 사체도 방치되고 있는 등, 사양 위생 관리의 상태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수당금(평가액의 1/5)이 40% 감액 되었음



- (감액사례-3) 신고 지연 : 가축에 전염병이 의심되는 특정 증상이 확인되면 관리자는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해야 함. 돼지열병(CSF)이 발생한 지역 농장 C는 폐사두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보건위생소로 통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특별수당금이 20% 감액이 되었음
- (감액사례-4) 위생관리구역의 경계가 애매·작업복 교환의 불철저·사료에의 가열의 불철저 : 돼지열병(CSF)이 발생한 지역 농장 D는 위생 관리 구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외부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있는 상태였음. 또한 관리자는 관리 구역 밖으로 나갈 때 작업복을 교환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두 농장을 오가고 있었음. 게다가, 가열해야 하는 식품 순환 부산물 자원을 원재료로 하는 사료를, 가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급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수당금이 10% 감액이 되었음
- (감액사례-5) 소독·작업복 교환의 불철저·사료 위생 관리의 불충분 : 돼지열병(CSF)이 발생한 지역, 농장 E는 축사에서 손 소독을 하지 않았고, 두 농장을 작업복을 교환하지 않고 오가고 있었음. 또, 돼지의 사양 관리에 있어서는 사료에 야생동물의 분변이 혼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지만, 사료를 일륜차에 태운 상태로 방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들새가 침입하고 있었음. 게다가,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미소독의 물을 돼지에게 주고 있었던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해 특별 수당금이 10% 감액 되었음



- (감액사례-5)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출하 :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한 지역, 농장 F는 사육 닭의 사망 폐사 수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한 날과 다음날에 도계장에 사육 닭을 출하하고 있었음. 이는 주위 농장에도 감염을 퍼뜨릴 위험이 높은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되었으며 특별 수당금이 급여되지 않았다. 또, 양계장의 벽이나 방조 네트에 파손이 있었고, 하천의 물을 미소독 상태로 닭의 음용에 사용하고 있던 것 등, 관리 수준이 낮은 부분이 확인되었음
- (감액사례-5) 차량 소독 및 방조 대책의 불충분·미소독 음용수 사용 :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한 지역 농장 G는 차량용 소독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동시에 방조 그물 등 야생조류의 닭장 침입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미소독 하천의 물을 닭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몇 가지 불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수당금이 40% 감액되었음

(5) 사양위생관리 기준

□ 가금, 돼지, 소, 사슴, 염소 및 말 등에 대한 사양위생관리기준

1. 가축 방역에 관한 기본 사항

[사람과 관련된 항목]

<p>1. 소유자의 책임사항</p>	<p>1. (공통사항) 가축 소유자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공통사항)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사육 위생관리지도 등 계획의 규정에 따라 농장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농장 소재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와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여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고 위생관리를 실시한다.</p> <p>(공통사항) 또한 가축의 소유자 이외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확보하여 대체 방법을 확실하게 해당 관리자에게 실시하도록 한다.</p>
<p>2.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 파악 및 위생관리 실천</p>	<p>2. (공통사항) 사육하는 가축이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 및 방지에 관해 가축보건위생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p> <p>(공통사항) 가축보건위생소 등이 개최하는 가축위생에 관한 강습회 참가하고 농림수산성 웹사이트 열람 등을 통해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한다.</p> <p>(공통사항)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농장의 방역 체제 및 사육 위생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한다.</p> <p>(공통사항) 농장의 최신 방역체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등 위생대책설비의 설치장소를 명시한 농장의 평면도를 작성해 대비한다.</p> <p>(공통사항) 가축보건위생소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지도에 따른다.</p>
<p>3. 사육 위생 관리 메뉴얼 작성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주지 【2022년 2월 1일 시행】</p>	<p>3 (공통사항) 다음에 사항을 규정 하는 메뉴얼을 작성할 것. 메뉴얼 작성에 있어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p> <p>(공통사항) 종사자 및 외부사업자가 해당 메뉴얼</p>

	<p>을 준수하도록 해당 메뉴얼을 인쇄한 책자의 배포, 간판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공통사항) 최근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 및蔓延 방지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 및 외부 사업자에게 철저히 주지한다.</p> <p>(1) (공통사항) 종사자가 해당 농장 이외에서 실시하는 동물의 사육 및 수렵 금지 사항</p> <p>(2) (공통사항) 해외 출국 시 및 귀국 후 주의사항</p> <p>(3) (공통사항) 해외로부터 육제품 반입(우편물에 의한 반입 포함)에 관한 주의 및 환기</p> <p>(4) (공통사항) 농장 내 부적절한 물품 반입 금지</p> <p>(5) (공통사항) 가능한 한 공구, 기자재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기 위한 대응</p> <p>(6) (공통사항) 반입 공구, 기재, 식품 등의 취급</p> <p>(7) (가금, 돼지, 반추가축)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위생 관리 구역 내 사육 금지</p> <p>(8) (공통사항) 야생동물 위생관리구역 내 침입 방지</p> <p>(9) (공통사항) 농장 방역을 위한 탈의</p> <p>(10) (공통사항) 손, 의복, 신발, 물품, 차량, 시설 등의 세척 및 소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소독약의 종류, 작용시간 및 건조시간 등</p>
<p>4. 기록 작성 및 보관</p>	<p>4. (공통사항) 다음에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적어도 1년간 보존한다.</p> <p>(1) (공통사항) 위생 관리 구역(가금-7, 돼지와 반추가축-8, 말-6에서 규정하는 위생 관리 구역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동일)에 출입한 자(해당 농장 종사자 제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속, 해당 위생관리구역 출입 연월일, 그 목적(소속 등에서 명백한 경우 제외) 및 소독 실시 여부(위생관리구역에 입차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독 여부를 포함한다. 소독 실시 기록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구역 출입구 등에 대장을 설치하고 이를 기입할 것) 및 해당 출입자가 과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귀국한 경우에는 과거 일주일 이내에 체류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명칭 및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관계시설 등에의 출입유무</p>

	<p>를 기록할 것. 관광 목장 및 기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위생 관리 구역의 출입구에서의 손 및 신발소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생 관리 구역에 출입할 때의 병원체의 반입 및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작성하여 가축 방역원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통사항) 종사자가 해외로 여행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및 국가 또는 지역의 명칭</p> <p>(3) (공통사항) 도입한 가축의 종류, 두수 및 건강 상태, 도입원 농장 등의 명칭 및 도입 연월일</p> <p>(4) (공통사항) 출하 또는 이동을 한 가축의 종류, 두수 및 건강상태, 출하 또는 이동처 농장 등의 명칭과 출하 또는 이동연월일</p> <p>(5) (공통사항)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 수, 나이 및 이상 유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 및 수의사에 의한 진료결과 및 투약 및 기타 처치상황</p> <p>(6) (공통사항) 가축보건위생소, 담당 수의사 등이 해당 농장에 대한 지도 내용</p>
<p>5. 대규모 소유자가 강구하는 조치</p>	<p>5. (가금, 돼지, 반추가축) 대규모 소유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p> <p>(1) (가금, 돼지, 반추가축) 사육하는 가축이 특정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종업원이 발견했을 때 해당 대규모 소유자 및 해당 대규모 소유자 이외에 사육 위생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육 위생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을 작성하여 이를 전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한다.</p> <p>(2) 축사마다 담당 사육 위생 관리자를 배치한다. 동일한 자가 복수의 축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p> <p>(가금) 마릿수의 합계가 닭 및 메추라기인 경우는 10만 수, 오리, 꿩 및 칠면조 등의 경우는 1만 수를 넘지 않는다.</p> <p>(돼지) 총 마릿수가 3,000두 ~ 1만 마리(월</p>

	<p>령이 만 10개월 미만인 돼지)로 한다.</p> <p>(반추가축) 두수의 합계가 200마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p> <p>(3) (가금, 돼지) 대규모 소유자 중 특히 가축의 마릿수가 많아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살처분 등에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는 자는 법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가축의 사체 소각 또는 매몰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책정한다.</p>
6. 수의사 등의 건강관리 지도	6 (공통사항) 농장별로 담당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가축보건위생소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시설에 한함)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로부터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건강관리에 대해 지도를 받을 것.
7. 가축 전염병의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한 준비	7 (돼지, 반추가축) 가축의 소유자는 야생 동물이 질병(돼지-돼지열병, 반추가축-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 리스크가 높아지는 농림수산 대신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하항에 있어서 「대신 지정 지역」이라고 한다.) 돼지의 경우 14, 22, 26, 28 및 29와 반추가축의 경우 14 및 21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평시부터 그 대처 내용을 습득한다.

[사육환경과 관련한 항목]

8 위생관리구역 설정	<p>8. (공통사항) 농장에 병원체의 침입 및 만연 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으로 위생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위생관리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으로 나누어 양 구역의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p> <p>(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은 축사, 가축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의 보관 장소와 가축에 직접 접촉한 자가 소독 및 의복 및 신발 교환(축사별로 실시하는 소독, 의복 및 신발 교환 제외)을 실시하지 않고 행동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p> <p>(공통사항) 또 위생관리구역을 설정할 때는 출입구의 수가 필요 최소한으로 되어 가축,</p>
-------------	--

	<p>자재, 사체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 장소가 가능한 한 경계에 위치하도록 설정한다.</p>
9. 방목 제한 준비	<p>9. (돼지, 반추가축) 법 제34조(돼지)와 제211(반추가축)의 규정에 근거하는 방목의 정지 또는 제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피난용 설비의 확보 또는 출하 또는 이동을 위한 준비 조치를 강구한다.</p>
10. 매몰 등에 대비한 조치 【2022년 10월 1일 시행】	<p>10. (가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금의 사체 매몰용으로 제공하는 토지(가금 일령이 만 150일 이상인 것에 한함) 100마리당 0.5㎡를 표준으로 함) 또는 가금 사체 소각용으로 제공하는 소각시설(이하 8에서 '매몰지 등'이라 함)을 확보한다.</p> <p>(돼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축 사체의 매각용 토지(가축(월령이 만 3개월 이상의 것에 한한다.) 1마리당 0.9㎡를 표준으로 한다) 또는 가축의 사체 소각을 위해 제공되는 소각 시설 (이하 10 「매몰지 등」이라고 한다)을 확보한다.</p> <p>(반추가축) 법 제211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축의 사체의 매각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 확보 또는 소각 또는 화제를 위한 준비조치를 강구한다.</p> <p>(가금, 돼지) 다만, 매몰지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가 강구하는 토지 확보 또는 소각이나 화제를 위한 시설이나 기계 이용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요구하는 대응을 함으로써 매몰지 등의 확보에 대신할 수 있다.</p>
11. 애완동물의 사육 금지	<p>11. (가금, 돼지, 반추가축)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에 대해 위생관리구역 내 반입 및 사육하지 않는다(애완동물 사육을 업무로 하는 관광목장 등에서 사육장소를 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가축과 관련된 항목]	
12. 밀사 방지	<p>12. (가금, 돼지, 반추가축) 가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한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다.</p>

II. 위생관리구역에 병원체 침입 방지

[사람과 관련된 항목]

<p>13. 위생관리구역에 필요 없는 자의 출입 제한</p>	<p>13. (공통사항) 불필요한 사람을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한 자가 사육하는 가축에 접촉할 기회를 최소화하도록 출입구 및 사육관리 관련 시설 부근에 간판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공통사항) 다만 관광목장(경마장 및 승마시설 포함) 및 그 밖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서 해당 출입구의 손 및 신발 소독 등 불특정 다수가 위생관리구역 출입 시 병원체의 반입 및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작성하고 가축방역원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4.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한 자 등이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할 때의 조치</p>	<p>14. (공통사항) 당일에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한 자(농장종사자, 가축방역원, 수의사, 사료운반업자, 기타 축산관계자 제외) 및 과거 1주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귀국한 자를 위생관리구역에 출입시키지 않도록 한다 (가금, 말의 경우 샤워를 통한 신체세척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5. 위생관리구역 출입자의 손 소독 등</p>	<p>15. (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 입구 부근에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출입자에게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손 세정 및 소독을 하게 한다 (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기기를 휴대하고 해당 입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기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경우 및 그 자에게 위생관리구역 전용 장갑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6. 위생관리구역 전용 의복 및 신발 설치 및 사용</p>	<p>16 (가금, 돼지, 반추가축) 위생관리구역 전용 의복 및 신발(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방역복 및 방역신발 커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동일)을 설치하고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게 이를 착용하게 한다(그 자가 해당 위생관리구역 전용 의복 및 신발을 지</p>

	<p>참하여 이를 착용하는 경우 제외).</p> <p>(가금, 돼지, 반추가축) 탈의에 의한 병원체의 위생관리구역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착 전후의 의복 및 신발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탈의 전후에 이용하는 경로를 일방통행으로 한다.</p> <p>(가금, 돼지, 반추가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하고 의복 또는 신발에 배설물, 슬러지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p>
--	--

[물품과 관련된 항목]

17.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독 등	<p>17. (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 입구 부근에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하는 자에게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독하게 한다(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기기를 휴대하고 해당 입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기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경우 제외).</p> <p>(가금, 돼지, 반추가축) 위생관리구역에 입차하는 자에게 해당 농장 전용 바닥 소독매트의 사용 및 기타 방법으로 차량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한다(그 자가 위생관리구역 내에서 하차하지 않는 경우 제외).</p>
18.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품을 위생관리구역에 반입할 때의 조치	<p>18. (공통사항) 다른 축산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였을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위생관리구역 내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반입할 경우에는 세척,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19. 해외에서 사용한 의복 등을 위생관리 구역에 반입할 때의 조치	<p>19. (공통사항) 과거 2개월(가금, 말), 4개월(돼지, 반추가축) 이내에 해외에서 사용한 의복 및 신발을 위생관리구역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척, 소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20. 음용수의 급여	<p>20. (공통사항) 사육하는 가축에 수돗물 등의 음용에 적합한 물 이외의 물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독한다.</p>
21. 처리된 사료의 이용	<p>21. (돼지) 사육하는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사업</p>

	<p>소 등으로부터 배출된 식품 순환 자원(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해세이 12년 법률 제 166호) 제2조 제 3항에 규정 하는 식품 순환 자원을 말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쇼와 28년 법률 제35호)에 근거해 적정하게 처리가 행해진 것(교반 하면서 섭씨 90도 이상으로 6 충분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방법 등으로 가열 처리를 행하고, 또한 가열 후의 사료가 가열 전의 원재료 등에 의해 교차 오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등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해당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생 관리 구역 내에 반입하지 않는다.</p>
<p>22. 안전한 자재 이용</p>	<p>22. (돼지, 반추가축) 장관 지정 지역에 있어서 수확된 농산물 등을 자체적으로 사료, 부원료 등에 이용하는 경우, 가축보건위생소에 조언을 요구하고 지도에 따른다.</p>
<p>23. 위생관리구역으로의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p>	<p>23. (돼지) 야생 동물의 서식 지역에 소재하는 농장에 있어서는, 위생 관리 구역에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않게 방호 울타리의 설치(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한정. 방목장 등의 옥외 사양 시설의 경우는, 이중 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등의 접촉 방지 대책이 강구된 것에 한정.)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돼지) 정기적으로 방호 울타리 기타 파손 상황을 확인하고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손 부위를 수선한다. (돼지) 쥐 등의 야생동물이 숨어 있는 장소를 없애도록, 방호 울타리 주위의 제초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가축과 관련된 항목]</p>	
<p>24. 가축 도입 시 건강관찰 등</p>	<p>24. (공통사항) 다른 농장 등으로부터 가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입원의 농장 등에 있어서의 가축의 전염성 질환의 발생 상황 및 도입하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에 의해 건강한 가축을 도입한다.</p>

	(공통사항) 도입한 가축이 가축전염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다른 가축과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	--

III. 위생관리구역내 병원체에 의한 오염 확대 방지

[사람과 관련된 항목]

25. 축사에 들어가는 사람의 손가락 소독 등	25. (공통사항) 축사의 출입구 부근에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에 출입할 때에 해당 소독 설비를 이용해 손의 세정 및 소독을 시킨다(그 사람에게 해당 축사 전용의 장갑을 착용시키는 경우 제외.).
26. 축사별 전용 의복 및 신발 설치 및 사용	<p>26. (가금, 돼지) 각 축사별 전용의복(대신 지정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신발을 설치해,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착용시키고 의복 또는 신발이 축사 외에서 병원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축사간 이동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p> <p>(가금, 돼지) 탈의에 의한 병원체의 축사내 침입을 막기 위해, 착탈 후의 의복 및 신발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또한 탈의 후에 이용하는 경로를 일방통행으로 한다.</p> <p>(가금, 돼지) 그 외의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p> <p>(가금, 돼지) 축사에서 가축, 퇴비 등을 반출할 때에는, 작업자의 동선이 축사의 내외에서 교차하지 않도록, 축사의 내외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분리한다.</p> <p>(가금, 돼지) 전용 신발 및 의복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가금, 돼지) 의복 또는 신발에 배설물, 슬러지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세정 및 소독을 한다.</p>

[물품과 관련된 항목]

27.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또는 소독 등	<p>27. (공통사항) 사육 관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청소 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한다.</p> <p>(돼지, 반추가축, 말) 주사바늘, 인공수정용 기구 그 외의 체액이 부착하는 물품을 사용할 때는, 주사바늘에 있어서는 적어도 돈방</p>
-------------------------	---

	(돼지) 또는 1마리마다(반추가축, 말), 인공 수정용 기구 그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1마리마다 교환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28. 축사 밖에서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 방지	28. (공통사항) 가축의 사육 관리에 필요 없는 물품을 축사에 반입하지 않는다. (돼지) 장관 지정 지역에 있어서는, 축사간 가축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붕, 벽 등에 의해 야생 동물 등에 의한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축사간 통로, 세정 및 소독이 끝난 케이지, 리프트 등을 사용함과 동시에, 축사에 중장비, 이륜차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축사의 출입구 부근에서 세정 및 소독을 한다.

[야생동물 관련된 항목]

29. 야생동물 침입방지를 위한 네트 등의 설치, 점검와 수선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를 위한 사체의 적정한 보관	29. (가금, 돼지) 야생조류 등 야생동물의 축사, 사료보관고, 퇴비사, 사체보관고 등에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조망 (가금 - 그물망 크기가 2센티미터 이하인 것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 기타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설비의 파손 상황을 확인하여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한다. (돼지) 장관 지정 지역에 있어서는, 방목장에 대해서 급이 장소에 있어서의 방지 네트의 설치 및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피난용의 설비의 확보를 실시한다. (반추가축, 말) 가축의 사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장소에의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0. 급여설비, 급수설비 등에 야생동물 배설물 등의 혼입 방지	30. (공통사항) 축사의 먹이 설비 및 급수 설비 및 사료의 보관 장소에 쥐, 새 등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1. 쥐 및 해충의 구제	31. (공통사항) 쥐나 해충의 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구서제 및 살충제의 살포, 점착 시트의 설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축사의 지붕 또는 벽면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손 장소를 수리한다.

[사육환경과 관련한 항목]

32. 위생관리구역 내 정리정돈 및 소독	32. (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 내에는 쥐 등 야생동물이 숨을 곳을 없애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해당 병원체가 잔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의 처분, 제초 및 기자재 등의 정리정돈 등을 실시하여 부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33. 축사 등 시설의 청소 및 소독	33. (공통사항) 축사 기타 위생관리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사육위생관리 메뉴얼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한다.

[가축과 관련된 항목]

34. 매일의 건강 관찰	34. (공통사항) 매일 사육하는 가축의 건강 관찰(가축의 건강 상태 확인과 더불어 출생(부화) 및 폐사 상황 확인 포함)을 실시한다.
---------------	---

IV. 위생관리구역외 병원체 확산 방지

[사람과 관련된 항목]

35. 위생관리구역에서 퇴출하는 자의 손 소독 등	35. (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 출구 부근에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퇴출하는 자에게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손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다(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기기를 휴대하고 해당 출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기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물품과 관련된 항목]

36 위생관리구역에서 퇴출되는 차량 소독	36 (공통사항) 위생관리구역 출구 부근에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차량을 내보내는 자에게 해당 소독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독을 실시한다(그 자가 해당 소독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소독기기를 휴대하고 해당 출구 부근에서 해당 소독기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위생관리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소독 등	37. (공통사항) 가축의 배설물 등이 부착하고 있거나 또는 부착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위생관리 구역으로부터 꺼내는 경우에는, 세정, 소독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가축과 관련된 항목]

<p>38. 가축의 출하 또는 이동시의 건강 관찰</p>	<p>38. (공통사항) 가축을 출하 등에 의해 농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동의 직전에 해당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축의 시체 또는 배설물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p>
<p>39. 특정 증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기 통보 및 출하 및 이동의 정지</p>	<p>39. (공통사항) 사육하는 가축이 특정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한다. (공통사항) 농장으로부터의 가축 및 그 사체, 축산물 및 배설물의 출하 및 이동을 멈춘다. (가금, 돼지, 반추가축) 불필요하게 위생관리구역 내에 있는 물품을 위생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p>
<p>40. 특정 증상 이외의 이상이 확인되었을 경우의 출하 및 이동의 정지</p>	<p>40. (공통사항) 사육하는 가축에 특정 증상 이외의 이상이 나타났고, 가축의 폐사율이 급격한 상승 또는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그 원인이 가축의 전염성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즉시 수의사의 진료 혹은 지도 또는 가축보건위생소의 지도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가축이 법정 전염병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농장으로부터의 가축의 출하 및 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통사항) 당해 가축이 법정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보건위생소의 지도에 따를 것. 또, 사육하는 가축에 그 외의 특정 증상 이외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지도를 요구한다.</p>

(6)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

가.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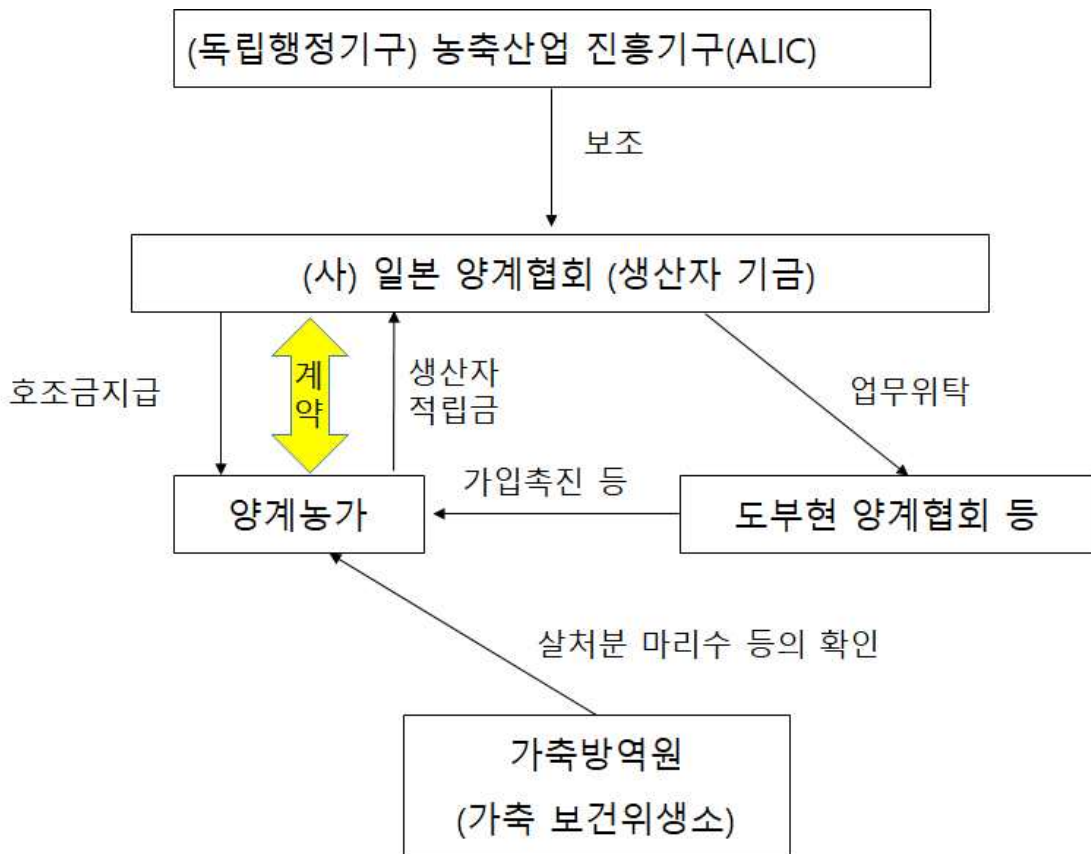
- 축산 경영지원 대책
- 생산자가 가축 사육두수에 따른 금액을 적립한 후 특정질병 발생시 손실액의 일부를 지급받아 경영재건, 상호보조 보험의 성격

□ 주관기관 : 농림수산성

-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의 설계, 생산자의 사육규모 확인, 사양관리와 방역위생기준에 대한 감독, 특정 질병발생시 손실규모 확인, 적립금과 호조금지급액 등을 확인하고 감독

□ 실행기관 : 농축산업 진흥기구(ALIC, Agriculture & Livestock Industries Corporation)

- 축종별 호조기금(보조 50%, 거출 50%)을 관리. 각 도도부현과 도도부현의 가축 축종별 생산자 협회와 공동으로 가입과 호조금 수탁 및 지급을 실행함.
- 경영안정대책, 수급조정, 가격안정대책, 긴급대책, 정보수집·제공에 관한 업무를 실시



[일본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시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 체계]

□ 호조기금의 계약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해 정해진 사양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 참가자 신청에 의해 교부 계약을 체결
- 계약사항 : 계약대상이 되는 가축의 두수 또는 수수에 관한 사항,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호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

□ 계약 대상 농장

- 교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동 제한 구역 등의 밖에 존재농가

□ 계약 대상 두수

- 생산자의 가축 종류, 사육두수, 계약 구분 및 가축의 구분(이하 「가축의 종류 및 구분」이라고 한다.)
- 생산자는 계약두수 외에 사육두수 변경시 변경 절차를 시행

□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납부 방법 등

- 생산자 적립금의 : 가축의 종류에 따라 사육 두당 금액
- 반환 : 계약사항 변경 또는 생산자 적립금의 정산이 필요할 때 등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가축 방역 호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 소와 관련된 쇠고기 생산자 기금, 돼지 관련 돼지 생산자기금, 닭, 메추라기, 오리, 꿩, 호로호로새, 칠면조 및 타조(이하 「닭과 기타 가금」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닭과 기타 가금을 기금생산자 가축 방역 호조 기금

□ 호조금

- 호조금의 단가 : 가축의 종류 및 구분별의 호조금 교부 상한 단가를 정함
 - 농림수산성의 농업경영통계조사 중 축산물생산비 통계 및 영농유형별 경영 통계 및 후생 노동성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등에 근거

【호조금 산정 기준 - 고정경비 보정】

(a) 고용노임보정 - ①

$$\text{교부 상한 단가에서 고용노임} \times \frac{\text{교부대상 농장의 1마리당 고용노임}^{*1}}{\text{생산비의 1마리당 고용노임}}$$

- ※①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고용 노임과 고용 노임 데이터가 없으면, 대신에 고용 노동시간 기준으로 산출작업 시간으로 계산

(b) 지대(地代) 보정 - ②

$$\text{교부 상한 단가에서 지대} \times \frac{\text{교부대상농장의1마리당 지대}^{*2}}{\text{생산비의1마리당 지대}}$$

*②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지불 지대와 그리고, 노선가(路線價) 등에 의해 산정

(c) 감가상각비 보정 - ③

$$\text{교부상한단가에서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교부 대상 농장의 두당 감가상각비}^{*3}}{\text{생산비의1마리당 감가상각비}}$$

*③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건물상각비

【호조금 산정 기준 - 공사(비사육기간) 보정 - ④】

$$\text{보정 계수} = \frac{\text{교부 대상 농장의 가축 도입 계획의 공사기간}^{*4}}{\text{교부 상한 단가의 공사기간}}$$

*④ 교부 대상농장에서 교부 대상 질병의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경영 재개후 새로운 가축의 도입이 종료 된 날까지의 기간 (1개월 미만은 반올림)

【호조금 교부 단가의 산정 - ⑤】

$$\text{※ 호조금 교부 단가}^{*5} =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기타 고정비}) \times \text{④}$$

*⑤ 호조금 교부 상한단가를 상회한 경우는, 해당 상한단가를 호조금 교부 단가로 함
(주) 닭 및 기타 가금에 대해서는, 1마리 당 1개월 기준

□ 호조금의 종류

○ (경영지원 호조금) 교부대상 질병 발생농장, 살처분된 가축대비 적은두수로 교부. 가축 도입 계획 등에 근거하여 가축의 도입을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공사(비사육기간) 부분의 고정 경비 등을 지원

- 소 : 가전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된 젖소 및 육용소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소 소를 사육하고 있던 계약 대상 농장에 있어서, 새롭게 입식되었거나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에서 모임에서 인증 된 도입 계획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되면 확실히 예상되는 젖소 및 육용소 그러나 국가 및 기구의 보조 사업에서 번식 암소의 도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소는 제외

- 돼지 : 가전법 제16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 된 돼지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돼지. 새로 입식되었거나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에서 인증 된 도입계획 등에 따라 새로 도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돼지. 단,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또는 국가 및 기구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도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돼지를 제외, 번식용 후보 돼지 (암컷)의 도입에 대해서는, 해당 돼지와 비육돈 도입시 11마리를 상한으로 함

- 닭 : 가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처분 된 닭 및 기타 가금으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닭 및 기타 가금. 새로 입식되거나 교부금 교부 인정위원회에서 인정된 도입 계획 등에 의거하여, 새롭게 도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닭 및 기타 가금

○ (소각·매각 등 호조금) : 가축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이하 "소각 등"이라고 함)하기 위해 사업 참가자가 부담한 경비를 지원

- 소 : 가전법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처분 된 쫓소 및 육용우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소

- 돼지 : 가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 된 돼지로서 가축 방역원등이 확인한 돼지

- 닭 및 기타 가금 : (a)의 c의 (a)에 기재된 닭 및 기타 가금

[일본의 농축산업진흥기구(Agriculture & Livestock Industries Corporation)]

연혁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0월 「농축산진흥사업단」과 「야채공급안전기금」을 통합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설립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계의 가격조정·경영안정업무개시 • 기고시마사무소 신설(지방사무소를 10개에서 3개로 집약)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사매매업무 폐지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의 긴급수급조정사업(사)전국야채수급조정기구로부터 이관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원료 유생산자 보급제도의 향구화, 교부대상자의 확대 • 비육우비육경영특별안정대책사업(소마루킨) 및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돈마루킨)의 법제화 • 가당조제품을 사탕의 가격조정제도의 조정금징수의 대상에 새롭게 추가

조직도

임원수 : 10인
 직원수 : 250인
 (2021년 4월 1일 현재)



「alic은 일본의 많은 농축산업생산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총산총액(레이와원년:2019년)

alic

의 업무대상은,

축산물, 야채, 사탕과 그 원료작물, 고구마전분과 그 원료작물
다방면의 우리나라의 농업총산총액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省「生産農業所得統計」より推計
注1「alic」は、食食用とでん粉原料用いとの合計額

注2：()内は、農業総産出額における構成比



1 경영안정대책

비육우, 비육돈 경영은 사료 등의 비용, 판매가격의 변동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부금과 교부 등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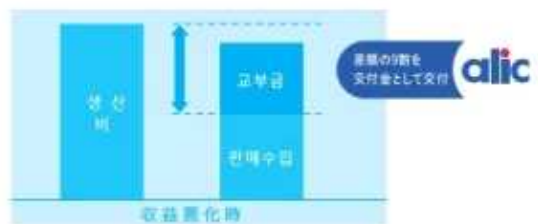
● 비육우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

비육용 송아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송아지 판매가격이 생산비에 상당하는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에 비육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한다.



● 비육우 비육 경영안정 교부금 제도 (소마루킨)

비육우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가격의 급등과 소지육가격의 하락 등으로부터 판매수입이 사료비용의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비육우 생산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 비육돈 경영안정교부금제도
(돈마루킨)

비육돈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 가격의 급등과 돈지육가격의 하락등으로부터 판매 수입이 사료비 등의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비육돈 생산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 축산업진흥사업

경영안정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 ① 비육우번식 경영생산자의 기반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지원한다.
- ② 산지식육센터의 비용저감, 위생관리의 고도화등을 위해 설비의 개선과 식육도매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기능강화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 ③ 국산식육의 안전, 안심에 관계되는 정보의 수집, 보급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注:牛豚のと畜・部分加工などを行う施設



牛は、生産から流通・消費の各段階において10桁の数字からなる個体識別情報で一元管理されています(牛トレーサビリティ制度)。生産段階では、耳に装着される耳標(じひょう)で牛の個体識別情報が管理されており、alicはこの取組を支援することで国産食肉の安全・安心に貢献しています。

2 긴급대책

자연재해나 중대한 가축질병, 낙농, 유업을 둘러싼 정세변화 등에 수반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낙농관계자에 대한 긴급적 지원을 축산업진흥사업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 일본 각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과 돈열병 발생농장의 경영재개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레이와2년(2020년)호우와 레이와2년~3년 대설 등으로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 손괴된 시설, 기계보수, 대체가축의 도입 등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ブラジルのさとうきび収穫風景



ニュージーランドの牧場(肉用牛)

농축산물생산자의 경영안정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의 농축산물의 수급동향과 농업정책, 기술혁신 등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는 생산자와 가공·유통관계자,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극히 중요하다. alic는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도구와 파이프를 활용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화와 농축산물의 수급동향을 판단에 필요로한 국내외의 정보를 생산자, 관계업계,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기관, 소비자등에 정보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보제공

● 정보지(월보)

「畜産の情報」「野菜情報」「砂糖類・でん粉情報」は、需給予測や需給動向の解説、海外の動向や国内の優良事例の調査報告、各種統計資料などを掲載しています。



● 홈페이지

情報誌の内容はホームページでも提供しています。また、タイムリーな内外の情報や国内外の生産、輸出入、需給、価格などを幅広く網羅したデータベース、一般消費者を対象とした分かりやすい情報などもホームページや広報誌(広報誌 alic)、各種ソーシャルメディア(Facebook、YouTube)を通じて提供し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s://www.alic.go.jp/>



● alic세미나

業務を通じて得られた情報や、これらに関連する様々な情報を広く国民の方々に知ってもらうよう社会的発信の充実に取り組んでいます。その一環としてalicセミナーを開催しています。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사업

令和3年度
開始

● 젖소 · 비육우 · 양돈농가 여러분에게 ●

만일의 구제역·돈열병 발생시에 대비하여

家畜防疫互助事業 に参加を！

가축 방역 호조 사업은 구제역, 돼지 열병 등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 일본의 축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만일 발생하면 축산 경영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 적립을 하므로서 발생 농장이 경영을 재개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구조에 국가 ((독) 농축 산업 진흥기구)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 농장과 주변 농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경영을 유지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公益社団法人 中央畜産会

〒101-0021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2-16-2(第2DICビル9階)
TEL 03-6206-0833 FAX 03-5289-0890

사업의 포인트

- 소·돼지 (물소 및 멧돼지를 포함)를 사육하는 생산자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 이동 제한 등이 실시되고 있는 구역의 생산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12조의 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로서 사양 위생 관리 기준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 「소역」, 「소페결핵」,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돼지 열병」의 5개 질병입니다.
- 사업실시기간은 2021년~2023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 생산자가 납부한 생산자 적립금 중, 소에 관련된 것은 소 생산자 기금, 돼지와 관련된 것은 돼지생산자 기금으로 관리합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호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소에 대해서는 소 생산자 기금, 돼지에 대해서는 돼지 생산자 기금에서 각각 교부됩니다.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국내외의 돼지열병 등의 가축 질병의 발생 상황을 근거로, 단가를 재검토했습니다. 가축 유형별 생산자 적립금의 1마리당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축의 종류	생산자적립금단가 (1두당)	
젖 소	젖소 (24개월령이상)	245엔	
	젖소 (24개월령미만)	90엔	
비 육 우	비육전용순종번식암소 (24개월령이상)	235엔	
	비육전용순종번식암소 (24개월령미만, 송아지포함)	125엔	
	비육전용순종비육우 (송아지포함)	95엔	
	교잡종 비육우	90엔	
돼지	젖소 비육우	90엔	
	가축형	번식용 중돈 (암)	375엔
		번식용 중돈 (수)	375엔
		비육돈	105엔
	기업형	번식용 중돈 (암)	390엔
		번식용 중돈 (수)	390엔
비육돈		110엔	

- 주 : 1. 번식용 중돈은 번식용 예정 암, 수 돼지 포함
 2. 돼지는 이유 후의 돼지를 정의한다.
 3. 젖소 또는 젖소비육우는 물소(식용생산용에 한함), 돼지는 멧돼지 포함.

돼지의 기업형에 대해서

- 기업형(돼지)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 시에도 고용이 계속되는 농장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고용형 사업으로, 발생부터 경영 재개까지 일정한 고용 유지되는 것을 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형에 대해서는, 항상 사용하는 직원(생계를 1로 하는 것을 제외)의 수가, 1명 이상의 사업주 또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족형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 기업형 호조금 교부시에는 고용 실태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교부시의 고용 실태에 따라서 기업 유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가족 유형의 상호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사업 실시 기간에 있어서, 동일 연도 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구분(가족형, 기업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

- 가입 시 납부하는 생산자 적립금의 금액을 계약 두수에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를 곱하여 구합니다.
- 대상 질병이 발생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자원 부족에 빠진 경우 추가 부담 비율((독)농축산업진흥기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합니다.)에 따라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두수

- 호조금은 계약두수를 상한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실시기간(레이와 3~5년도)에 있어서의 계약 농장 마다의 전담두수로 계약해주세요.
- 비육돼지는 상시 사육두수(이른바 재고두수)로 계약해주시시오.
- 계약두수는 수시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두수를 줄여도 감소분의 적립금은 3년간의 사업 종료 시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입 수속 절차

- 가입을 희망하는 소·돼지의 생산자(이하, 가입 신청자)는, 「가족 방역 호조금 교부 계약 신청서 및 교부 계약서」를 중앙 축산회의 사무 위탁처인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에 제출합니다.
-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중앙축산회는 교부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자 적립금 지불을 청구합니다.
- 가입 신청자는 도도부현 축산 협회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합니다.

계약의 효력

- 레이와 3년(2021년)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분으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레이와 3년 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6년(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① 레이와 3년(2021년)7월 31일까지 교부계약을 체결할 것.
 - ② 레이와 3년(2021년)9월 30일까지 ①의 교부계약에 근거한 생산자적립금을 납부.
- 본 사업의 사업 기간(레이와 3년~레이와 5년)의 도중에 이동 제한 등의 해제, 신규 참가, 농장의 증설 등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 한 분으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 ① 신청 후 교부계약을 체결할 것.
 - ② 중앙축산회의 사무위탁처인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이 정하는 날까지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

1호당의 적립금은?

• 낙농 자가육성경산우 40두 규모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젖소 (2세 이상)	245원 X 40두 = 9,800원	11,510원
젖소 (2세 이하)	90원 X 19두 = 1,710원	

• 비육우전용번식 번식암소 20두 규모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비육우전용번식암소 (2세이상)	235원 X 20두 = 4,700원	6,075원
	125원 X 11두 = 1,375원	

• 비육우전용비육 비육우 100두 규모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비육우전용 비육우	125원 X 100두 = 12,500원	12,500원

• 젖소종비육 비육우 400두 규모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교잡종 비육우	95원 X 120두 = 11,400원	36,600원
젖소 비육우	90원 X 280두 = 25,200원	

• 양돈(가족형)일관 연간출하두수 400두 규모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번식용종돈 수태지	375원 X 1두 = 375원	32,985원
번식용종돈 암태지	375원 X 22두 = 8,250원	
비육돈	105원 X 232두 = 25,200원	

• 양돈(기업형)일관 연간출하두수 2000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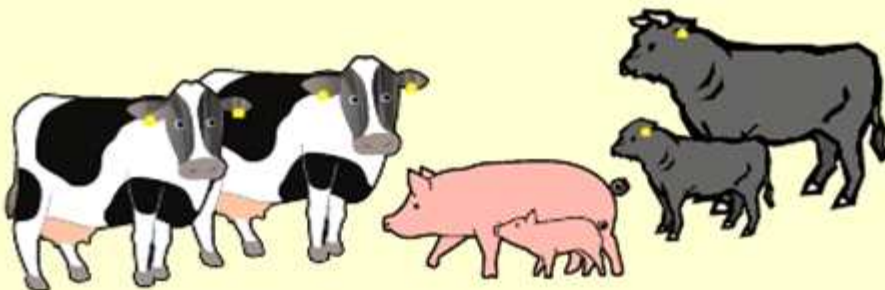
구분	단가 X 두수	합계
번식용종돈 수태지	390원 X 5두 = 1,950원	172,450원
번식용종돈 암태지	390원 X 110두 = 42,900원	
비육돈	110원 X 1,160두 = 127,600원	

호조금 잔액의 반환 교부

- 호조금의 교부 계약 기간 종료 후, 소의 호조 기금의 잔액은 가입자에게 반환됩니다. 돼지의 호조 기금에 대해서는, 22년의 미야자키현에 있어서 규제역 발생시에 국가(독) 농축 산업진흥기구)의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 중 일정 금액을 반환 한 후의 호조 기금의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생산자 적립금의 납세 시 취급

- 각 도도부현 축산협회 등에 납부한 생산자 적립금은「가불금으로 처리요망.
- 대상 질병의 발생으로 호조금 교부를 위해 생산자 적립금이 소진되었을 때, 소진된 금액을 각 도도부현 축산 협회 등으로부터 알려 드리므로, 그 금액을 경비로 처리해 주세요.
- 사업 종료 후, 적립금의 잔액의 반환이 있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지원 호조금과 단가

계약 대상 농장에 있어서, 해당 농장의 경영을 재개하는 경우에, 가족의 도입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빈 축사 부분의 고정 경비 등을 지원.

가족의 종류		호조금의 상한단가 (1두당)	
		경영지원호조금	
젖 소		젖소 (24개월령 이상)	193,000엔
		젖소 (암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8,000엔
		송아지 (암, 12개월령 미만)	23,000엔
비육우	비육 전용	번식암소 (24개월령 이상)	186,000엔
		번식암소 (12개월령 이상 24개월령 미만)	58,000엔
		비육우 (암, 12개월령 이상)	
		비육우 (수, 12개월령 이상)	
		송아지 (12개월령 미만)	
	교 잡	비육우 (12개월령 이상)	36,000엔
		송아지 (12개월령 미만)	34,000엔
	젖 소	비육우 (12개월령 이상)	28,000엔
		송아지 (12개월령 미만)	23,000엔
돼지	가족형	번식용 종돈 (암)	48,000엔
		번식용 종돈 (수)	48,000엔
		비육돈	10,000엔
	기업형	번식용 종돈 (암)	55,000엔
		번식용 종돈 (수)	55,000엔
		비육돈	11,000엔

- 주 : 1. 국가 등의 사업을 이용해 새롭게 도입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경영 지원 호조금의 교부 대상 두수로부터 제외됩니다.
 2. 돼지 호조금 교부 대상은 이유 후 돼지입니다.
 3. 삼체분한 가족을 소각·매각 등하기 위해서, 생산자 스스로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각·매각 등 교부금이 지급됩니다.

호조금의 교부

- 만일 대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교부 신청에 근거해 호조금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질병 발생 조기통보나 사양 위생 관리 기준의 준수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호조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경영 지원 호조금의 교부 결정에 즈음해, 도도부현 단계에서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 계획 및 호조금 교부 단가의 심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중앙 축산회에서 호조금 교부액 인정위원회를 개최해 호조금 교부액을 결정합니다.

호조금 교부 대상 마리 수

※ 호조금은 계약두수를 상한으로 살처분두수 또는 도입계획두수 중 적은 두수(교부 대상두수)에 근거해 교부됩니다. 이 때문에 중두가 예정되어있는 분은 신청 시 중두 후 두수로 계약을 권장합니다.

農家 A	契約頭數 100頭	→	殺処分頭數 80頭	→	導入計画頭數 90頭	→	交付対象頭數 80頭
農家 B	契約頭數 100頭	→	殺処分頭數 80頭	→	導入計画頭數 70頭	→	交付対象頭數 70頭
農家 C	契約頭數 100頭	→	殺処分頭數 120頭	→	導入計画頭數 110頭	→	交付対象頭數 100頭

호조금 납세 시 취급

- 교부된 호조금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입으로서 계상하게 됩니다.

(7) 축산 경영재건보험

① 닭-조류인플루엔자

본 보험에 가입한 양계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사육하는 산란계 (성계·육성계)가 폐사 또는 살처분 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20-21년 개정)

- 즉시 지불방식 도입 : 가입농장의 산란계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하거나 살처분 되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금을 일괄 지불
- 총 지불 한도액의 인상 : 연간 총 지불 한도액의 최대금액 인상: 12억 엔
- 보험료의 현실화 : 최고의 상황을 감안해 가입료(보험료)의 현실화(성 계 : 3.74엔/마리 (구:2.2엔/마리))
- 수송 중 보상의 추가 : 본 보험제도에 가입할 경우 육성계·성계의 도입 수송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닭의 폐사에 대해 보상
- 자연 재해보상의 추가 : 기본보상(화재, 낙뢰, 폭발, 풍해, 설재, 화재보상)옵션보상(혹서, 한파 보상)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입료(보험료)		지불보험금		
1마리당		1마리당		
육성계	성계	육성계	성계	
1.87円	3.74円	180円	430円	

지불하는 보험금액

○ <성 계 : 120일령 이상> 사망·살처분 마리수 x 430円

○ <육성계 : 120일령 미만> 사망·살처분 마리수 x 180円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사망·살처분 마리수가 확인된 서류의 사망·살처분 수에 따라서 보험금액을 결정

보험제도 전체가 무사고 등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가입 시 받은 가입료(보험료)의 5%를 반환

○ 보험 기간에 본 보험제도가 무사고이거나 보험금의 지불 또는 그 우려가 없을 것 당해년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의 제도 전체의 손해율이 30% 이하인 경우

$$\text{손해율(\%)} = \frac{\text{보험사가 지불한 보험료(엔)}}{\text{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엔)}}$$

□ 연간 총지불한도액

보험제도 전체 합계 보험료	연간총지불한도액
3억엔이상	12억엔
2.5억엔이상	10억엔
2억엔이상	8억엔
1억엔이상	7억엔
6,000 만엔이상 1억엔미만	6억엔
3,000만엔이상 6,000만엔미만	4억엔


 一般社団法人 日本養鶏協会
 Japan Poultry Association

power by Google 

[統計](#) |
 [たまごの知識](#) |
 [にわとりとたまごの質問コーナー](#) |
 [協会概要](#) |
 [関連リンク](#) |
 [お問い合わせ](#)

조류 인플루엔자 경영 재건 보험 (영화 4년 계약판)

브로셔	조류 인플루엔자 경영 재건 보험 자연재해보상 플랜
요령	조류 인플루엔자 경영 재건 보험 제도 취급 요령
작품집	양식 1 조류 인플루엔자 경영 재건 보험 제도 가입 의뢰서 겸 고지서(신규 가입자님 전용) 양식 2 보험금 청구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겸 통지서 양식 9 자연 재해 보상 플랜 가입 의뢰서

「새 독감 경영 재건 보험」은 당 협회의 회원 분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보험입니다.

- [개인 회원의 입회 안내](#)

2018년 계약판의 모집을 개시했습니다.

<유의 사항>

- 보험회사 결제 합계가 연간 한도액에 도달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한도액은 총 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 2017년 2월 1일 시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신규 보험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령화 3년 2월 1일~영화 4년 1월 31일의 보험 계약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농장

- (1) 발생 농장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경영 재개가 허가된 날.
- (2) 이동 제한 농장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이동 제한이 해제된 날(일부 해제는 제외합니다).

2. 령화 4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가입하는 농장의 경우

당해 도도부현내에서 모든 이동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날(일부 해제는 제외합니다).

鳥インフルエンザに対する 備えは万全ですか？

일본의 조류인플루엔자 경영재건보험

본 보험에 가입한 양계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사육하는 산란계(성계·육성계)가 폐사, 살 처분 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 레이와 2·3년(2020년-2021년) 개정



▼改定のご案内

昨今の鳥インフルエンザ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を鑑み下記のとおり商品改定をおこないます。

개정 ① 즉시 지불방식 도입

가입농장의 산란계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하거나 살 처분 되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금을 일괄 지불

개정 ② 총 지불 한도액의 인상

연간 총 지불 한도액의
최대금액 인상: 12억 엔

개정 ③ 가입료(보험료)의 현실화

● 성 계 : 3.74엔/마리 (구:2.2엔/마리)
● 리)

최고의 상황을 감안해 가입료(보험료)의 현실화

개정 ④ 수송 중 보상의 추가

본 보험제도에 가입할 경우 육성계·성계의 도입 수송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닭의 폐사에 대해 보상

개정 ⑤ 자연 재해보상의 추가

기본보상(화재, 낙뢰, 폭발, 풍해, 설재, 화재보상)
읍선보상(혹서, 한파 보상)

※このパンフレットは概要を説明したものです。詳細は重要事項説明書・取扱要領にてご確認ください。

보상의 개요

본 보험에 가입한 양계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사육하는 산란계(성계·육성계)가 폐사, 살 처분 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 레이와 2·3년(2020년-2021년) 개정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입료(보험료)		지불보험금	
1마리당		1마리당	
육성계	성계	육성계	성계
1.87円	3.74円	180円	430円



詳細は、重要事項説明書、取扱要領等をご確認ください。

- Point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 Point②** 유사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합니다.
- Point③** 보험제도 전체가 무사고 등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가입 시 받은 가입료(보험료)의 5%를 반환합니다.

Point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사망·살 처분 마리수가 확인된 서류의 사망·살 처분 마리수에 따라서 보험금액을 결정합니다.

[지불하는 보험금액]

<성 계> 사망·살 처분 마리수 x 430円

<육성계> 사망·살 처분 마리수 x 180円

Point②

유사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법령에 기초한 보상 및 임의 가입한 가축방역 호조기금 지원사업으로부터 호조금의 교부등이 발생 하지만 보험가입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성계 1마리당 가입료(보험료)>

<육성계·병아리 1마리당 가입료(보험료)>



3.74円



1.87円

<성 계> 보험제도는 120일령 이상의 닭을 성계라고 합니다.

<육성계> 보험제도는 120일령 미만의 닭을 육성계라고 합니다. (* 병아리 포함)

★<加入料(保険料)の算出方法>

加入料(保険料)は(加入申告羽数)×(1羽あたり保険料)にて算出します。

※ 加入時の申告羽数は、保険期間中に飼養が見込まれる最大羽数とします。農場および成鶏・育成鶏の別により100羽未満を切上げとなります。

※ 加入料(保険料)は、鶏舎所在地、鶏舎構造に関係なく全国一律となります。

[본 보험제도의 연간 총 지불한도액에 대하여(중요)]

① 本保険制度は、保険制度全体における合計保険料にもとづき、年間総支払限度額を決定します。

※ 合計保険料にもとづき適用する年間総支払限度額は下表のとおりです。

② 保険会社が保険期間中に支払った保険金の合計額が年間総支払限度額に達した時点で本保険契約は終了します。

③ 本保険制度の最低保険料は3,000万円です。合計保険料が最低保険料に満たない場合には、保険制度の中止や保険料の変更等、制度見直しを行う場合があります。

保険制度全体における合計保険料	年間総支払限度額
3 億円以上	12億円
2.5億円以上	10億円
2 億円以上	8億円
1 億円以上	7億円
6,000万円以上1億円未満	6億円
3,000万円以上6,000万円未満	4億円

Point③

보험제도 전체가 무사고 등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가입 시 받은가입료(보험료)의 5%를 반환합니다.



이하[적용조건] ①·② 어느것도 만족하는 경우, 보험 종료후 가입시 금액의 5%를 무사고 반환으로 돌려줍니다.

[적용조건]

①보험 기간에 본 보험제도가 무사고이거나 보험금의 지불또는 그 우려가 없을 것.

②당해 년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의 제도 전체의 손해율이 30% 이하인 경우.

$$\text{손해율(\%)} = \frac{\text{보험사카 지불한 보험료(원)}}{\text{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원)}}$$

※ 保険期間中に事故が発生した場合で、保険期間終了後においても保険会社が保険金を支払うために必要な事項を確認できない場合は、確認できるまで無事故判定を保留します。

② 돼지, 소 - 경영재건보험

□ 사업 개요

- 가축 경영에서 전염병이나 자연 재해의 발생에 의해, 사양 가축이 사망 등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체 가축 도입 이후의, 사육·비육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경영 계속을 지원

□ 특징 · 장점

POINT 경영리스크에 대한 재생산비용을 보상합니다

가축도입으로부터 출하까지의 흐름	가축도입	질병발생	폐사 등	대체가축 도입	재생산 (사양, 분만, 착유 등)	출하
리스크	폐사, 폐용, 질병,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		- 폐사체처리 비용 - 경영계속을 위한 자금		사료비, 인건비 등의 재생산 비용	
보상	가축공제		가축방역호조사업		가축재생비용 보상보험	

(3) 보험의 대상과 보상 내용

	비육우	젖소	양돈
대상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肉専用繁殖雌牛 ·肉専用肥育牛 ·交雑種肥育牛 ·乳用雄肥育牛 <small>※出生後6か月を経過したものが対象</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乳用牛 ·乳用雄肥育牛 <small>※出生後6か月を経過したものが対象</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繁殖種豚(雌) ·肥育豚 <small>※繁殖豚は、出生後6か月を経過したものが対象 肥育豚は、日齢が20日を経過したものが対象 (但しPED罹患に限定して日齢20日以下も対象)</small>
대상의 보상내용	下記事由により、飼養家畜が死亡・廃用ないしは、行政から殺処分命令を受けた場合 ①火災・自然災害(但し、地震は除く) ②牛・豚固有の家畜伝染病予防法に規定されている監視伝染病(家畜伝染病及び届出伝染病)の罹患 ③輸送中の輸送用具の衝突・転覆 ④ 【肉用牛のみ】 ※全部廃業のみ対象 と殺、解体、枝肉加工等した際に牛白血病の罹患が判明したことにより生じた廃業処分損害 【豚のみ】 肥育豚のPED罹患 ※日齢20日以下の哺乳子豚も対象		
보험기간	1년간		

□ 가입방법과 모집시기

- 일본농업법인협회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험 기간은 1년간이고, 모집 시기가 되면 생산자에게 안내하고 있음(중도 가입은 할 수 없음)
- (중요)지불 한도액·신규 가입 : 현재 국내 일부 지역의 사육돼지 등에서 돼지열병의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향후 유행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 모집보다 보험회 사로부터 다음 조건설정이 추가됨
- ① 지불 한도액에 대해
 - 질병종류 :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지불 한도액 : 농장당 1,0000만엔 또는 보험계약 금액

- 상기 이외의 질병(※) 1사고, 보험기간 통산 보험 금액 또는 1억엔의 낮은 금액을 한도(농장단위)

㉠ 신규 가입에 대해서

-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신규 가입의 돼지열병·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그 외의 사고·질병(※)에 있어서의 보상은 인수할 수 있음) .
- 특정지역 : 관동지방: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고신·도카이 지방: 야마나시현·나가노현·기후현·시즈오카현·아이치현

나. 호 주

□ 호주의 가축전염병 관리 :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관리

□ 주요 질병 : 중앙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적용

□ 국가의 주요 관리 가축전염병

- ① 탄저병, ② 카르핀 관절염 뇌염CAE(Carpine Arthritis-Encephalitis), ③ 소 진드기, 진드기 열, ④ 요네병(Johne's disease), ⑤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⑥ 양 브루셀라병, ⑦ 소 부제병(foot rot), ⑧ 돼지 브루셀라병 등

□ 호주 정부의 주요 관심 전염병

-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엄격한 감시 체제를 가동

□ 호주의 동물 방역위생 체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상호 협조 관계로 운용

①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국가 동물위생체제를 대표하는 연방정부 조직으로서 바이오안전성, 수출인증과 무역, OIE에 질병 통보 등을 수행

② 주정부

관할지역에서 질병의 예찰, 통제, 조사, 보고; 화학 잔류물과 오염물질, 동물복지 등을 관장

③ AHA(Animal Health Australia)

총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질병 예찰, 바이오안전성 서비스, 가축질병 긴급대응, 전염병 프로그램, 동물복지 등 국가 가축위생 프로그램의 조정 등을 수행

④ SAFEMEAT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 기준과 관련 연구, 소통, 관측 등을 수행

⑤ WHA(Wildlife Health Australia)

야생 동식물 부문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기관

⑥ 자문위원회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다양한 범주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들을 조직해 바이오안전성 체제의 연대를 지지하도록 관리

□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ADRA)

- 정부와 축산업 부문은 이른바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greement, EADRA)』이란 특별한 협약을 통해 가축질병 비상사태에 대응

- 참여기관 및 포함 질병 : 총 23개 서명기관과 61종의 질병이 대상
- 협약내용 : 바이오안전성의 기준, 비상 발생의 공개요건, 질병 통제와 퇴치를 위한 표준 대응, 질병대응 비용 및 관련기관 자원 부담을 등을 담고 있음
- 비용 : 총 4개 질병 유형에 따라 정부와 관련업계가 부담
 - ① 질병 발생이 사회·경제·환경·건강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정부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②질병 발생의 영향이 축산업계에 국한될수록 정부 부담 비중이 감소
 - ① 질병 카테고리-1 : 정부 100% 부담
 - 인간과 환경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축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유형
 - 광견병, 호주 lyssaviruses 같은 질병들이 질병 카테고리1로 분류
 - ② 질병 카테고리-2 : 정부 80%, 업계 20% 부담
 - 매우 심각한 국제 수출입거래상의 손실, 국가 차원의 시장 교란, 축산업에서 매우 심각한 생산 손실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을 포함
 - 광우병, 브루셀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 ③ 질병 카테고리-3 : 정부 50%, 업계 50%
 - 인간이나 환경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유형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블루팅 등이 이 유형
 - ④ 질병 카테고리-4 : 정부 20%, 업계 80%
 -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축산업계에 국한된 질병
 - 이 유형의 질병은 말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면양 음 등

□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ADRA)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 규정』 (첫 페이지)
(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greement, EADRA)

AUSTRALIAN ANIMAL HEALTH COUNCIL LIMITED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STATE OF QUEENSLAND
THE STATE OF NEW SOUTH WALES
THE STATE OF VICTORIA
THE STATE OF SOUTH AUSTRALIA
THE STATE OF TASMANIA
THE STATE OF WESTERN AUSTRALIA
THE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USTRALIAN CHICKEN MEAT FEDERATION INC.
AUSTRALIAN DUCK MEAT ASSOCIATION INC.
AUSTRALIAN EGGS LIMITED
AUSTRALIAN DAIRY FARMERS LIMITED
CATTLE COUNCIL OF AUSTRALIA INC.
AUSTRALIAN PORK LIMITED
SHEEP PRODUCERS AUSTRALIA LIMITED
WOOLPRODUCERS AUSTRALIA LIMITED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INC.
GOAT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RACING AUSTRALIA LIMITED
HARNESS RACING AUSTRALIA INC.
AUSTRALIAN HORSE INDUSTRY COUNCIL
EQUESTRIAN AUSTRALIA LIMITED

GOVERNMENT AND LIVESTOCK INDUSTRY COST SHARING DEED
IN RESPECT OF 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S

VERSION No. 20/01- 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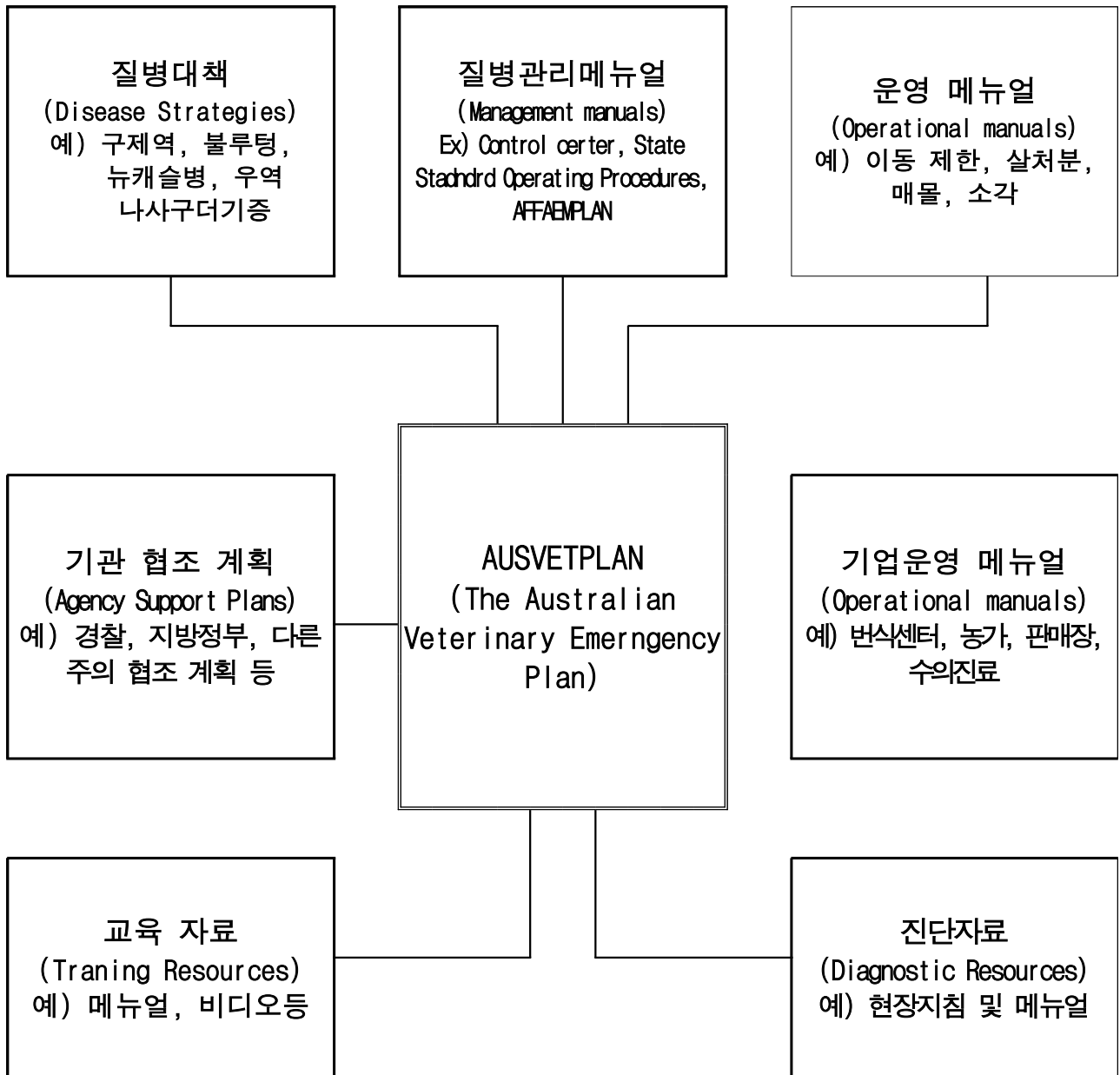
□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ADRA)의 주요 내용

유인책	기본 모형
긴급 질병 사태 대응 행동요령	호주 가축질병 대응계획(Australian Veterinary Emergency Plan, AUSVETPLAN)은 긴급 가축질병 발생의 관리와 퇴치에 관한 국가 대응계획으로 35개의 가장 중요한 비상 질병에 대한 통제와 퇴치 전략, 27개 기타 질병에 대한 정책 대응 요령을 담고 있음.
비용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당사자는 비상사태의 대응 비용에 기여해야 함. ○ 비용분담이 적용되지 않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normal) 바이오안전성 의무의 이행 - 통상적/수용 가능한 비즈니스 위험 - 대응 활동과 관련 없는 손실 - 회복 비용(이는 질병 통제규정이나 절차 밖에서 관리되는 부분임) ○ 비용분담의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로 영향 받은 산업 총 생산액의 1%(구제역의 경우 2%) - 위 상한을 초과하는 대응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조정함. ○ 정부와 산업계의 비용분담은 잠재적인 외부성의 규모에 따라 조정 ○ 정부 내 및 산업계 내 비용분담은 공식에 따라 설정
비용분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계 역할	정부가 산업계의 비용 분담 몫을 대납하고, 통상 10년 기한으로 이를 회수함. 각 산업은 “비상가축질병 대응 부과금”을 설정하여 비용분담 의무를 시행하되, 질병이 발병하면 부과금을 각출함. 한 산업계는 고정된 액수를 각출해 준비해 두고 있음.
긴급 가축전염병 관리계획(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계획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주정부의 책임 수의 담당관(CVO)이 만들어야 함. ○ 이 계획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술적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동의와 그 상위기구인 국립 관리 그룹(National Management Group)의 승인을 얻어야 함.
농가보상의 규모와 가축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질병의 퇴치나 전염 방지 목적으로 폐기된 가축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으로, 장비와 상품까지 대상에 포함됨. ○ 보상 대상 가축과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함. 가축을 입식하는 날에 가축의 가치가 올라가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질병 통보 요건	EADRA 회원은 비상사태를 인지한 24시간 안에 당국에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바이오안전성 요건	회원들은 비상사태의 위협을 경감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 요건을 실행해야 함. 국가바이오안전성 계획 아래 산업계는 자체 바이오안전성 계획을 개발하게 됨.

□ 호주의 가축질병 대응계획(AUSVETPLAN)의 관리 및 운영

- 가축 질병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동 대응을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략적 대응 실행 계획 메뉴얼
- 총 24개 특정질병(주로 OIE listed 질병)의 살처분 및 폐기·소독 방법 등의 메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SDCHQ)와 지방질병통제센터(LDCC)의 운영 메뉴얼로 구성

□ 호주의 가축질병 대응계획(Ausvetplan)의 구성



□ 호주의 가축질병 대응계획(AUSVETPLAN)의 내용

- 가축질병 대응계획은 질병 관리에 있어 공공부문, 산업계, 민간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질병 위험 부담의 공동 책임의 개념을 채택하여 개별 생산자 및 정부와 생산자 단체 사이에 부담해야 할 비용 규정
 - 둘째, 정부와 산업계의 비용분담 원칙에 외적인(externality)의 개념(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비용 부담 반영)을 도입해, 질병에 의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킴
- 농장의 질병발생보고 : 엄격한 질병보고를 질병 발생을 인지한 후 24시간 안에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정부조치 : 24시간 안에 비상가축질병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n Emergency Animal Disease)에 공식으로 통보
- 질병 보고와 모든 대응 조치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생산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함
- 2002년에 수립된 EADRA는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갱신

□ 가축 질병 유형별 각 기관과 생산자 부담 비율 설정의 원칙

- 질병 유형별 기관의 부담 비율설정 원칙 : ① 질병 발생이 사회·경제·환경·건강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정부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② 질병 발생의 영향이 축산업계에 국한될수록 정부 부담 비중이 감소

① 질병 카테고리-1 : 정부 100% 부담

- 인간과 환경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축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유형
- 광견병, 호주 lyssaviruses 같은 질병들이 질병 카테고리1로 분류

② 질병 카테고리-2 : 정부 80%, 업계 20% 부담

- 매우 심각한 국제 수출입거래상의 손실, 국가 차원의 시장 교란, 축산업에서 매우 심각한 생산 손실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을 포함
- 이 유형은 다소 낮은 사회·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도 포함
- 광우병, 부루셀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③ 질병 카테고리-3 : 정부 50%, 업계 50%

- 인간이나 환경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유형
- 국제 수출입거래상의 손실, 2-3개주에서의 시장 교란, 관련 축산업에서의 심각한 생산 손실 등을 야기하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는 덜 심각한 손실초래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블루팅 등이 이 유형

④ 질병 카테고리-4 : 정부 20%, 업계 80%

-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축산업계에 국한된 질병
- 질병 발생에 대한 성공적인 긴급 대응의 혜택은 관련 축산 업계에 주로 영향을 미침
- 이 유형의 질병은 말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면양 음 등

○ 비용분담 : 호주 정부, 주 정부들, 업계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세부 산출 방식에 의거하여 계산

- 정부 부담 비용 : 호주 정부와 주 정부가 50대 50의 비율로 분담
- 주정부들 간 비용 : 분담 비율은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예) 질병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질병이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비용은 인구수에 따라 각 주가 분담. 다른 질병 유형의 경우 비용 분담이 각 주의 가축 사육두수에 근거하는데 공통 가축 질병의 경우는 계산 방식 다름

[별첨]. 호주의 유형별 질병 분류

① 질병 카테고리-1(5종) : 정부 100% 부담

- 오스트레일리아 박쥐 리사바이러스(Australian bat lyssavirus)
-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 광견병(Rabies)
- 동서부 베네수엘라 말 뇌염(Western, Eastern and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② 질병 카테고리-2(13종) : 정부 80%, 업계 20% 부담

-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 및 H7)
 - avian influenza (highly pathogenic; virus subtypes H5 and H7)
- 소해면뇌상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브루셀라증(Brucellosis)
 - 브루셀라 아보르투스(Brucella abortus) : 국내에서 발견되는 주요 세균
 - 브루셀라 멜리텐시스(Brucella melitensis) : 가장 병원성이 높음
-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 마비저(Glander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 가성우역(pestes des petits ruminants)
-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fever)
- 우역(Rinderpest)
- 아메리카파리유충(Screw-worm fly) - 가축의 살을 파먹는 유충
- 양두 및 산양두(sheep and goat pox)
- 수포성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③ 질병 카테고리-3(16종) : 정부 50%, 업계 50%

-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 탄저병(anthrax, major outbreaks)
-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H7제외) - avian influenza(highly pathogenic; other than virus subtypes H5 and H7)
- 조류인플루엔자(저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H7) - avian influenza (low pathogenic; virus subtypes H5 and H7)
- 블루팅(bluetongue)
-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진드기매개뇌염(encephalitides (tick-borne))
- 럼피스킨병, 괴피병(lumpy skin disease)
- 매낭글 바이러스(돼지 파라믹소바이러스) - Menangle virus (porcine paramyxovirus)
-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 면양 스크래피, 진전병(Scrapie)
-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 선모충증(Trichinellosis)
- 수포성 발진(Vesicular exanthema)

④ 질병 카테고리-4(27종) : 정부 20%, 업계 80%

- 오제스키병(Aujeszky' s disease)
- 보르나병(Borna disease)
- 소결핵균에 의한 소결핵(Bovine tuberculosis due to Mycobacterium bovis)
- 말전염성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 구역(Dourine)
- 동연안열(east coast fever)

④ 질병 카테고리-4(27종) : 정부 20%, 업계 80%

- 동물유행성림프관염(epizootic lymphangitis)
- 말 바베시아병(equine babesiosis)
- 말 뇌증(equine encephalosis)
- 말 인플루엔자(equine influenza)
- 게타바이러스 감염증(Getah virus)
- 출혈성패혈증(haemorrhagic septicaemia)
- 심수병(heartwater)
- 악성 전염성 F낭병(infectious bursal disease (hypervirulent form))
- 잼브라나병(Jembrana disease)
- 매디비스나(Maedi-visna)
- 나이로비면양병(Nairobi sheep disease)
-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 포토맥 병(Potomac fever)
- 폐선종증, 폐샘종증(pulmonary adenomatosis)
- 면양 옴(sheep scab)
- 수라증(Surra)
- 돼지 인플루엔자 A(Influenza A virus of swine)
- 테센병(Teschen disease)
- 전염성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베셀스브론병(Wesselsbron disease)

다. 유럽연합

□ 유럽연합(EU)의 담당부서

- 가축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유럽위원회의 DG SANCO(보건·소비자보호 총국)과 DG AGRI(농업총국) 두 기관에서 가맹국의 보조조치를 담당

① DG SANCO(보건·소비자보호 총국)

가축의 살처분 및 방역조치 담당

② DG AGRI(농업총국)

이동제한 등에 영향을 받는 생산자·관련업계에 대한 시장지지 정책

□ 유럽연합 회원국의 방역조치에 대한 보조대상과 보조율

- 살처분에 의한 보상은 각 회원국 별로 별도의 기준을 따름.
 - 독일 : 두당 500유로, 소독제 비용의 80% 보조
 - 벨기에 : ASF 감염 발생 2주 후, 감염 지역 내 돼지 살처분 시 시장 가격지수를 기반으로 벨기에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음. (일부 유럽연합에서 지원)
 - 덴마크 :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보상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목적임. 보상규정은 가축의 살처분, 도태 또는 사료, 달걀, 우유 및 유사제품의 폐기 명령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에 적용됨.

□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장지지정책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위생당국의 이동제한에 의해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지지정책 조치
- 가맹국측이 방역조치를 강구한 경우 필요한 범위와 기간을 한정
- 유럽연합 ; 50%, 가맹국의 부담비율 : 50% 설정

□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보상제도

○ 네덜란드 : 가축위생·복지법 규정

- 농업성 : 가축위생기금에서 조달
- 정부의 수의사 ; 첫 입회검사에서 가축의 폐사두수(보상이 없음), 임상증상 발현 두수(시장가

격의 50% 감액),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두수

- 생산자 : 위생·예방기준 충족. 질병 발생이 생산자의 과실 또는 방역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비용 부담

○ 독일 : 가축질병법

- 가축 질병 기금 : 주정부가 공동으로 조성, 유행성 질병 대상
- 목적 : 가축 질병발생으로 위한 살처분 보상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비용
- 특정질병 : 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가금류(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 구제역) 등
- 보상금 평가 : 공공 수의사가 결정
- 보상금액 : 시세로 보상을 원칙으로 함, 단, 질병 신고이전에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는 50%보상
- 축종별 보상 최대치

축종	최대금액(두)
소	4,000유로
돼지	1,500유로
가금류	50유로
말, 당나귀, 노새	6,000유로
염소, 양	800유로

[자료 : <https://www.ndstsk.de>]

- 감액기준 : ① 생산자의 부과금 지불 또는 두수 보고가 허위였을 경우, ② 독일연방법에 근거한 가축질병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③생산자가 질병발생을 신속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살처분 명령후 30일내에 가축질병기금에 신청서 제출
- 농업손해보험 ; 질병발생으로 생산중단,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 판매제한(이동제한), 판매금지, 가축치료비에 의한 손실

○ 스페인

- 가축위생법 : 공적인보상제도(가축 전염병)
- 보험 : 농어업식료성의 산하단체 ENESA(Entidad Estatal de Seguros Agrarios)가 33개 보험 회사로 조직된 민간단체 Agroseguro와 협력하여 개발

○ 덴마크

- 주관기관 : 덴마크 수의식품청
- 가축에 대한 보상액 평가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살처분 이전에 평가를 실시
- 사료, 달걀, 우유 및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은 시세(상업적 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만약 공식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축종별 사양관리 전문가(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임명), 가축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및 덴마크 수의식품청 직원 3인으로 구성
- 살처분에 의한 경영 손실은 20% 적용
- 가축 소유자는 사육과 관련된 법적 기록 제시
- 중복보상(타 규정에 의한 보상)에 의한 보상금은 100%를 초과해서는 안됨
- 부정적 보상금 수령은 환수 조치 : 보상금 + 이자(이자율적용)

라. 영국

□ 특정 질병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 조치

○ 주요 내용(정부에서 평가자 임명)

- 소결핵 및 기타 특정 소 질병에 대한 보상 계산 방법
- 가금류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상 계산 방법(가금수수)
- 기타 질병에 대한 보상 조치

□ 정부는 일부 동물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동물을 도태(살처분)할 권한이 있음

○ 보상 제외 사항

- 살처분되기 전에 죽은 가축
- 공식적 살처분 시 독립적 및 자발적으로 살처분한 가축

□ 살처분 후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예: 만일 살아있었을 경우 생산 했을 계란이나 자손을 낳음으로써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소 결핵 및 기타 특정 소 질병에 대한 보상 계산 방법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소결핵(TB) 및 다음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도태된 소에 대한 보상함

- 소 해면상 뇌병증(BSE)
- 브루셀라증
- 동물성 소 백혈병

○ 보상기준가격 : 매월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51개의 다른 범주의 소에 대한 보상 값(동일한 범주의 소에 대한 평균 시장 가격) 표를 게시함

○ 평가기준 항목

- 나이와 성별
- 혈통 가계 상태
- 소의 종류(예: 비육우 또는 젖소)

[영국의 보상기준가격 공시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ovine-tb-historical-compensation-value-tables>]

□ 가금류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상 계산 방법(사육되고 있는 가금)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가금류 가치 평가표를 사용하여 다음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도태(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함

- 살모넬라균 (보상은 닭이나 칠면조를 생산하는 농장에만 지급됨)
- 조류 인플루엔자
- 뉴캐슬병

○ 평가기준 항목

- 가금의 종류, 나이 및 성별
- 사육목적(고기 또는 계란)
- 생산 비용
- 가금농장에서 파생된 모든 수입(예: 병아리 부화시 수입)

○ 50가지 종류의 가금에 대한 가치 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의 육계 가치표]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ables updated June 2022

1. Commercial Broilers

All valuations are expressed in pence per bird

Age (days)	1	2	3	4	5	6	7
Females	55.08	57.26	59.61	62.13	64.82	67.73	70.81
As-hatched	55.02	57.15	59.45	61.91	64.60	67.51	70.64
Males	54.96	57.04	59.28	61.74	64.43	67.34	70.48

Age	8	9	10	11	12	13	14
Females	74.11	77.64	81.44	85.24	89.30	93.62	98.20
As-hatched	74.00	77.58	81.44	85.35	89.51	93.93	98.66
Males	73.83	77.47	81.39	85.34	89.61	94.13	98.96

Age	15	16	17	18	19	20	21
Females	103.03	108.11	113.51	119.17	125.13	131.35	137.87
As-hatched	103.64	108.94	114.54	120.45	126.67	133.20	140.03
Males	104.10	109.55	115.36	121.47	127.95	134.74	141.88

Age	22	23	24	25	26	27	28
Females	144.32	151.07	158.09	165.35	172.88	180.66	188.70
As-hatched	146.84	153.95	161.38	169.00	176.94	185.12	193.61
Males	148.99	156.47	164.30	172.34	180.72	189.41	198.46

Age	29	30	31	32	33	34	35
Females	196.86	205.26	213.87	222.73			
As-hatched	202.40	211.45	220.75	230.30	240.11	250.17	260.43
Males	207.81	217.47	227.42	237.63	248.15	258.92	269.99

Age	36	37	38	39	40	41	42
Females							
As-hatched	270.94	281.62	292.50	303.58			
Males	281.32	292.84	304.62	316.66	328.90	341.34	353.93

Age	43	44	45	46	47	48	49
Females							
As-hatched							
Males	366.67	379.57	392.67	405.92	419.27	432.77	446.37

Age	50
Females	
As-hatched	
Males	460.13

Most broilers are reared 'as-hatched' i.e. males and females reared together in broadly equal numbers.

If the age of birds exceeds that given in the table, a pro-rata figure should be calculated using the last two valuation points to determine the daily increment.

[출처 : <https://www.gov.uk>]

가금류 평가표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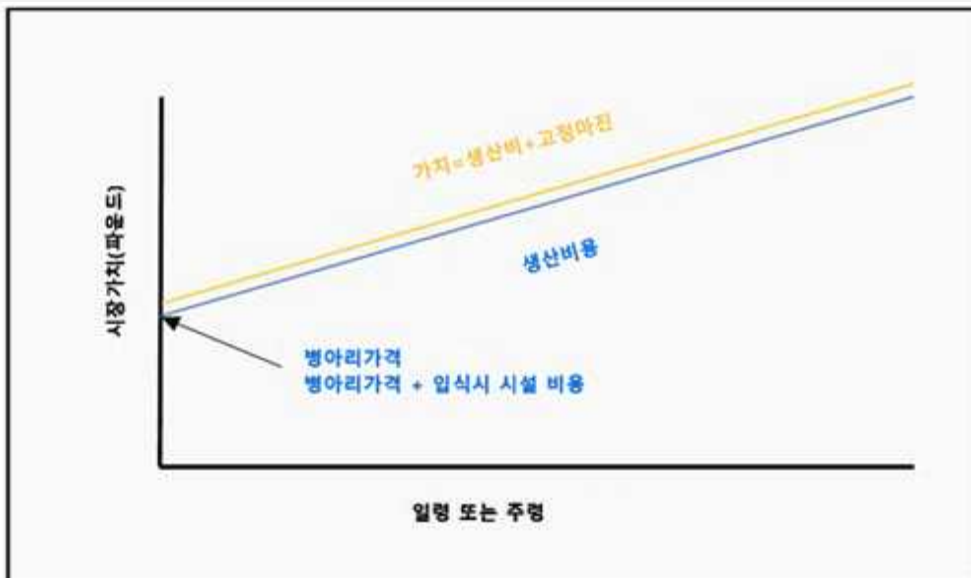
- 보상 : 살처분한 가금류에만 시장가치(시세)를 감안하여 평가.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손실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음)
- 평가기관 : 영국의 동식물보건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를 대신해 ADAS(Agricultural Development Advisory Service)에서 가금류 평가
- 가금류 종류 : 브로일러, 칠면조, 산란계, 오리, 거위, 메추라기, 꿩 등이 포함됨.
- 사육시스템 : 옥내 사육, 방목 사육 및 유기농과 같은 주요 생산 시스템
- 평가근거 자료 : 재무 및 물리적 성과지표(품종 표준 사료 섭취량 및 증체량 포함)에 대한 공개정보와 업계자료를 취합한 현시세
- 평가표 갱신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새로운 평가표

[영국의 보상기준가격 공시 : <https://www.gov.uk/guidance/compensation-for-animals-culled-to-control-animal-diseases>]

- 평가액 산정 : 생산비 + 소득 = 시장 가치를 반영

□ 가금류 평가(육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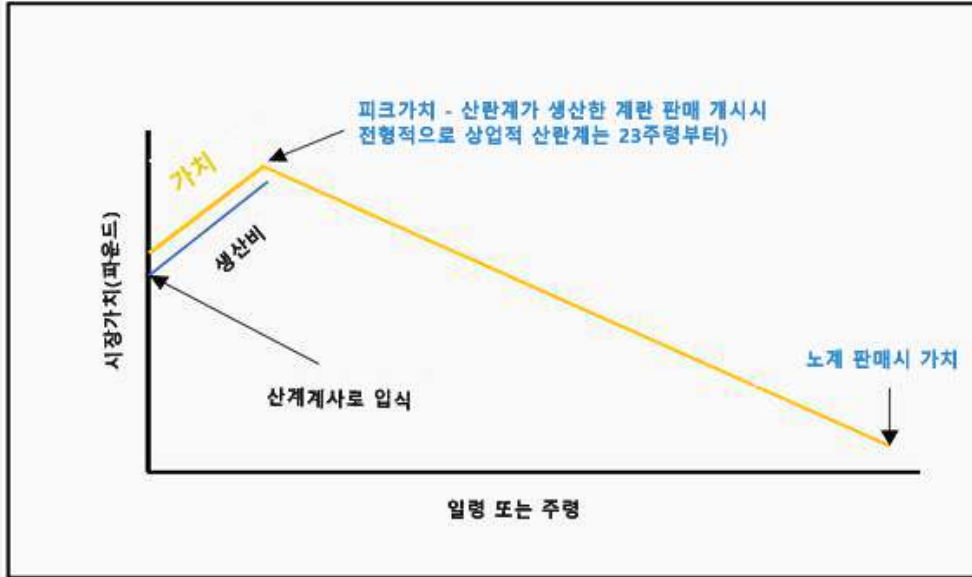
- 병아리가격 = 병아리가격 + 입식시 시설비용
- 시세 = 생산비 + 고정마진



[가금 및 후보암탉에 대한 가치 평가]

□ 산란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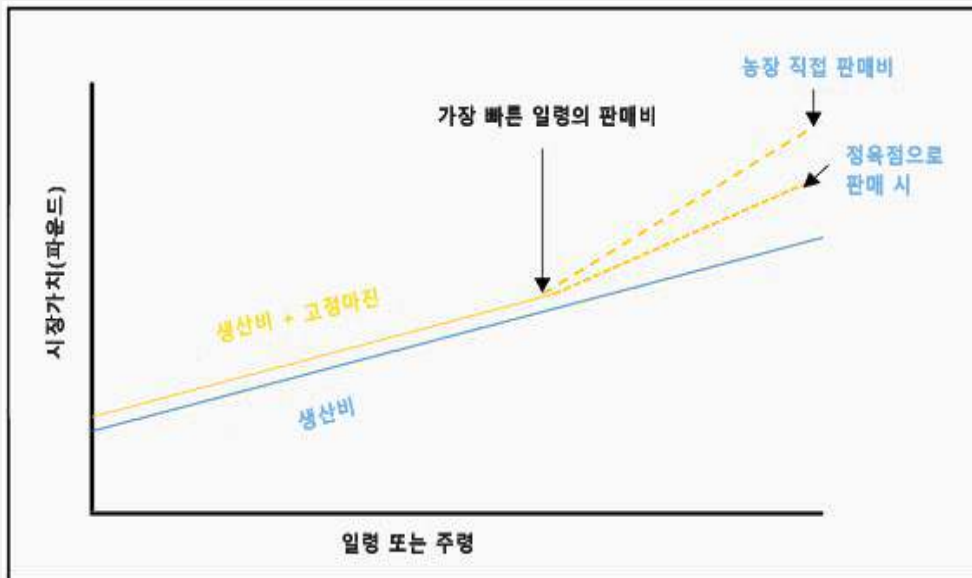
- 평가액 산정 : 전형적인 비용 + 살처분시 예상 최종 가치



[산란계에 대한 가치 평가]

□ 기업형 가금농장

- 가금들이 일반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시점까지 생산 비용(고정 마진 포함)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원칙이 개발
- 가치 평가 : 마케팅 방법(도축업자에게 또는 농장 직영 판매)과 일반적인 판매 가격에서 도축, 가공 및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기반으로 평가



[고부가가치 가금류에 대한 가치 평가]

3.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가. 전국한우협회

-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해 최초(조기)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을 요청하였음
- 축종, 질병별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가 필요함
- 한우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이 필요함
- 사양기술 발전으로 60개월령 암소도 고품질의 고기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보상금 상한 준을 60개월에서 70개월까지 확대가 필요함
-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 대상은 고등등록우로 한정되어 있어 혈통등록우까지도 포함하여 혜택 부여 필요함
- 한우농가의 송아지 거래가격 증명이 있는 경우 농가 증빙자료를 인증해줄 것을 요청함
- 일반거세우에 대한 농협산지가격이 없으므로 공판장 지육평균가격을 적용할 필요
-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해 요일별 시세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처분 당일 시세가 아닌 전월 평균 시세 적용 필요

나. 대한양계협회

- 국내 산란종계의 경우 국내 분양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종계병아리를 수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종계에 대해서도 수입 면장 또는 세금계산서로 보상금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필요함(종계 수입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약 40%)
- 잔존가치 수익률 20% 반영을 요청하였음
- 산란계품종의 개장으로 수당 산란개수가 증가(최하 250~260개 수준)함에 따라 사육일지 또는 종란판매계산서를 통한 농장별 종란생산량 반영이 필요함
- 산란계 품종 개량으로 환우 없이 90주령까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아지는 추세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90주령까지 산정이 필요함
-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보상금 감액 기준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육계협회

- 육계의 경우 계열화 참여농장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산지생계가격 대신 위탁 생계가격 적용이 필요함.

라. 한국오리협회

- 구제역·AI·ASF 발생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축종의 시세를 반영하여 필요가 있어 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을 요청함
-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경우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아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예방적살처분(음성)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함
- AI의 경우 백신 등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AI 발생 책임을 오로지 농가들에게 전가하여 최근 5년 이내 재발생할 경우 보상금 20%를 추가 감액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이므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로 조정이 필요함
- 현행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90% 지급하는 조항의 경우 2번째 신고부터는 해당사항이 없어 농가의 조기 신고 유도가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그러므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병성감정 실시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20%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농가 조기신고를 통한 질병의 수평전파 최소화 및 조기근절을 도모할 수 있음
- 육계, 육용오리의 경우 97%이상 계열화되어 있어 가축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가축을 위탁사육 및 출하하고 사육비(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이므로 생계안정비용 지원시 일반(개인)농가와 계약농가를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 개정('18.12.31)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됨에 따라 반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되, 어느 일방이 보상금의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종오리에 대한 살처분보상 단가의 경우 수년간 동일한 수준(28주령 기준 48천원)으로 동결중에 있으므로 최근 생산비 인상분의 반영과 새끼오리 가격 인상에 따른 잔존가치 금액 추가 등 단가 인상이 필요함

마. (사) 한국토종닭협회

-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변경이 필요함
- 토종닭에 대한 살처분 기준은 종계 및 실용계 밖에 없어 순계·원종계가 살처분 대상이 될 경우 가격에 대한 근거가 없이 기준 신설이 필요함

바. (사) 대한한돈협회

- 예방적 살처분 농가 대상으로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할 경우 질병 발생으로 시세가 급락한 경우가 있어 전월 평균시세의 적용이 필요함
- 양돈농장의 경우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작아 감액 적용 기준 적용 시 농장의 타격이 매우 크므로 축종별 기준 마련 필요
- 사육 규모가 차이나는 농가에 동일한 감액비율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 감액 금액이 차이가 큼, 최대한도 설정 필요
-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된 방역기준에 대해서만 감액기준 적용 필요
 -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시가보상 원칙, 중복처벌, 재산권침해, 인과성부족 등 사유로 부당하므로, 감액기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 (시가보상) 살처분보상의 기본취지는 살처분 개체(재산)에 대한 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함으로 이를 감액하는 것은 재산 축소를 야기하는 부당한 조치임
 - (중복처벌) 방역·소독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사육중지명령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중복처벌임
 - (재산권침해) 헌법*에 따라 살처분가축에 대해 정당히 전액을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인과성부족) 발생농장에서 해당 질병이 감액 항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인과성 제시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4. 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기준 설문조사

가. 추진 배경

축산단체는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 조정과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경감 기준 확대 등 피해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 기준에 대한 방역관련 현장 의견과 지자체(살처분보상금 평가반),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 및 분석하여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감액·경감기준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계획

‘22년 7월~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각 질병 담당자, 제도1계),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역학조사과), 지자체(시·도별 10명), 생산자단체(3개소), 민간전문가(3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 항목들의 가축질병 차단(확산)방지의 중요성(중요성),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의 효과(효과성),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고의성)을 평가하고 적정 감액비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감액 항목별 적정 감액비율 및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 조사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의견 및 경감 비율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는 1~5점 부여(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하였다.

다. 설문조사 결과

(1) 중요도 : 질병 차단·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 중요도

살처분보상금 42개 감액항목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평균 4.5점으로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4.2점, 생산자 단체는 2.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이 중요도를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은 42개 감액항목중 30개 항목이었으며, 유관기관에서 9개 항목, 생산자 단체에서 7개 항목을 가장 높게 평

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사육 제한명령 위반,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실시 및 점검 여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역학조사 관련 농장주의 진실성 및 고의적 누락,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 설치유무(전실, 소독조), 전실(닭, 오리한정) 설치유무, 살처분 명령 준수여부, 오염물건 소각, 매몰 및 소독명령위반 여부 등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유관기관에서는 사육 제한명령 위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역학조사관련 농장주의 진실성 및 고의적 누락,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 살처분 명령 준수여부등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육제한명령 위반,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및 격리, 역류, 이동제한 소독 명령 위반 등을 5.0점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는 2개 항목(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반면 유관기관은 5개 항목(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가축전염병과 관련성이 없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국 미신고 및 소독여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기준 준수 점검 여부 등, 가축 방역 등에 관한 교육 수료여부, 그밖에 방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중요도 평가에서는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신고의 의무, 역학조사 협조, 소독 및 방역설비 설치 유무, 휴지기 준수 여부 및 살처분명령 및 오염물질 소각여부 등 농가 자체 방역기준에 대한 항목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가축질병 차단(확산) 방지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

준수사항		중요도			
		유관 기관	전문가	생산자 단체	평균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4.9	5.0	5.0	5.0
2-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0	4.0	1.0	2.7
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3.9	4.0	2.5	3.5
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3.9	4.0	3.0	3.6
3-1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4	4.7	1.0	3.0
3-2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4.4	4.7	2.5	3.9
4-1	○ 가가축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8	5.0	1.0	3.3
4-2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3.9	5.0	1.0	3.3
4-3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3.5	4.3	1.0	3.0
5-1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3.8	4.3	3.0	3.7
5-2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4.5	4.3	3.0	4.0
5-3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4.7	4.7	3.0	4.1
5-4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4.8	5.0	3.0	4.3
5-5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9	5.0	3.5	4.5
6-1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4.6	4.3	4.0	4.3
6-2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4.7	5.0	4.0	4.6
6-3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4.7	5.0	4.0	4.6
7-1	○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4.9	5.0	5.0	5.0
7-2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4.0	3.0	3.8
7-3	○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9	3.7	3.0	3.5
7-3	○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9	3.7	3.0	3.5
8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4.4	5.0	3.0	4.1
9	○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3.8	4.3	3.0	3.7
10	○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2	4.0	3.0	3.7
11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4.4	3.7	1.0	3.0
12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4	4.3	1.0	2.9
13-1	○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0	5.0	1.0	3.3
13-2	○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2	5.0	3.0	4.1
13-3	○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2	5.0	1.0	3.4
13-4	○그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6	5.0	3.0	3.9
14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7	4.7	5.0	4.8
15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5	5.0	5.0	4.8
16-1	○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8	5.0	5.0	4.6
16-2	○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4.2	5.0	1.0	3.4
16-2	○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6	5.0	3.0	4.2
17-1	○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5.0	3.0	4.1
17-2	○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5.0	3.0	4.1
18-1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3.9	4.0	1.0	3.0
18-2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4.2	4.3	1.0	3.2
18-3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4.5	4.3	2.5	3.8
19-1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4	3.7	5.0	4.4
19-2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4.0	3.7	5.0	4.2

(2) 효과성 : 감액기준 설정에 따라 농가 준수 유도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 42개 준수사항에 대하여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가 4.4점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유관기관은 4.0점, 생산자단체는 2.7점순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31개 감액항목(사육 제한명령 위반, 가축전염병관련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여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여부, 역학조사시 농장주의 진실성과 고의성, 구제역 예방접종여부, 일시 이동중지 명령위반, 살처분 명령 이행,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등)에서 효과성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지만, 생산자단체는 5개 항목(이동중지 명령의 위반, 살처분 명령의 지연, 축산업 등록허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유관기관은 9개 항목(사육제한 명령 위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구제역예방접종 명령,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 등)에서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보다 효과성면에서 높다고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에 대해서만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었고, 생산자 단체의 경우 37개 항목(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미신고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 방역기준관련 의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협조 및 질병 발생유무 등)에 대해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으며, 유관기관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살처분 명령의 지연,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적정 사육두수 초과 등 5건에 대해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효과성 분석에서는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의 의무, 역학조사시 농장주의 협조사항,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동중지 명령 및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방역설비에 관한사항 등이 살처분보상금의 감액사유로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적정두수 초과두수에 대한 감액사유도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었다.

□ 살처분농가의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효과성」에 대한 분석결과

준수사항		효과성			
		유관 기관	전문가	생산자 단체	평균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4.9	5.0	4.0	4.6
2-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0	3.3	1.0	2.4
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3.9	3.7	2.5	3.3
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3.9	3.7	3.0	3.5
3-1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3	4.3	1.0	2.9
3-2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4.4	5.0	2.5	4.0
4-1	○ 가가축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8	4.3	1.0	3.1
4-2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3.8	5.0	1.0	3.3
4-3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3.5	4.3	1.0	2.9
5-1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3.8	3.0	3.0	3.3
5-2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4.2	3.3	3.0	3.5
5-3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4.5	4.0	3.0	3.8
5-4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4.6	5.0	3.0	4.2
5-5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7	5.0	3.0	4.2
6-1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4.3	4.3	4.0	4.2
6-2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4.5	5.0	4.0	4.5
6-3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4.5	5.0	4.0	4.5
7-1	○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4.8	5.0	4.0	4.6
7-2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3.9	4.0	3.0	3.6
7-3	○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7	3.7	3.0	3.4
7-3	○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7	3.7	3.0	3.4
8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4.2	4.7	3.0	4.0
9	○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3.4	4.3	3.0	3.6
10	○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1	4.3	3.0	3.8
11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영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4.2	4.3	1.0	3.2
12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4	4.3	1.0	2.9
13-1	○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9	4.7	1.0	3.2
13-2	○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1	5.0	3.0	4.0
13-3	○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1	4.7	1.0	3.2
13-4	○그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4	4.7	3.0	3.7
14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5	4.7	5.0	4.7
15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5.0	5.0	4.8
16-1	○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6	5.0	5.0	4.5
16-2	○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4.0	5.0	1.0	3.3
16-2	○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5	5.0	2.5	4.0
17-1	○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5.0	3.0	4.0
17-2	○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5.0	3.0	4.0
18-1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3.9	3.3	1.0	2.7
18-2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4.2	3.7	1.0	3.0
18-3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4.5	4.0	2.0	3.5
19-1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1	4.3	5.0	4.5
19-2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9	4.3	5.0	4.4

(3) 고의성 : 고의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 42개 준수사항에 대해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전문가들은 3.6점, 생산자 단체는 2.7점순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유관기관은 21개 항목(사육제한명령 위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 거부 또는 회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축 여부, GPS장착 및 준수여부, 일제 입·출하 및 휴지기 준수 여부, 살처분 명령 준수여부, 축산업 등록·허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초과여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전문가들은 16개 항목(사육제한명령 위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역학조사시 진실성과 고의성, 축산업 등록·허가 항목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생산자 단체는 6개 항목(이동제한,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동중지 명령 위반, 살처분 명령 지연,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및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생산자 단체의 경우 35건(차량무선인식장치를 미장착,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살처분 명령 이행여부,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미,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고의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전문가는 9건(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미신고, 소독 미실시,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 등))에 대해서 고의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에 대해 고의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평가에서는 축산업 등록·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등이 고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인 「고의성」에 대한 분석결과

준수사항		효과성			
		유관 기관	전문가	생산자 단체	평균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4.5	5.0	4.0	4.5
2-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0	2.7	1.0	2.2
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3.5	3.7	2.0	3.1
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3.5	3.7	3.0	3.4
3-1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3.1	2.0	1.0	2.0
3-2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3.7	3.0	1.5	2.7
4-1	○ 가가축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3	3.0	1.0	2.4
4-2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3.3	3.3	1.0	2.6
4-3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3.1	2.7	1.0	2.3
5-1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3.3	3.0	3.0	3.1
5-2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3.7	4.0	3.0	3.6
5-3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4.2	3.7	3.0	3.6
5-4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4.5	5.0	3.0	4.2
5-5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7	5.0	2.0	3.9
6-1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4.6	4.3	4.0	4.3
6-2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4.7	5.0	4.0	4.6
6-3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4.7	5.0	4.0	4.6
7-1	○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4.7	5.0	4.0	4.6
7-2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0	4.0	3.0	3.7
7-3	○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7	3.7	3.0	3.5
7-3	○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2	3.7	3.0	3.3
8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4.1	3.3	3.0	3.5
9	○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3.3	2.3	3.0	2.9
10	○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0	3.0	3.0	3.3
11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영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4.4	4.3	1.0	3.2
12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2	3.3	1.0	2.5
13-1	○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7	3.0	1.0	2.6
13-2	○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0	3.3	3.0	3.4
13-3	○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0	3.3	1.0	2.8
13-4	○그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4	3.3	3.0	3.2
14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7	3.3	5.0	4.3
15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4	3.7	5.0	4.3
16-1	○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3	3.5	5.0	3.9
16-2	○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3.8	4.0	1.0	2.9
16-2	○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3	4.0	1.5	3.3
17-1	○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4.0	3.0	3.0	3.3
17-2	○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0	3.0	3.0	3.3
18-1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2.9	2.3	3.0	2.7
18-2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3.1	3.5	3.0	3.2
18-3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3.5	4.0	2.0	3.2
19-1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2	5.0	5.0	4.7
19-2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4.0	4.0	5.0	4.3

(4) 감액비율 개선방안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 42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및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질병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성(질병 차단·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 중요도), 효과성(감액기준 설정에 따라 농가 준수 유도), 고의성(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항목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항목별 1~5점부여;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설문조사한 항목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점수에 대해 80점이상은 현재 감액비율 유지하고, 80점 미만은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감액비율을 차감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감액비율항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서도 낮게 산출되어 현행 감액비율대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에서도 낮게 산출되어 현재 감액비율 20%보다 5% 낮춰 15%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70점이하로 산출되었지만, 방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실

(닭, 오리, 돼지),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인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인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는 평균 점수가 80점이하로 산출되었지만 방역상의 중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항목별 감액비율 개선방안

준수사항		실문조사 결과				감액비율(%)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평균	현재	개선	변동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97.2	97.0	90.4	94.9	100	100	없음
2-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59.6	59.3	59.9	59.6	10	<u>5</u>	개선
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78.2	76.7	70.1	75.0	60	60	없음
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72.8	66.6	58.7	66.0	10	<u>5</u>	개선
3-1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68.7	65.5	61.3	65.2	10	<u>5</u>	개선
3-2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87.9	88.0	73.0	83.0	60	60	없음
4-1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76.9	76.1	65.1	72.7	10	10	없음
4-2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78.4	76.9	66.4	73.9	10	10	없음
4-3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70.4	70.0	61.9	67.5	10	<u>5</u>	개선
5-1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87.2	80.0	63.6	76.9	10	10	없음
5-2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	90.0	83.4	72.9	82.1	20	20	없음
5-3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	94.0	88.8	83.7	88.9	30	30	없음

준수사항		설문조사 결과				감액비율(%)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평균	현재	개선	변동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97.2	97.0	90.4	94.9	100	100	없음
5-4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이후)	94.9	91.5	89.7	92.0	40	40	없음
5-5	○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6.9	93.7	93.9	94.8	60	60	없음
6-1	○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91.0	86.1	91.6	89.6	20	20	없음
6-2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93.7	89.4	93.1	92.1	20	20	없음
6-3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93.3	88.8	92.8	91.6	20	20	없음
7-1	○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97.6	95.2	93.3	95.4	100	100	없음
7-2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84.6	78.7	80.3	81.2	5	5	없음
7-3	○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77.2	72.8	74.2	74.7	5	5	없음
7-3	○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8.2	73.1	74.3	75.2	5	5	없음
8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88.4	83.7	80.7	84.3	20	20	없음
9	○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75.8	67.6	66.0	69.8	5	5	없음
10	○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84.5	81.5	79.4	81.8	20	20	없음
11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영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86.7	83.4	86.4	85.5	20	20	없음
12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8.1	67.8	64.3	66.7	20	15	개선
13-1	○ 전실(닭, 오리, 돼지),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80.0	77.2	73.3	76.8	20	20	없음
13-2	○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3.9	81.6	78.8	81.4	20	20	없음
13-3	○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74.8	70.3	67.9	71.0	5	5	없음
13-4	○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1.2	67.5	67.2	68.6	5	5	없음
14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93.7	90.3	93.3	92.4	20	20	없음
15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89.4	87.5	87.0	88.0	20	20	없음
16-1	○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75.9	72.3	65.7	71.3	10	10	없음

준수사항		설문조사 결과				감액비율(%)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평균	현재	개선	변동
1	○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97.2	97.0	90.4	94.9	100	100	없음
16-2	○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83.9	81.2	74.9	80.0	30	30	없음
16-2	○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91.2	89.6	84.5	88.4	60	60	없음
17-1	○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85.8	82.3	78.5	82.2	20	20	없음
17-2	○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86.0	82.1	79.4	82.5	20	20	없음
18-1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77.8	77.0	58.3	71.0	20	20	없음
18-2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83.9	83.8	62.0	76.5	50	50	없음
18-3	○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	88.9	89.6	69.9	82.8	80	80	없음
19-1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88.2	82.7	84.0	85.0	30	30	없음
19-2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80.5	77.9	79.8	79.4	100	100	없음

(5) 경감기준 개선방안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경감기준 개선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축산농장 인증제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농장」은 「차단방역관리」 항목에 따라 농장의 위생관리와 차단방역관리를 통해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하는 농가이므로 경감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가축의 건강상태 등 점검」, 「건강관리」, 「사육밀도」, 「사육환경」, 「청소 및 소독」 항목을 통해 가축의 건강상태 점검 및 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한 사육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에서 최근 2년간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도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외국인 포함)가 최근 2년간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100% 참여한 경우」 항목은 농장(종사자 및 가족 등)의 자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역본부의 방역점검을 위한 전화예찰시 최근 1년간 90%이상 응답한 경우」는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점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경감기준 개선방안

기존 준수사항		경감 비율(%)		비고
		현행	개선	
1	○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1	1) 1등급	10	10	
1-2	2) 2등급	5	5	
2	○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0	10	
3	○ 가축 출입기록 작성·보관 및 전화예찰 등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및 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10	-	삭제
4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	10	10	
5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10	10	
6	○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10	10	
7	○ HACCP 인증농장, 단 HACCP 점검결과 최근 2년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농장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8	○ 동물복지 인증농장, 단 동물복지 인증 점검결과 최근 2년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농장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9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에서 최근 2년간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10	○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외국인 포함)가 최근 2년간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100% 참여한 경우	-	10	추가
11	○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에 90%이상 응답한 경우	-	10	추가

5. 예방적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개선방안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주변농장의 방역실패 및 정부 방역 협조

□ 손실보상금 : 연간 20~25%책정 기준

○ 출하두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가축종류별 회전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출하두수를 적용한다.

○ 연간 두당(수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마리당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사육규모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마리당 조수입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이자를 뺀 금액

②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마리당 순수익액

③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두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6. 살처분 보상금제도 개선방안

가. 단기적 개선방안

(1) 살처분 보상금 가축평가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 돼지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년 6월, '21년 6월, '22년 6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0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20년 3~5월 평균시세, '20년 6월 평균시세, '20년 7월 평균시세, '20년 8월 평균시세, '20년 9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1.5, 93.2, 97.1, 90.0, 95.3%로 조사되었다. '21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21년 3~5월 평균시세, '21년 6월 평균시세, '21년 7월 평균시세, '21년 8월 평균시세, '21년 9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4.6%, 102.7%, 101.9%, 104.7%, 104.9%로 조사되었다. '22년 5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22년 3~5월 평균시세, '22년 6월 평균시세, '22년 7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8.3%, 94.7%, 91.7%, 95.0%, 91.5%로 조사되었다.

구 분	'20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					
	'20년 5월 평균시세	'20년 3~5월 평균시세	'20년 6월 평균시세	'20년 7월 평균시세	'20년 8월 평균시세	'20년 9월 평균시세
비율(%)	100.0	91.5	95.2	97.1	90.0	95.3
구 분	'21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					
	'21년 5월 평균시세	'21년 3~5월 평균시세	'21년 6월 평균시세	'21년 7월 평균시세	'21년 8월 평균시세	'21년 9월 평균시세
비율(%)	100.0	94.6	102.7	101.9	104.7	104.9
구 분	'22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발생					
	'22년 5월 평균시세	'22년 3~5월 평균시세	'22년 6월 평균시세	'22년 7월 평균시세	'22년 8월 평균시세	'22년 9월 평균시세
비율(%)	100.0	88.3	94.7	91.7	95.0	91.5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에 각각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하였다. '19년 10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측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7.9%, 110.3%, 110.7%, 110.8%, 108.3%, 112.6%, 110.9%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낮게 조사되었다.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발생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100으로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측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9.3%, 99.1%, 100.5%, 108.0%, 118.8%, 131.2%, 141.9%로 조사되었다.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100으로 하여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측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2.3%, 99.6%, 100.6%, 95.4%, 91.2%, 90.7%, 91.8%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재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10%내에 범위로 조사되었다

구 분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19년 10월	'19년 8~10월	'19년 11월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비율(%)	100.0	97.9	110.3	110.7	110.8	108.3	112.6	110.9
구 분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20년 10월	'20년 8~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비율(%)	100.0	99.3	99.1	100.5	108.0	118.8	131.2	141.9
구 분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21년 10월	'21년 8~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비율(%)	100.0	102.3	99.6	100.6	95.4	91.2	90.7	91.8

□ 육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살처분 농장에 대한 육계의 가축평가액을 분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 시세인 '19년 10월 평균시세(현행 규정)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9.6%, 153.0%, 93.7%, 90.3%, 96.7%, 93.4%, 81.0%로 조사되었다.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과 비교한 결과 각각 116.6%, 109.7%, 134.3%, 172.7%, 152.1%, 135.3%, 130.5%로 조사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86.9%, 69.2%, 80.3%, 99.0%, 109.3%, 124.9%, 117.8%로 조사되었다.

구 분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19년 10월	' 19년 8~10월	' 19년 11월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4월
비율(%)	100.0	89.6	153.0	93.7	90.3	96.7	93.4	81.0
구 분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20년 10월	' 20년 8~10월	' 20년 11월	' 20년 12월	' 21년 1월	' 21년 2월	' 21년 3월	' 21년 4월
비율(%)	100.0	116.6	109.7	134.3	172.7	152.1	135.3	130.5
구 분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21년 10월	' 21년 8~10월	' 21년 11월	' 21년 12월	' 22년 1월	' 22년 2월	' 22년 3월	' 22년 4월
비율(%)	100.0	86.9	69.2	80.3	99.0	109.3	124.9	117.8

□ 오리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년 11월, '20년 11월,, '21년 11월,에 각각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를 100으로 하여 3개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19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19년 8~10월 평균시세, '19년 11월 평균시세, '19년 12월 평균시세, '20년 1월 평균시세, '20년 2월 평균시세, '20년 3월 평균시세, '20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96.4%, 99.5%, 97.8%, 97.8%, 97.8%, 97.8%, 76.1%로 조사되어 등락폭은 있었지만, 현재 규정이 높게 조사되었다. '20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0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20년 8~10월 평균시세, '20년 11월 평균시세, '20년 12월 평균시세, '21년 1월 평균시세, '21년 2월 평균시세, '21년 3월 평균시세, '21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0%, 103.5%, 105.5%, 113.5%, 132.2%, 149.3%, 162.7%로 조사되어 현재 규정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21년 11월에 최초 발생했다고 가정하여 현행 규정인 최초 발생농장의 전월평균시세인 '21년 10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오리평가액을 100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21년 8~10월 평균시세, '21년 11월 평균시세, '21년 12월 평균시세, '22년 1월 평균시세, '22년 2월 평균시세, '22년 3월 평균시세, '22년 4월 평균시세를 적용한 가축평가액은 각각 100.9%, 100.9%, 99.9%, 99.6%, 99.6%, 99.9%, 100.0%로 조사되어 현재규정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구 분	'19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19년 10월	' 19년 8~10월	' 19년 11월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4월
비율(%)	100.0	96.4	99.5	97.8	97.8	97.8	97.8	76.1
구 분	'20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20년 10월	' 20년 8~10월	' 20년 11월	' 20년 12월	' 21년 1월	' 21년 2월	' 21년 3월	' 21년 4월
비율(%)	100.0	100.0	103.5	105.5	113.5	132.2	149.3	162.7
구 분	'21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최초발생							
	' 21년 10월	' 21년 8~10월	' 21년 11월	' 21년 12월	' 22년 1월	' 22년 2월	' 22년 3월	' 22년 4월
비율(%)	100.0	100.9	99.9	99.6	99.6	99.6	99.9	100.0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AI, 구제역, ASF) - 최초발생 전월시세 적용

-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단,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시세 $\pm 15\%$ 초과 시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장은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 전년동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시세대비 $\pm 15\%$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시세 변동폭의 영향이 가장 적은 최초 발생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가 아닌 전월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산란계와 육계사례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요인으로 인해 시세에 영향을 미쳐 등록폭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농장의 경우에는 최초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방적 살처분 농장 : 전월 평균시세 또는 3개월 평균시세중 높은 시세를 적용]

예방적 살처분 농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살처분 시점의 전월평균시세와 3개월 평균시세를 비교하여 높은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살처분 당일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살처분 당일의 변동요인으로 인한 시세의 변동폭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농장주가 당일시세에 따라 살처분 시기에 대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살처분 보상금에서 가축평가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설정

□ 살처분 보상금 상·하한선(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은 상한선 100분의 80과 최초신고 농장 상한선 100분의 90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가축평가액에서 감액·경감기준을 적용하여도 감액 기준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대부분의 발생농장들이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경우 감액·경감 항목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감액기준 적용을 통한 경영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감액기준 적용에 대한 하한선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 사육규모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 하한선 설정

살처분 농가의 감액비율은 일정하게 적용되지만 동일한 감액비율을 적용받은 농가들에 대한 가축 평가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감액비율에 따라 2~10배 이상의 감액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감액비율을 차등적용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A농장의 상시사육농가 2,000천두와 B농장의 상시 사육두수 10,000두 농가를 비교하면 각각의 가축 평가액이 A농장은 10억, B농장은 30억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각 농장의 감액비율 적용이 동일하게 30%라고 하면 감액, A농장은 3억원이 감액되지만, B농장은 9억원이 감액되어, 사육규모에 따라 감액비율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3)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기준 개선

□ 감액기준 개선방안

살처분보상금 감액항목 42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및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질병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성(질병 차단·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 중요도), 효과성(감액기준 설정에 따라 농가 준수 유도), 고의성(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항목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항목별 1~5점부여;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설문조사한 항목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점수에 대해 80점이상은 현재 감액비율 유지하고, 80점 미만은 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감액비율을 개선점을 마련하였다..

감액비율항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중요성, 효과성 및 고의성)에서도 낮게 산

출되어 현행 감액비율대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70점 이하로 산출되었고, 방역관련 정성평가에서도 낮게 산출되어 현재 감액비율 20%보다 5% 낮춰 15%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70점이하로 산출되었지만, 방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죽거나 병든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실(닭, 오리, 돼지),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인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인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는 평균 점수가 80점이하로 산출되었지만 방역상의 중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액항목별 감액비율 개선 방안

준수사항		설문조사 결과				감액비율(%)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평균	현재	개선	변동
2-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59.6	59.3	59.9	59.6	10	<u>5</u>	개선
2-3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72.8	66.6	58.7	66.0	10	<u>5</u>	개선
3-1	○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68.7	65.5	61.3	65.2	10	<u>5</u>	개선
4-3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70.4	70.0	61.9	67.5	10	<u>5</u>	개선
12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8.1	67.8	64.3	66.7	20	<u>15</u>	개선

□ 경감기준 개선방안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경감기준 개선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축산농장 인증제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농장」은 「차단 방역관리」 항목에 따라 농장의 위생관리와 차단방역관리를 통해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하는 농가이므로 경감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가축의 건강상태 등 점검」, 「건강관리」, 「사육밀도」, 「사육환경」, 「청소 및 소독」 항목을 통해 가축의 건강상태 점검 및 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한 사육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에서 최근 2년간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외국인 포함)가 최근 2년간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100% 참여한 경우」 항목은 농장(종사자 및 가족 등)의 자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역본부의 방역점검을 위한 전화예찰시 최근 1년간 90%이상 응답한 경우」는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점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으므로 10% 경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경감기준 및 비율 개선 방안

	기존 준수사항 삭제	경감비율 (%)		비고
		현행	개선	
1	○ HACCP 인증농장, 단 HACCP 점검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농장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2	○ 동물복지 인증농장, 단 동물복지 인증 점검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농장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3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에서 최근 2년간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농장	-	10	추가
4	○ 농장주, 책임자, 종사자(외국인 포함)가 최근 2년간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100% 참여한 경우	-	10	추가
5	○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에 90%이상 응답한 경우	-	10	추가

□ 브루셀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일한 경감기준을 적용

브루셀라병은 농가 단위 살처분이 아닌 개체별 살처분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 신고 이후 2개월(잠복기)간 신고건에 대해 최초 신고를 인정해야 한다.

(4) 국내 가축 방역관리 기준

□ 축종별 사양·방역관리 기준 개발을 통한 감액 기준 적용

국내에서 '20~'21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감액사유는 각각 7건과 199건으로 총 206건의 방역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축종별로 체계적이며 세부적인 사양·방역관리기준 개발을 통한 세부항목별 감액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축종별 방역관리기준에 대해 농장주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장에 대해 평가하고 서명한후 지자체에 제출하므로써 농장 자체 방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만약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액기준 적용하므로써 보다 자발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일본은 사양위생관리기준 적용을 통한 감액기준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축종별 사양위생관리기준은 2020년 10월 이전에는 26개 항목였던 것을 2020년 10월이후에 35개 항목으로 개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대해 관리항목별 준수여부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또는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수당금 및 특별 수당금의 전부(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감액), 또는 반환(환수)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농장주는 사양위생관리기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농장주가 서명을 한후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I. 농장주가 지켜야 할 사항		
1. 소유자의 책임 사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사육 위생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 사항 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농장의 방역체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등 방역 시설의 설치장소를 명시한 농장의 평면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농장 소유자는 가족, 종사자 등에 대하여 방역기준 준수 사항,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농장소유자의 가족, 종사자는 농장 이외에서 동물의 사육 및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방역교육 및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5.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6. 축산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독 설비 등의 관리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2. 소독시설이 열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4. 기록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해외 출입국 시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1. 농장 소유자 및 가족, 종사자는 공항만에서 입국시 신고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2. 농장 소유자 및 가족, 종사자는 공항만에서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6.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울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5.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6.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7.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 사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가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5.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가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6. CCTV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가급)
8. 질병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1. 소유자 등은 가축 질병 발생시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2. 소유자 등은 질병 발생시 사육제한 등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3. 소유자 등은 의심축 발생시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4. 육계, 칠면조의 경우 폐사율을 기록하여 폐사율이 폐사기준을 넘어서면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가급)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5. 산란종계의 경우 폐사율 및 계란 생산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가급)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6.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7. 소유자 등은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8. 소유자 등은 질병 발생시 이동제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9. 소유자 등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따라야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10. 소유자 등은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의 소각·매몰·소독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9. 축산 계열화 사업자 의무 사항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 준(분류1)	1.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 준(분류1)	2.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 준(분류1)	3. 시·군에 방역 교육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II. 농장 출입전 지켜야 할 사항

1. 기록관리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1.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 병 방역실시요 령(분류3)	2. 농장 소유주 등은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출입기록부에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독관리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1. 신발소독조 소독액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2. 소독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AI방역관련 행 정명령 및 공고 (분류2) ASF 추가 방 역기준(분류1)	3.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가금,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 준(분류1)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4.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5.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등을 착용해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6.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 의 방역관리기 준(분류1)	7.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3. 차단방역(사람 및 물품)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5. 부득이 방문자가 축사에 들어갈 때는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6. 농장내로의 부적절한 물품(해외 유입 불법 축산물 등)을 반입하지 않는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7. 소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공구,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않는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육하는 농기계를 세척·소독하지 않고 가금농장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9.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등으로 사람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금, 돼지)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0.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금, 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1.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가금, 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2.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 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가금)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3.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 기계 등)를 농장 간 공동 사용하지 말 것.(가금)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14. 소유자 등은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한다.(가금, 돼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5. 소유자 등은 농장내 시설 공사 시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가금, 돼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6.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가금, 돼지)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17. 소유자등은 경작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후 당일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가금, 돼지)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18. 경작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과 축사 내 출입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할 것.(가금, 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3.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14.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가금, 돼지)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15. 부득이하게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가금, 돼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6.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돼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7.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을 제한한다(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및 서약서 제출 준수)(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등)를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금)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9.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전통시장으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라성계, 육계 및 오리의 유통을 금지한다.(가급)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20.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축(가급)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가급)
4.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농장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4.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가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공고)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급)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5. 소유자 등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6.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할 것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7.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열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8.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9. 소유자는 농장내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10. 축산차량의 GPS를 장착하고,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급류 분뇨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하여야 한다(가급)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을 금지해야 한다.(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3. 다만 종계·종오리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내 사육 공간과 구획 또는 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하다. (가금)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4.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의 소유자들은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5.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한다. (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6.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돼지, 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7. 가금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다.(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8. 이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다(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19.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한다.(가금)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20.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이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금)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SF 추가 방역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분류2)	21. 소유자들은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돼지)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22.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가금, 돼지)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Ⅲ. 농장내 지켜야 할 사항		
1. 농장 내 정리 정돈 및 소독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하여야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2. 정기적으로 구충 및 구서 작업을 실시한다.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3. 농장 내 시설 등 정비·보수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4.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 농장에 반입·반출 시 각각 세척 소독할 것(가급)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5.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도구(합판, 파레트 등)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급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가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6.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열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7. 소독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기록 관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1개월 이상 보관한다.(가급)
3. 사육 관련 준수 사항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1.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2. 질병 검사, 주사 및 투약 등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3. 구제역 예방 접종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돼지, 반추동물)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주사침, 인공수정용 기구, 그 외 체액에 노출되는 물품 사용 시 1두마다 교환 또는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처리된 사료의 이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2.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여서는 아니된다(돼지)
5. 축사 밖으로의 분변 처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에서 가금 분뇨를 2주 이상 보관하지 않고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단 1주일 내 정밀검사를 받은 농장은 제외)(가금)
6.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의사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3.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5.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6.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는 항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7.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 및 기록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8.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9.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0. ASF의 의사환축을 발견한 경우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해야 한다.(돼지)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1. ASF 의사환축의 경우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2. ASF의 의사환축을 발견한 경우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3. ASF의 의사환축을 발견한 경우 발생농장 정문에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차량 등의 출입 금지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4.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 물품의 농장밖 반출을 금지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5.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에 협조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6.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자 등은 발생농장 내 상주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7.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조치(단, 정밀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8.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종사자 등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농장,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19. 가축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에 협조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0.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 소유자 등은 농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쥐, 파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2.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 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을 실시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3.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소유자 등은 돼지의 방목 사육을 금지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4.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남은 음식물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5.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발생지 내 입산 활동 및 영농활동, 발생지역에서 생산한 청예사료 급여 및 양돈관계자 단체 모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돼지)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6.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 등은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밖으로의 이동 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 금지를 해야 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7.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에서의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8.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은 금지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29.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은 허용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0.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에서의 정액,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사육자 등은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1.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에서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2.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에서 감수성 동물·사료·가축분뇨·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 차량은 통행을 차단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3.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는 금지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4. 다만,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5.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6.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지역 밖으로 사료·가축분뇨 반출시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분류3)	37.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지역의 감수성 동물 수송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정 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을 허용하며, 그밖의 차량도 소독 후 통행을 허용한다. (돼지)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 조치(분류3)	38.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은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살처분한다. (돼지)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 조치(분류3)	39.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해야 한다. (돼지)

구 분		가축 방역관리기준
7. 차단방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가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가급)
		3. 육계 또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한다.(가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4. 관리자, 축사 등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을 갈아신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5. 소독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IV. 축사 내 지켜야 할 사항

1. 차단방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 간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하며, 장화를 신발 소독조에 소독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살처분보상금지급 및 감액기준(분류1) AI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분류2)	2. 축사별 진실(닭, 오리)을 설치해야 한다.(가급)
2.소독 실시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1.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관리기준(분류1)	2. 소독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장기적 개선방안

(1) 가축방역기금 및 가축질병보험

□ 가축방역기금 조성 : 농가 50%, 보조 50%)

- 목 적 : ㉠ 국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
 -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 ㉢ 질병발생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국가의 재정 부담 완화
- 기금 조성 : 축산(축종별) 농가가 부담하는 기금 조성(농가 50%, 보조 50%)
- 기금 활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매몰 및 방역 비용, 대규모 질병발생으로 인한 기금 부족시 다음연도 재원으로 충당
- 질 병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 등
- 계약대상농가 : 제 18조(질병관리등급)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농가이면서 중점방역관리지구 포함되지 않는 농가

※ (일본 사례 - 가축방역 호조기금) 축산경영지원 대책으로 「가축방역 호조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가 가축 사육두수에 따른 금액을 적립한후 특정질병 발생시 손실액의 일부를 지급받아서 경영재건에 활용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주관기관), 농축산업진흥기구(실행기관)
- 목적 : 경영안정대책, 수급조정, 가격안정대책 및 정부수집·제공
- 질병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계약대상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2조 3에 근거한 사양위생관리기준 준수 농가
이동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
- 계약사항 :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수수)에 따른 생산자적립금, 호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 호조금 종류 : 경영지원호조금(살처분후 재입식전까지 고정비 등 지원), 소각·매각호조금

※ (독일 사례 - 가축질병법에 근거한 가축질병기금) 가축 생산자(50%)와 주정부(50%)가 공급으로 조성

- 연방정부와 주정부(부과금 수준 및 예산 승인), 가축질병기금 사무국(실행기관)
- 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 지불(생산자)
- 보상금 평가 : 살처분 명령 당일시세 또는 유럽연합(EU)가 시장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 감액 : 생산자 허위보고 및 지체신고, 가축질병에 관한 의무사항 불이행(독일 연방법)
- 대규모 질병 발생으로 인한 재원 고갈시 생산자 부담금은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충당

※ (네덜란드 사례 - 가축위생기금) 소규모 발생(생산자), 대규모 발생(정부가 지원)

- 네덜란드 농업성(주관기관), 품목(축종)별 관리위원회(실행기관)
- 목적 : 살처분 보상금, 방역조치에 필요한 비용
- 질병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보상금 평가 : 시장가격(정부 수의사가 가축두수 및 임상증상 유무 등을 평가)
- 감액 : 조기통보 유도를 위해 임상증상 있는 가축은 시장가격의 50%보상, 폐사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생산자 의무(위생·예방기준 충족) 불이행시 일정비율 부담

□ (가축재해보험) 국내 가축 재해보험에 특정 질병 발생에 따른 재입식 및 경영자금 지원, 농가에서 축종별 사육규모별 일정 비율을 부담

- 운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기관), 농협(실행기관)
- 목 적 : 경영안정대책, 수급조정, 가격안정대책 및 정부수집·제공
- 질 병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계약대상농가 :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
- 보험료 : 축종별, 사육규모별 부담, 1년계약을 통한 소멸후 재계약

※ (일본 사례 - 축산경영재건보험) 일본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나 살처분 또는 자연 재해의 발생에 의해 가축이 폐사할 경우 가축 재입식후 사육·비육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독일 사례 - 농업소득손해보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생산중단, 생산량 감소 등에 의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 공적인 보조는 없음

- 독일의 10개회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운영

※ (스페인 사례 - **Agroseguro 축산보험**) 농어업식료성의 산하단체인 ENESA(Entidad Estatal de Seguros Agrarios)가 33개의 보험회사로 조직된 민간 보험단체인 Agroseguro와 협력하여 개발

- 정부 : 보상기준과 보조금 액수 설정(보조금은 교부금의 약 63%정도)

- 생산자는 Agroseguro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손실편가를 통한 보상을 받음

- 유행성 질병은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에 의한 손실이나 랜더링 비용은 대상

○ 국내 가축재해보험에 특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축산농가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제도 운영

(2) 육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적용기준 개선

□ (생계유통가격과 위탁생계가격 이원화 적용) 육계 산지가격은 95%의 위탁생계가격으로 거래되고 생계유통가격은 유통상인과 5%물량으로 거래 됨

○ 육계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위탁생계가격과 유통상인의 생계유통가격 등 두 가지로 발표 이중 전체 생계 유통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위탁생계가격을 배제한 채 할인가격이 많고 유통물량의 5%에 불과한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보상기준으로 합당치 않음.

○ 육계의 살처분 보상금 평가에 있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생산하는 위탁농가는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하고, 유통상인에게 납품하는 육계농가의 경우 생계유통가격으로 이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3) 살처분보상금 평가액 공시

□ (살처분보상금 분기별 발표) 살처분 보상금의 투명성 확보 및 농가 방역위식 고취를 위해 축종별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가축평가액을 발표

○ 영국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의 평가지표를 영국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분기별로 공시함으로써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기적으로 축종별, 규모별, 살처분 두수별로 분류하여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유관기관에 공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책임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④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개선

□ (예방적 살처분농가 소득 보존) 정부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의 자별적 참여의식 고취

-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살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손실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생계안정비용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지원 기준이므로 많은 축산농가가 도산 또는 폐업하는 실정임. 그러므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후 경영정상화 기간동안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는 살처분 전의 순수익의 20~25%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덴마크 사례 - 손실보상금 20% 보상) 덴마크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살처분 이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하고, 별도로 살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비율을 20%적용하여 보상함

[첨부 1 -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에 따른 가축평가액 비교]

(1) 돼 지

① 돼지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성장단계, 암·수별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방법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포유자돈(원/두)	→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 (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이유자돈(원/두)	→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원/두)	→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비육돈(원/두)	→ 자돈가격(30kg기준)+(당해체중-30kg)×[110kg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비육돈가(115kg)	→ 지육평균시세 × 출하체중(115kg) × 지급율(76.7%)
이유자돈 구간금액(원)	→ 자돈(30kg)가격 - 포유자돈기본가
이유자돈 증체단가(원)	→ 이유자돈 구간금액/이유자돈 구간체중(22.5kg)
비육돈 구간금액(원)	→ 비육 생산원가 - 포유자돈 생산원가
비육돈 증체단가(원)	→ 비육돈 구간금액/비육돈구간체중(82.5kg)
비임신돈(원/두)	→ 후보구입비+추가손실비+종부전사육비-평균감가상각비
임신돈(원/두)	→ 비임신돈가격+임신타아가치
후보돈(원/두)	→ 후보돈구입비+종부전사육비
웅돈(원/두)	→ 후보웅돈 구입가격

□ 전국 돼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시세(제주제외, 탕박기준, 원/kg)

구분	평균시세(원/kg)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2,905	3,663	4,386
2월	3,236	3,527	4,135
3월	3,895	4,083	4,273
4월	4,273	4,626	5,251
5월	5,100	4,990	6,385
6월	4,715	5,204	5,859
7월	4,868	5,138	5,613
8월	4,298	5,363	5,920
9월	4,725	5,374	5,596
10월	4,012	4,573	-
11월	4,219	5,273	-
12월	4,215	5,129	-

② 돼지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별 분석결과

□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2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A-농가의 돼지 성장단계별, 암·수별 사육두수

사육단계/종돈	생후일령(주)	구간 kg	살처분두수(두)
자돈			
포유자돈	~4		316
이유자돈	4~8		316
자돈(30kg)	9~10		159
육성돈			
40kg	10~11	10	76
50kg	12~13	20	93
60kg	14~15	30	84
70kg	16~17	40	156
80kg	18~19	50	28
90kg	20~21	60	14
비육돈			
100kg	22~23	70	135
110kg	24~25	80	231
115kg	26	85	29
종돈			
임신돈			140
후모돈			10
웅돈			4

○ 살처분 농장 : 기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평가기준	비고
㉠	'20년, '21년, '22년 5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20년, '21년, '22년 3~5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20년, '21년, '22년 6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20년, '21년, '22년 7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8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9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기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기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㉔ 2020년 6월 ASF 최초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20년 5월 평균시세 : 5,100원/kg(현행 규정)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7,358	4,564
자돈	30kg	188,700	188,700
비육돈	30kg이상	188,700	3,165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49,846	지역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100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88,700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02,685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564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61,146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165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7,358	316	43,404,970
자돈(30kg)	9~10			188,700	188,700	159	30,003,300
40kg	10~11	10	3,165	188,700	220,354	76	16,746,904
50kg	12~13	20	3,165	188,700	252,008	93	23,436,744
60kg	14~15	30	3,165	188,700	283,662	84	23,827,608
70kg	16~17	40	3,165	188,700	315,316	156	49,189,296
80kg	18~19	50	3,165	188,700	346,970	28	9,715,160
90kg	20~21	60	3,165	188,700	378,624	14	5,300,736
100kg	22~23	70	3,165	188,700	410,278	135	55,387,530
110kg	24~25	80	3,165	188,700	441,932	231	102,086,292
115kg	26	85	3,165	188,700	457,759	29	13,275,011
120kg	27	90	3,165	188,700	473,586		
㉔합계						1,637	399,554,291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399,554,291\text{원} + 162,130,330 = 561,684,621\text{원}$$

㉔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4,423원/kg(2020년 3~5월 평균시세)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24,833	3,450
자돈	30kg	163,651	163,651
비육돈	30kg이상	163,651	2,745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 (원/두)	390,131	지역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423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63,651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77,636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450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26,480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745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24,833	316	39,447,228
자돈(30kg)	9~10			163,651	163,651	159	26,020,509
40kg	10~11	10	2,745	163,651	191,103	76	14,523,835
50kg	12~13	20	2,745	163,651	218,555	93	20,325,631
60kg	14~15	30	2,745	163,651	246,007	84	20,664,610
70kg	16~17	40	2,745	163,651	273,459	156	42,659,658
80kg	18~19	50	2,745	163,651	300,911	28	8,425,520
90kg	20~21	60	2,745	163,651	328,364	14	4,597,089
100kg	22~23	70	2,745	163,651	355,816	135	48,035,107
110kg	24~25	80	2,745	163,651	383,268	231	88,534,837
115kg	26	85	2,745	163,651	396,994	29	11,512,818
120kg	27	90	2,745	163,651	410,720		
㉔합계						1,637	351,927,582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351,927,582\text{원} + 162,130,330 = 514,057,912\text{원}$$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 : 4,715원/kg(20.06 평균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0,235	3,931
자돈	30kg	174,455	174,455
비육돈	30kg이상	174,455	2,926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원/두)	415,887	지육평균시세(제주제외)(원/kg)	4,715
포유자돈생산원가(원/두)	66,696	자돈(30kg)(원/두)	174,455		
포유자돈사육비(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원)	88,440		
이유자돈구간체중(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원/kg)	3,931	자돈지급배수(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kg)	82.5	비육돈구간금액(원/두)	241,432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원/두)	2,926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주)	구간(kg)	단가(원/kg)	기본가(원)	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0,235	316	41,154,260
자돈(30kg)	9~10			174,455	174,455	159	27,738,345
40kg	10~11	10	2,926	174,455	203,719	76	15,482,677
50kg	12~13	20	2,926	174,455	232,984	93	21,667,500
60kg	14~15	30	2,926	174,455	262,248	84	22,028,857
70kg	16~17	40	2,926	174,455	291,513	156	45,475,986
80kg	18~19	50	2,926	174,455	320,777	28	8,981,761
90kg	20~21	60	2,926	174,455	350,042	14	4,900,582
100kg	22~23	70	2,926	174,455	379,306	135	51,206,315
110kg	24~25	80	2,926	174,455	408,570	231	94,379,778
115kg	26	85	2,926	174,455	423,203	29	12,272,878
120kg	27	90	2,926	174,455	437,835		
합계						1,637	372,467,678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0년 7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372,467,678\text{원} + 162,130,330 = 534,600,008\text{원}$$

㉔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 4,868원/kg('20.07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3,066	4,182
자돈	30kg	180,116	180,116
비육돈	30kg이상	180,116	3,021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 (원/두)	429,382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868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80,116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94,101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182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49,266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021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3,066	316	42,048,698
자돈(30kg)	9~10			180,116	180,116	159	28,638,444
40kg	10~11	10	3,021	180,116	210,330	76	15,985,084
50kg	12~13	20	3,021	180,116	240,544	93	22,370,602
60kg	14~15	30	3,021	180,116	270,758	84	22,743,685
70kg	16~17	40	3,021	180,116	300,972	156	46,951,665
80kg	18~19	50	3,021	180,116	331,186	28	9,273,215
90kg	20~21	60	3,021	180,116	361,400	14	5,059,604
100kg	22~23	70	3,021	180,116	391,614	135	52,867,940
110kg	24~25	80	3,021	180,116	421,828	231	97,442,367
115kg	26	85	3,021	180,116	436,935	29	12,671,128
120kg	27	90	3,021	180,116	452,042		
합계						1,637	383,233,174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0년 8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383,233,174\text{원} + 162,130,330 = 545,363,504\text{원}$$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 4,298원/kg('20.08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22,521	3,245
자돈	30kg	159,026	159,026
비육돈	30kg이상	159,026	2,668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원/두)	379,105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298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59,026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73,011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245	자돈지급배수(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20,079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668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22,521	316	38,716,478
자돈(30kg)	9~10			159,026	159,026	159	25,285,134
40kg	10~11	10	2,668	159,026	185,702	76	14,113,371
50kg	12~13	20	2,668	159,026	212,379	93	19,751,201
60kg	14~15	30	2,668	159,026	239,055	84	20,080,600
70kg	16~17	40	2,668	159,026	265,731	156	41,454,038
80kg	18~19	50	2,668	159,026	292,407	28	8,187,403
90kg	20~21	60	2,668	159,026	319,084	14	4,467,169
100kg	22~23	70	2,668	159,026	345,760	135	46,677,569
110kg	24~25	80	2,668	159,026	372,436	231	86,032,722
115kg	26	85	2,668	159,026	385,774	29	11,187,450
120kg	27	90	2,668	159,026	399,112		
합계						1,637	343,133,877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0년 9월 예방적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343,133,877\text{원} + 162,130,330 = 505,264,207\text{원}$$

㊤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 4,725원/kg('20.09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0,420	3,947
자돈	30kg	174,825	174,825
비육돈	30kg이상	174,825	2,933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원/두)	416,769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725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74,825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88,810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947	자돈지급배수(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41,944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933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0,420	316	41,212,720
자돈(30kg)	9~10			174,825	174,825	159	27,797,175
40kg	10~11	10	2,933	174,825	204,152	76	15,515,514
50kg	12~13	20	2,933	174,825	233,478	93	21,713,454
60kg	14~15	30	2,933	174,825	262,805	84	22,075,578
70kg	16~17	40	2,933	174,825	292,131	156	45,572,436
80kg	18~19	50	2,933	174,825	321,458	28	9,000,810
90kg	20~21	60	2,933	174,825	350,784	14	4,910,976
100kg	22~23	70	2,933	174,825	380,111	135	51,314,918
110kg	24~25	80	2,933	174,825	409,437	231	94,579,947
115kg	26	85	2,933	174,825	424,100	29	12,298,907
120kg	27	90	2,933	174,825	438,764		
합계						1,637	373,173,175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응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응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타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응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0년 10월 예방적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기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373,173,175\text{원} + 162,130,330 = 535,303,505\text{원}$$

㉔ 2021년 6월 ASF 최초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21년 5월 평균시세 : 4,990원/kg(현행 규정)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5,323	4,383
자돈	30kg	184,630	184,630
비육돈	30kg이상	184,630	3,097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40,143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990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84,630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98,615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383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55,513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097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5,323	316	42,761,910
자돈(30kg)	9~10			184,630	184,630	159	29,356,170
40kg	10~11	10	3,097	184,630	215,601	76	16,385,696
50kg	12~13	20	3,097	184,630	246,573	93	22,931,246
60kg	14~15	30	3,097	184,630	277,544	84	23,313,679
70kg	16~17	40	3,097	184,630	308,515	156	48,128,350
80kg	18~19	50	3,097	184,630	339,486	28	9,505,617
90kg	20~21	60	3,097	184,630	370,458	14	5,186,406
100kg	22~23	70	3,097	184,630	401,429	135	54,192,897
110kg	24~25	80	3,097	184,630	432,400	231	99,884,431
115kg	26	85	3,097	184,630	447,886	29	12,988,687
120kg	27	90	3,097	184,630	463,371		
㉔합계						1,637	391,815,830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391,815,830\text{원} + 162,130,330 = 553,946,160\text{원}$$

㉔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4,566원/kg(2021년 3~5월 평균시세)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27,479	3,686
자돈	30kg	168,942	168,942
비육돈	30kg이상	168,942	2,834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02,744	지역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4,566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68,942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82,927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686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33,802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834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27,479	316	40,283,206
자돈(30kg)	9~10			168,942	168,942	159	26,861,778
40kg	10~11	10	2,834	168,942	197,282	76	14,993,405
50kg	12~13	20	2,834	168,942	225,621	93	20,982,779
60kg	14~15	30	2,834	168,942	253,961	84	21,332,717
70kg	16~17	40	2,834	168,942	282,301	156	44,038,887
80kg	18~19	50	2,834	168,942	310,640	28	8,697,926
90kg	20~21	60	2,834	168,942	338,980	14	4,745,718
100kg	22~23	70	2,834	168,942	367,319	135	49,588,130
110kg	24~25	80	2,834	168,942	395,659	231	91,397,257
115kg	26	85	2,834	168,942	409,829	29	11,885,039
120kg	27	90	2,834	168,942	423,999		
㉔합계						1,637	361,987,581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타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361,987,581\text{원} + 162,130,330 = 524,117,911\text{원}$$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 : 5,204원/kg(21.06 평균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9,282	4,735
자돈	30kg	192,548	192,548
비육돈	30kg이상	192,548	3,230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59,019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204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92,548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06,533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735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66,471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230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9,282	316	44,012,954
자돈(30kg)	9-10			192,548	192,548	159	30,615,132
40kg	10-11	10	3,230	192,548	224,847	76	17,088,409
50kg	12-13	20	3,230	192,548	257,147	93	23,914,670
60kg	14-15	30	3,230	192,548	289,446	84	24,313,504
70kg	16-17	40	3,230	192,548	321,746	156	50,192,372
80kg	18-19	50	3,230	192,548	354,045	28	9,913,273
90kg	20-21	60	3,230	192,548	386,345	14	5,408,829
100kg	22-23	70	3,230	192,548	418,644	135	56,517,001
110kg	24-25	80	3,230	192,548	450,944	231	104,168,052
115kg	26	85	3,230	192,548	467,094	29	13,545,717
120kg	27	90	3,230	192,548	483,243		
㉔합계						1,637	406,870,654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타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1년 7월 예방적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406,870,654\text{원} + 162,130,330 = 569,000,984\text{원}$$

㉔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 5,138원/kg(21.07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38,061	4,626
자돈	30kg	190,106	190,106
비육돈	30kg이상	190,106	3,189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53,197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138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90,106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04,091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626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63,091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189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38,061	316	43,627,118
자돈(30kg)	9~10			190,106	190,106	159	30,226,854
40kg	10~11	10	3,189	190,106	221,996	76	16,871,685
50kg	12~13	20	3,189	190,106	253,886	93	23,611,371
60kg	14~15	30	3,189	190,106	285,776	84	24,005,147
70kg	16~17	40	3,189	190,106	317,665	156	49,555,804
80kg	18~19	50	3,189	190,106	349,555	28	9,787,547
90kg	20~21	60	3,189	190,106	381,445	14	5,340,232
100kg	22~23	70	3,189	190,106	413,335	135	55,800,221
110kg	24~25	80	3,189	190,106	445,225	231	102,846,935
115kg	26	85	3,189	190,106	461,170	29	13,373,923
120kg	27	90	3,189	190,106	477,115		
㉔합계						1,637	402,227,577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1년 8월 예방적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402,227,577\text{원} + 162,130,330 = 564,357,907\text{원}$$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 5,363원/kg(21.08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42,223	4,996
자돈	30kg	198,431	198,431
비육돈	30kg이상	198,431	3,329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73,043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363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98,431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12,416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996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74,612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329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2,223	316	44,942,468
자돈(30kg)	9~10			198,431	198,431	159	31,550,529
40kg	10~11	10	3,329	198,431	231,717	76	17,610,519
50kg	12~13	20	3,329	198,431	265,004	93	24,645,345
60kg	14~15	30	3,329	198,431	298,290	84	25,056,365
70kg	16~17	40	3,329	198,431	331,576	156	51,725,920
80kg	18~19	50	3,329	198,431	364,863	28	10,216,157
90kg	20~21	60	3,329	198,431	398,149	14	5,574,088
100kg	22~23	70	3,329	198,431	431,435	135	58,243,789
110kg	24~25	80	3,329	198,431	464,722	231	107,350,742
115kg	26	85	3,329	198,431	481,365	29	13,959,585
120kg	27	90	3,329	198,431	498,008		
㊤합계						1,637	418,056,247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1년 9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418,056,247\text{원} + 162,130,330 = 580,186,577\text{원}$$

㊤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 4,725원/kg(21.09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42,427	5,014
자돈	30kg	198,838	198,838
비육돈	30kg이상	198,838	3,335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474,014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374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98,838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12,823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5,014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75,176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335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2,427	316	45,006,774
자돈(30kg)	9~10			198,838	198,838	159	31,615,242
40kg	10~11	10	3,335	198,838	232,193	76	17,646,640
50kg	12~13	20	3,335	198,838	265,547	93	24,695,895
60kg	14~15	30	3,335	198,838	298,902	84	25,107,758
70kg	16~17	40	3,335	198,838	332,257	156	51,832,015
80kg	18~19	50	3,335	198,838	365,611	28	10,237,112
90kg	20~21	60	3,335	198,838	398,966	14	5,585,521
100kg	22~23	70	3,335	198,838	432,320	135	58,363,252
110kg	24~25	80	3,335	198,838	465,675	231	107,570,928
115kg	26	85	3,335	198,838	482,352	29	13,988,217
120kg	27	90	3,335	198,838	499,030		
㊤합계						1,637	418,830,093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1년 10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418,830,093\text{원} + 162,130,330 = 580,960,423\text{원}$$

㉔ 2022년 6월 ASF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22년 5월 평균시세 : 6,385원/kg(현행 규정)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61,130	6,677
자돈	30kg	236,245	236,245
비육돈	30kg이상	236,245	3,963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 (115kg, 원/두)	563,189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6,385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236,245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50,230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6,677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326,944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963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61,130	316	50,917,080
자돈(30kg)	9~10			236,245	236,245	159	37,562,955
40kg	10~11	10	3,963	236,245	275,875	76	20,966,467
50kg	12~13	20	3,963	236,245	315,504	93	29,341,884
60kg	14~15	30	3,963	236,245	355,134	84	29,831,231
70kg	16~17	40	3,963	236,245	394,763	156	61,583,070
80kg	18~19	50	3,963	236,245	434,393	28	12,162,999
90kg	20~21	60	3,963	236,245	474,022	14	6,636,314
100kg	22~23	70	3,963	236,245	513,652	135	69,343,016
110kg	24~25	80	3,963	236,245	553,282	231	127,808,034
115kg	26	85	3,963	236,245	573,096	29	16,619,793
120kg	27	90	3,963	236,245	592,911	-	-
㉔ 합계						1,637	489,953,583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489,953,583\text{원} + 162,130,330 = 652,083,913\text{원}$$

㉔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5,303원/kg(2022년 3~5월 평균시세)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41,113	4,898
자돈	30kg	196,211	196,211
비육돈	30kg이상	196,211	3,291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 (원/두)	467,751	지역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303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96,211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10,196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4,898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71,540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291		

○ 돼지 성장단계별 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1,113	316	44,591,708
자돈(30kg)	9~10			196,211	196,211	159	31,197,549
40kg	10~11	10	3,291	196,211	229,125	76	17,413,496
50kg	12~13	20	3,291	196,211	262,039	93	24,369,618
60kg	14~15	30	3,291	196,211	294,953	84	24,776,040
70kg	16~17	40	3,291	196,211	327,867	156	51,147,223
80kg	18~19	50	3,291	196,211	360,781	28	10,101,861
90kg	20~21	60	3,291	196,211	393,695	14	5,511,726
100kg	22~23	70	3,291	196,211	426,609	135	57,592,171
110kg	24~25	80	3,291	196,211	459,523	231	106,149,727
115kg	26	85	3,291	196,211	475,980	29	13,803,408
120kg	27	90	3,291	196,211	492,437		
㉔ 합계						1,637	413,835,269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최초 발생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413,835,269\text{원} + 162,130,330 = 575,965,599\text{원}$$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 : 5,895원/kg('22.06 평균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52,065	5,871
자돈	30kg	218,115	218,115
비육돈	30kg이상	218,115	3,659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 (원/두)	413,417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895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73,419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87,404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885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39,998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909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6,848	316	46,403,968
자돈(30kg)	9~10			207,681	207,681	159	33,021,279
40kg	10~11	10	3,484	207,681	242,519	76	18,431,446
50kg	12~13	20	3,484	207,681	277,357	93	25,794,205
60kg	14~15	30	3,484	207,681	312,195	84	26,224,385
70kg	16~17	40	3,484	207,681	347,033	156	54,137,160
80kg	18~19	50	3,484	207,681	381,871	28	10,692,391
90kg	20~21	60	3,484	207,681	416,709	14	5,833,928
100kg	22~23	70	3,484	207,681	451,547	135	60,958,864
110kg	24~25	80	3,484	207,681	486,385	231	112,354,972
115kg	26	85	3,484	207,681	503,804	29	14,610,321
120kg	27	90	3,484	207,681	521,223		
합계						1,637	455,482,257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2년 7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 종돈평가금액

$$455,482,257\text{원} + 162,130,330 = 617,612,587\text{원}$$

㉔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 : 5,613원/kg('22.07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46,848	5,407
자돈	30kg	207,681	207,681
비육돈	30kg이상	207,681	3,484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 (원/두)	413,417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613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73,419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87,404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885	자돈지급배수 (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39,998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909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6,848	316	46,403,968
자돈(30kg)	9~10			207,681	207,681	159	33,021,279
40kg	10~11	10	3,484	207,681	242,519	76	18,431,446
50kg	12~13	20	3,484	207,681	277,357	93	25,794,205
60kg	14~15	30	3,484	207,681	312,195	84	26,224,385
70kg	16~17	40	3,484	207,681	347,033	156	54,137,160
80kg	18~19	50	3,484	207,681	381,871	28	10,692,391
90kg	20~21	60	3,484	207,681	416,709	14	5,833,928
100kg	22~23	70	3,484	207,681	451,547	135	60,958,864
110kg	24~25	80	3,484	207,681	486,385	231	112,354,972
115kg	26	85	3,484	207,681	503,804	29	14,610,321
120kg	27	90	3,484	207,681	521,223		
합계						1,637	435,643,658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㉞ 합계			162,130,330

※ 2022년 8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㉞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㉞ 종돈평가금액

$$435,643,658\text{원} + 162,130,330 = 597,773,988\text{원}$$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 : 5,920원/kg('22.08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52,528	5,912
자돈	30kg	219,040	219,040
비육돈	30kg이상	219,040	3,674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원/두)	413,417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920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173,419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87,404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3,885	자돈지급배수(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39,998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2,909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52,528	316	48,198,690
자돈(30kg)	9~10			219,040	219,040	159	34,827,360
40kg	10~11	10	3,674	219,040	255,783	76	19,439,543
50kg	12~13	20	3,674	219,040	292,527	93	27,205,005
60kg	14~15	30	3,674	219,040	329,270	84	27,658,714
70kg	16~17	40	3,674	219,040	366,014	156	57,098,163
80kg	18~19	50	3,674	219,040	402,757	28	11,277,205
90kg	20~21	60	3,674	219,040	439,501	14	6,153,011
100kg	22~23	70	3,674	219,040	476,244	135	64,292,976
110kg	24~25	80	3,674	219,040	512,988	231	118,500,166
115kg	26	85	3,674	219,040	531,359	29	15,409,425
120kg	27	90	3,674	219,040	549,731		
합계						1,637	457,240,999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2년 9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457,240,999\text{원} + 162,130,330 = 619,371,329\text{원}$$

㉔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 : 5,596원/kg('22.09 평균 시세)

○ 돼지성장단계별산출근거

구분	체중	기본가(원/두)	증체단가(원/kg)
포유자돈	7.5kg	86,015	86,015
이유자돈	7.5~30kg	146,534	5,379
자돈	30kg	207,052	207,052
비육돈	30kg이상	207,052	3,473

○ 산출계산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포유자돈기본가 (원/두)	86,015	비육돈가(115kg)(원/두)	493,595	지육평균시세 (제주제외) (원/kg)	5,596
포유자돈생산원가 (원/두)	66,696	자돈(30kg) (원/두)	207,052		
포유자돈사육비 (원/두)	19,319	이유자돈구간금액 (원)	121,037		
이유자돈구간체중 (kg)	22.5	이유자돈증체단가 (원/kg)	5,379	자돈지급배수(탕박37배)	37
비육돈구간체중 (kg)	82.5	비육돈구간금액 (원/두)	286,543		
비육돈지급율	76.70%	비육돈증체단가 (원/두)	3,473		

○ 돼지성장단계별산출액

체중	주령 (주)	구간 (kg)	단가 (원/kg)	기본가 (원)	단가 (원/두)	살처분 두수(두)	금액 (원)
포유자돈	~4			86,015	86,015	316	27,180,740
이유자돈	4~8				146,534	316	46,304,586
자돈(30kg)	9~10			207,052	207,052	159	32,921,268
40kg	10~11	10	3,473	207,052	241,785	76	18,375,623
50kg	12~13	20	3,473	207,052	276,517	93	25,716,082
60kg	14~15	30	3,473	207,052	311,250	84	26,144,960
70kg	16~17	40	3,473	207,052	345,982	156	53,973,196
80kg	18~19	50	3,473	207,052	380,715	28	10,660,007
90kg	20~21	60	3,473	207,052	415,447	14	5,816,259
100kg	22~23	70	3,473	207,052	450,180	135	60,774,239
110kg	24~25	80	3,473	207,052	484,912	231	112,014,684
115kg	26	85	3,473	207,052	502,278	29	14,566,071
120kg	27	90	3,473	207,052	519,645		
합계						1,637	434,447,714

○ 후보모돈 및 임신돈, 웅돈 산출액

고정값		계산값		포유자돈~비육돈변동값	
번식돈사육비 (원/두)	1,732,934	종부전사육비 (원)	361,027	후보모돈가격 (원/두)	683,000
모돈내용년수 (년)	3	추가손실비 (원)	173,189		
평균사용년수 (년)	1.5	종부전평가액 (원)	1,217,216	후보웅돈가격 (원/두)	1,833,000
노폐돈체중 (kg/두)	200	감가상각비 (원)	346,378		
노폐돈지급율	60.0%	평균감가상각비 (원)	519,567	노폐돈(모돈) 지육단가 (원/kg)	1,484
임신태아가격 (원)	333,480	노폐돈가격 (원/두)	178,080		
비육돈사육비 (원/두)	315,079				

○ 종돈 평가금액

구분	두당단가 (원/두)	살처분두수(두)	금액(원)
비임신돈	697,649		
임신돈	1,031,129	140	144,358,060
후보돈	1,044,027	10	10,440,270
웅돈	1,833,000	4	7,332,000
합계(예방적 살처분농장)			162,130,330

※ 2022년 10월 살처분농장 - 전월평균시세 적용

○ 가축평가액 : ① 돼지 성장단계별 평가금액 + ② 종돈평가금액

$$434,447,714\text{원} + 162,130,330 = 596,578,044\text{원}$$

(2) 산란계

①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병아리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으로 함.
- 10주령 이상의 경우 현재 주령별 기준이 없는 관계로 10~78주령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산란중추(10주)의 금액(대한양계협회 제공)을 사용하였음
- 산란계의 경우 20주령부터 산란을 시작하며, 25주까지 산란율이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78주령이 지나면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본 과제에서는 78주령을 최대 경제성이 있는 산란계로 계산하였음.
- 계란의 경우 왕란, 특란, 대란으로 구분하여 (사)대한양계협회 월별 금액을 이용하였음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산란 용 원종 계· 종계	초생추 ~ 27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7주령	→ 생산바자존기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27주령 이상 ~ 70주령 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78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산란 용 실용 계	병아리 ~ 10주령 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10주령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육상추 가격을 기준
	10주령 이상 ~ 21주령 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21주령	→ 생산바자존기치(계란 판매개수 20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
	21주령 이상 ~ 78주령 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78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 노계 가격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 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산란계 주령별 가격 산출식

구 분	산 출 식
병아리	병아리 시세
1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1]$
2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2]$
3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3]$
4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4]$
5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5]$
6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6]$
7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7]$
8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8]$
9주령	병아리 시세 $[(10주령 시세-병아리 시세) \times 10\% \times 9]$
10주령	10주령 시세(70일령)
11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1]$
12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2]$
13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3]$
14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4]$
15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5]$
16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6]$
17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7]$
18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8]$
19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9]$
20주령	10주령 시세 $[(21주령 가격-10주령 시세) \times 9.0909\% \times 10]$
21주령	21주령 가격(생산비+잔존가치)
2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
23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
24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3]$
25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4]$
26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5]$
27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6]$
28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7]$
29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8]$
30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9]$
31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0]$
3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1]$
33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2]$
34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3]$
35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4]$
36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5]$
37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6]$
38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7]$
39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8]$
40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19]$
41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0]$
42주령	21주령 가격 $[(21주령 가격-78주령 이상 시세) \times 1.7544\% \times 21]$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 최근 2년간 산란 실용계 병아리 및 산란중추(10주), 계란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21주령은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음((사)대한양계협회).

연도/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산란중추 (10주)				계란			
		10주	20주	21주	78주 이상	왕란	특란	대란	
2019년	10월	1,050	3,700	14,395	15,465	576	115	108	104
	11월	1,050	3,700	14,395	15,465	576	115	108	104
	12월	1,050	3,700	14,237	15,291	782	129	121	116
2020년	1월	1,050	3,700	14,185	15,233	857	126	117	112
	2월	1,050	3,700	14,105	15,146	547	113	107	102
	3월	1,050	3,850	14,335	15,383	891	141	134	130
	4월	1,050	3,900	14,516	15,578	444	125	117	112
	5월	1,050	3,900	14,411	15,462	328	118	110	104
	6월	1,050	3,856	14,235	15,273	226	118	106	94
	7월	1,050	3,700	14,079	15,117	229	131	116	101
	8월	1,050	3,700	14,132	15,175	271	146	131	116
	9월	1,050	3,700	14,527	15,610	144	165	149	129
	10월	1,050	3,700	14,580	15,668	123	157	142	130
	11월	1,050	3,700	14,422	15,494	127	150	138	133
	12월	1,050	3,811	14,612	15,692	128	153	143	139
2021년	1월	1,213	4,038	15,577	16,731	163	185	176	170
	2월	1,379	4,586	17,101	18,352	105	200	192	185
	3월	1,638	5,900	18,441	19,695	139	195	186	180
	4월	1,750	7,222	19,657	20,901	115	198	189	182
	5월	1,761	7,400	19,730	20,963	128	205	196	189
	6월	1,850	7,400	19,862	21,108	163	206	197	190
	7월	1,850	7,400	19,809	21,050	318	203	194	187
	8월	1,850	7,000	18,961	20,157	377	201	187	172
	9월	1,838	6,900	18,492	19,651	413	190	174	156
	10월	1,750	6,900	18,070	19,187	442	164	152	140
	11월	1,750	6,900	17,991	19,100	421	161	152	145
	12월	1,706	6,900	18,255	19,390	454	160	151	145
2022년	1월	1,650	6,113	17,599	18,748	269	155	148	143
	2월	1,550	5,600	17,034	18,177	185	150	145	139
	3월	1,550	5,400	16,913	18,064	219	167	162	155
	4월	1,550	5,400	17,097	18,267	291	174	170	163

[자료 : (사)대한양계협회]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평가기준	비고
㉠	'19년, '20년, '21년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19년, '20년, '21년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9년, '20년, '21년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9년, '20년, '21년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㉞ 2019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㉟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19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784	47,513,749
	20주령	18,290	12,935	236,576,823
	100주령	17,347	415	7,199,005
	소계			291,289,576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32	2,670,876
	특란	23,100	119	2,748,900
	대란	2,460	110	271,338
	소계			5,691,114
합계				296,980,690

㊱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19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730	46,082,010
	20주령	18,290	12,685	232,007,097
	100주령	17,347	394	6,834,718
	소계			284,923,82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34	2,724,280
	특란	23,100	121	2,795,870
	대란	2,460	110	270,108
	소계			5,790,258
합계				290,714,083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19.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395	263,292,668
	100주령	17,347	576	9,991,872
	소계	322,429,80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15	2,340,312
	특란	23,100	108	2,497,110
	대란	2,460	104	254,856
	소계	5,092,278		
합계		327,522,083		

㉕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19.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237	260,399,525
	100주령	17,347	782	13,565,354
	소계	323,110,144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29	2,620,176
	특란	23,100	121	2,790,480
	대란	2,460	116	284,868
	소계	5,695,524		
합계		328,805,668		

㉔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185	259,435,145
	100주령	17,347	857	14,866,379
	소계	323,446,789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26	2,553,252
	특란	23,100	117	2,702,700
	대란	2,460	112	276,012
	소계	5,531,964		
합계		328,978,753		

㉕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105	257,988,573
	100주령	17,347	547	9,488,809
	소계	316,622,647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13	2,297,724
	특란	23,100	107	2,464,770
	대란	2,460	102	250,674
	소계	5,013,168		
합계		321,635,815		

㉔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90	50,343,930
	20주령	18,290	14,335	262,178,645
	100주령	17,347	891	15,456,177
	소계	327,978,752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41	2,867,592
	특란	23,100	134	3,104,640
	대란	2,460	130	318,570
	소계	6,290,802		
합계		334,269,554		

㉕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905	50,743,485
	20주령	18,290	14,516	265,504,097
	100주령	17,347	444	7,702,068
	소계	323,949,650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25	2,524,860
	특란	23,100	117	2,698,080
	대란	2,460	112	275,274
	소계	5,498,214		
합계		329,447,864		

㉔ 2020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0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580	266,668,001
	100주령	17,347	123	2,133,681
	소계	317,946,947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7	3,179,904
	특란	23,100	142	3,270,960
	대란	2,460	130	318,816
	소계	6,769,680		
합계		324,716,627		

㉖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0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413	263,614,128
	100주령	17,347	179	3,110,895
	소계	315,870,289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6	3,157,596
	특란	23,100	140	3,238,620
	대란	2,460	125	307,746
	소계	6,703,962		
합계		322,574,251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20.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45	49,145,265
	20주령	18,290	14,422	263,774,858
	100주령	17,347	127	2,203,069
	소계			315,123,192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0	3,044,028
	특란	23,100	138	3,190,110
	대란	2,460	133	326,442
	소계			6,560,580
합계				321,683,772

㉕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20.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1,878	50,033,165
	20주령	18,290	14,612	267,251,804
	100주령	17,347	128	2,220,416
	소계			319,505,38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3	3,106,896
	특란	23,100	143	3,310,230
	대란	2,460	139	342,432
	소계			6,759,558
합계				326,264,943

㉔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060	54,872,220
	20주령	18,290	15,577	284,903,950
	100주령	17,347	163	2,827,561
	소계	342,603,731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85	3,741,660
	특란	23,100	176	4,054,050
	대란	2,460	170	416,970
	소계	8,212,680		
합계		350,816,411		

㉕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341	62,353,602
	20주령	18,290	17,101	312,768,272
	100주령	17,347	105	1,821,435
	소계	376,943,309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200	4,064,112
	특란	23,100	192	4,425,960
	대란	2,460	185	456,084
	소계	8,946,156		
합계		385,889,465		

㉔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917	77,689,474
	20주령	18,290	18,441	337,283,998
	100주령	17,347	139	2,411,233
	소계	417,384,70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95	3,954,600
	특란	23,100	186	4,301,220
	대란	2,460	180	441,816
	소계	8,697,636		
합계		426,082,341		

㉕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3,392	90,343,825
	20주령	18,290	19,657	359,534,986
	100주령	17,347	115	1,994,905
	소계	451,873,716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98	4,013,412
	특란	23,100	189	4,365,900
	대란	2,460	182	448,458
	소계	8,827,770		
합계		460,701,486		

㉔ 2021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1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3,295	87,768,915
	20주령	18,290	18,070	330,500,096
	100주령	17,347	442	7,667,374
	소계			425,936,38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64	3,319,836
	특란	23,100	152	3,513,510
	대란	2,460	140	345,384
	소계			7,178,730
합계				433,115,115

㉖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1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3,349	89,200,654
	20주령	18,290	18,508	338,503,349
	100주령	17,347	411	7,123,835
	소계			434,827,837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85	3,747,068
	특란	23,100	171	3,944,710
	대란	2,460	156	384,252
	소계			8,076,030
합계				442,903,867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21.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3,295	87,768,915
	20주령	18,290	17,991	329,053,524
	100주령	17,347	421	7,303,087
	소계			424,125,526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61	3,269,136
	특란	23,100	152	3,506,580
	대란	2,460	145	356,208
	소계			7,131,924
합계				431,257,450

㉕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21.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3,264	86,940,208
	20주령	18,290	18,255	333,875,429
	100주령	17,347	454	7,875,538
	소계			428,691,175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60	3,234,660
	특란	23,100	151	3,488,100
	대란	2,460	145	357,192
	소계			7,079,952
합계				435,771,127

㉔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989	79,611,334
	20주령	18,290	17,599	321,891,319
	100주령	17,347	269	4,666,343
	소계	406,168,996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5	3,145,428
	특란	23,100	148	3,425,730
	대란	2,460	143	352,518
	소계	6,923,676		
합계		413,092,672		

㉕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765	73,651,305
	20주령	18,290	17,034	311,545,000
	100주령	17,347	185	3,209,195
	소계	388,405,500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50	3,145,428
	특란	23,100	145	3,425,730
	대란	2,460	139	352,518
	소계	6,726,192		
합계		395,131,692		

㉔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705	72,053,085
	20주령	18,290	16,913	309,333,571
	100주령	17,347	219	3,798,993
	소계	385,185,649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67	3,386,760
	특란	23,100	162	3,730,650
	대란	2,460	155	381,792
	소계	7,499,202		
합계		392,684,851		

㉕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계란수(개)	단가(원)	평가금액 (원)
산란계 주령별 수수(수)				
산란계 실용계	3주령	26,637	2,705	72,053,085
	20주령	18,290	17,097	312,708,904
	100주령	17,347	291	5,047,977
	소계	389,809,966		
계란수(개)				
계란	왕란	20,280	174	3,524,664
	특란	23,100	170	3,915,450
	대란	2,460	163	401,718
	소계	7,841,832		
합계		397,651,798		

(3) 육계

① 육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육계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생계유통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육용실용계 병아리 가격은 (사)대한양계협회 월별 육용 실용계의 병아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육계의 경우 일령별 가격은 병아리시세, 산지가격, 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육용 원종 계· 종계	초생추 ~ 31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31주령 이상 ~ 70주령 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70주령 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 계	사육단계	→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 출하일령이후)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 기준 산정)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 기준 금액을 최근 2년간 육용 실용계 병아리 및 육계(대, 중, 소)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대한양계협회 자료를 이용하였음

연도/월	육용실용계 병아리(원/수)	육계(원/kg)				30일령 평균시세(원/수)	
		대	중	소	평균		
2019년	11월	320	2,216	2,258	2,315	2,263	3,797
	12월	320	1,216	1,308	1,408	1,311	2,200
2020년	1월	320	1,182	1,243	1,343	1,256	2,108
	2월	320	1,264	1,356	1,456	1,359	2,280
	3월	320	1,220	1,300	1,400	1,307	2,193
	4월	320	1,012	1,104	1,204	1,107	1,858
	5월	320	964	1,056	1,156	1,059	1,777
	6월	320	1,173	1,254	1,354	1,260	2,114
	7월	320	1,319	1,393	1,493	1,402	2,353
	8월	320	1,351	1,417	1,517	1,428	2,396
	9월	383	1,413	1,429	1,529	1,457	2,445
	10월	358	1,108	1,200	1,300	1,203	2,019
	11월	320	1,284	1,352	1,452	1,363	2,287
	12월	464	1,531	1,623	1,723	1,626	2,728
2021년	1월	633	1,998	2,055	2,155	2,069	3,472
	2월	820	1,630	1,644	1,722	1,665	2,794
	3월	683	1,435	1,527	1,568	1,510	2,534
	4월	487	1,463	1,555	1,655	1,558	2,614
	5월	376	1,261	1,353	1,453	1,356	2,275
	6월	370	1,231	1,323	1,423	1,326	2,225
	7월	509	1,744	1,836	1,936	1,839	3,086
	8월	420	1,691	1,724	1,824	1,746	2,930
	9월	458	1,412	1,442	1,542	1,465	2,458
	10월	483	1,966	2,021	2,121	2,036	3,416
	11월	342	1,349	1,382	1,482	1,404	2,356
	12월	353	1,560	1,652	1,752	1,655	2,777
2022년	1월	458	1,933	2,025	2,125	2,028	3,403
	2월	808	1,964	2,056	2,156	2,059	3,455
	3월	845	2,303	2,395	2,495	2,398	4,024
	4월	770	2,184	2,276	2,376	2,279	3,824

[출처 : (사)대한양계협회]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평가기준	비고
㉠	'19년, '20년, '21년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19년, '20년, '21년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9년, '20년, '21년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9년, '20년, '21년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㉞ 2019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㉟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19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70	4,700,000
	4주령(30일)	10,000	2,220	22,200,000
합계				26,900,000

㊱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19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37	4,366,667
	4주령(30일)	10,000	1,973	19,730,000
합계				24,096,667

㊲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19.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3,797	37,970,000
합계				41,170,000

㊳ 최초발생 1개월경과 살처분농장 (2019.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2,200	22,000,000
합계				25,200,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2,108	21,080,000
합계				24,280,000

㊤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0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2,280	22,800,000
합계				26,000,000

㊤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2,193	21,930,000
합계				25,130,000

㊤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1,858	18,580,000
합계				21,780,000

㉔ 2020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㉔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0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58	3,575,000
	4주령(30일)	10,000	2,019	20,190,000
합계				23,765,000

㉔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0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51	3,510,000
	4주령(30일)	10,000	2,421	24,210,000
합계				27,720,000

㉔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20.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20	3,200,000
	4주령(30일)	10,000	2,287	22,870,000
합계				26,070,000

㉔ 최초발생 1개월경과 살처분농장 (2020.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64	4,644,440
	4주령(30일)	10,000	2,728	27,280,000
합계				31,924,44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633	6,325,000
	4주령(30일)	10,000	3,472	34,720,000
합계				41,045,000

㊤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0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820	8,200,000
	4주령(30일)	10,000	2,794	27,940,000
합계				36,140,000

㊤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683	6,825,000
	4주령(30일)	10,000	2,534	25,340,000
합계				32,165,000

㊤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87	4,866,667
	4주령(30일)	10,000	2,614	26,140,000
합계				31,006,667

㉔ 2021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1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82.5	4,825,000
	4주령(30일)	10,000	3,416	34,160,000
합계				38,985,000

㉖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1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53.3	4,533,000
	4주령(30일)	10,000	2,934.7	29,347,000
합계				33,880,000

㉗ 최초발생 당월 평균시세(2021.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42.2	3,422,000
	4주령(30일)	10,000	2,356.0	23,560,000
합계				26,982,000

㉘ 최초발생 1개월경과 살처분농장 (2021.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353.3	3,533,000
	4주령(30일)	10,000	2,777	27,770,000
합계				31,303,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457.5	4,575,000
	4주령(30일)	10,000	3,403	34,030,000
합계				38,605,000

최초발생 3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808	8,075,000
	4주령(30일)	10,000	3,455	34,550,000
합계				42,625,000

㊤ 최초발생 4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845	8,450,000
	4주령(30일)	10,000	4,024	40,240,000
합계				48,690,000

㊤ 최초발생 5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육계 주령별 수수(수)				
육계	육계 실용계 병아리	10,000	770	7,700,000
	4주령(30일)	10,000	3,824	38,240,000
합계				45,940,000

(4) 오리

① 오리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오리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 적용.
- 오리 병아리 시세와 10일령, 43일령(3kg)으로 설정하여 일령별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 산출계산식

구분		산출계산식
육용오리·종오리	병아리	→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 거래가격
	오리 병아리 ~28주령 미만	→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 기준 주령 단위 산정
	28주령	→ 생산바자준가치(종란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28주령 이상 ~78주령 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 주령 단위 산정
	78주령이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 기준. 단,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병아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병아리41일령	→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42일령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조사발표가격 기준
	43일령 이후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kg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종란	→ 병아리 가격의 1/2(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 가격의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 기준. 단,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조사 산지가격 기준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오리 일령별 가격 산출식

구 분	산 출 식
병아리	병아리 시세(오리협회 조사가격)
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
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
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
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4
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5
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6
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7
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8
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9
1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0
1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1
1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2
1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3
1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4
1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5
1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6
1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7
1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8
1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19
2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0
2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1
2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2
2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3
2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4
2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5
26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6
27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7
28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8
29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29
30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0
31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1
32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2
33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3
34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4
35일령	병아리 시세 +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 × 35

구 분	산 출 식
3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6
3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7
38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8
39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39
40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0
41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1
42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2
43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3
44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4
45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5
4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6
4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7
48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8
49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49
50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0
51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1
52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2
53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3
54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4
55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5
56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6
57일령	병아리 시세 +[(43일령 시세-병아리시세)/(43일령-1일령)]×57

□ 살처분 보상금 적용 시세자료

○ (사)대한오리협회의 병아리시세와 42일령(3kg) 기준 가격을 활용하였음

연도/월		1일령새끼오리가격 (원)	43일령 가격 (원)
2019년	11월	800	7,220
	12월	800	7,100
2020년	1월	800	7,100
	2월	800	7,100
	3월	800	7,100
	4월	800	5,603
	5월	800	5,203
	6월	800	5,867
	7월	800	6,768
	8월	800	6,800
	9월	800	6,800
	10월	800	6,800
	11월	1,043	7,133
	12월	1,200	7,329
2021년	1월	1,200	7,842
	2월	1,200	9,050
	3월	1,200	10,152
	4월	1,200	11,017
	5월	1,200	10,642
	6월	1,200	10,110
	7월	1,200	10,484
	8월	1,200	10,910
	9월	1,543	10,910
	10월	1,700	10,910
	11월	1,723	10,910
	12월	1,800	10,910
2022년	1월	1,800	10,910
	2월	1,800	10,910
	3월	1,729	10,910
	4월	1,710	10,910

[출처 : 한국오리협회]

○ 살처분 농장 : 가축평가액 100% (감액 없음)

구분	평가기준	비고
㉠	'19년, '20년, '21년 10월 평균시세*	현행 규정
㉡	'19년, '20년, '21년 8~10월 평균시세**	3개월 평균시세
㉢	'19년, '20년, '21년 11월 평균시세***	최초 발생 당월
㉣	'19년, '20년, '21년 1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1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1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2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2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3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3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4개월경과
㉧	'20년, '21년, '22년 4월 평균시세*****	최초발생 5개월경과

* 전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최초발생 전월 기준으로 평균시세를 적용, **3개월 평균시세 : 가축전염병 발생 전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최초 발생 당월 시세, ****최초 발생 1개월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2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3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4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최초 발생 5개월경과후 평균시세 적용

㉞ 2019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㉟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19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315	63,149,238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963	119,813,400
합계			182,962,638	

㊱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19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104	61,043,675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078	115,391,717
합계			176,435,391	

㊲ 2021년 12월 예방적 살처분농장(2019.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288	62,875,714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848	119,239,000
합계			182,114,714	

㊳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19.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185	61,850,0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417	117,085,000
합계			178,935,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185	61,850,0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417	117,085,000
합계				178,935,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185	61,850,0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417	117,085,000
합계				178,935,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185	61,850,0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417	117,085,000
합계				178,935,00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0.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4,905	49,054,214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18,043	90,213,850
합계				139,268,064

㉔ 2020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0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5,929	59,285,714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2,340	111,700,000
합계		170,985,714		

㉖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0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5,929	59,285,714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2,340	111,700,000
합계		170,985,714		

㉗ 2021년 12월 살처분농장(2020.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249	62,485,0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2,906	114,530,500
합계		177,015,500		

㉘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20.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439	64,388,357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3,203	116,015,550
합계		180,403,907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6,877	68,773,286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5,045	125,223,900
합계			193,997,186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7,910	79,098,81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29,382	146,907,500
합계			226,006,31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8,852	88,518,286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3,338	166,688,400
합계			255,206,686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1.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91	95,911,976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6,443	182,215,150
합계			278,127,126	

㉔ 2021년 11월 시 최초 발생에 따른 가축 평가액

㉕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2021년 10월 평균 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72	95,723,571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764	173,819,500
합계		269,543,071		

㉖ 최초 발생 전월기준 최근 3개월 평균시세 (2021년 8~10월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41	95,405,50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5,331	176,655,550
합계		272,061,050		

㉗ 2021년 12월 살처분농장(2021.1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76	95,756,976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704	173,521,650
합계		269,278,626		

㉘ 최초발생 1개월경과 평균시세(2021.12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87	95,868,81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505	172,524,500
합계		268,393,31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87	95,868,81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505	172,524,500
합계				268,393,31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1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87	95,868,81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505	172,524,500
합계				268,393,31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3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77	95,765,690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689	173,443,950
합계				269,209,640

㊤ 최초발생 2개월경과 평균시세(2022.04 평균시세)

구분	주령	사육수수(수)	단가(원)	평가금액(원)
오리 주령별 수수(수)				
오리	10일령 오리가격(원)	10,000	9,574	95,738,095
	42일령 오리가격(원)	5,000	34,738	173,690,000
합계				269,428,095

[첨부 2 -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살처분 보상금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의 2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

- ① 가축이 이미 알려진 가축의 전염성 질병과 그 증세 또는 치료 결과가 명백히 다른 질병 이하 새로운 질병이라 한다. 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은 제 44 조 또는 제45 조에 따른 검사 중에 가축이 새로운 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다.
-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 3 항의검사에 따라 해당 가축이 걸리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며 가축전염성질병임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 4 항의 경우에는 동항 의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질병의 병원 및 병인을 찾기 위하여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에게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다.
- ⑥ 제 5 항에 따른 명령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실시일의 3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 실시한다.
 1. 실시의 목적
 2. 실시하는 구역
 3. 실시 대상이 되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종류 및 범위
 4. 실시일
 5. 검사의 방법
- ⑦ 농림수산대신은 제 4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 4항의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정보수집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감시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에게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또는 신고전염병, 이하 감시전염병 이라한다.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발생을 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발생 상황 및 동향, 이하 이 조에서 발생 상황 등이라 한다. 질병을 파악하기 위한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6조 1(주사 약물목록 또는 투약)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질병 제 4 조의 2 제 5 항의 검사의 실시의 목적으로서 공개된 것을 말한다. 또는 감시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가축방역원의 주사 약물목록 또는 투약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1조 1항(검사, 주사, 약물목록 또는 투약)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방역원에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축의 검사, 주사, 약물목록 또는 투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6조 (살처분의 의무)

- ① 다음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방역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환축
 2. 우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의사환축
- ② 제 1 항의 가축의 소유자는 같은 항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가축을 살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축방역원은 제 1 항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가축에 대하여 같은 항의 지시를 대신하여 직접 살처분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7조 (환축등의 살처분)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가축의 소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가축을 살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유행성뇌염, 광견병, 수포성구내염, 리프트게곡열, 탄저, 출혈성패혈증,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파이로플라스마증, 아나플라스마감염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저, 말점염성빈혈,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돼지수포병, 가금콜레라, 뉴캐슬병 또는 가금티푸스인 환축
 2. 우폐역, 수포성구내염, 리프트게곡열, 출혈성패혈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저,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돼지수포병, 가금콜레라 또는 뉴캐슬병인 의사환축
-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 소재지를 알지못해 제1항의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축방역원에게 해당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0조 (병성감정을 위한 처분)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병성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방역원에게 가축의 사체를 부검하게 하거나 부검을 위하여 의사환축을 살처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가축방역원은 병성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를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21조(사체의 소각 등의 의무)

- ① 다음의 가축 사체의 소유자는 가축방역원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 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광견병, 수포성구내염, 리프트게곡열, 탄저, 출혈성패혈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저,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돼지열, 아프리카돼지열, 돼지수포병, 가금콜레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뉴캐슬병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사체
 2. 유행성뇌염,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말전염성빈혈도는 가금티푸스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사체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을 제외한다.
 3. 지정가축의 사체
- ② 제 1 항의 사체는 같은 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서는 아니 되는 사체는 가축방역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 ④ 가축방역원은 제 1 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가축의 사체에 대하여 같은 항의 지시를 대신하여 직접 이를 소각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
- ⑤ 전달성해면상뇌증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사체의 소유자에 대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적용에 대한 조치는 소각 또는 매몰 중에서 "소각"으로 한다.
- ⑥ 광역자치단체장은 제 1 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해당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해당 소각 또는 매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토지의 확보,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언, 지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준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광역자치단체장은 제 6 항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농림수산대신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협력을 요구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23조 (오염물품의 소각 등의 의무)

-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소유자, 해당 물품이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 중인 것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운송업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원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을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여 야 한다. 다만, 가금티푸스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가축 등의 이동 제한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축, 그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의 이동, 해당 광역자치단체로의 반입 또는 해당자치단체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축, 그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해당 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3조(가축집합시설의 개최 등의 제한)

-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하여 경마, 가축시장, 가축품평회 등 가축을 모이게 하는 행사의 개최 또는 도축장이나 화제장 사업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방목 등의 제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축을 방목, 교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의 도축 또는 부화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46조 (검사에 따른 처치)

- ① 농림수산대신은 제 1 항의 검사에서 신고전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동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들을 격리하거나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 1 항의 검사 중에 그 검사와 관련된 동물이 새로운 질병에 걸리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 또는 그 깔집,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들을 격리 또는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새로운 질병이 가축 전염성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62조 1항(후생노동성과 환경장관과의 관계)

1. 가축 기타 동물에 대해 전염병 이외의 전염성 질환의 발생 또는 만연의 징표가 있고,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령으로, 동물 및 질병의 종류 및 지역을 지정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한, 제3조의 2, 제5조부터 제12조의 2까지, 제3장의 규정 및 이에 따른 이 장의 규정 및 제4장의 규정 (제36조의 2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제5조로부터 제12조의 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성장관령으로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할 때는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첨부 3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 실시요령]

(농림수산성 축산부 헤세이 24년(2012년) 3월 29일 제정, 레이와 4년(2022년) 3월 28일 개정)

가축의 전염병 중 구제역, 우역, 우폐결핵,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및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전파력이 매우 강하게 자국의 축산 경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생산 농장이 경영 재개까지 필요한 경비 등을 생산자가 상호 지원함으로써, 방역 조치의 원활화 및 이상 발견시의 조기의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독립 행정법인 농축 산업 진흥 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는,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등을 실시한 축산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호조금 교부를 실시하는 사업을, 독립 행정법인 농축 산업 진흥 기구법(2004년 법률 제126호)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구가 보조함으로써, 일본의 축산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이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30년(1955년) 법률 제179호. 이하 「보조금 적정화법」이라고 한다.),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30년(1955년) 정령 제255호), 「축산업 진흥 사업의 실시에 대해」(2005년 10월 1일부 15 농축기 제48호-1) 및 「축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의 정지 조치에 대해서」(헤세이 26년 3월 31일부 25 농축기 제 5376호)에 정하는 것 외,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 1조] 사업 실시 주체

이 사업의 사업 실시 주체는, 제 2 사업에서는, 레이와 3년(2021년)도 축산업진흥사업 등에 관련된 공모 요령(레이와 3년(2021년) 1월 15일부 2 농축기제 5539호)에 의해 응모한 자로부터 선정된 자(이하 「공모 단체」라고 한다.)로 한다.

[제 2조]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방역 호조 사업

(1) 호조금 교부 사업

공모 단체는, 별표 1에 기재된 질병(이하 「교부 대상 질병」이라고 한다.)의 발생시에 가축의 살처분 등을 실시한 축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모 단체와 가축 방역 호조금 교부 계약(이하 「교부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축산경영체(이하 「사업 참가자」라고 함)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쇼와 26년(19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가전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기초, 가축 등의 이동 등의 제한 등이 실시된 구역 및 해당 구역 외에 가전법 제 1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격리를 지시한 구역(이하 아래 이들을 「이동 제한 구역 등」이라고 한다.)가 해제된 농장에서 경영개 등을 하는 자에게 호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호조금 교부 인정 사업

공모 단체는 교부 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호조금의 교부 단가를 인정하는 호조금 교부 인정위원회의 개최 및 이것에 필요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다.

2. 가축방역 호조 등 추진사업 : 공모 단체는 1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 추진 회의 개최, 사업의 보급, 지도 및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기구의 보조

기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보조 대상 경비 및 보조율에 따라 공모 단체가 제 2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보조한다.

[제 4조] 사업의 실시

1. 사업의 위탁 : 공모단체는 제2의 사업의 일부를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사업 실시 기간 : 이 사업의 실시 기간은, 레이와 3년(2021년)부터 레이와 5년(2023년) 기간 중 발생하는 교부 대상 질병에 대한 호조금의 교부를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3. 사업의 요건 등

(1) 업무 방법서의 작성

공모 단체는, 제2의 1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미리 다음에 나열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 방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사업의 취지, 내용, 방법
- 사업 실시 기간에 관한 사항
- 호조금 교부 계약의 체결, 해약에 관한 사항
- 계약두수에 관한 사항
-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 반환에 관한 사항
- 생산자 적립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호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2) 교부 계약

① 공모 단체는, 2의 사업 실시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서 가전법 및 가전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해 정해진 사양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 참가자 신청에 의해 교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부계약은 계약대상이 되는 가축의 두수 또는 수수에 관한 사항,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호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3) 사업 참가자

① 공모 단체는 돼지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닭에 대해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업 참가자의 구분에 따라 계약 구분 (이하 "계약 구분"을.)을 하는 것으로 한다.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사업주와 생계사업자 1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가 1사람 이상의 양돈업 또는 양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또는 회사(이하 「기업형」이라고 한다.) 이외의 「가족형」이라고 한다.)

- ② 사업 참가자는 기업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족형의 계약구분에 따라 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업 참가자는 계약 기간 중 매년 1 회를 한도로 계약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공모 단체는 기업형 계약 구분으로 계약 한 사업 참가자로부터 호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사업 참가자가, 기업형의 계약 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족 형 계약 구분으로 변경해야한다.

(4) 계약 대상 농장

계약 대상 농장은, 교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동 제한 구역 등의 밖에 존재해야 한다.

(5) 계약 대상 두수, 수수

- ① 계약 대상 가축의 두수 또는 수수는, 사업 참가자가 사육하는 별표 3의 가축의 종류, 계약 구분 및 가축의 구분(이하 「가축의 종류 및 구분」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 실시 기간에 있어서의 계약 대상 농장별 두수, 수수로 한다.
- ② 사업 참가자는, 교부 계약 체결 후에, 계약 대상 가축의 예상 두수, 수수 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공모 단체에 대하여, 계약 대상 가축의 예상 마리수 등의 변경의 절차를 시행한다.

(6)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납부 방법 등

- ① 생산자 적립금 : 사업 실시 기간에 가축의 종류마다 호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에서 기구가 보조하는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사업 실시 기간에 예상되는 계약 대상 마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별표 3에 표기한 가축의 종류 및 구분에 따라 1마리당 금액을 생산자 적립금으로 한다.
- ②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 방법 등
 - ㉠ 사업참가자는, 공모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가축의 종류 및 구분에 따라, 각 사업참가자의 계약 대상 가축의 마리수에 따른 별표 3에 게시된 단가(계약 구분 변경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그 차액)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생산자 적립금으로 교부 계약을 체결한 공모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 ㉡ 공모 단체는 (아)에 정하는 것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이 정하는 비율 (추가 부담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생산자 적립금으로서 사업 참가자로부터 납부시킬 수 있다.
 - ㉢ 생산자 적립금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a. (7)의 우 및 예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할 때.
 - b. 계약 구분의 변경에 관한 교부 계약 체결 후, 이미 납부한 생산자 적립금 정산이 필요할 때.

(7) 가축 방역 호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공모 단체는 (6)의 ①의 ②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생산자 적립금으로 가축 방역 호조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생산자 적립금 중 소와 관련된 쇠고기 생산자 기금, 돼지 관련 돼지 생산자기금, 닭, 메추라기, 오리, 꿩, 호로호로조, 칠면조 및 타조(이하 「닭과 기타 가금」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닭과 기타 가금을 기금생산자 가축 방역 호

조 기금으로 마련하고, 각각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서 운용에 의해 생긴 과실은 해당 기금으로 이체한다. 이 공모 단체는, 제 2조의 1의 (1)에 규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총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방역호조기금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공모 단체는, 사업 실시 기간 종료 시점에서, 소 생산자 기금 및 돼지 생산자 기금에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축 방역 호조 기금 조성 등 지원 사업 실시요강(혜세이 15년(2003년) 10월 1일부 15 농축기 제 48호. 이하 “구 요강” 이라고 한다.) 별지 실시 기준 9의 (6)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잔액 중 1/2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익 사단 법인 중앙 축산회의 호조 지원 기금 (구 요강 제2의 1에 근거해 조성된 가축 방역 호조 기금 중, 기구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에 넣고, 입금 후의 잔액은 사업 참가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모 단체는 사업 실시 기간 종료 시점에서 닭 및 기타 가금생산자 기금에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을 사업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호조금

호조금의 단가, 교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단가의 설정

- ㉠ 이사장은 농림수산성의 농업경영통계조사 중 축산물생산비 통계 및 영농유형별 경영 통계 및 후생 노동성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등에 근거하여, 가축의 종류 및 구분별 호조금 교부 상한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별표 4와 같다.
- ㉡ 공모단체의 장은 적정한 호조금 교부액을 산정하기 위해 호조금 교부인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축의 종류 및 구분에 따른 계약 구분별의 1마리수당 호조금 교부 단가((a)에 기초한 별표 4의 호조금 교부상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1의 경영 지원 호조금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며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가 인정한 것. 이하 「교부 단가」라고 한다.)를 설정한다.

산정 기준

a. 고정 경비 보정

(a) 고용노임보정(①)

$$\text{교부 상한 단가에서 고용노임} \times \frac{\text{교부대상 농장의 1마리당 고용노임}^{*1}}{\text{생산비의 1마리당 고용노임}}$$

※①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고용 노임과 고용 노임 데이터가 없으면, 대신에 고용 노동시간 기준으로 산출작업 시간으로 계산한다.

(b) 지대(地代) 보정 (②)

$$\text{교부 상한 단가에서 지대} \times \frac{\text{교부대상 농장의 1마리당 지대}^{*2}}{\text{생산비의 1마리당 지대}}$$

※②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지불 지대와 그리고, 노선가(路線價) 등에 의해 산정한다.

(c) 감가상각비 보정(③)

교부 상한 단가에서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교부대상농장의1마리당 감가상각비}^{*3}}{\text{교부대상농장의1마리당 감가상각비}}$

※③ 교부 대상 농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1마리당의 건물 상각비 이다.

b. 공사(空축, 가축 비사육) 기간 보정(④)

보정 계수 = $\frac{\text{교부대상농장의가축도입계획의공사기간}^{*4}}{\text{교부상한단가의공사기간}}$

※④ 교부 대상 농장에서 교부 대상 질병의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경영 재개 후 새로운 가축의 도입이 종료 된 날까지의 기간 (1개월 미만은 반올림)

c. 호조금 교부 단가의 산정(⑤)

호조금 교부 단가^{*5} = (①+②+③+기타 고정비) \times ④

※⑤ 호조금 교부 상한 단가를 상회한 경우는, 해당 상한 단가를 호조금 교부 단가로 한다.

(주) 닭 및 기타 가금에 대해서는, 1마리 당 1개월 기준으로 읽는다.

㉞ 공모 단체의 장은, 호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호조금 교부액 인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 돼지 및 닭 및 기타 가금의 상호 보조금 교부와 관련 각 생산자 기금, 돼지 생산자 기금 및 닭 및 기타 가금 생산 자기금의 총 금액이 지불해야 할 상호 보조금의 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호조금 교부액을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호조금의 교부 : 공모 단체는, 사업 참가자로부터 호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호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호조금의 교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모 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가 고의 또는 심각한 과실로 인해 교부 계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6)의 이에 근거한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호조금의 종류 및 호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마리 수 (이하, 「교부 대상 마리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열거 된 대로 교부액은, 교부 대상 마리수에 아의 교부 단가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가축의 종류 및 구분마다의 교부 대상 마리수는, (5)의 계약 대상가축의 머리 마리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경영지원 호조금 : 경영 지원 호조금이란, 다음 a로부터 c까지 중 어느 하나에 게재된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사업 참가자의 계약 대상 농장에서, 해당 사업 참가자가 그 경영을 재개 할 때, 가축 도입 계획 등에 근거하여 가축의 도입을 완료되기 전에 필요한 공사(비사육기간) 부분의 고정 경비 등을 지원한다. 첨부 대상 마리수는, 다음의 a로부터 c의 어느 하나에 게재된 곳에 의한 것으로 한다.

a. 소의 경영 지원 호조금의 교부 대상 두수는, 다음의 (a) 또는 (b)에 게재된 소 중 적은 두수를 적용한다.

(a) 가전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된 젖소 및 육용소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소

(b) (a)에 게재된 소를 사육하고 있던 계약 대상 농장에 있어서, (a)에 게재된 소 대신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에서 모임에서 인증 된 도입 계획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되면 확실히 예상되는 젖소 및 육용소. 그러나 강한 농업 만들기

- 교부금 또는 국가 및 기구의 보조 사업에서 번식 암소의 도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소는 제외한다.
- b. 돼지의 경영 지원 호조금의 교부 대상 두수는, 다음의 (a) 또는 (b)에 기재된 돼지 중 어느 것보다 적은 두수로 한다.
- (a) 가전법 제16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 된 돼지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돼지
- (b) (a)에 기재된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계약 대상 농장에 있어서, (a)에 기재된 돼지 대신에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호조금 교부 인정 위원회에서 인증 된 도입계획 등에 따라 새로 도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돼지. 단,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또는 국가 및 기구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도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돼지를 제외하고, 번식용 후보 돼지 (암컷)의 도입에 대해서는, 해당 돼지와 비육돈 도입시 11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 c. 닭 및 기타 가금의 경영 지원 호조금의 교부 대상 마리수는 다음의 (a)또는 (b)에 기재된 닭 및 기타 가금 중 어느 것보다 적은 마리수의 것으로 한다.
- (a) 교부 대상 질병의 발생 농장에서 교부 대상 질병의 발생에 의해 폐사 또는 가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처분 된 닭 및 기타 가금으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닭 및 기타 가금
- (b) (a)에 기재된 닭 및 기타 가금을 사육하고 있던 계약 대상 농가 현장에서 (a)에 기재된 닭 및 기타 가금 대신 새롭게 도입되거나 교부금 교부 인정위원회에서 인정된 도입 계획 등에 의거하여, 새롭게 도입이 확실히 전망되는 닭 및 기타 가금
- ⑤ 소각·매각 등 호조금 : 소각·매각 등 호조금이란, 다음의 a로부터 c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가축을 사육하고 있던 사업 참가자에 대해, 가축을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를(이하 "소각 등"이라고 함)하기 위해 사업 참가자가 부담 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호조금의 교부 대상 마리수는, a에서 c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가축이며, 사업 참가자의 부담에 의해 소각 등 처리된 것으로서 가축 방역원등이 확인한 마리수로 한다.
- a. 소
가전법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처분 된 젖소 및 육용소로서 가축 방역원 등이 확인한 소
- b. 돼지
가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살처분 된 돼지로서 가축 방역원등이 확인한 돼지
- c. 닭 및 기타 가금
(a)의 c의 (a)에 기재된 닭 및 기타 가금
- (9) 공모 단체는 호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각각의 생산자 기금 및 기구의 보조금을 기금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각각 교부액의 2분의 1씩을 채우기로 한다. 다만, 가축의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 참가자에게는, 교부해야 할 호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호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10)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에 대해서 공모 단체는, 사업 참가자(그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을 포함한다.)가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교부 계약을 해제하는 것 및 호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또는 이미 교부한 호조금을 반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보조금 교부의 수속 등

1. 보조금의 교부 신청 : 공모 단체는 제 2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별지양식 제1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 후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보조금의 교부 변경 신청 : 공모 단체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있는 후에, 다음에 게재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별지 양식 제2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1의 수속에 준해 이사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는다.
 - (1)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
 - (2) 사업비의 30%를 넘는 증감
 - (3) 보조금의 교부 결정 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비의 증가
3. 보조금의 대략적인 보조금 지불
 - (1) 이사장은 이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교부 결정액을 한도로 하여 보조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 공모 단체는, 보조금의 개산 지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지 양식 제 3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 보조금 개산 지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실적보고 : 공모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있던 연도의 다음 해의 4월 20일 중 빠른 날짜까지 별지 양식 제4 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 6조] 사업의 추진 지도 등

1. 공모 단체는, 농림수산성 및 기구의 지도하, 도도부현, 관계 단체 등과의 제휴에 노력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공모 단체는, 이 사업의 취지,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철저히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도부현 등의 지도하에, 관계 단체 등과의 제휴에 노력함으로써, 소, 돼지 및 닭 및 기타 가금을 사육하는 모든 생산자는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제 7조]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취급

1. 공모 단체는, 기구에 제 5의 1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한, 해당 보조금에 관한 구매에 관한 소비세 등 상당액 (보조 대상 경비에 포함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소비세법 쇼와 63년 (1988년)법률 제108호)에 규정하는 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과 해당 금액에 지방세법(쇼와 25년 (1950년) 법률 제226호)에 규정하는 지방 소비세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합계액에 보조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보조금의 교부 신청액에서 감액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시에 해당

보조금에 관한 구매와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모 단체는, 1의 조건에 의해 신청을 한 경우에, 제5의 4에 관계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 보조금에 관한 구매에 관한 소비세 등 상당한 금액이 분명해지면 보조금액에서 감액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공모 단체는, 1의 조건에 의해 신청을 한 경우에, 제5의 4에 관계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한 후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신고로 해당 보조금과 관련있는 구매에 관한 소비세 등 상당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양식 제5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매입에 관련된 소비세 등 상당 금액 보고서를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금액(2의 규정에 따라 감액 한 경우, 그 감액 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구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조금과 관련 구매에 관한 소비세 등 상당액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라도, 그 상황 등에 대해서, 보조금 적정화법 제15조의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통지가 있던 날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같은 식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8조] 장부 등의 정비 보관 등

1. 공모 단체는, 이 사업에 관한 경리를 적정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정비해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보존기간은 사업이 완료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이다.
2. 기구는,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 이 사업의 실시 및 실적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공모 단체에 조사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기타

이 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것 외,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헤세이 24년(2012년) 3월 29일부 23 농축기 제 5208호)이 내용은, 헤세이 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해, 헤세이 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헤세이 25년(2013년) 4월 1일부 24 농축기 제 5259호)

1. 이 요강의 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헤세이 24년에 종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요강에 의한 개정전의 규칙 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부칙(헤세이 26년(2014년) 4월 1일부 25 농축기 제 5384호)

1. 이 요강의 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3년에 종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요강에 의한 개정 전의 규칙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부칙(헤세이 27년(2015년) 4월 1일부 26 농축기 제 5880호)

1. 이 요강의 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6 년까지 종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요강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부칙(혜세이 29년(2017년) 5월 31일부 29 농축기 제 1149호)

1. 이 요강의 개정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3월 16일부 29 농축기 제 6547호)

1. 이 요강의 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7년까지 종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요강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부칙(영화 원년(2019년) 12월 27일부 전 농축기 제 5764 호)

이 요강의 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2년(2020년) 2월 5일부 전 농축기 제 6585호)

이 요강의 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2년(2020년) 3월 27일부 전 농축기 제 7775호)

이 요강의 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부 대상 질병의 종류	교부 대상 가축의 종류
1 구제역	소, 돼지
2 우역	소, 돼지
3 소폐결핵	소
4 아프리카돈열병	돼지
5 돼지열병	돼지
6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닭, 메추리, 오리, 꿩, 호로호로조, 칠면조와 타조
7 저병원성인플루엔자	닭, 메추리, 오리, 꿩, 호로호로조, 칠면조와 타조

[별표 2]

사업의 종류	보조대상 경비	보조율
1 가축방역호조사업	1 공모단체가 교부 대상 질병 발생 시에 호조사업에 기반 한 호조금을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공모단체가 현지조사와 함께 호조금 교부인정위원회와 호조금 교부인정위원회를 개최 시 필요한 경비	1/2 이내 그러나 교부 대상 가축당의 교부 상한가격은 발표 4에 명시 정액
2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 사업	공모단체가 중앙 추진회의 개최, 사업보급, 지도와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	정액

[별표 3]

가축의 종류	계약 구분	가축의 구분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소	-	1. 젖소(물소(식용생산용 제한)를 포함) (1) 젖소(24개월령 이상의 소) (2) 젖소(24개월령 미만의 소)	1두당	245엔
		2. 육용우 (1) 비육전용 종 번식암소(24개월령 이상의 소) (2) 비육전용 종 번식 암소 (24개월령 미만의 소와 비육전용 종 번식암소 후보용 송아지 포함) 또한 고기 전용 종 비육우 (비육용 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아지포함.)	1두당	235엔
		(3) 비육전용종과 젖소의 교잡종(이하 교잡종이라고 한다) 비육우(교잡종 비육우 송아지) 비육우(교잡종 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아지 포함.)	1두당	125엔
		(4) 젖소 비육우(물소(식용 생산목적에 한함)를 포함)를 포함. 또한, 유용종 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를 포함한다.)	1두당	95엔
돼지	가족형	1 번식용 모돈(암) 2 번식용 웅돈(수) 3 도축장에 출하되는 비육돈	1두당	375엔
	기업형	1 번식용 모돈(암) 2 번식용 웅돈(수) 3 도축장에 출하되는 비육돈	1두당	105엔
닭	가족형	1 채란계(성계 120일령이상) 2 채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3 브로일러 4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5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8엔
	기업형	1 채란계(성계 120일령이상) 2 채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3 브로일러 4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5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4엔
메추리	-	-	5마리당	7.5엔
오리	-	-	1마리당	2엔
꿩	-	-	1마리당	2엔
호로호로조	-	-	1마리당	2엔
칠면조	-	-	1마리당	2엔
타조	-	-	1마리당	190엔

[별표 4]

가축의 종류, 계약 구분과 가축의 구분	교부상한 단가	
1 경영지원 호조금		
(1) 젖소(물소(식용생산 목적에 한함)를 포함)		
<u>아.</u> 젖소(24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193,000엔
<u>이.</u> 젖소(12개월령 미만의 소)	1마리당	28,000엔
<u>우.</u> 젖소(12개월령 미만의 소)	1마리당	23,000엔
(2) 비육우		
<u>아.</u> 비육 전용종		
(아) 번식용 암소(24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186,000엔
(이) 번식용 수소(12개월령 이상, 24개월령 미만의 소)와 비육우(암소, 12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58,000엔
(우) 비육우(암소, 12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58,000엔
(예) 송아지(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1마리당	58,000엔
<u>이.</u> 교잡종		
(아) 비육우(12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36,000엔
(이) 송아지(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1마리당	34,000엔
<u>우.</u> 젖소종(물소(식용생산 목적에 한함)를 포함)		
(아) 비육우(암소, 12개월령 이상의 소)	1마리당	28,000엔
(이) 송아지(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1마리당	23,000엔
(3) 돼지		
<u>아.</u> 가족형		
(아) 가족형(암)	1마리당	48,000엔
(이) 가족형(수)	1마리당	48,000엔
(우) 비육돈(21일령 이상의 것)	1마리당	10,000엔
<u>이.</u> 기업형		
(아) 가족형(암)	1마리당	55,000엔
(이) 가족형(수)	1마리당	55,000엔
(우) 비육돈(21일령 이상의 것)	1마리당	11,000엔
(4) 닭		
<u>아.</u> 가족형		
(아) 채란계(성계 120일령이상)		
(이) 채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마리당	810엔
(우) 브로일러	1마리당	380엔
가축의 종류, 계약 구분과 가축의 구분	1마리당	30엔
	교부상한 단가	
(예)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1,100엔
(오)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510엔

<u>이.</u> 기업형		
(아) 채란계(성계 120일령이상)	1마리당	970엔
(이) 채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마리당	450엔
(우) 브로일러	1마리당	35엔
(에)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1,340엔
(오) 종계(성계 120일령 이상)	1마리당	620엔
(5) 메추리	1마리당	200엔
(6) 오리	1마리당	320엔
(7) 꿩	1마리당	320엔
(8) 호로호로조	1마리당	320엔
(9) 칠면조	1마리당	320엔
(10) 타조	1마리당	31,900엔
2 소각·매물 등 호조금		
(1) 젓소 또는 비육우		
<u>아.</u> 가전법 제 59조의 규정에 기반한 비용을 교부하는 경우	1마리당	37,000엔
<u>이.</u> 기타	1마리당	74,000엔
(2) 돼지		
<u>아.</u> 가전법 제 59조의 규정에 기반한 비용을 교부하는 경우	1마리당	2,000엔
<u>이.</u> 기타	1마리당	4,000엔
(3) 닭 ※	1마리당	80엔
(4) 메추리 ※	1마리당	80엔
(5) 오리 ※	1마리당	80엔
(6) 꿩 ※	1마리당	80엔
(7) 호로호로조 ※	1마리당	80엔
(8) 칠면조 ※	1마리당	80엔
(9) 타조 ※	1마리당	3,520엔

※ 소각·매물 등 호조금의 지불액은 닭과 기타 가금은 요강제 4의 3의 (8)의 우의 (이)의 c의 마리수에 교부 상한단가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소각·매물 등에 소요된 경비의 90% 상당액으로부터 가전법 제21조에 기반한 소각 등에 대한 교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첨부 4 - 호주의 긴급 가축질병 대응 협정(EADRA)의 규정]

1. 조항

- A.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동물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통제, 근절 또는 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수립하고자함:
- (a) 의심되는 긴급 동물 질병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조치(disincentives)를 제공
 - (b) 긴급 동물 질병에 대한 조기 및 포괄적인 대응을 촉진하여 질병의 본질을 정의하고 확산 억제
 - (c) 긴급 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에 자금을 지원하는 당사국이 대응 및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에 역할을 하도록 규정
 - (d) 다음과 같은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긴급 동물 질병에 대한 일정 한도까지 자금 지원 책임을 정의
 - (i) 질병의 근절 또는 억제의 수혜자는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하고 공정한 비율을 지불한다.
 - (ii) 질병사고 또는 의심되는 질병사고를 신고한 결과로 어느 개인 및 단체도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아니한다.
 - (iii) 긴급 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당사국의 적절한 책임이 있다.
- B. 당사자들은 비례 기금에 대한 합의된 원칙 및 비용 분담을 위한 합의된 기본 틀을 고려하여이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다음을 인정한다:
- (a) 관할 구역 내의 동물 질병 퇴치 또는 방제를 관리하는 연방 및/또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 기관의 책임
 - (b) 메커니즘의 운영에 있어 모든 당사국 간의 선의와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 (c) 비용 분담 원칙이 당사자가 입은 결과적 손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운영 규정(Operative Provisions):

2. 해석(Interpretation)

2.1 정의(Definitions)

이 조항(deed)에서, 반대되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ACDP"는 호주 질병 대비 센터(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Preparedness)를 의미.

"ACVO"는 호주 최고 수의 책임자, 호주연방의 최고 수의 책임자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Affected Parties"는 호주연방, 주정부와 준주정부 및 EAD의 사건 또는 발생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산업단체이다.

"AGMIN"은 1차 산업 문제를 책임지는 호주, 주정부, 준주정부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된 농업 장관 포럼을 의미합니다.

"동물 보건 위원회(Animal Health Committee; AHC)"는 호주연방 및 주정부 및 준주정부 CVO, 호주 질병 대비 센터 소장(CSIRO-ACDP), 호주 연방정부 지속가능성부, 환경, 물, 인구 및 지역 사회부의 환경생물보안 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AUSVETPLAN"은 호주 수의 비상 계획을 의미한다.

"방역(Biosecurity)"은 국가, 지역 및 개별 농장 수준에서 전염 가능한 감염원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CCEAD"는 12.2항에 따라 설립된 당사국의 기술 대표 위원회인 긴급동물질병협의회(Consultative Committee on Emergency Animal Diseases)를 의미한다.

"Commencement Date"은 3.1(b)항에 따라 결정된 날짜를 의미한다.

"보상(Compensation)"은 종종 Lead agency(s)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란 이 행위의 목적으로 당사국이 공개한 모든 노하우와 상업적 가치가 있거나 민감한 정보(어떤 형태로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이미 공공영역에 있거나 이 규정 날짜 이후에 수신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의 무단 공개 결과가 아닌 다른 공공영역의 일부가 된 경우
- (b) 제3자로부터 수신 당사자가 그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밀을 근거로 그 정보를 수신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c) 이 규정에 따라 공개일 이전에 수령 당사자가 사용에 대한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소유했거나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서면 기록 또는 기타 유능한 증거로 표시됨) 또는
- (d) 수령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합의(Consensus)"란 일반적인 합의(실행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타협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에 의한 결정을 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느 당사국도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용 분담(Cost Sharing)"은 이 장에서 설명한 대로 정부와 산업단체가 EADRP를 비례 지원하는 과정이다.

"CVO"란 국가 및 영토별로 수석 수의사(수의 책임자, 수의사 대표)의 직위를 맡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농업, 수자원 및 환경부"는 호주연방 농업, 수자원 및 환경부 또는 본 규정 기간 동안 본 규정의 주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타 호주연방부를 의미합니다.

"질병전략(Disease Strategy)"은 발표된 AUSVETPLAN 질병 전략 또는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요약 형식으로 개발된 전략입니다.

"EADP"는 긴급 동물 질병 대비(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를 의미합니다.

"Efficiency Advocate"는 EADRA 및 합의된 EADRP의 요구 사항에 따라 EADRP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13.3(a)절에 따라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 의도는 비용 분담 대응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명된 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보증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응급 동물 질병(Emergency Animal Disease)" 또는 "EAD"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질병입니다.

- (a) 호주에서 풍토병 형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부칙 3을 포함하여 파트 1.2에서 1.5에 기재된 질병을 제한 없이 포함하며,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국가 이익으로 간주된다.
- (b) 적절한 진단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고, 호주에 설립되면 국가적 을 미칠 수 있는 균주 또는 유형의 약제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종이 아닌 고유종 질환의 변형 형태이다.
- (c) 그것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한 심각한 감염병으로, 당시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거나 Schedule 3을 포함하여 Part 1.2부터 1.5까지 명시된 분류된 질병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질병일 수 있다.
- (d)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같이 현저한 발생형태(예상되는 심각도 이상)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시장 접근성이 심각하게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회(Emergency Animal Disease Categorisation Panel)" 또는 "EADCP"는 EAD의 기존 분류 변경에 대해 조언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카테고리를 고려하기 위해 Schedule 3의 Part 4에 따라 소집된 그룹을 의미한다.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Agreement)" 또는 "EADRA"는 수시로 개정되는 "긴급동물질병대응에 관한 정부 및 축산분야 비용분담규정(Cost Sharing Deed)"을 의미한다.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mergency Animal Disease Response Plan)" 또는 "EADRP"는 Lead Agency(s) CVO가 개발하고 CCEAD 및 NMG가 승인하고 Schedule 4의 Part A에 따라 정부 및 산업 당사국의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는 EAD에 대한 대응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

"긴급 대응 단계(Emergency Response Phase)"는 6.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재무감사인(Financial Auditor)"이라 함은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의 감사인 또는 1인 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회사의 감사인인 법인을 말한다.

"정부 대표자(Government Representative)"는 CCEAD 또는 NMG에서 각 정부 당사자를 대표하고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공공 서비스법이 적용되는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GVP"란 해당 연도의 호주통계국(ABS) 자료와 이전 2년간의 ABS 결과를 이용하여 3년 연평균을 기준으로 매년 8월에 산출되는 특정 산업의 생산 총가치를 말한다.(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호주 농업 자원 경제 과학국(ABARES)의 예측)

"사고(Incident)"는 EAD에 대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의심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고 정의 단계(Incident Definition Phase)"는 6.1절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산업(Industry)"은 Schedule 3에 포함된 질병의 피해를 입는 동물 활동의 모든 분야를 의미한다.

(a)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이거나,

(b) 2015년 6월 30일 까지 Animal Health Australia의 준회원이었고 이후 계속해서 준회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산업을 대표하는 것

"LCC 연락 - 축산업 기능(LCC Liaison - Livestock Industry function)"이란 AUSVETPLAN과 같이 지역관제센터(LCC)의 사고관리팀과 대상 산업(들) 사이에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연락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 산업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주요 기관(들)(Lead Agency)"은 호주연방 및/또는 각 주정부(들) 또는 준주정부(들) 내의 부서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Schedule 4의 Part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호주연방 및/또는 주정부(들) 또는 준주정부(들) 내에서 EADRP의 수행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회의"는 직접 또는 다음을 통한 참여를 포함하는 회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a) 전화

(b) 화상회의, 또는

(c) 기타 통신수단

"비회원 당사자(Non Member Party)"은 4.6.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ational Emergency Animal Disease Management Group)" 또는 "NMG"란 Schedule 8 Part 1과 같이 EADRP의 국가정책 및 재조달 요구사항을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적절한 CCEAD의 자문에 따라 비용분담의 발동을 승인·미승인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 책무(Normal Commitments)"란 이 EAD 및 AUSVETPLAN과 일치하는 방식과 범위에서 의심거나 확인된 EAD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과 능력을 뒷받침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업무를 말한다. 정상적인 약속은 비용 분담의 대상이 아닌 EAD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활동 및 자원 약속이다.

"OIE"는 국제동물보건기구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를 의미한다.

"운영 날짜(Operative Date)"는 조항 3.1(a)에 따라 결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소유자(Owner)"란 사고 또는 EAD 발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또는 재산의 소유자(들)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들)을 말한다.

"당사자(Party)"는 이 규정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당사자들(Parties)"는 이 규정의 당사자 중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유 증명 단계(Proof of Freedom Phase)"는 조항 6.3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관계 당사자(Relevant Parties)"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취함에 따라 해당 결정이나 행동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한다.

"대표자(Representative)"은 EADRP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통지한 사람을 의미한다(산업 단체의 경우 해당 산업

대표를 의미하고 정부 당사자의 경우 정부 대표).

"필수 보험(Required Insurance)"은 제29조에 명시된 보험을 의미합니다.

"SCC 연락-축산업 기능(SCC Liaison - Livestock Industry function)"이란 AUSVETPLAN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무조정센터(SCC)의 조정관리팀과 피해산업(들) 사이에 연락기능을 수행하고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피해산업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공유 비용(Shared Costs)"이란 제10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분담하고 EADR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리전환(Transition to Management)"이란 비상대응단계에서의 EAD 근절을 추진하는 것에서 그 밖의 EAD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전환(Transition to Management)"은 6.4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2.2 해석(Interpretation)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Schedule 1에 명시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3. 이 규정의 조건(Term of this Deed)

3.1 시작 날짜, 작업 날짜 및 종료 날짜(Commencement Date, Operative Date and Ending Date)

(a) 이 규정(Deed)은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운영일)과 관련하여 규정이 다음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i) Animal Health Australia; and

(ii) 각 정부 당사자들(Parties)

그리고 그 이후에 서명한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b) 이 규정은 특정 EAD(개시일)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규정이 다음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시작된다.

(i) Animal Health Australia;

(ii) 각 정부 당사자; 및

(iii) 특정 EAD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모든 산업 단체.

그리고 그 이후에 서명한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c) 이 규정은 당사자들(Parites)이 규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3.2 검토(Review)

이 규정의 조건은 운영 경험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검토는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시작된다.

3.3 계속 조항(Continuing provisions)

이 증서가 종료, 취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료된 경우 다음 조항이 존속하며 당사자는 계속해서 이에 구속된다.

- (a) 조항 4.3(a), 4.4(e), 4.5(c), 11, 13.1, 18.5, 20, 21, 26, 28, 29 및 31; 그리고
- (b) 해석 조항 및 정의가 포함 된 조항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이 증서의 다른 조항.

4. 입장 철회 및 당사자 해임

4.1 Application for Admission

국가적으로 산업을 대표하고 Animal Health Australia 헌법에 정의된 산업 단체 그룹에서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이 되는 단체는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산업을 대표하고 Animal Health Australia 헌법에 정의된 산업 단체 그룹에서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이거나 되고 있는 단체는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이 규정의 당사자가 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의무의 개정에 조건이 붙지 않을 수 있다. 신청서는 산업을 식별하고 회원 가입 및 목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Animal Health Australia은 다음을 수행한다.

- (a) 신청서를 기존 단체에 배포
- (b) 신청자와 기존 당사자 간의 질의 또는 토론을 조정, 그리고
- (c) 신청 업계 기관과의 모든 문의 또는 논의 결과에 대해 기존 당사자에게 조언

4.2 Admission

이 규정의 원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입은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Animal Health Australia가 소집하는 회의에서 기존 당사자(신청인과 같은 산업을 대표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다)의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기관은 Schedule 12.1의 형식으로 이 규정에 대한 가맹 규정을 실행하고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에 따라 이 규정의 당사자가 됩니다.

4.3 규정에서 당사자의 철회

Animal Health Australia 이외의 모든 당사자는 6개월 이상의 서면 통지를 통해 이 규정에 대한 참여를 종료함으로써 이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경우:

- (a) 다음에 대한 책임은 계속 남아있다.
 - (i) 통지가 발효되는 날짜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부채 그리고

- (ii)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채택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분담과 관련된 모든 의무; 그리고.
- (b) 나머지 당사자는 규정 참여 철회로 인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정에 계속 구속됩니다.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탈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당사자의 탈퇴 행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남은 당사자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4.4 산업단체의 교체

- (a) 다음과 같은 산업 단체;
 - (i)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명(proposing)된 경우
 - (ii)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더 이상 국가적으로 그 산업을 대표할 수 없도록 구조, 성질 또는 법적 정체성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할 것으로 지명(proposing)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Animal Health Australia에 관련 사실과 이 규정에서의 철회를 통보해야 합니다. 산업 단체는 관련 기관의 동의하에 이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을 대표할 수 있거나 곧 할 수 있는 기관('교체 단체')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 (b) 교체 단체는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기존의 산업 단체를 대신하여 산업을 대표하는 이 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대체 기관은 다음에 동의해야 한다.
 - (i) 교체 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날짜까지 기존 산업단체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ii) 신청서를 조회할 때 Animal Health Australia의 합리적인 비용을 총당한다; 그리고
 - (iii) 기존 산업 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분담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락한다.
- (c)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i) 업계 당사자의 서면 통지와 대체 기관의 신청서를 기존 당사자에게 배포
 - (ii) 기존 산업 단체 및 대체 기관과 함께 신청서를 문의 및/또는 논의. 그리고
 - (iii) 업계 당사자 및 교체 기관과의 모든 문의 및 논의 결과를 기존 당사자에게 통보
- (d) 교체 단체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되며, 기존의 산업단체는 그 당사자가 되지 않음
 - (i) 교체 단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당사자(기존 산업 단체 제외)의 만장일치 동의; 그리고
 - (ii) 교체 단체 및 Animal Health Australia(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는 별표 12.2에 명시된 이 규정에 대한 가맹 규정을 실행하며 교체 단체는 산업 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 (e) 교체되는 산업 단체는 교체 단체가 충족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철회 날짜 이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4.5 Removal

(a) 산업단체는:

- (i) 이 규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 (ii) 다른 모든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더 이상 그 산업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해당 산업 단체를 이 규정의 참여에서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체는 제안된 제거에 대한 이유를 Animal Health Australia에 의해 서면으로 권고받으며,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b) 산업 단체의 제거는 산업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 단체는 이 규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c) 산업 단체는 다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 (i) 당사자로서 제거된 날짜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부채; 그리고
- (ii) 제거 이전에 채택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공유와 관련된 모든 의무.

4.6 당사자가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4.6.1 이 규정의 당사자로 남아 있으려면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계속해서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이었거나
- (b) 2015년 6월 30일 이후 지속적으로 Animal Health Australia의 준회원이어야 함

4.6.2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 Animal Health Australia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 (b) 2015년 6월 30일에 Animal Health Australia의 준회원이었으나, Animal Health Australia의 준회원을 그만둔 경우,

(두 경우 모두 비회원 당사자), Animal Health Australia는 해당 비회원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종료 의향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a) 이 규정의 당사자인 비회원 당사자를 종료시키려는 의도를 명시. 그리고
- (b) 비회원 당사자가 이 증서의 당사자로서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른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4.6.3 비회원 당사자가 해지 의향 통지서에 응답하고자하는 경우 해지 의향서 수령 후 28일 이내에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4.6.4 Animal Health Australia가 28일 이내에 4.6.3항에 따라 응답을 받으면 해당 응답을 다른 당사자에게 회람해야 하며 당사자는 추가 28일 이내에 해당 응답을 고려해

야 한다. Animal Health Australia는 그러한 고려가 수행될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4.6.5 비회원 당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28일 이내에 종료 의향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종료 의향 통지서에 28일 이내에 응답했지만 다른 당사자에게 회신을 배포하고 이를 고려한 후 다른 모든 당사자는 28일 이내에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다른 과정을 밟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반드시

- (a) 비회원 당사자에게 이 규정의 당사자로서의 종료를 통지. 그리고
 - (b) 그런 다음 해당 종료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 4.5(c)항은 비회원 당사자에게 적용.

5. 긴급 동물 질병(Emergency animal Diseases; EAD)의 보고

5.1 24시간 이내에 EAD 통보 의무

- (a) 이 증서에 따른 비용 부담의 목적을 위해 정부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
 - (i) 사건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공식 통지; 그리고
 - (ii) 관할권 내의 사람들(공공 및 민간 수의사, 공공 및 민간 연구소 포함)이 사건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정부당에 조언하여 정부당이 5.1(a)(i) 조항에 따라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조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함;
- (b) 산업 단체는 자국의 산업 단체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및 기타 참여자에 대해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5.1(a)(i) 조항에 따라 사건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참고 :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대한 공식 통보"는 Lead Agency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긴급 동물 질병 상황이 연방 및/또는 주정부 또는 준주정부 내에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로 확인되거나 의심 될 때 발생

5.2 주요기관(Lead Agency(s)) 당사자가 24시간 이내에 EAD를 알리지 못한 영향

이 규정에 따라 행동한 당사자(청구인, Claimant)에 대한 이 규정에 따르는 주요기관(Lead Agency)으로써의 보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 (a) 청구인이 5.1(a)(i)항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공식 통지를 제공했거나
-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했으며 5.1(a)(i) 조항의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보고 24 시간 전에 청구인에게 지불해야한다고 결정한 경우

6. 긴급 동물 질병 대응 단계

6.1 사고 정의 단계

이는 5.1항에 정의된 사건에 대해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공식 통지한 후 조사 기간, 다음까지 계속;

- (a) 사태가 근절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EAD와 관련이 있다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결정에 따라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동의할 때, 또는
-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권고에 따라 다음을 결정함
 - (i) EAD와 관련이 없는 사태. 또는
 - (ii) EAD와 관련이 있지만 EAD는 근절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사태.

6.2 긴급 대응 단계

6.2.1 이 기간은 국가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합의로부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결정(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이 EAD를 억제 또는 근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수행되는 기간이다.

6.2.2. 긴급 대응 단계는 다음 중 하나까지 계속된다.

- (a)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권고에 따라) 비상 대응이 6.3조항에 따라 자유의 증명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고 결정하거나;
-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 EAD의 근절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다.
 - (i) 긴급 대응이 종료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종료되는 경우
 - (ii) 긴급 대응이 6.4조항에 따라 관리 단계로의 전환에 들어가야 하며, 이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관리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것이다.

6.3 자유의 단계

이것은 EAD가 억제되거나 근절되었다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결정에 따른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조사 및 / 또는 추적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성공했다고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또는 OIE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때 종료된다.

6.4 관리 단계로의 전환

6.4.1. 이 기간은 긴 대응 단계를 따를 수 있는 기간이다.

6.4.2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이 비상 대응이 관리로의 전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하면 관리로의 전환 단계가 시작된다.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관리로의 전환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정 의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4.3 관리로의 전환 단계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동물질병협의회 (CCEAD)의 조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a) 관리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 또는

(b) 관리 단계로의 전환이 종료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종료

6.5 새로운 발병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 6.3절에 따라 억제 또는 근절을 결정한 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는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되며 위에 설명된 4단계가 적용된다.

7.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개발

7.1 절차

(a) 주요기관(Lead Agency(s))의 CV0(s)는 다음 원칙에 따라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와 협의하여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개발해야한다

- (i)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개발 및 승인 프로세스가 EAD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ii)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치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필수적이라고 조언하는 야생 및 야생동물 통제를포함하여 EAD 및 사태의 성격과 상황을 반영해야한다.
- (i)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핵심 전략 및 핵심 운영 구성 요소는 CV0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일부 구성 요소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 (iv)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AUSVETPLAN에 제안된 중요한 변을 명확하게 식별 해야 한다.
- (v)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요 전략 및 핵심 운영 활동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 계획(EADRP)에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 (vi) 일단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의해 합의되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의해 후속적으로 권고되고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 (NMG)에 의해 합의되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기관(Lead Agency(s))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변형에 따라 Plan에 포함된 주요 전략과 핵심 운영 활동에 주요기관(Lead Agency(s))를 위탁할 것이다.

- (b)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내용은 Schedule 4의 Part A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c) Lead Agency(들)의 CVO는 가능한 한 빨리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제공해야 한다.

7.2 표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권고하고 국가긴급가축질병 관리단(NMG)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일치해야 한다.

- (a) Schedule 5의 Part 1에 설명된 관련 AUSVETPLAN 관리 매뉴얼; 및
- (b) Schedule 5의 Part 2에 설명된 모든 적용 가능한 AUSVETPLAN 질병 전략.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Schedule 5의 Part 3에 설명된 것을 포함하여 다른 AUSVETPLAN 매뉴얼에 의해 안내되어야 한다.

8. 긴급동물질병의 분류

8.1 EAD의 4가지 범주

EAD는 Schedule 3의 Part 1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8.2 보류(Reserved)

8.3 알려지지 않은 EAD 또는 분류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적용 가능한 범주의 결정

- (a)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 또는 분류되지 않은 질병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들은 Animal Health Australia에 질병의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 (b) 그러한 요청을 받는 즉시 Animal Health Australia는 요청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관련 업계의 대표와 함께 동물 보건 위원회(Animal Health Committee)에 회의를 열어 질병이 EAD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동물 보건 위원회(Animal Health Committee)는 결정을 Animal Health Australia에 알릴 것이다.
 - (i) 동물보건위원회가 관련 업계 대표들과 함께 이 질병이 EAD라고 결정하면 호주 동물보건위원회는 동물보건위원회에 이 질병을 분류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 (ii) 동물보건위원회가 관련 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당 질병이 EAD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관련 당사국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이다.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 (c) Animal Health Committee는 Animal Health Australia로부터 분류 요청을 받으면 다음을 수행하는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단(EADCP)을 소집한다.
 - (i) 질병을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Schedule 3의 Part 4에 있는 절차에 따라 범주를 결정하거나
 - (ii) 질병을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 또는 그와 같은 당사국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고, 그 추가 정보를 받으면, Schedule 3의 Part 4의 절차에 따라 범주를 결정한다.

- (d) 단락 (a) ~ (c)에 따른 질병의 분류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해당 질병이 별표 3의 제1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4 질병의 분류 또는 제거에 대한 검토

- (a) EAD 범주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거나 분류된 EAD 목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당사자는 Animal Health Australia에 해당 분류 또는 제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AD의 재분류 프로세스는 Schedule 3의 Part 2에 설명되어 있다.
- (b) Animal Health Australia가 재분류 또는 삭제에 대한 요청이 적절한 형태이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Animal Health Committee의 분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c) Animal Health Australia가 분류 또는 제거 요청이 적절한 형태가 아니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제출한 당사국은 Animal Health Australia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위한 동의를 일반 결의안에 의해 통과된 경우, 동물 건강 호주는 결의안 30일 이내에 Animal Health Committee의 분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d) 동물 보건 위원회는 Schedule3의 Part2에 의거하여 (b) 또는 (c)항에 따라 접수된 재분류 또는 제거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재분류 또는 제거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Schedule3의 Part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질병의 재분류 또는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 질병을 분류하거나 질병의 제거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 또는 그와 같은 당사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추가 정보를 받으면 Schedule 3의 Part 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질병의 성격과 영향을 고려한 질병의 재분류 또는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 (e) 동물 보건 위원회가 Animal Health Australia에 검토 결과를 권고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Schedule3의 Part2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9.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관리

9.1 시행(Implementation)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정부의 작용에 의해 시행되며 다음을 따른다

- (a) 적용 가능한 EAD 법률과
(b)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조건

의혹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부 당사자는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9.2 인력양성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가능한 경우 긴급 질병 대응의 책임과 EAD 대응의 원칙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한다.
(b) 적절한 수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과 EAD 대응 원칙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10. 비용 분담 원칙

10.1 비용 분담 - 사고 정의 단계

사고가 일어나면 주요기관(Lead Agency(s))은 사고 정의단계의 비용을 부담하며 다음을 제외한다

(a)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합의되면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비용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i) 관련 주요기관(Lead Agency(s))에 사고를 처음 통지한 날짜, 또는

(ii)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합의할 수 있는 더 빠른 날짜;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용 또는 진단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진행되면 이 규정에 따라 분담된다.

10.2 비용 분담 - 사고 정의, 긴급 대응, 자유 증명 및 관리 단계로의 전환

(a) 당사자는 다음 표에 따라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수행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Category of Disease	Government Funding	Industry Funding
Category 1	100%	0%
Category 2	80%	20%
Category 3	50%	50%
Category 4	20%	80%

(b) 비용 분담 적용사항

(i) 급여 및 임금

(ii) 운영 비용

(iii) 자본 비용; 그리고

(iv) 보상/배상(Compensation)

Schedule 6의 Part3에 따라 결정

(c) 10.2(a)항에 언급된 "정부 기금(Government Funding)"은 Schedule 6의 Part 1에 명시된 방식으로 정부 당사자 간에 분담(shared).

(d) 10.2(a)항에 언급된 "산업 기금(Industry Funding)"은 Schedule 6의 Part 2에 명시된 방식으로 산업 단체 간에 분담(shared).

10.3 비용 분담 - 분류되지 않은 EAD

- (a) 사고가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보고되고 EAD의 분류 전에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비용 분담에 참여해야하며, 만약
 - (i)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인 경우 Category 1 EAD로 간주하며, 또는
 - (ii) Category 3 EAD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전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질병의 경우, 해당질병을 Category 1로 취급하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참여해야한다.

- (b) 이후에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 분류된 EAD가 제10.3조 (a)항에 따라 처리된 범주 이외의 범주의 EAD라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합의한 경우 해당 범주의 최종 결정일 이전에 지불된 자금을 대해서만 조정을 할 것이다.

10.4 비용 분담 비율 변경

피해를 입은 당사자(affected parties)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동의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 비율은 10.2절에 명시된 비율과 다를 경우 다음을 조건으로 함:

- (a) 당사자는 비용 분담 비율의 변경을 통한 변경 사항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될 때까지 책임의 변경 사항을 충족할 의무가 없다.
- (b) 비용 분담 비율의 변경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날짜로부터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당사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 (c) 비용 분담 비율의 변경은 해당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만 적용됩니다(당사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5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된 당사자의 비용 분담 의무에 대한 제한

- (a) 서면으로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한, 당사자는 당사자의 비례 분담(Schedule 6의 Part 4에 따라 결정된) 중 산업(들)에서 EAD의 피해를 입은 경우 GVP 1% 및 구제역에 피해를 입은 경우 GVP 2%를 초과하는 양의 비용분담을 요구받지 않으며, 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타금액(약정한도(Agreed Limit))을 요구받지 않는다.

EAD의 영향을 받은 산업(들)의 GVP 1% 및 구제역에 영향을 받은 산업의 2%를 초과하는 양을 비용분담으로 요구받지 않는다.

-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비용이 합의한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여부를 즉시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i) 합의한도(Agreed Limit) 증가
- (ii)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지속
- (iii)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비례 분담(Proportional Shares) 변경; 또는
- (iv)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한 기타 적절한 변경

10.6 비용분담의 대상(subject)이 되는 추가 비용

비용분담의 원칙은 다음에도 적용됨

- (a)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그러한 조치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필수적이라고 조언한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일부를 형성하는 야생 및/또는 야생 동물 통제 조치의 비용;
- (b) 13.3항에 따라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서 발생하는 비용;
- (c) 13.4항에 따라 발생한 재무 감사인의 비용 그리고
- (d)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비용.

10.7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Animal Health Australia 비용

Animal Health Australia는 정부나 산업 단체가 아니지만 비용 분담 원칙은 일반 운영 비용에 추가되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된다.

10.8 규정의 당사자가 아닌 산업 관계자에게 당사자가 지불하는 보상의 비용 분담

- (a) 이 규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GVP 2천만달러 이상인 산업 관계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분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특별한 상황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b) 이 규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GVP 2천만달러 미만인 산업 관계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동의함으로써 보상이 비용분담의 대상이 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기금(funding)

11.1 당사자의 일반 의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이행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각 당사자는 이 조항 11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또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합의한 다른 기간) 매월 상환하면서 조항 10에 명시된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2 당사자의 초기 기금(funding)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시행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처음에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11.3 점진적 비용 분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Schedule 7의 Part 2에 설명된 방식으로 비용 분담 원칙을 이행한다.

11.4 기업이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 (a) 각 산업 단체는 해당 산업의 비용 분담 의무를 충족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산업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산업 기금으로부터 비용 분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호주연방은 산업당사자(들)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으면 초기에 해당 산업 단체(들)의 비용분담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c) 각 산업은 Schedule 7의 Part 1부에 명시된 대로 호주연방이 11.4(b)항에 따라 산업 의무를 충족하는 결과 발생하는 호주연방에 대한 비용 분담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11.5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비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비용 분담 원칙이 적용될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Schedule 7의 Part 2에 명시됨

11.6 EAD 발생 시 최종 비용 결정

자유 단계의 증명(Proof of Freedom Phase), 관리 단계로의 전환(Transition to Management Phase) 또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EAD가 근절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는 국가 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결정에 따라 모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Animal Health Australia에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EAD의 총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EAD와 관련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공유 및 비공유 비용 포함)에 대한 사용 가능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a) 급여 및 임금
- (b) 운영 비용
- (c) 자본 비용
- (d) 보상; 그리고
- (e) 추정된 결과적 손실(당사자들이 EAD 발생의 광범위한 비용을 이해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11.7 GST

한 당사자("공급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수령 당사자")에 대한 본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급에 대해 GST를 부과하는 경우:

- (a) 하위조항 (b)에 따라 수령 당사자는 공급당사자에게 부과된 GST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동시에 공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타금액 까지).
- (b) 공급 당사자는 수령 당사자가 지불된 GST 금액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령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그리고

(c) 이 조항 11.7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1999년 "A new tax system(상품 및 서비스) Tax Act 1999"에서 제시된 의미를 갖는다: GST, 입력 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12. Consultation

12.1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구성되고, 역할을 가지며, EAD 대응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Schedule 8의 Part 1에 명시된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Schedule 8의 Part 2에 명시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역할을 가진다.

12.2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Schedule 8의 Part 3&4의부칙 8의 3, 4부에 명시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회의를 열고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진다.

12.3 산업 대표(industry representation)

- (a) 산업 대표는 해당 산업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간의 모든 회의 및 협의에 참여한다.
- (b) 산업 대표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 (i)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및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경우, 시행일까지 Animal Health Australia에 대한 각 산업 단체에 의해 지명되고 그 이후 규정 기간 동안 12개월마다 갱신된다.
 - (ii) 가능한 경우, 책무 및 EAD 대응 원칙과 관련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가 수행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해야한다.
 - (iii) 이 규정에서 고려하는 방식으로 해당 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 단체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 (iv) 해당 업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야한다. 그리고
 - (v) 이 규정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Schedule 9의 형식으로 기밀 유지 증서 설문조사에 서명해야한다.
- (c) 피해를 입은 관할권의 CV0는 조치의 개발과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를 입은 산업 단체를 초청하여 해당 산업의 대표자(CV0의 재량에 따라)를 한 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산업 단체는 LCC 연락 - 축산 산업 및 SCC 연락 - 축산 산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치에 도움을 줄 적절한 자격을 갖춘 한 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LCC 연락 - 축산 산업 기능 및 SCC 연락 - 축산 산업 기능은 해당 업계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조치(responce)에 대한 산업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CC 연락 - 축산 산업 기능 및 SCC 연락 - 축산 산업 기능은 조항 12.3(b)(ii), (iii) 및 (iv)를 준수해야 하며 각 EAD 대응 센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12.4 정부의 역할

- (a) 정부 대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간의 모든 회의 및 협의에 참여해야한다.

(b) 정부 대표는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 (i)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및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경우, 가능한 경우, 각 정부 당사국이 운영일자에 따라 Animal Health Australia에 서면으로 지명하고, 이 규정의 기간 중 12개월마다 갱신한다.
- (ii) 가능한 경우, 책무 및 EAD 대응 원칙과 관련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가 수행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해야한다.
- (iii) 해당 정부 당사자 내의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야한다.

13.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한 회계

13.1 회계 기록

- (a) 주요기관(Lead Agency(s))은 각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분담비용을 구성하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하여 재무 지출의 세부사항을 감사 가능한 형식으로 보관해야한다.
- (b) 모든 당사자는 적격 비용과 관련하여 배상요구를 식별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c)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른 당사자가 특정 비용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사용되었고 분담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족시키기위해 Animal Health Australia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를 조정하고 대조할 것이다; 그리고
- (d) Animal Health Australia는 이 법의 제 11항에 따라 비용 분담을 통해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의 기록을 유지할 것이다.

13.2 보고(Reporting)

- (a) 피해를 입은 정부 당사자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하여 착수된 예산 및 사용된 실제 지출을 명시한 Schedule 10의 형식으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각 관련 회의에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b)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접수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즉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전달해야 합니다.
- (c) Lead Agency(들) 및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한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Schedule 10의 Part 2에 따라 상한을 검토하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설정한 상한 내에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지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13.3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효율과 효율성

- (a)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동안의 역할을 계속함에 있어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Schedule 11의 Part 1에 따라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자문을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얻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13.4 재무 감사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구현이 완료되면 Animal Health Australia는 독립 재무 감사관의 참여를 주선하여 주요기관(Lead Agency(s))의 재무 기록에 대한 외부 감사(“재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재무 감사인은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a) 주요기관(Lead Agency(s))와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공동으로 보고,
 - (b) 비용 분담에 대한 청구 또는 지불과 관련하여 공식 승인 제공
- Schedule 11의 Part 2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

14. 방역(Biosecurity)

- (a) 당사자는 국가, 지역 및 개별 시설 수준에서 이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방역 조치를 포함하여 EAD의 진입 및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보완하는 위험 감소 조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승인한다.
- (b)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질병에 의해 부정적인 피해를 입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위험 완화 절차를 이행한다.
- (c)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개발하고 동의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정부 및 축산업 단체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다.
 - (i) 각 산업이 해당 산업 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방역 조치의 개선을 장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산업 방 계획;
 - (ii) 야생 동물, 공중 보건 및 환경 정책을 포함하여 그들의 책임과 관련된 방역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부 방역 발/전략;
 - (iii) 적절한 경우 입법 지원의 적용;
 - (iv)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국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d) 이 프로젝트는 Animal Health Australia의 사업 계획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당사들과 함께 검토될 것이다.
- (e) 모든 당사자는 방역 발표/전략 및 계획에 대한 물질적 변화를 Animal Health Australia에 보고해야한다. 정부 및 산업 단체는 방역 발표/전략 및 계획의 이행 및 진행 상황을 매년 다른 단체에 보고해야한다.

15. EAD 대처 능력에 대한 당사자 자원의 약속

(COMMITMENT OF PARTY RESOURCES TO EAD RESPONSE CAPACITY)

- (a) 당사자는 규정의 운영 첫 12개월 동안 별표 6의 3부에 명시된 분담 비용 결정 방식이 유지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 (b) 당사국은 기존 및 필수 자원 약속을 결정하고 모든 당사국이 정상 약속으로 간주하고 다른 비용을 공유해야하는 기준선으로 간주되어야하는 비용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c) Schedule 6의 Part 3에 명시된 잠정 약정에 대한 변경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습니다.
- (d) 당사자는 Australia's animal health services에 대한 성과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단 결정되면 이것이 이 규정에 따른 활동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6. 예비(Reserved)

17. 별표(Schedule)의 수정

17.1 별표(Schedule)의 수정 절차

(a) 다음과 같다면:

- (i) 이 증서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고, 절차의 최종 단계는 Animal Health Australia이 일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 (ii) 당사자는 제32.1조 (a)항에 따라 Animal Health Australia에 통지를 하고, Animal Health Australia는 통지가 일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된 경우. 그리고
- (iii) 개정안의 작성이 다른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Animal Health Australia는 모든 당사자에게 개정된 별표의 사본(식별 목적으로 번호가 매겨지고 날짜가 지정된 버전)을 절차 또는 통지의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b) 수정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부칙에 대한 수정은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7.2 이의 제기

당사자는 제 32.1 (a)항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개정된 별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a) 이의 제기의 이유를 명시하며;

(b) Animal Health Australia가 수정된 일정을 발송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Animal Health Australi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7.3 이의 제기에 대한 응답

(a) 17.2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하면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을 통지한다.

(ii)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이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한다.

(iii) 이의 신청과 접수된 의견을 Animal Health Australia의 다음회의에 제출해야하며, 이의에 관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b) Animal Health Australia는 위원회의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가 이의를 지지하는 경우 수정된 별표는 철회되고 효력이 없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c) Animal Health Australia의 위원회가 수정된 별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 별표에 대한 수정은 Animal Health Australia의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d) 별표 변경에 대한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별표 변경은 17.1에 따라 Animal Health Australia이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18. 변동 또는 해지

18.1 규정의 변동 또는 종료

3.3항에 따라, 본 규의 기간 중 언제든지 당사자가 이 증서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다음 항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

- (a) 변동 또는 해지:
- (b) 해당 변동 또는 해지가 EAD 프로그램의 존재 및 운영에 영향 미치는 영향

18.2 서면상의 변동 또는 해지

- (a) 3.3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하는 규정에 대한 어떠한 변동이나 해지도 어떠한 효력도 없을 것이며, 그 후 그러한 변동이나 해지도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b) 각 당사자는 Schedule 13의 Part1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승인된 서명인의 지명' 통지서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규정에 대한 변동 또는 해지를 승인하기 위해 때때로 그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 사람의 세부사항을 Animal Health Australia에 통지해야 한다.

18.3 변동 과정

당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a) Animal Health Australia는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안된 변동을 설명하는 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b) 각 당사자는 Schedule 13의 Part 2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규정에 대한 변동 승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작성된 통지를 회신함으로써 제안된 변동(들)에 대한 승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c) 변동 사항(들)은 Animal Health Australia가 모든 당사자로부터 규정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하여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짜부터 발효됩니다.

18.4 해지 절차

당사자들은 모두가 이행하는 해지 규정의 동의에 의하여 규정을 해지할 수 있다.

18.5 Animal Health Australia의 입장(Position)

제10.7조의 제한 없이, Animal Health Australia에 지급되어야 하는 본 규정에 명시된 지급액 중 Animal Health Australi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 이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이 규정에 따라 달리 발생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 분리가능(Severability)

이 규정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법이거나, 무효이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조항을 읽어야 한다. 어떠한 조항 또는 일

부를 읽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조항 또는 일부는 효력이 없고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받거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규정의 의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0. 권리 포기(Waiver)

이 행위에 따라 그 당사자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실패, 지연, 완화 또는 면죄부는 그 권한 또는 권리의 포기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단 하나의 권한 또는 권리의 행사도 그것의 다른 또는 더 이상의 행사 또는 이 행위에 따른 다른 권한 또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권한 또는 권리는 포기에 구속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포기할 수 있다.

21. 준거법(Proper Law)

21.1 법원의 관할권

이 규정과 그에 의해 고려되는 처리는 호주 수도주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그 형태, 집행, 타당성, 해석 및 효과는 호주 수도주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호주 수도 안팎의 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및 각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호주 고등법원

호주 고등법원이 호주연방과 관련된 사항이나 헌법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 수도 법원과 호주 연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독점적이다.

21.3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수행에는 호주연방, 주정부 및 준주정부법이 적용된다.

이 규정과 21번 조항의 어느 것도 호주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준주정부에서 적용되는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 기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2. 추가 보증(Further Assurance)

각 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시행 전이든 그 후든 간에, 이 규정의 조건과 그에 의해 고려되는 당사자 간의 처리를 수행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규정, 문서, 통지, 법률 문서 및 별표(목록)에 서명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23. 부분(Counterpart)

이 규정은 여러 부분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실행될 때 그러한 모든 부분은 원본이 되지만 모두 합쳐서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4. 대행(Agency)

이 규정의 당사자는 이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를 대리인으로써 대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5. 완전한 합의(Entire Agreement)

이 규정은 이 규정과 관련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모든 사전 협의, 협의, 진술 또는 보증은 대체되며 각 당사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협의, 진술 또는 약정에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26. 중재와 대안적 분쟁 해결(Medi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 이 행위의 조항의 해석, 이행 또는 시행에 관하여 일방 또는 모든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분쟁의 내용을 정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이하 "분쟁통지(Notice of Dispute)"라 한다)할 수 있다.
- (b) 당사자가 분쟁합의서를 송부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분쟁합의서 대상 사안을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로 그 사안을 조정 또는 대체 분쟁조정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대체분쟁해결 통지(ADR 통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y notice)).
- (c)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ADR 통지를 받은 각 당사자(관계자; Concerned Party)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d) ADR 통지가 당사자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된 경우, 관계자(Concerned Party)는 ADR 통지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 또는 대체 분쟁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 (f) 중재 또는 대체 분쟁 해결과 관련된 모든 비용 또는 지출은 중재 또는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달리 권고하지 않는 한 동등한 지분으로 관계자(Concerned Party)가 지불해야한다.

27. 직무와 권한의 행사

호주연방과 이 법에 따른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의무는 그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사되어야 하는 법적 또는 집행 권한 또는 의무의 행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및 일반적인 법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28. 개인정보 보호

28.1 개인정보 이용

각 당사자는 다음사항에 동의한다.

- (a) 이 규정과 관련해 보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b) 이 규정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로부터 보호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 이용, 변경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적용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기관인 것처럼 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하는 행위의 유형에 그 원칙의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1988년 "개인 정보 보호법"("법")에 포함된 국가 개인정보보호원칙(공동 원칙)을 준수한다.

- (d)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호주연방의 요청을 포함하여 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근거로 연방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요구 또는 질의에 협조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e)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수준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인지하고 서면으로 28항의 원칙 및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f) 개인정보보호 위원이 28항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모든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원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호주연방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른다.

28.2 개인정보의 의미

이 28항에서 "개인정보"는 정보 또는 신용(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 또는 신용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사실이든 아니든, 물질적 형태로 기록되었든 아니든, 정보 또는 신용으로부터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실제 사람)에 관한 정보 또는 신용을 의미한다.

29. 보험(Insurance)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음을 준수해야한다.

- (a) 자신과 직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적절한 보험(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재해 보상 포함) 및 공공 위험 보험("필수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그리고
- (b) 요청 시 해당 보험 통화의 입증을 다른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해야한다.
- (c) 모든 AHA 계약자 및 대리인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험(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재해 보상 포함) 및 공공 위험 보험("필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30.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

30.1 Animal Health Australia의 의무

- (a) 이 규정을 기점으로 본 규정 자체, 임원, 직원, 대리인 및 계약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Animal Health Australia는 최선을 다해 조사하여 숙지할 것을 보장한다.
- (b) 이 규정의 기간 중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c) Animal Health Australia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는 이 규정의 기간 동안 Animal Health Australia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와 충돌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 기밀

당사자는 엄격한 필요에 따라 비밀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거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방법으로 그 직원 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개 또는 통신한 비밀 정보를 복사, 복제, 누설, 출판 또는 유통(타인에게 복사, 복제, 누설, 출판 또는 유통하도록 허가 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는 엄밀하게 알 필요가 있거나 규정의 적절한 이행에 기초하여 필요한 직원 또는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가 공개하거나 전달한 기밀정보를 복사, 복제, 누설, 공개 또는 유포(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복사, 복제, 누설, 공개 또는 유포하도록 허가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32. 통지/공지(Notices)

32.1 통지 업무(Service of Notices)

- (a) 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 당사자들이 속한 다른 단체 및 다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식 통지, 요청 및 기타 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Schedule 2에 명시된 주소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연락 담당자(contact officer) 또는 이러한 다른 사람이나 수시로 당사자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 (b) 명확성을 위하여, 제18.2조 또는 제18.3조에 따라 전송된 문서를 포함하는 통지는 당사자가 제32.1조 (a)항에 따라 통지를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통지한 경우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당사자에게 발송될 수 있다.

32.2 통지 업무의 간주 시간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전달완료된 것을 간주된다.

- (a) 직접 인편으로 전해진 경우, 배달 시
- (b) 호주 내에서 선납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의 형태인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6영업일이 경과한 때에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증명에 의하여 반박할 수 있다.
- (c) 편지 형태로 호주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또는 지역으로 발송된 경우, 도착시;
- (d) FAX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경우, 발신자가 팩스를 전송한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팩스가 수신자에게 전송 완료됐음을 기록하고 단, 팩스에 의한 통지는 미수신 증명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 (e)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발신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이메일을 전송한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적절하게 전송되었다고 기록하고 단, 이메일에 의한 통지는 미수신 증명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Shedule 1 - 규정 해석 원칙 (Clause 2.2)

- (a) 단수 내의 단어들은 복수를 포함하며, 복수 내의 단어들은 단수를 포함한다.
- (b) 이 규정의 조항(Clauses)에 포함된 약관(terms)과 Schedule의 조항(provision)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정(Deed)의 조항(Clauses)은 Schedule의 조항(provision)보다 우선한다.

- (c) 이 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금액과 모든 지불액은 호주 달러로 표시되며, "\$"라는 기호는 호주 달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d) 본 규정에서 특정 상황에 대하여 규정 또는 허용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그 상황이 행해질 장소에서 공휴일 또는 은행 휴일인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은 그 장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은행 휴일이 아닌 다음날에 행해질 수 있다 (연장개념).
- (e) 이 규정의 reference는 이 규정이 계약서의 조항 또는 모든 사법관할법원의 명령 또는 적용법(applicable law)에 따라 수정됨, 개정됨 또는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다른 계약, 규정 또는 유사한 협정(instrument)의 reference는 다른 계약, 규정 또는 유사한 협정(경우에 따라)이 수정됨, 개정됨 또는 변경되었거나 사법관할법원의 명령 또는 적용법(applicable law)에 의해 시행되거나 발효된 모든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f) 적용법(applicable law)에 대한 reference는 적용 법령(applicable statute), 법(act), 법전(code), 조례(ordinance), 규정(regulation), 성명(proclamation) 또는 모든 하위 법률 문서를 의미한다.
- (g) 법령(statute), 법(act), 법전(code), 조례(ordinance), 규정(regulation), 성명(proclamation) 또는 모든 하위 법률 문서에 대한 reference는 법령(statute), 법(act), 법전(code), 조례(ordinance), 규정(regulation), 성명(proclamation) 또는 모든 하위 법률 문서(경우에 따라)가 수시로 개정, 변경 또는 수정됨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법률 문서에 따라 작성된 다른 법률 문서와 이를 대체하는 다른 모든 법령(statute), 법(act), 법전(code), 조례(ordinance), 규정(regulation), 성명(proclamation) 또는 모든 하위 법률 문서의 reference를 포함한다.
- (h) "Person"은 법인단체(corporate),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 회사(firm) 또는 연합(partnership)과 기관(authority) 또는 조직(organisation)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이것들 중 어떠한 것도 법인(legal person)이 아닐 수 있다.
- (i) thing에 대한 reference(금액(amount)에 대한 thing을 포함한)는 thing의 전체와 각 부분에 대한 reference이다.
- (j) group of person의 reference는 이들 모든 집합과 둘 또는 그이상의 집합 및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reference이다.
- (k) person에 대한 reference는 유언 집행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s), 상속자 및 허가된 양도자가 포함된다.
- (l) 서면에 대한 reference는 단어를 유형적이고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거나 재현한 모든 방식을 포함하며, telex, e-mail 및 팩스전송을 포함한다.
- (m)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무는 그들을 공동으로 및 개별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 (n) 만약 단어나 구가 정의된다면, 어원과 구는 그에 상응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 (o) 사라지거나 재구성, 연합, 재건 및 합병된 기관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입장/직위(place)을 가진 다른 개인(person)이나 단체에 대한 reference는 그 입장/직위에 설립 또는 구성된 개인 또는 단체 및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p)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이나 물건에 대한 reference는 이 규정의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기 위해 취해진다.

- (q) 기간이 특정일 또는 행위나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r) 하루는 자정부터 시작하여 24시간 후에 끝나는 시간으로 해석된다.
- (s) AUSVET PLAN에 대한 모든 reference는 특정 EAD와 관련된 관리 매뉴얼, 질병 전략 및/또는 대응 정책 개요의 최신 버전을 참조할 것이다.

Schedule 3 - 긴급동물질병(EAD)의 분류 (Clause 8)

1. EAD들의 분류

1.1 분류를 위한 접근법

EAD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될 것이다.

1.2 Category 1 - 정부 100% 부담

주로 인간의 건강 및 환경(토종 동물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축산업에 최소한의 직접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는 질병

- 호주 박쥐 lyssa 바이러스
- 일본뇌염
- 니파 바이러스
- 광견병
- 서부, 동부 및 베네수엘라 말 뇌척수염

1.3 Category 2 - 정부 80%, 산업계 20%

국제무역 감소, 국내축산시장 붕괴, 축산업계의 생산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큰영향을 미칠수 있는 질병이다. 이 분류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 포함된다.

- 조류 인플루엔자(고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 및 H7)
-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브루셀라증(Brucella abortus로 인한)
- 브루셀라증(Brucella melitensis로 인한)
- 구제역
- 마비저(glanders)
- Hendra virus
-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PPR)
- 리프트 계곡열(Rift Valley fever)
- 우열(rinderpest)
- 아메리카 파리유충(screw worm fly)
- 면양 및 산양 수두(sheep and goat pox)
- 수포성 구내염

1.4 Category 3 - 정부 50%, 산업계 50%

2개주 이상에서 국제무역감소, 국내축산시장붕괴와 축산업의 심각한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일반적으로 중등도)을 미치는 질병이나, 공중위생이나 환경에는 영향이 거의 없음.

-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탄저병(Anthrax, major outbreaks)
- 조류 인플루엔자(고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 및 H7 제외)
- 조류 인플루엔자(낮은 병원성, 바이러스 아형 H5 및 H7)
- 블루텅
- 돼지 콜레라(classical swine fever, Hog cholera)
-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뇌염(encephalitides, tick-borne)
- 괴피병(lumpy skin disease)
- 메낭글 바이러스(Menangle virus, porcine paramyxovirus)
- 뉴캐슬병
- 스크래피(scrapie)
- 돼지 수포 병(swine vesicular disease)
- 선모충증(trichinellosis)
- 수포성 발진(vesicular exanthema)

1.5 Category 4 - 정부 20%, 산업계 80%

주로 생산성 감소 질병이 포함되며, 국제무역감소, 지역적인 축산시장 붕괴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가 아닌 질병이다. 이 분류의 질병의 발생에 대한 성공적인 비상 대응의 수혜자는 축산업계일 것이다.

- 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 보르나병(Borna disease)
-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으로 인한 소 결핵
- 전염성 말 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 구역(Dourine)
- 동연안열(East coast fever)
- 동물유행림프관염(epizootic lymphangitis)
- 말 바베시오증(equine babesiosis)
- 말 뇌증(equine encephalosis)
- 말 인플루엔자(equine influenza)
- 게타 바이러스 감염증(Getah virus)
- 출혈성 패혈증(haemorrhagic septicaemia)
- 심수병(heartwater)
- 전염성 F낭병(infectious bursal disease, hypervirulent 형태)
- 켈브라나병(Jembrana disease)

- 메디비스나병(maedi-visna)
- 나이로비(Nairobi sheep disease)
- 돼지 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PED)
-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 포토맥 병(Potomac fever)
- 폐 선종증(pulmonary adenomatosis)
- 면양 옴(sheep scab)
- 수라증(Surra)
- 돼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 테셴병(Teschen disease)
- 전염성 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TGE)
- 베셀스브론병(Wesselsbron disease)

2. EAD의 분류, 재분류 및 제거를 위한 과정

- 관련 당사자가 Animal Health Australia에 입증된 요청을 제출합니다.
- Animal Health Australia는 제시된 증거가 질병의 분류, 재분류 또는 제거를 뒷받침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Animal Health Committee에 요청을 회부합니다.
- Animal Health Australia가 질병의 분류, 재분류 또는 검토 요청을 Animal Health Committee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사자는 Animal Health Australia 총회에서 회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Animal Health Committee는 30일 이내에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단(EADCP)을 소집합니다.
- 패널은 결과를 90일 이내에 Animal Health Committee에 보고합니다.
- Animal Health Committee는 패널의 권고사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지여부를 Animal Health Australia에 알릴 것입니다.
- Animal Health Australia는 동물 보건 위원회의 권고를 관련 당사자에게 회부할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들이 만나서 승낙할 경우, 승낙사항은 이행될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가 Animal Health Committee의 권고와 관련하여 승낙하지 못하는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접수 후 첫 번째 회의에서 Animal Health Committee의 의견과 관련 당사자의 응답을 고려할 것입니다.
-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결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 검토는 더 이상의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Animal Health Australia에 의해 승인되지 않습니다.

분류/재분류/제거를 원하는 당사자를 위한 가이드
요청은 다음에 대한 질병의 영향을 처리해야 합니다.

- 공중 위생
- 국내 및 국제 시장
- 동물 생산
- 환경

제시된 주장은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이것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분류/재분류/제거 요청이 Animal Health Australia의 검토를 위해 수락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을 고려하여 분류/재분류/제거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a) 질병의 특성,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

- 역학 - 잠복기, 유기체의 지속성, 전염 방식 등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병균학 - 즉, 그 독성과 같은 원인 유기체에 대한 정보
- 종의 감수성
- 세계 분포
- 저항성 및 내성 또는
- 도입 방법 및 위험성

(b) 질병이 미치는 영향:

- 공중 위생
- 가축, 축산물 및 관광과 같은 기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시장
- 국가 경제
- 동물 생산 또는
- 환경

4.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회(EADCP)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회는 화상 회의 또는 대면으로 만나야 하며 동물 건강 위원회가 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Animal Health Committee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긴급동물질병분류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는 호주 동물 보건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패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궁극적으로 합의된 질병 범주에 대한 비용 분담 협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소급하여 비용 분담할 것입니다.

4.1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관련 과학 및 기타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

- Animal Health Committee에서 언급한 기존 질병의 분류 또는 제거의 변경을 위한 Animal Health Australia의 제안을 고려하십시오.
- Animal Health Committee가 언급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적절한 분류를 결정하십시오.

4.2 Membership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역할로 구성된다

- 독립적인 의장
- 정부의 질병 통제 전문 지식을 갖춘 수의사
- 질병에 대한 특정 전문지식을 지닌 자
- 관련 경제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각 관련 산업에서의 추천자

적절한 경우 다음이 포함됨

- 공중보건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공중보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적절한 경우 환경 보호 대표자
- 기타 독립의장이 정하는 관련 위원

Schedule 4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개발 및 관리 (Clauses 7과 9)

긴급 질병 대응 계획(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구조 및 목차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구조와 목차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목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개발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소제목에 언급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참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의 양은 긴급 질병 대응의 성격과 정도, 대응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초기 승인을 위해 제출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별표(*)로 표시된 핵심 구성 요소를 다루어야 합니다.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른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반응의 목표 및 목표 *
2. 의심/확증 질환에 대한 현황 보고서*
 - 2.1. 개요
 - 2.2. 건물의 위치
 - 2.3. 재산/농장 설명 및 각 감수성 종의 추정된 수
 - 2.4. 구내의 임상 상황 (임상 징후, 이환율에 대한 설명)
 - 2.5. 실험실 진단
 - 2.6. 초기 추적/감시의 결과(1차 감염자 식별 포함)
 - 2.7. 근처에 있는 추정된 전체/감수성 종의 수
 - 2.8.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2.8.1 운영
 - 2.8.2 계획
 - 2.8.3 물류
 - 2.8.4 금융과 행정
 - 2.8.5 공공 정보
 - 2.9. 근절 가능성
3. 제안된 반응 활동*(통제/근절 전략)
 - 3.1. 동물, 제품 및 사물에 대한 방역, 검역 및 이동 통제
 - 3.1.1 방역 규제
 - 3.1.2 가축 이동정지 - 주정부 / 준주정부 가축 이동 정지 및 국가 가축 이동 정지
 - 3.1.3 제한 구역 (RA)
 - 3.1.4 제어 영역 (CA)
 - 3.2. 살처분
 - 3.2.1 살상 (집단 감소) • 모든 감염되고 노출된 동물에 대한 도살 절차
 - 3.2.2 폐기

- 3.2.2.1 동물, 동물 제품, 동물 부산물 및 오염된 품목
- 3.2.2.2 실험실 폐기물
- 3.3. 오염 제거 및 농장 정화 절차
- 3.4. 진단, 추적 및 감시
 - 3.4.1 관할권, 사설 실험실 및 ACDP 간의 연락
 - 3.4.2 추적
 - 3.4.3 자원을 포함한 감시, 샘플링 및 실험실 테스트
 - 3.4.3.1. 감시 - 희귀하고 가치있는 동물
 - 3.4.3.2. 감시 - 야생 및 야생 동물
- 3.5. 구역화 및 구획화
- 3.6. 예방접종
 - 3.6.1 백신 접종 전략
 - 3.6.2 예방 접종 프로토콜
 - 3.6.3 백신 접종 재고의 최종 사용
 - 3.6.4 부산물 및 폐기물을 포함한 백신 재고 처리
- 3.7. 상황 보고 생산 및 보급
- 3.8. 국제 통보 • 농업, 수자원 및 환경부 책임
- 3.9 야생 및/또는 야생동물의 관리
- 3.10. 병원체 매개 동물(Vector) 관리
- 4. 예상 예산*
 - 4.1. 비용 부담
 - 4.1.1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에 따른 대응 비용의 비용 부담 요청
 - 4.1.2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에 따른 보상 비용의 비용 부담 요청
 - 4.1.3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의 당사자가 아닌 산업의 참가자에게 당사자가 지불하는 보상의 비용 공유 (적절한 경우)
 - 4.2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비용 효율성 모니터링(효율 옹호자 임명)
 - 4.3 예산 요약
 - 4.4. 급여 및 임금 (스테핑)
 - 4.4.1 영구 직원
 - 4.4.2 개인 수의사 - 고용 또는 계약된
 - 4.4.3 자원봉사자/긴급 서비스 담당자
 - 4.5. 운영비
 - 4.6. 자본비용
 - 4.7. 보상
 - 4.8. 중대한 손실
- 5. 공공정보*
 - 5.1. 언론과의 연락에 대한 책임 주도
 - 5.2. 산업 및 지역 사회 연락
- 6. 국가조정센터(SCC)
 - 6.1. SCC 위치, 구조, 관리 및 직원 배치

7. 지역 통제 센터 (LCC)

7.1. LCC 위치, 구조, 관리 및 직원 배치

8. 정보 시스템 및 관리

8.1. EAD 정보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8.2 관리 센터 정보 관리

9. 추가적인 연구 및 정보 요구

10. 회계절차

11. 첨부파일

11.1. 부칙 1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지도(들)

11.2. 부칙 2 - 법적 계기 - 통제구역, 제한구역, 가축이동중지명령

Schedule 5 - AUSVERPLAN 문서

(Clause 7.2)

1. AUSVETPLAN 관련 관리 매뉴얼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특정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 매뉴얼의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제어 센터 관리 파트 1
- 제어 센터 관리 파트 2
- 실험실 준비

2. 적용가능한 AUSVETPLAN 질병 전략

모든 AUSVETPLAN 질병 전략은 Schedule 3에 나열된 특정 질병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AUSVETPLAN 질병 전략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nimalhealthaustralia.com.au/our-publications/ausvetplan-manuals-and-documents/>

Schedule 3 외의 기타 질병에 대한 '대응 정책 개요'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nimalhealthaustralia.com.au/our-publications/ausvetplan-manuals-and-documents/>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특정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질병 전략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운영 매뉴얼

- 오염 제거
- 동물의 도살
- 폐기 절차
- 축산복지 및 관리

- 홍보
- 평가 및 보상
- 야생 동물 대응 전략.

Schedule 6 - 비용 분담 (Clause 10)

1 정부 기금(Government Funding)

정당간의 비례분할 결정

다음 공식은 총 정부 기금의 각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지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주연방 지분은 각각의 경우 전체 정부 shares(점유율)의 50%입니다.

공식 설명

모든 값에 대해 3년 연속 데이터 평균을 사용하며, Animal Health Australia는 ABS 소스 데이터(사용 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의 예비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ABS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매년 8월에 갱신한다. '카테고리 1' 공식은 최신 인구 조사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인구 및 GVP 데이터는 추가를 허용하기 위해 백분율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마지막 열에서 결정된 개별 주정부/준주정부의 몫(share)은 호주연방의 50% 몫(share)을 결합하기 위해 2로 나눕니다.

1.1 카테고리 1 공식

최신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정부/준주정부(state/territory) 비율

[a]	[b]
Human population % of national total	Share [a] divided by 2

1.2 소, 면양 및 돼지 공식

가축 개체수(수) 및 GVP를 기반으로 한 주정부/준주정부

[a]	[b]	[c]	[d]	[e]	[f]
Cattle (000's) Beef and dairy	Sheep (000's)	Pig (000's)	Aggregate (in sheep equivalents) [7.5a+b+c], as a % of national total	GVP (cattle and calves, milk, sheep and lambs, wool, pigs)*,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d+e]/Σ[d+e] (as %), divided by 2]

* ABS 돼지 GVP 자료는 모든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음

1.3 돼지 공식

가축 개체수와 도축두수에 근거한 주정부/준주정부 shares(점유율?)

[a]	[b]	[c]
Pigs, as a % of national total	Number of pigs slaughtered,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a+b]/\Sigma[a+b]$ (as %), divided by 2

1.4 소와 양 공식

가축 개체수와 GVP를 기준으로 한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d]	[e]
Cattle (000's) Beef and dairy	Sheep (000's)	Aggregate (in sheep equivalents) $[7.5a+b]$, as a % of national total	GVP (cattle and calves, milk, sheep and lambs, wool),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c+d]/\Sigma[c+d]$ (as %), divided by 2

1.5 가금 공식

산란계의 개체수와 가금 도축수수 기반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Number of hens and pullets for egg production, as a % of national total	Number of poultry slaughtered,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a+b]/\Sigma[a+b]$ (as %), divided by 2

1.6 아메리카 파리유충(screw worm fly) 공식

관할구역	%
New South Wales(State)	10.5
Victoria(State)	6.0
Queensland(State)	28.5
Western Australia(State)	1.5
South Australia(State)	3.0
Tasmania(State)	0.0
Northern Territory	0.5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0.0
호주연방(Commonwealth)	50.0

1.7 소 공식

소 개체수와 GVP 기반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Cattle (beef and dairy) as a % of national total	GVP (cattle and calves, milk),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a+b]/\Sigma[a+b]$ (as %), divided by 2

1.8 면양 및 산양 공식

가축 개체수와 GVP 기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Sheep, as a % of national total	GVP (sheep and lambs, wool)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a+b]/\Sigma[a+b]$ (as %), divided by 2

** 면양 데이터로만 구성, 산양데이터는 ABS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음. 비용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1.9 말 공식

말 개체수 기반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Horse population, as a % of national total	State/Territory Share [a] divided by 2

* 말의 GVP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10 소와 말 공식

가축 개체수와 GVP 기반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d]	[e]
Cattle (000's) beef and dairy	Horses (000's)	Aggregate [a+b], as a % of national total	GVP (cattle and calves, milk),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c+d]/\Sigma[c+d]$ (as %), divided by 2

** 소의 데이터만, 말의 GVP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11 양과 말 공식

가축 개체수와 GVP 기반의 주정부/준주정부 shares**

[a]	[b]	[c]	[d]	[e]
Sheep (000's)	Horses (000's)	Aggregate (in sheep equivalents) [a+8b], as a % of national total	GVP (sheep and lambs, wool), as a % of national total	Share [c+d]/Σ[c+d] (as %), divided by 2

** 양의 데이터만, 말의 GVP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질병에 대한 공식의 적용

1. 카테고리 1

- 호주 박쥐 lyssa 바이러스
- 일본뇌염
- 니파 바이러스
- 광견병
- 서부, 동부 및 베네수엘라 말 뇌척수염

2. 소, 양 및 돼지

- 구제역
- 우열(rinderpest)
- 돼지 수포 병(swine vesicular disease)
- 수포성 발진(vesicular exanthema)
- 수포성 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 수포성 구내염은 말에게도 감염되지만, 말 개체수 데이터를 생략하여 공식을 단순화함.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3. 돼지

- 아프리카 돼지 열병
- 오제스키 병
- 돼지콜레라 (classical swine fever, Hog cholera)
- 메넵글 바이러스(Menangle virus, porcine paramyxovirus)
- 돼지 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PED)
-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 돼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 테센병(Teschen disease)
- 전염성 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TGE)
- 선모충증(trichinellosis)

4. 양과 면양

- 탄저병(Anthrax, major outbreaks)
- 블루팅
- 심수병(heartwater)
- 리프트 계곡열(Rift Valley fever)

5. 가금

- 조류 인플루엔자
- 전염성 F낭병(infectious bursal disease, hypervirulent 형태)
- 뉴캐슬병

6. 아메리카 파리유충(screw worm fly)

- 아메리카 파리유충(screw worm fly)

7. 소

-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브루셀라증(Brucella abortus로 인한)
-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으로 인한 소 결핵
-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 동연안열(East coast fever)
- 출혈성 패혈증(haemorrhagic septicaemia)
- 쟈브라나병(Jembrana disease)
- 괴피병(lumpy skin disease)

8. 양*

- 브루셀라증(Brucella melitensis로 인한)
- 뇌염(encephalitides, tick-borne)
- 메디비스나병(maedi-visna)
- 나이로비(Nairobi sheep disease)
- 가성우역(pestes des petits ruminants, PPR)
- 스크래피(scrapie)
- 면양 및 산양 수두(sheep and goat pox)
- 베셀스브론병(Wesselsbron disease)

*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산양에게도 감염되지만 산양 GVP 및 생산량 수치를 생략하여 공식을 단순화 함. 비용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

9. 말

-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 전염성 말 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 구역(Dourine)

- 동물유행림프관염(epizootic lymphangitis)
- 말 바베시오증(equine babesiosis)
- 말 뇌증(equine encephalosis)
- 말 인플루엔자(equine influenza)
- 게타 바이러스 감염증(Getah virus)
- 마비저(glanders)
- Hendra virus*
- 포토맥 병(Potomac fever)

*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헨드라 바이러스는 ‘말 전용’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임

10. 소와 말

- 수라증(surra)

11, 양과 말

- 보르나병(Borna disease)

2 산업 기금(funding)

EAD가 둘 이상의 종에 영향을 미치거나 둘 이상의 산업 단체와 관련된 경우 산업 단체 간의 비용 분담에 적합한 비용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1 둘 이상의 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비용 분담

EAD가 하나 이상의 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산업 단체의 분담금(contribution)은 해당 산업에 대한 EAD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중치에 따라 각 산업의 GVP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가중된 비례 분담금-Weighted Proportional Contribution"). Weighted Proportional Contribution는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한다.

$$\text{개별 산업 shares (\%)} = \frac{GVP_i}{GVP_T} W_i x$$

위에서:

GVP_i = 산업의 총 생산 가치

GVP_T = 피해를 입은 산업의 총 생산 가치의 합

w_i = 아래 표에 제시된 각 산업별 가중치

$$x(\text{scaling factor}) = \frac{GVP_T}{\sum_i (GVP_i * W_i)}$$

scaling factor의 목적은 개별 산업 shares(점유율)의 백분율 값을 다시 총 100%로 scaling하기 위함

질병	산업에서의 근절 비용에 대한 기금의 가중치 (%)			
	소	면양/산양	돼지	말
탄저병	70	30		
보르나 병		50		50
구제역	50	30	20	
리프트 계곡열	30	70		
screw worm fly	n/a	n/a		
	50	20	20	10
심수병	50	50		
수포성 구내염	50			50

예외는 screw worm fly로, 피해를 입은 산업 단체의 분담액은 소 85%(육우 84%, 유우 1%)와 면양/산양 15%(출처 : “Economic Assessment of the expected producer losses and control strategies of a screw worm fly invasion of Australia” (1993), Queensland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Project Report Series Q093016)

2.2 둘 이상의 산업 단체가 하나의 종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용 분담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하나의 종에 해당할 경우, 해당 당사자간의 비용 분담 방식은 산업 부분의 GVP를 고려해 해당 당사국과 협의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에 의해 결정됩니다.

Screw worm fly의 경우, 할당량은 유우에서 1%, 나머지 84%는 육우 방목장과 비육장 사이의 GVP로 분할됩니다.

3 비용 결정

계약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모든 청구는 관련 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연방 조직의 수석 회계 책임자, 수석 수의사 또는 산업 기관의 수석 회계 책임자가 인증해야 합니다.

3.1 급여 및 임금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또는 산업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될 직원/컨설턴트의 급여 또는 자문료는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여하는 직원/컨설턴트 및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이행을 직접 보조하는 기존 상시 직원의 자리를 보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컨설턴트에 대한 급여 또는 자문료는 비용분담을 받을 수 있다.
- 주정부 또는 준주정부 경계를 넘어 파견된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은 비용 분담 대상이 아니지만 파견된 직원의 자리를 채우는 데 종사하는 직원/컨설턴트의 급여 또는 임금은 적격합니다.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이행에 종사하는 직원/컨설턴트에 대한 수당은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식비, 지역비용, 위약금 및 숙박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시행의 결과로 특별히 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세, 근로자 보상 보험, 연금 및 휴가는 비용 분담 대상이 됩니다.
- 정상적인 고용 조건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 수당은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됩니다.

- (g)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당사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한 민간 의사에 대한 수수료 및 수당은 AHC가 승인한 수수료 및 수당 구조 또는 기타 관련 수수료 및 수당 구조 수준까지 비용 분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 비상근무 자원봉사자 및 방위대원에 대한 보상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상으로 하되, 본인 부담금 또는 부대비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자원봉사자 또는 방위대원의 참여 기반이 주로 현금 지출이 아닌 경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는 경우 3.1(b)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3.2 운영 비용

- (a)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운영 비용은 비용 분담 대상이 됩니다.
- (b) 호주연방, 주정부/준주정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실험실 서비스의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 직원 비용 및 운영 비용은 비용 분담 대상이 됩니다.
- (c)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소스가 주/준주 정부에 제공하는 실험실 서비스의 경우.
 - 지정된 계약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부 연구소에서 (b)에서 발생한 한계 비용과 동일한 금액이 비용 분담 대상이며
 - 계약된 서비스 수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부 연구소에서 부과하는 전체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해당된다.
- (d) 비용 분담 계약에서 차후에 상환된 자금으로 구매한 모든 상점 및 장비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완료되고 60일 이내에 판매된 시점에 평가됩니다. 판매 수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는 관련 당사자가 실제로 기여한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관련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 (e) 이 절차의 변경은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3.3 자본 비용

- (a) 자동차 또는 건물과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자본 지출은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본 항목의 작업 수명은 일반적으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근절 노력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즉각적인 서비스 요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는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됩니다.
- (c)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완료될 때, 이후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된 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자본 장비는 상단의 운영비용(d)과 같이 처리됩니다.

3.4 보상(Compensation)

보상금은 관내에서 신청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비용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a) 가축 또는 소유물로 긴급동물질병의 퇴치 또는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처분된 것
- (b) 관할권의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검사관(수의사 또는 CV0의 승인을 받은 자)이 어떤 가축의 죽음이 EAD로 인한 것 또는 EAD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증하고(정당한 조사 후에), 가축의 사망이 보고되는데 불합리한 지연이 없었으며, 가축이 강제 도살되어 죽지 않았다고 CV0가 인증한 경우

3.4.1 추가 원금 재보상 비용 분담 자격이 있는 지급

2차 평가(second valuation) 또는 추가 지불(Top-up Payment)

가축의 경우, 가축의 총 가치가 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에 더 큰 경우 두 번째 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지불금에서 지불해야하는 보상은 해당 날짜의 가축의 총 가치와 위의 (a)와 (b)의 가축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지불 대상(To whom payable)

'소유자(owner)'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으로, 소유하지 않은 저당권자 외에 모든 사람(본사 기업의 경우 관리자/비서)이 포함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Time limit for applications)

가축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는 가축 또는 다른 재산의 소실 또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가 또는 대리인이 해야합니다. 두 번째 평가에 대한 요청은 재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또는 대리인이 해야합니다. 보상의 두 번째 지불에 대한 청구는 두 번째 평가 결정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제외(Exclusions)

EAD의 억제 및 근절과 직접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책임 당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상금 또는 이와 달리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보상금은 본 지침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Method of valuation)

가축의 경우 그 평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a)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된 검사관 또는 수의사에게 질병 또는 질병의 의심을 보고한 날짜; 또는
 - (b) 해당 법률에 따라 공인된 검사관이 질병을 발견한 날짜; 또는
 - (c) 질병과 관련된 검역 명령이 내려진 날짜,
- 어느 쪽이든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가축의 경우, 2 차 평가가 근거가 되는 날짜는 재산의 재입고 자격과 관련된 모든 제한 사항의 해제 날짜입니다.

재산(건물 포함)의 가치는 파괴 직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값이다.

지급해야 할 보상을 결정할 때, 수익 손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 생산 손실 또는 기타

결과적 손실(규정의 맥락에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고 또는 재산의 가치를 계산할 목적으로, 그 가치는 재고 또는 재산이 소실되었을 때 또는 재산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판매된 장소, 즉 farm gate value(제품의 시장가치에서 운송비나 마케팅 비용등의 판매비용을 뺀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 또는 재산의 가액은 사망 또는 소실이 발생한 관할구역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거짓 진술(False statements)

본인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오인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또는 행위의 의심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EAD를 위한 규정에 의해 지불된 보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는다.

4 비례 지분의 결정(Determination of Proportional shares)

합의한도에서 비례달러 지분의 결정

매년 8월 Animal Health Australia, ABS 소스 데이터 사용(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예비 데이터 포함) 또는 ABS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합의하에 3년 연속 관련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는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1. 관련 산업별 GVP를 결정합니다.
2. 관련 산업에 대한 총 GVP를 계산합니다.
3. 총 GVP의 10.5(a)항에 명시된 비율(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기타 비율)을 계산합니다.

EAD의 경우 당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규정의 13.1(c)항과 Schedule 7의 Part 2에 제공된 대로 Animal Health Australia는 또한 다음을 수행합니다.

4. 10.2(a)절에 설명된 대로 각 질병 범주에 적용되는 백분율을 사용하여 정부 당사자(총) 및 산업 단체(들)(총)의 달러 지분(Shares)을 결정합니다.

5. 달러 지분(shares)의 결정은

- 각 정부 당사자의 지분은 Schedule 6의 Part 1에 설명된 관련 공식에서 얻은 백분율을 사용하고 결정하고
- 각 산업 단체(하나 이상의 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종을 대표하는 경우)는 Schedule 6의 Part 2에 명시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5 GVP의 변경(Changes in GVP)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채택할 때 시행되는 비용 분담 약정은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과정에서 GVP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Schedule 7 - 비용 분담 의무를 위한 재정적 지출(funding) (Clause 11)

1. 비용 분담에 대한 업계 지분(shares)의 지불

본 Schedule의 Part에서 '산업'이란 호주연방이 11.4 (b)에 따라 비용분담 의무를 이행한 산업을 의미한다.

(1) 산업의 의무 - 호주연방에 대한 상환/반제(repayment)

산업 단체는 호주연방이 지불한 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일반적으로 10 년 이내로 예상 됨) 내에 호주연방에 상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상환은 호주연방이 지불한 금액의 순 현재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납된 각 금액에 대한 이자는 호주연방이 지불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금액이 미납된 각 연도(또는 일부)에 대한 연간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급됩니다.

산업당사자에 의한 상환은 산업법에 따른 부담금 제도 또는 자발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부담금 약정에 의한 상환을 결정하는 산업 단체의 의무는 이 개요(outlined)의 Section 2, 3(a) 및 3(b)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업 단체가 자발적인 상환 수단을 지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산업 단체는 제안된 자발적 상환 수단에 대한 개요와 함께 호주연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보고는 호주연방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 부담금(contribution)을 승낙하기 전에 제공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호주연방은 자발적인 수단을 통해 산업 단체가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발적인 상환 수단에 대한 수락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자발적인 지불 수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당사자의 입증 증거 및/또는 서면 보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된 상환 방법에 관계없이 산업이 합의된 상환 일정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호주연방은 언제든지 산업 단체에 서면 통지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산업 단체는 통지에 명시된 날짜까지 호주연방과 새로운 상환 일정에 대한 협상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환 일정에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새로운 상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상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호주연방은 법정 부담금 약정을 통해 이자와 함께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산업의 의무 - 부과 약정

다음 표에 열거된 각 당사자는 표에 명시된 방식으로 그 채무에 자금을 제공해야(fund)한다.

당사자	부과금 세율 0%, 필요할 때 활성화	운영비율(operative rate)로 설정된 부과금	기타 메커니즘
Australian Chicken Meat Federation Inc.	X		
Australian Duck Meat Association Inc.			X ⁴
Australian Eggs Limited	X		
Australian Dair y Farmers Limited	X		
Cattle Council of Australia Inc.	X		
Australian Pork Limited	X		
Sheep Proucers Australia Limited	X		
WoolProducers Australia			X ⁵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Inc.	X		
Goat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X		
Racing Australia Limited	X		
Harness Racing Australia Inc.	X		
Australian Horse Industry Council	X		
Equestrian Australia Limited	X		

⁴Australian Duck Meat Association Inc를 대신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가 자발적으로 부담

⁵WoolProducers Australia를 대신하여 Australian Wool Innovations가 보유하는 5백만 달러의 예비금

산업 단체는 부과금 지급인과의 협의에 따라 표에 표시된 것과 다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채택할 수 있다. 산업 단체는 이 규정을 실행한 후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부과금의 도입 또는 기존 부과금의 수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부과 원칙 및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프로세스의 결론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호주연방은 부과금 또는 기타 약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하위 법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산업의 의무 - EAD 급격한 발생(EAD outbreak)

만약 EAD가 급격히 발생한 경우:

- (a)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산업에 관하여 부과금이 처음에는 제로 비율로 설정되었던 당사국으로서, 정부의 부과금 원칙 및 지침에 따라 부과금 비율이 위의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에 대한 상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율로 증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산업에 대한 부담금이 운용 비율로 책정된 당사자로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i) 부과금 영수증의 결과에 따라 예비금을 검토한다.
 - (ii) 그 금액이 미래의 부과금 수령의 결과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다른 금액과 함께 당사자가 Section (1)에 명시된 대로 호주연방에 대한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정부의 부담금 원칙 및 지침에 따라 부담금 비율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 (c)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호주연방과 자발적인 상환 수단으로 합의한 당사자로서 당사자가 Section 1에 명시된 대로 호주연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 단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약정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

주요기관(Lead Agency(s))은 clause 13.1조(a)에 따라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재무 세부사항을 보관해야 하며, Animal Health Australia는 주요기관(Lead Agency(s))과 협의하여 clause 13.4에 따라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외부 감사를 주선해야 한다. Schedule 6의 Part 3 및 clause 10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서 발생한 각 피해입은 당사자의 적격 비용의 비용 분담은 매월(또는 국가 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합의한 다른 기간) 이루어질 것이다.

적격 비용이 발생한 Lead Agency(들) 및 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각 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Animal Health Australia에 제출해야 하며, Animal Health Australia가 제공한 형식의 청구서, 최고 수의책임자 및 해당 피해입은 당사자의 관련 재무 담당자가 서명해야 한다. Animal Health Australia는 청구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Australia Animal Health Australia는 clause 13.1(b)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청구를 조정하고 대조하며 clause 13.1(c)에 따라 당사자가 지불한 자금 기록을 유지합니다.

Australia Animal Health Australia는 clause 10.7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과 함께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비용 분담 총액을 결정합니다. Animal Health Australia는 Schedule 6의 Part 1 및 Part 2에 따라 결정된 비용 분담 비율을 사용하여 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용 분담을 위해 청구된 금액(있는 경우)은 각각의 총 금액에서 공제되어 순 지불 금액을 결정한다. *참고 : 주요기관(Lead Agency(s))의 경우 이 순 금액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다음 Animal Health Australia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 (전항의 순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대해 통지할 것이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피해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는 각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을 통지한다.

Clause 10.2 에 따라 의무를 소급하여 이행하기 위해 연방과 합의한 피해 산업 단체의 경우, 해당 피해 당사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농무부, 수자원부 및 환경부가 지불해야하는 금액 (shares)에 추가됩니다.

받을 금액이 있는 피해입은 당사자는 다른 피해입은 당사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것이며, 지불조건은 청구서로부터 30일이다.

Schedule 8 - 협의

(Clause 12)

국가 긴급 동물 질병 관리 단체 - NATIONAL EMERGENCY ANIMAL DISEASE MANAGEMENT GROUP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하나뿐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1. 긴급 동물 질병 대응 문제에 대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고려사항

1.1 구조(Composition)

각 관련 당사자의 대표는 다음과 같다:

- (a) 농림, 수자원 및 환경부 장관(의장-chair)
- (b) 주정부 및 준주정부 당사자의 최고 경영자;
- (c) 각 관련 산업 단체의 회장(또는 이와 유사한 임원)
- (d) 관찰자로서의 Animal Health Australia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대표자는 가능한 경우 EAD 대응 원칙과 책임에 대해 Animal Health Australia에서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2 위탁사항(Terms of Reference)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업무:

- (a) EAD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해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 (b)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대한 예산, 투입 및 실제 지출을 포함하여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는다.
- (c) 다음을 포함하여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주요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i) indicative budget를 포함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승인
 - (ii) 비용이 합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검토

- (iii) 합의된 한도보다 낮은 수준 또는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언급하지 않고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지출 및 상한선 설정
 - (iv) 당사국이 EAD를 보고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v) EAD가 제거되었거나 억제되었다는 결정
 - (vi) EAD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의해 박멸 또는 봉쇄할 수 없다는 결정
 - (vii)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조언에 따라) 비상 대응이 관리로의 전환 단계에 들어가야 하고 관리로의 전환 단계를 통합하기 위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수정안 승인의 결정.
 - (viii) 효율성 평가 보고서 및 재무 감사 보고서의 고려
- (d)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AGMIN에 보고한다.

1.3 회의

- (a)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EAD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재정 문제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할 것이다.
- (b) 회원은 대의원에 의해 회의를 대표할 수 있다.
- (c)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d) 회원은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고문을 동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e)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회원 또는 대의원은 짧은 통지(24시간미만)내에 회의에 참석가능 해야한다.
- (f)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의장을 통해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와 소통한다.
- (g) 사무국 서비스는 농림, 수자원 및 환경부에서 제공하며, 각 당사국에 회의 보고서를 제공한다.

2.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고려사항

2.1 구조(Composition)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때때로 AGMIN 의장이 임명하는 당사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지만 호주연방, 주정부 및 준주정부, 산업 단체 및 Animal Health Australia의 대표도 포함된다.

2.2 위탁사항(Terms of Reference)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업무:

- (a) 자원 위임(resource commitments)을 총괄하고 규정 제도 사안(Deed policy issues)를 평가한다.
- (b) 방역조치의 이행과정을 감독한다.
- (c)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를 Animal Health Australia에 보고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한다.
- (d) 규정에 대한 검토가 매 5년마다 Animal Health Australia의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3 회의

- (a)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필요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 (b)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EAD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당사자가 선의와 협력을 약속해야 합니다. 결정은 합의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의 기권은 합의 결정이나 범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 문제를 AHA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 (c) 사무국 서비스는 농림부, 수자원부 및 환경부에서 제공합니다.

3.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3.1 EAD에 대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역할

이 규정(Deed)에 따른 긴급 동물질병대응에 대한 국가 기술 대응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이를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회의에 보고.

3.2 Scope of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Activities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동물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해 호주연방, 주정부/준주정부, 산업, 호주 동물 보건국 및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 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 조정 기관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다음과 같은 특정 책임을 집니다.

- 의심되는 EAD 사건에 대해 정부 당사자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음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필요한 경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조언
-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권고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
-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통합 보고서 제공
-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가 EAD 근절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권고를 제공.
 - 관리 단계로의 전환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와 그렇다면 관리 단계로의 전환의 범위와 전환에 포함시키기 위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개정안 발의
 -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의 비상대응의 종료에 대한 결정 여부(이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은 종료되며) 또는, 이 규정 이외의 대체조치에 대한 여부에 대한 권고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하에서 질병이 억제되거나 박멸되었을 때를 결정한다.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성공적인 구현에 따라 자유의 증거(proof of freedom)가 달성되었을 시점을 제시한다.

4. EAD와 관련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위원

4.1 의장

ACVO(또는 그의 지명자)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4.2 호주연방, 주정부 및 준주정부 동물 보건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 모든 주정부 및 준주정부 CVO(또는 지명자)
- CSIRO(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Preparedness, ADCP)에서 지명한 1명
- 호주 CVO가 지명한 농림, 수자원 및 환경부 대표 2명.

정부 대표는 가능한 경우 Animal Health Australia가 책임 및 EAD 대응 원칙과 관련하여 실시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정부 대표로써의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3 축산업을 대표하는 위원

축산업단체는 그들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에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즉시 가입할 후보자들을 제공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 피해를 입은 산업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 피해를 입지 않은 산업단체의 집단을 대표하는 1명(입회인(observers)으로)
- 대표자는 EAD 대응 원칙 및 책임과 관련하여 Animal Health Australia에서 실시하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산업 대표자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업계 직원으로 Animal Health Australia가 유지 관리하는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입회인(Observers), 전문가/고문(resource persons)

Animal Health Australia는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위원은 특정 전문성을 갖춘 고문을 동반할 수 있으나 이들은 결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긴급 상황에 적절한 경우 보건 및 환경부 직원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회인/전문가의 수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는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as present)' 발표 및 기록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그들이 초청하는 관찰자들이 비밀유지요건을 포함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운영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4.5 회의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EAD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당사자가 선의와 협력을 약속해야 합니다. 결정은 합의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의 기권은 합의 결정이나 범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 결정이 내려 졌더라도 이 문제를 Board of Animal Health Australia에 회부할 수 있다.

Schedule 9 - 기밀유지 증서 설문지(Confidentiality Deed Poll) (Clause 12.3(b)(v))

긴급가축질병대응에 대한 정부 및 축산업 비용분담 규정('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 또는 EADRA')은 산업 대표자를 그들의 산업과 관련된 사고 정의단계, 긴급 대응 단계, 자유 증명단계 및/또는 관리로의 전환 및 발병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 돕는다. 결과적으로, 기밀 성격의 정보를 이러한 산업 대표자들이 이용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밀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자와 관련된 상업적 기밀 정보
- 정부 정책 또는 재정적 이해 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 법률 전문가로서의 특권을 끌어모으는 정보
- 내부 작업 문서
- 국가 안보 또는 국제 관계에 관한 정보
- 개인 정보

따라서 산업 대표는 기밀 정보를 받기 전에 기밀유지 증서 설문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설문지는 다른 당사자가 문서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기밀 정보를 공개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의 서명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Deed Poll)에 따라 업계 대표자가 수행한 기밀 유지 약속은 긴급가축질병대응협정(EADRA)에 관련 당사자가 수행한 기밀 유지 약속에 추가됩니다. 설문지는 다음 또는 유사한 형식이며, 이는 Animal Health Australia에서 수시로 결정합니다.

긴급 동물 질병 대응에 관한 정부 및 가축 산업 비용 분담 규정 기밀 유지 증서 투표	
I,	
of	
	(address)
representing	
	(indust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증서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단어 및 구문은 긴급 동물 질병 대응에 관한 정부 및 축산 산업 비용 분담 증서(동물 긴급 질병 대응 협정)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2. 나는 비상 동물 질병 대응 계획(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상 동물 질병 대응의 사고 정의 단계, 비상 대응 단계, 자유 증명 단계 및/또는 관리로의 전환 단계와 관련된 상담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서의 당사자 중 하나의 대표로 긴급 동물 질병 대응 협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러한 활동의 맥락에서, 나는 긴급 동물 질병 대응 협정에 따라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의, 원격 회의 및 기타 활동에 대한 나의 참여와 관련하여 나에게 획득되거나 생산되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밀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4. 당사자가 기밀로 표시하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 외에 기밀임을 이해합니다:
 - a. 이미 공개 도메인에 있거나, 본 계약서 투표일 이후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무단 공개의 결과 이외의 공개 도메인의 일부가 됩니다.
 - b. 본 정보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제3자 및 기밀이 아닌 기반에서 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되게 됩니다.
 - c. 본 계약 여론조사에 따라 본인에게 공개일 이전에 본인에 의해 개발되었거나(제 서면 기록 또는 기타 적절한 증거로 표시),
 - d. 나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5. 나는 이로써 각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 a) 제 5 항 (f)에 따라, Animal Health Australia 또는 긴급 동물 질병 자문위원회 또는 국가 관리 그룹이 기밀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나에게 통보한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 b) 나에게 제공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것.
 - c)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밀 정보를 제공;
 - d) 기밀 정보가 적절한 보안에 의해 저장되거나 보호되도록 보장하며, 기밀 정보의 성격과 그것이 발견되는 매체를 고려.
 - e) 기밀 정보가 공개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조언하는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또는 내가 작업 중인 물질적 또는 구두 정보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보장.
 - (f)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 정보가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되는 경우 공개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

참고 : 이 증서 설문 조사 완료하려면

실행 및 증명 조항(caluse)의 형식은 이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chedule 10 -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clause 13.2)

[참고 : 본 Schedule는 비용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면 수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1. 지출명세서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의 각 관련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목은 보고서의 작성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소제목에 언급된 모든 문제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의 양은 긴급 질병 대응의 성격과 정도, 대응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동물 질병 대응 계획(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승인된 지출한도(Approved expenditure limit) : \$ _____

인력(Staffing)

<p>Agency 고용되어 급여 및 임금을 받는 자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직접 고용된 적격 직원 또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파견된 다른 직원을 채우기위해 고용된 직원(x persons @ \$/day @ y days) - 급여 또는 임금 - 비용(예: 급여세, 연금 및 보험)</p>	\$
<p>민간 수의사(Private veterinarians)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 수의사: 동물보건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수수료 구조에 의해 승인된 요금 및 수당</p>	\$
<p>자원 봉사자(Volunteers)</p>	\$
<p>수당(Allowances)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직접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사 수당. - x 사람 @ \$ / day @ y days 적격직원의 벌금 및 초과근무 수당 - x persons @ \$/day @ y days 숙박비 - x persons @ \$/day @ y days 식비 - x persons @ \$/day @ y days 여비 (a) 그룹 - 버스 대여 x 버스대수 @ \$/day (요금은 크기에 따라 다름) (b) 개인 - x 자동차 @ y cents/km (요금은 크기에 따라 다름) - x 항공료 @ \$y (return economy) 하청 용역(Contractor services) - 대규모 토목 x days @ \$/day @ y days - 보안 x days @ \$/day @ y days - 운송 및 택배 x days @ \$/day @ y days - 기타 (특정) 식물 및 장비 오염 제거를 위한 화학물질 소모품 통신 (설치, 대여료 등) 실험실 - 주(state) 실험실 (\$/test @ x tests) - ACDP (\$/test @ x tests)</p>	\$

백신 - \$/dose @ x dose	
--------------------------	--

자본 항목(Capital Items)

발병 규모에 따라 자본장비 구입은 부적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빌리거나 임대할 수 있다.	\$
--	----

보상

동물의 각 종(species)에 대하여 각 class 수 @ 농장 내 시장가치* (\$/두수 또는 \$/kg 생체중) *동물의 시장가치는 도태된 가치가 아니며 그것의 상태, 과거 성적 및 미래의 수익에 대한 잠재력을 반영해야함 기타 축산물, 구조물, 공장 및 장비 - 예상 시장 가치	\$
--	----

2. 지출 모니터링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은 승인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시적 예산(indicative budget)과 비용 분담 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한도를 준수할 당사자의 의향을 참조하여 지출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한다. 상한은 clause 10.5(a)에 따라 결정된 합의 한도보다 작거나 그 이하일 수 있다. 주요기관(Lead Agency(s))과 긴급동물질병협의회(CCEAD)는 13.2(b)항에 따라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보고되는 예산 및 실제 지출이 상한치 미만인 경우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을 참조하지 않고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상한은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참가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요기관(Lead Agency(s))이 때때로 적용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출은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비용 분담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Schedule 11 - 재무회계감사 및 효율성 평가 (clause 13)

1. 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근절/억제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승인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준수하는지,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Efficiency Advocate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에 기재된 대응 활동이 바르게 구현되는지 여부;

- Lead Agency의 대응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하에서 주요기관(Lead Agency(s))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당사자(s)가 지출하는지 주요기관(Lead Agency(s))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당사자(s)가 비용 부담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지출이 Schedule 6의 Part 3 및 규정 10.8 조항에 따라 유효하고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
- 필요한 경우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을 수정하기 위해 시정 조치 권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구대로 긴급가축전염병 대응계획(EADRP) 구현 과정 동안, 특히 매 분기 말(또는 기타 합의된 기간)에 점진적 평가 보고서가 요구된다.

최종 평가 보고서는 자유 증명 단계 완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에 제공됩니다.

2. 재무 감사

재무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가 증서, 회계 기준 및 기타 관리 측면에서 재무 상태 및 재무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포함하여 주관 기관이 작성한 소정의 재무제표에 통합된 재무 데이터에 대한 증명 지침;
- 증서 준수 평가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 및 거래 검사;
- 감사인이 당사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생각의 보고;
- 감사 과정에서 명백해지는 경우, 공동 또는 개별 당사자와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 청구 또는 소송 문제의 식별 및 그러한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노출 범위;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활동 및 문제.

감사인의 권한 내에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 기록 및 재산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감사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인력 외의 인력을 협력 받을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권리가 있다.

최종 감사 보고서는 AHA 또는 국가긴급가축질병관리단(NMG)이 합의한 기타 날짜에 위임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모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감사는 호주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첨부 5 - 유럽연합의 가축방역관련 비용에 대한 관리 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U) No 652/2014]

- (1) EU 법률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생산 단계에서 식품 및 식품 안전, 사양 및 사료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동물(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요구 사항과 가축 방역, 가축 부산물, 식물 방역 및 식물 번식, 식물 품종 보호, 유전자 변형 유기체, 식물 보호 제품의 사용과 살충제의 지속 가능한 사용 규칙을 포함한다. EU 법률은 이러한 요구 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규제 및 기타 공식 활동을 규정한다.
- (2) EU의 해당 분야에 대한 목적은 사양 기간에 동안 동·식물의 높은 수준의 방역, 소비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및 정보 제공,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종사자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다.
- (3) 위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합이 수행되어진 자금 조달에 대한 목표와 다양한 관련된 영역에서 수행되어진 조치를 조사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4) 과거에 사양 및 사료와 관련된 EU 자금조달 및 지출 활동은 국제기구에 대한 보조금 형식의 조달 및 지불 방식의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방식의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다.
- (5) EU의 자금조달은 EU 회원국(회원국)에서 관련 분야에 속해있는 조직에서 수행되는 해충 또는 가축 질병의 예방과 근절의 통제와 동·식물 방역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 (6)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 비용과 비율뿐만 아니라 EU 분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조치의 목록을 이 규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7) 이사회 Regulation (EU, Euratom) No 1311/2013고려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양 및 사료에 관련 지출 금액은 1,891,936,000 유로이다.
- (8) 또한, EU의 자금이 예산 제 3호의 세출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식물의 방역과 관련된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 의회, 이사회 및 예산 규율 위원회 간의 2013년 12월 2일 기관 간 협정에 따라 예산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건전한 재정 관리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동원되어야 한다.
- (9) 현재 법률은 비용의 일부를 적절한 고정 비율로 상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타 비용과 관련한 법률은 상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고정된 최대 상환 비율을 설정해야한다. 상환 비율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성상황에서 최대 상환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10)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은 중요함으로써, 특정 조치에 대해 적절한 비용의 100%를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비적절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 (11) EU는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금 수혜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 프로그램을 단순화할 책임이 있다. 2010년 10월 8일 유럽 연합의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는 제목의 위원회에서 유럽 의회, 이사회,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에 전달된 내용과 일치한다.
- (12) EU법은 회원국에서 특정 가축 질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때 특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EU는 이러한 비상조치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 (13) 또한 적절한 근절, 통제 및 모니터링 조치를 통해 사람과 가축의 복지에 위협을 초래하는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발병 건수를 줄이고 발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 통제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은 EU 자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 (14) 동·식물 복지 분야의 자금 처리와 관련된 조직적 및 효율성상의 이유로, 국가 프로그램의 내용, 제출, 평가 및 승인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 349조에 언급된 연합의 외곽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이유로 보고 및 지불 요청 제출 기한도 정해야 한다.
- (15) 위원회 Directive 2000/29/EC은 회원국이 식물과 식물성 제품(해충 방제)에 해로운 유기체의 근절을 위한 특정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EU는 해충의 박멸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기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충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특정 조건에 따라 EU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16) 질병 또는 해충(병해충 - Pest)이 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질병 또는 해충 박멸을 위한 비상조치는 연합 공동 자금 조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Directive 2000/29/EC에 대한 부록 I의 파트 A의 Section I 및 부록 II의 파트 A의 Section I에 나열된 'EU를 위해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거나 관련된 새로운 유해 유기체(질병 또는 해충)'와 관련하여 EU 재정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질병 또는 해충이 EU에서 발생한 것이 알려졌을 경우, EU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또는 해충과 관련된 조치만이 EU 재정 지원 자격이 있다. 이러한 질병 또는 해충에는 특히, Council Directive 69/464/EEC(2), 93/85/EEC(3), 98/57/EC(4) 또는 2007/33/EC(5)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질병 또는 해충이 포함된다. 또한 Directive 2000/28/EC의 부록 I와 II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또는 해충과, 국가적 조치 대상이 되거나 잠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Directive 2000/29/EC에 대한 부록 I의 파트 A의 Section I 또는 부록 II의 파트 A의 Section I에 대해 EU 재정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EU 비상사태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해충의 박멸을 위한 조치는 EU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 (17) 특정 병해충의 존재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 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는 병해충에 대한 조사는 병해충의 발생된 즉시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U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병해충의 상황 중 EU의 비상조치의 대상이 되는 병해충과 연합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병해충 범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일반적 조사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 (18) 동·식물 방역 분야의 조치를 위한 조합 자금 조달은 특정 적격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질병의 발생 또는 해충의 존재, 박멸 프로그램 중 사체의 파괴 및 운송, 비상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한 소유주에 대한 보상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 (19) EU 회원국의 변두리(최외곽)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방역 제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회원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U) No 228/2013의 목적에 따라 가장 변두리 지역에서 해충 방제를 수행한다. 특정 변두리 지역은 Directive 2000/29/EC에 규정된 연합 법률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EU 재정 지원은 연합 규정이든 국가 규정이든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 (20) EU 회원국이 수행하는 공적인 규제는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의 구현, 준수 및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적인 규제 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면서 사육에 따른 인간, 동·식물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제 조치를 위해 EU 재정 지원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합 기준 연구소(Union reference laboratories)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적인 규제의 효율성은 EU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잘 훈련된 직원에 대한 통제 당국의 가용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EU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조직한 훈련 및 관련 교환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1) 효율적인 공공 규제의 관리는 규제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와 이러한 정보 교류의 신속함에 달려있다. 또한 관련 규제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행은 회원국 당국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 (22) 연합은 EU법률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대한 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과학, 합동과 의사소통 활동에 쓰여 지는 자금을 제공해야한다.
- (23)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U, Euratom) No 966/2012의 3조에 따라, 해당 규정의 조항의 부분적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 기관에 제출된 제안의 수정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다루는 일부 목표의 구체적인 본질을 감안할 때, EU 회원당국은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당국 Regulation(EU, Euratom) No 966/2012의 128(1)조 목적에 따라 확인된 수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 요청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고도 당국에 보조금을 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4) Regulation(EU, Euratom) No 966/2012의 86조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서, 130조에 규정된 소급 불가 원칙의 예외로서, 7조 및 17조에서 적용되는 긴급 조치 비용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원국이 위원회에 질병의 발생 또는 해충의 존재가 확인된 날짜부터 지급자격이 있어야 한다. 해당 예산 책무와 적격 지출의 지불은 회원국이 제출한 지불 신청서를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5) 이러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며(부당하며), 따라서 회원국이 긴급조치의 이행 대신 보조금 신청서 준비에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 (26) 근절 및 감시 조치(감사)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합법의 범위 및 전문지식 등에 관한 기술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 규정에서 다루는 조치와 실시는 주로 권한이 있는 회원 당국이 수행해야 한다.
- (27) 프로그래밍으로 통해 조정 및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함으로써 EU 재정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조건을 균일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긴급조치 실행을 위해 작업 프로그램의 채택과 관련되어 있는 실행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28) 연합 재정 자원을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현장 점검 또는 문서 점검을 통해 연합 자금이 긴급 조치의 실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29) 연합의 재정적 이익은 부정행위의 조사, 손실, 오지불, 오사용, 자금 회수를 포함하여 지출 주기 전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30) 긴급조치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축 질병 목록은 이 규정집 부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Council Decision 2009/470/EC(1)의 3(1), 4(1), 6(2) 및 14(1)에 언급된 가축 질병을 포함한다. Council Directive 82/894/EEC (2)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축 질병과 유럽연합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을 고려하여, TFEU 290조에 따라 법률 채택 권한을 통해 해당 목록을 보완하는 것을 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 (31) 근절, 통제 및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목록은 이 규정집 부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Decision 2009/470/EC의 부록 I에 언급된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가축사육 또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 질병,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병, 또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역학적 발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TFEU 290조에 따른 법안 채택 권한을 통해 보완이 가능해야 하며 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 (32) 이 규정집에 따라 위임된 법률을 채택할 때, 위원회가 전문가 수준의 준비기간 동안 적당한 협의를 수행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위원회는 위임된 법률을 준비하고 작성할 때, 관련 문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동시에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3) 이 규정집의 시행을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이 필요하고 연간 및 다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과 관련하여 집행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조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회원국의 신청서 제출 절차, 보조금 지급 요청 및 보고서 등 이러한 권한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182/2011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34) EU법은 경험에 비추어 생긴 이익을 제공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규정집의 기능과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 (35) 현재 여러 위원회가 이 규정집, 특히 Council Decisions 66/399/EEC (1), 76/894/EEC (2), Council Directives 98/56/EC (3), 2008/90/EC (4),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5)에 적용되는 기존 EU 규칙 시행에 있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정집(EC) No 178/2002의 58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관련하여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름은 책임을

반영하고 변경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결정 66/399/EEC 및 76/894/EEC는 폐지되어야 하고, 지침 98/56/EC 및 2008/90/EC 및 규정(EC) No 178/2002는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 (36) 이 규정집은 Decision 2009/470/EC의 조항을 대체한다. 또한 Articles 13c(5) and Articles 22 to 26 of Directive 2000/29/EC, Article 66 of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6), Chapter VII of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7), Article 22 of Directive 2009/1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8) and Article 76 of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9)를 대체한다. 따라서 Directive 2000/29/EC, Regulations(EC) No 882/2004 및 (EC) No 396/2005, Directive 2009/128/EC 및 Regulation(EC) No 1107/2009가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 (37) 파괴된 농작물, 농장의 제품 또는 Directive 2000/29/EC의 16조에 언급된 조치에 해당하는 기타 물건의 가치에 대해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회원국이 발생한 비용에 대한 EU 공동 자금 조달의 도입은 관련 작물 및 나무(tree)의 시장 가치 제한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조건에 대한 지침 개발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도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제 1조 : 주제 및 범위]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규칙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 지출 관리를 위한 규정을 설정한다.

- (a) 식품 및 식품 안전 관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하여 식품 생산, 가공, 유통 및 폐기의 모든 단계, 식품에 이용되는 재료 및 물품의 제조 및 사용;
- (b) 거래의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고 소비자 이익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하여 사료의 생산, 가공, 유통, 폐기 및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사료 및 사료 안전을 관리한다.
- (c) 가축 방역 요건을 정하는 것;
- (d) 가축에 대한 방역 요건을 정하는 것;
- (e) Directive 2000/29/EC의 2(1)항 (e)에 정의된 농작물 또는 농작물 제품에 유해한 유기체 (“해충”)에 대한 보호 조치
- (f) 농작물 번식 관련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출시를 위한 생산 단계;
- (g) 농작물 보호 제품 및 살충제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
- (h) 가축 부산물 및 파생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및 가축 방역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자연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을 규제한다.
- (j) 식물 품종 및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교환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 보호

[제 2조 : 목표]

1. 제 1조에 언급된 지출은 다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 질병 및 해충을 예방 및 근절하고 소비자와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사양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 사람, 동·식물의 높은 수준의 방역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목적과 동시에 EU 식품 및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촉진한다.
- (b)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
 - (i) 농식품, 농식품 생산 시스템 및 농식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제품의 높은 수준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산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다.
 - (ii) EU의 가축의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 유지하고 가축 방역에 항상 지원한다.
 - (iii) EU에 해충이 유입된 경우 적시에 해충을 탐지하고 박멸하는 데 기여한다.
 - (iv) 제 1조에 언급된 EU 규칙을 준수해서, 공적인 규제 및 기타 활동의 효과성,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여 효과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2. 1(b)항에 언급된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다음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a) 1.(b)(i)단락의 구체적인 목적, 농식품 안전 또는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EU 내 인간 질병 사례 감소

(b) 1(b)(ii)단락의 구체적인 목적;

(i)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가축 질병이 없는 회원국 또는 지역이 증가

(ii) 발병률, 유병률 및 발병 횟수와 같은 질병 매개변수의 전반적인 감소;

(c) 1(b)(iii)항의 구체적인 목적;

(i) 재정적 기여가 부여되는 동물 질병이 없는 회원국 또는 그 지역의 수 증가

(ii) 발병률, 유병률 및 발병 횟수와 같은 질병 매개변수의 전반적인 감소;

(c) 1(b)(iii)항의 특정 목적:

(i) 병해충, 특히 연합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병해충 및 연합 영역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병해충에 대한 조사에 의한 연합 영역의 적용 범위

(ii) 해당 해충의 박멸을 위한 시간 및 성공률;

(d) 1(b)(iv)항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 관심 영역에 대한 규제 결과의 유리한 방향성을 회원국의 위원회 전문가가 수행하고 보고한다.

[제 3조 : 자금 조달]

1. 제1조에 언급된 지출에 대한 연합 자금 조달은 규정(EU, Euratom) No 966/2012에 따라 시행된다.
2. EU 회원 당국에 보조금이 수여될 때, 당국은 Regulation (EU, Euratom)) No 966/2012의 128(1)조의 의미 내에서 확인된 수혜자로 고려될 것이고, 보조금은 제안 요청 없이 수여될 수 있다.
3. 이 규정집에 언급된 조치에 대한 연합 재정 부담금은 제 1조에 언급된 규칙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EU 회원국이거나, 분야에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 지불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 : 예산]

1.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 1조에 언급된 지출 한도는 현재가격으로 1,891,936,000유로이다.
2. 제 1항에 언급된 상한선은 특히, 제1조에 언급된 지출의 관리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비, 모니터링, 규제, 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문가의 연구 및 회의, 정보 처리 및 교환에 중점을 둔 IT 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용 및 해당 지출 관리를 위해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기술 및 행정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3. 한도는 이 규정집의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에서 이후에 발생한 조치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필요한 기술 및 관리지원 비용도 포함 할 수 있다.
 - (a) 인명 피해 또는 연합 전체의 주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b) 제 36조(1)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위원회가 정한 바와 같이 연합 전체에 필수불가결한 것 (indispensable), 채택된 작업; 또는
 - (c) 제 3국에서 시행된다.

Title II

재정 준비금

챕터 1장

가속 방역

Section 1

긴급조치

제 6조

적법한(Eligible) 조치

1. 제7조에 따라 가축 질병 중 하나가 발생했다는 확인 결과로 이뤄진 조치와 관련하여 제5조 (1)에서 (3)에 명시된 최대 비율까지 회원국에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다. 단, 조치가 즉시 적용되고 관련 연합법률에 명시된 해당 조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또한 질병의 의심 또는 발생의 결과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후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7조에 따라 나열된 가축 질병 중 하나의 발생이 확인된 후 두개 이상의 회원국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회원국에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다.
3. 제 3국에서 발생 또는 발전의 결과로 EU 방역 상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취한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 제 3국 및 국제기구에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다. 제 7조 또는 제 10조에 나와 있는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가 제 3국 또는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7조 또는 10조에 제시된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통제를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생물학적 제제의 비축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회원국에 수여될 수 있다.
5. 제 7조 또는 10조에 제시된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가 제 3국 또는 회원국에서 발생하거나 발병이 EU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생물의약품의 비축량 확보 또는 백신 투여량 확보를 위한 EU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제 7조

가축질병 목록

1. 제 6조에 관련하여,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동물 질병 목록은 부록 I에 나와 있다.
2. 제 4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Directive 82/894/EEC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축질병을 고려하고 앞선 1단락에 언급된 가축 질병 목록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 나열되어 있는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EU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새롭게 채택할 권한이 있다.
 - (a) 사람의 건강
 - (b) 가축 방역 또는 복지
 - (c) 농업 또는 수산업 생산 또는 경제의 관련 부문

제 8조

적격 비용

1. 제6(1)조에 언급된 조치를 수행하는데 회원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 사항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다.
 - (a) 도살되거나 도태된 가축의 가치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용(가축이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가축시장가치로 제한됨)
 - (b) 가축의 도축 또는 도태 비용 및 관련 운송비용
 - (c) 가치가 훼손된 동물성 제품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용은 질병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거나 확인되기 직전에 해당 제품의 시장가치로 제한된다.
 - (d) 병원체의 역학 및 특성을 기반으로 한 청소, 살충제, 소지품과 장비 소독 비용
 - (e) 오염된 사료 및 소독할 수 없는 경우 오염된 장비의 운송 및 파괴 비용
 - (f)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백신 및 사료의 구매, 보관, 투여 또는 유통 비용 및 접종 자체 비용
 - (g) 도체의 운송 및 처리 비용
 - (h)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의 제36(4)조에 언급된 재정 결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질병의 근절에 필수적인 기타 모든 비용
2. 규정집 (EU, Euratom) No 966/2012의 130(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용은 회원국이 위원회에 질병 발생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자격이 있다. 비용은 또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제출한 지불 신청서를 평가한 후, 위원회는 상응하는 예산 약속을 하고 지출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2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 통제 및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

제 9조

적격(Eligible) 프로그램

보조금은 제10조('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나열된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 통제 및 감시를 위한 회원국의 연간 또는 다년간 진행되는 국가 프로그램에 수여될 수 있다.

제 10조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목록

1.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목록은 부속서 11에 명시되어 있다.
2.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1단락에 언급된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목록을 보완하기 위해 제 40조에 따라 위임된 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 (a) 가축 생산 또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의 상황
 - (b)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또는
 - (c) 새로운 과학적 또는 역학적 발전

제 11조

적격 비용

- 회원국이 국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a) 가축 표본 추출 비용
 - (b) 아래사항으로 제한되는 테스트 비용
 - (i) 식별 가능하고 해당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테스트 키트, 시약 및 소모품의 비용
 - (ii) 상태에 관계없이 테스트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력 비용;
 - (c) 도살되거나 도태된 가축의 가치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용(가축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가축의 시장 가치로 제한됨)
 - (d) 가축의 도살 또는 도태 비용
 - (e) 질병의 의심이 발생하거나 확인되기 직전에 해당 제품의 시장 가치로 제한되는 훼손된 동물성 제품의 가치에 대한 소유자의 보상비용

- (f)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 투여량, 사료의 구매, 보관, 접종, 투여 또는 배포 비용
- (g) 병원체 역학 및 특성에 근거한 보관소 및 장비의 청소, 소독, 해충 비용 그리고;
- (h)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에서 (g)에 언급된 것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단, 조치는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부여 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의 (c)항의 목적을 위해 가축의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 보상에서 공제된다.

첫 번째 단락의 (d)항의 목적을 위해 열처리되지 않은 부화란의 잔존 가치는 보상에서 공제된다.

제 12조

국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제출

1. 5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시작될 국가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국가 프로그램은 다음 연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 국가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의 가축질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역학적 상황에 대한 설명
 - (b) 프로그램이 적용될 지리적 및 행정적 영역에 대한 설명 및 경계
 - (c) 프로그램 기간
 - (d) 이행될 조치;
 - (e) 예산예산
 - (f) 프로그램 완료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및 예상되는 혜택 그리고;
 - (g)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각 다년 국가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아래 단락의 (b), (d) 및 (f)에 언급된 정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각 년도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하위 단락의 (e)에 언급된 정보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각 년도에 대해 제공된다.

3. 제10조에 따라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의 발생 또는 발달이 연합의 방역 상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질병 중 하나의 도입으로부터 연합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당국과 협력하여 인접 제3국의 영토에서 시행할 조치를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국가 프로그램 평가 및 승인

1. 위원회는 제36(1)조에 언급된 연간 또는 다년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a)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한 기술적 승인 및 국가 프로그램 목록
 - (b) 각 프로그램의 소요 금액
 - (c) 각 프로그램의 연합의 잠정 재정 분담금 최대 수준 그리고;
 - (d) EU 재정 지원이 적용될 수 있는 잠정 조건
3. 위원회는 시행된 조치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결정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국가 프로그램 및 관련 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4조에 언급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기간과 관련하여 그러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시행 첫 해의 1월 1일부터 끝까지 시행된 조치 및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결정을 통해 시행 첫 해의 1월 31일까지 다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 프로그램 및 관련 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다년 국가 프로그램의 승인의 경우, 예산 약속은 연간 분할로 분할될 수 있다. 예산 공약이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예상 수요 및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분담금을 약정해야 한다.

제 14조

보고

각 연간 또는 다년동안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를 포괄하는 연간 세부 기술 및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제12조 (2)(g)에 언급된 지표를 기반으로 측정 및 달성된 결과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승인된 연간 국가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은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조

지불

국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연도에 대한 지불 요청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회원국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4조에 언급된 보고서를 적절하게 검증한 후 비용에 대해 연합 재정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챕터 2장

농식품(Plant) 방역

Section 1

비상조치

제 16조

적격조치

1. 제 1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충 퇴치 조치에 대해 제5(1)항부터 (3)항에 규정된 최대 비율까지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감염된 지역에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Directive 2000/29/EC의 16(1) 및 (2)조에 따라 권한 있는 회원당국의 조치, 또는 해당 지침의 16(3)조에 따라 채택된 연합(EU)의 조치

(b)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따라 연합(EU) 봉쇄 조치가 정해진 경우, 해충을 막을 수 없는 감염지역에서 해당 해충의 추가 확산을 연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조치는 완충 지대에서 해충의 존재가 감지되는 경우 완충지대에서 해당 해충의 박멸만을 전적으로 해야 한다.

(c)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따라 연합 조치가 채택된 해충의 확산에 대해 취해진 추가 보호 조치, (a)에 언급된 박멸 조치 및 (b)에 언급된 봉쇄 조치, 그러한 조치가 해

당 해충의 추가 확산으로부터 연합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첫 번째 하위 단락의 (a) 및 (b)에 언급된 조치에 대한 보조금은 해충의 존재가 의심되는 결과로 이행된 조치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

2. 앞선 1항에 언급된 보조금은 1항에 언급된 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인접 회원국 또는 국경에 바로 인접한 제3국에서의 해충이 발견되었을 때 지급될 수 있다.
3. 제17조에 언급된 해충 중 하나의 존재가 확인된 후 2개 이상의 회원국이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원국에 지급될 수 있다.
4. 제1항 제1호의 (a) 내지 (c)에 언급된 조치에 대한 보조금은 국제기구에도 지급될 수 있다.

제 17조

조건

제16조에 언급된 조치는 즉시 적용되고 관련 연합법률에 명시된 해당 조항이 준수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a) Directive 2000/29/EC의 부록 I, 파트 A의 Section I 및 부록 II의 파트 A의 Section I에 나열된 해충과 관련된다.
- (b)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에 의해 다루어지는 해충과 관련된다.
- (c) Directive 69/464/EEC, 93/85/EEC, 98/57/EC 또는 2007/33/EC에 따라 조치가 채택된 해충과 관련된다. 또는;
- (d) Directive 2000/29/EC의 부록 I 또는 부록 II에 제시되지 않은 해충에 관한 것으로, Directive 2000/29의 제16(2)조에 따라 회원당국이 채택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Directive 2000/29/EC에 대한 부록 I의 파트 A Section I 또는 그에 대한 부록 II의 파트 A Section I에 잠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위 첫 번째 단락(b)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의 경우, 보조금은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 조치가 만료된 후 발생한 비용을 총당하지 않는다.

위 첫 번째 단락(d)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의 경우, 보조금은 관련 회원당국이 채택한 조치의 발효 후 2년 이후에 발생하거나 해당 조치의 만료 후에 발생한 비용을 총당하지 않는다.

제 18조

적격 비용

1. 회원국이 제16조에 언급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해당 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a) 지위에 관계없이 조치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비용, 장비, 소모품 및 기타 필요한 재료, 처리 제품, 샘플링 및 실험실 테스트 임대비용

(b) 조치의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제3자와의 서비스 계약 비용;

(c) 운영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식물의 후처리(치료 및 말살), 식물 제품 및 기타 제품, 건물, 토지, 물, 토양, 재배 매체, 시설, 기계 및 장비의 청소와 소독에 대한 보상비용

(d) 식물, 식물 제품 또는 Directive 2000/29/EC의 16조에 언급된 조치에 해당하는 기타 물건의 가치에 대해 관련 소유자를 보상하는 비용(해당 식물, 식물 제품의 시장 가치에 한함) 그리고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타 개체(as if they had not been affected by those measures);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 보상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e)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에서 (d)까지 언급된 것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단, 그러한 조치는 제36조(제36조)에 언급된 자금 조달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c)에 언급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조치가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 하에 수행된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e)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에서 (d)까지 언급된 것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단, 조치는 제36조(4)에 언급된 자금 조달 결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c)에 언급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조치가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 하에 수행된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2. Regulation(EU, Euratom) No 966/2012의 130(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용은 회원국이 위원회에 해충의 존재를 통지한 날짜부터 적용된다. 비용은 또한 해당 해충의 의심되는 결과에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회원국이 제출한 지불 신청서를 평가한 후, 위원회는 상응하는 예산과 지출을 이행해야 한다.

Section 2
해충의 존재 조사 프로그램

제 19조

적격한(Eligible) 설문조사 프로그램

회원국이 해충의 존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연간 및 다년동안 진행되는 조사 프로그램('조사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조사 프로그램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 (a) Directive 2000/29/EC의 부록 I, 파트 A의 Section I 및 부록 II의 파트 A의 Section I에 나열된 해충과 관련된다.
- (b)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에 의해 다루어지는 병해충에 관한 것이다.

위 단락 (a)에 언급된 해충의 경우, 조사 프로그램은 관련 회원국 영역에서 해당 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 위험 평가에 기초해야 하며, 주요 위험을 제기하는 해충과 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식물 종을 최소화 한다.

위 단락 (b)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의 경우, 보조금은 Directive 2000/29/E 16(3)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0조

적격(Eligible) 비용

회원국이 제19조에 언급된 조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해당 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a) 샘플링 비용

(b) 제한되는 테스트 비용은 다음과 같다.

(i)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식별 가능하고 특별히 사용되는 테스트 키트, 시약 및 소모품의 비용

(ii) 상태에 관계없이 테스트 수행에 관련된 인력 비용

- (c)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 및 (b)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단, 그러한 조치는 제22조(3) 및 (4)에 언급된 부여 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제 21조

설문조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제출

1. 회원국은 5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다음 연도에 시작될 조사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설문 조사 프로그램은 다음 연도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조사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프로그램 안에는 해충이 포함되어야 한다.
- (b)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리적 및 행정적 지역에 대한 설명 및 경계, 그리고 관련 해충의 존재에 관한 해당 지역의 상태에 대한 설명
- (c) 프로그램 기간
- (d) 관련 병해충 및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대상에 대해 예정된 육안 검사, 샘플 및 테스트의 수
- (e) 예산
- (f) 프로그램 완료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및 예상되는 이점 그리고
- (g)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다년동안 조사되는 프로그램에서 위에서 (b), (d), (f)에 언급된 정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년도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 (e)에 언급된 정보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년도에 설명되어야 한다.

제 22조

설문조사 프로그램 평가 및 승인

1. 위원회는 제36조 (1)에 언급된 연간 또는 다년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기준을 고려하여 조사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a) 공동 자금조달을 위해 기술적으로 승인 및 제안된 조사 프로그램 목록
 - (b) 각 프로그램에 할당될 금액
 - (c)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합 재정 분담금의 최대 수준 그리고;
 - (d) 연합 재정 기부가 적용될 수 있는 잠정 조건
3. 위원회는 시행조치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결정을 통해 연간 조사 프로그램 및 관련 자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3조에 언급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경우 전체 적격 기간과 관련하여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시행 첫 해의 1월 1일부터 끝까지 시행된 조치 및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결정을 통해 시행 첫해의 1월 31일까지 다년 동안 실시되는 조사 프로그램 및 관련 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5. 위의 4항에 따른 다년 조사 프로그램의 승인의 경우, 예산 약정은 연간 분할로 나눌 수 있다. 예산 공약이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예상 수요 및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분담금을 약정해야 한다.

제 23조

보고

회원국은 실시되는 연간 또는 다년 설문조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년도에 실시한 연간 세부 기술 및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제21조(2)(g)에 언급된 지표를 기반으로 측정된 달성한 결과와 발생한 적격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각 연간 조사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은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 21조(2)(g)에 언급된 지표와 발생한 적격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준으로 측정된

다. 또한 승인된 연간 조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에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 24조

지불

조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연도에 대한 지불 요청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회원국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3조에 언급된 보고서의 적절한 검증에 따라 적격비용에 대해 EU 재정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3

연합의 최외곽(변두리) 지역의 해충 방제에 관한 프로그램

제 25조

적격 조치 및 적격 비용

1. Regulation (EU) No 228/2013(‘변두리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의 2조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TFEU 349조에 언급된 연합의 변두리 지역에서 해충 방제를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에게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다. 교부금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해충 방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이든 국내 법률이든 해당 지역에서 규칙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관한 것이다.
2. 가장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 수행하는 비용은 연합 재정 지원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 (a) 장비, 소모품 및 처리 제품의 임대비용뿐만 아니라 조치의 시행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의 비용(상태에 관계없이)
 - (b) 조치의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제3자와의 서비스 계약 비용;
 - (c) 샘플링 비용
 - (d) 다음으로 제한되는 테스트 비용
 - (i)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식별 가능하고 특별히 사용되는 테스트 키트, 시약 및 소모품의 비용

(ii) 상태에 관계없이 테스트 수행에 관련된 직접 인력 비용.

제 26조

변두리 지역 프로그램 내용 및 제출

1. 5월 31일까지 회원국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 년도에 시작 될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5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연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 변두리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프로그램에 해충이 포함되어야한다.

(b)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리적 및 행정적 지역에 대한 설명 및 경계, 그리고 관련 병해충의 존재에 관한 해당 지역의 상태에 대한 설명

(c) 지역 식물위생 상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

(d) 프로그램 기간

(e)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 및 관련되는 경우 관련 병해충 및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대상에 대해 예정된 육안 검사, 샘플 및 테스트의 수

(f) 예산

(g) 프로그램 완료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및 예상되는 혜택 및 이점 그리고

(h)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위 단락의 (b), (e), (g)에 언급된 정보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각 년도에 대해 제공되어야한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f)에 대한 정보는 각 년도에 설명되어야 한다.

제 27조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및 승인

1.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36조(1)에 언급된 연간 또는 다년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

된 우선순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a) 공동 자금을 위해 승인되고 제안된 변두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b) 각 프로그램의 시행 금액

(c)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합 재정 분담금의 최대금액 그리고;

(d) 연합 재정 기부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

3. 변두리 지역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 및 지원자금은 시행된 조치 및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보조금 결정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승인된다. 위원회는 제28조에 언급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경우 시행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4. 변두리 지역에 관련된 자금은 다년 프로그램은 시행된 조치 및 시행 첫해의 1월 1일부터 시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보조금 결정을 통해 시행 첫해의 1월 31일까지 승인된다.

5. 위의 4항에 따라 변두리 지역에 대한 다년 프로그램 승인의 경우, 예산은 연간 분할로 나눠질 수 있다. 예산 공약이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예상 수요 및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분담금을 약정해야 한다.

제 28조

보고

변두리 지역에 대해 승인된 연간 또는 다년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 년도를 다루는 연간 세부 기술 및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제26조 (2)의 하위 항목(h)에 언급된 지표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반의 결과가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변두리 지역에 대해 승인된 연간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국은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 재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지불

가장 바깥쪽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어진 연도에 대한 지불 요청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회원국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8조에 언급된 보고서의 적절한 검증에 따라 적격 비용에 대해 연합 재정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챕터 3장

공공 규제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제 30조

European Union reference laboratories(EU 표준 연구소)

1. 위원회가 승인한 작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규정(EC) No 882/2004의 32조에 언급된 유럽 연합 표준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다음 비용은 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a) 지위에 관계없이, 연합 기준 실험실의 자격으로 수행되는 실험실 활동에 직접 관련된 인력 비용;
 - (b) 자본 장비 비용
 - (c) 소모품 비용
 - (d) 임무, 회의, 훈련, 활동 및 샘플의 선적 비용

제 31조

훈련

1. EU는 공식 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의 훈련에 있어, Regulation (EC) No 882/2004의 5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 가축 및 식물 방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 규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대한 적당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중방역, 동물 방역 및 복지, 식물 방역에 대해 식별 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위의 1항에 언급된 EU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훈련 활동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필요한 상황 따라 적용하고 국가 훈련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아래의 비용은 위 1항에 언급된 재정적 지원이 가능 하다.

(a) 제3국의 참가자에게도 훈련을 포함한 훈련 조직 비용 또는 교환 활동

(b) 훈련에 참여하는 권한 있는 회원국 직원의 여행, 숙박 및 일상 생활비

제32조

회원국 전문가

EU 회원국으로 부터 전문가는 Regulation (EC) No 882/2004의 Articles 45(1) 와 46(1)에 따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임명하였을 때, 발생하는 여행, 숙박 및 일일 생활비에 대해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33조

조정된(Coordinated) 통제 계획 및 데이터 수집

1. 보조금은 규정(EC) No 882/2004의 53조에 언급된 조정된 통제 계획의 구현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회원국을 위해 지원될 수 있다.

2. 다음 비용은 그러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a) 샘플링 및 실험실 테스트 비용

(b) 공공 규제 및 데이터 수집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챕터 4

기타 조치

제 34조

정보 시스템

1. EU는 위원회가 관리하고 제1조에 언급된 규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한다.
2.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공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제 3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연합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 (a) EU 전체에 부가가치가 입증되고 모든 사용자가 연합 전역에서 관심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 (b) 위 제 1조에 언급된 규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제 35조

법률의 시행 및 적용

1. 연합은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조정 활동을 포함한 기술 및 과학 작업에 있어 제1조에 언급된 과학, 기술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토콜의 사용을 통해 공식 통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조직한 프로젝트에 지원될 수 있다.
3. 제1조에 언급된 분야와 관련하여 규칙을 이행함에 있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 및 회원국의 정보 및 인식 제고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Title III

프로그래밍, 구현 및 제어

제36조

작업 프로그램 및 재정 기여

1. 위원회는 Title I장의 Section 1 및 Title II장의 Section 1을 제외하고, Title 2에 언급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공통 또는 별도의 연간 또는 다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이행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법은 제41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2. 제 1항에 언급된 작업 프로그램에는 추구하는 운영 목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제 2조에 규정된 일반 및 특정 목표, 예상 결과, 구현 방법 및 총액에 따라 달라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자금을 조달할 조치에 대한 설명, 각 조치에 할당된 금액 및 지시적인 시행 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규정집의 제3조에 따라 우선 조치, 평가 기준, 자금 지원 비율 및 적격 조치 및 비용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3. Title II의 Chapter 2의 Section 2와 Title II의 Chapter 2의 Section 2 및 Section 3에 언급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은 예산 초안이 채택되는 경우, 시행 전 연도의 4월 30일까지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 프로그램은 이 규정의 부록 III에 명시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4. Title II의 Chapter 1의 Section 1 및 Title II의 Chapter 2의 Section 1에 언급된 비상조치의 실행과 관련하여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결정을 명시하여 시행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법은 제41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5. 위원회는 Title II의 Chapter 1의 Section 1 및 2 및 Chapter 2의 Section 1, 2 및 3에 언급된 보조금에 대한 신청서, 보고서 및 지불 요청에 대한 회원국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법은 제41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제38조

정보에 대한 접근

회원국과 수혜자는 조치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가 다음을 포함하여 연합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현장 확인.

제 39조

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되는 조치가 시행될 때 사기, 부패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대한 예방 조치의 적용, 효과적인 견제 및 다음 경우에 연합의 재정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회수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적발됩니다.
2. 위원회 또는 그 대표자 및 감사원은 문서 및 현장에 근거하여 조합 기금을 받은 모든 보조금 수혜자, 시행 기관, 계약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다.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는 Council Regulation (Euratom, EC) No 2185/96 (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자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운영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계약 또는 결정 또는 조합 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부패 또는 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불법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목을 침해하지 않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협정, 보조금 협정, 보조금 결정 및 본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계약은 위원회, 감사원 및 OLAF가 현장 확인 및 검사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Title IV

일반 및 최종 조항

제 40조

대표단의 행사

1.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다.
2. 제7조 2항 및 10조 2항에 따른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은 2014년 6월 30일부터 7년 동안 위원회에 부여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늦어도 7년 기간이 끝나기 9개월 전까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권한 위임은 유럽 의회나 이사회가 늦어도 각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3. 제7조 2항 및 10조 2항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을 종료이다. 이는 유럽 연합 관보에 결정이 게재된 다음 날 또는 이에 명시된 이후 날짜에 발효된다. 이미 시행 중인 위임된 행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위임된 행위를 채택하는 즉시 이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5. 제7(2)조 및 제10(2)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된 행위는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해당 행위를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효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 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 모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그 기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 발의로 2개월 연장된다.

제41조

위원회 절차

1. 위원회는 Regulation (EC) No 178/2002의 58(1)조에 의해 설립된 식물, 가축, 사양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규정(EU) No 182/2011의 내포하는 위원회이어야 한다.
2. 이 문항이 언급되는 경우 규정(EU) No 182/2011의 5조가 적용된다.

위원회의 의견이 서면 절차로 얻어져야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의견 전달 기한 내에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거나 위원의 단순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결과 없이 종료된다.

제42조

평가

1. 2017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는 결과와 영향 측면에서 Title II의 첩터 1과 2에 언급된 조치 및 Title III장의 30조 및 31조에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 및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연합 수준에서 2(1)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한다. 평가 보고서는 또한 단순화의 범위, 모든 목표의 지속적인 관련성,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연합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를 다루어야 한다. 이전 조치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1항에 언급된 조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사후 평가는 제1조에 언급된 지출의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3. 이 조의 1항과 2항에 언급된 평가는 제2조 (2)에 언급된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4. 위원회는 1항 및 2항에 언급된 평가의 결론을 유럽 의회, 이사회,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43조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1. 관련 수혜자와 회원국은 조치 자금 조달에 있어 연합의 역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재정 기부에 적절한 홍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자금 지원 조치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할당된 예산은 연합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대한 기업 커뮤니케이션에도 포함해야 한다.

제 44조

폐지

1. Decision 66/399/EEC, 76/894/EEC 및 2009/470/EC가 폐지된다.
2. Decision 66/399/EEC 및 76/894/EEC에 대한 참조는 Regulation (EC) No 178/2002의 58(1)조에 대한 참조로 해석된다.
3. Decision 2009/470/EC에 대한 참조는 이 규정에 대한 참조로 해석된다.

제 45조

경과 조항

1. 2013년 시행을 위해 2012년에 위원회에 제출된 규정집의 12(1)조에 언급된 회원국의 국가 프로그램, 2014년 시행을 위해 2013년에 제출된 프로그램, 2014년 4월 30일까지 제출된 국가 프로그램, 2015년은 승인된 경우 Decision 2009/470/EC의 27조에 따라 연합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13년 및 2014년에 시행된 국가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결정의 27(7) 및 (8)조가 계속 적용된다.

2015년에 시행된 국가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결정의 27(2)조가 계속 적용된다.

2. 2015년 시행을 위해 2014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된 이 규정집의 21(1)조에 언급된 회원국의 조사 프로그램은 23(6)조에 근거하여 연합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Directive 2000/29/EC 이러한 조사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침의 23(6)조가 계속 적용된다.
3. 2014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된 이 규정의 16조에 언급된 긴급 조치에 대한 연합 자금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신청에 대해서는 Directive 2000/29/EC의 22~24조가 계속 적용된다.

제46조

Directive 98/56/EC의 수정

Directive 98/56/EC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 17조에서 제 1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C) No 178/2002의 58(1)조에 의해 설립된 식물, 가축, 사양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그 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No 182/2011의 의미 내에서 위원회여야 한다.

(*) 2002년 1월 2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C) No 178/2002는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고,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OJ L 31, 1.2.2002, p.1).

(**) 2011년 2월 16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U) No 182/2011은 위원회 회원국이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통제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 및 일반 원칙을 정하는 것(OJ L 55, 28.2.2011, p. 13)'

(2) 제18조에서 제1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위원회는 Regulation (EC) No 178/2002의 58(1)조에 의해 설립된 식물, 가축, 사양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Regulation(EU) No 182/2011'의 의미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제47조

지침 2000/29/EC의 수정

지침 2000/29/EC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3c조에서 제5항을 삭제한다.

(2) 다음 조항이 삽입됩니다.

'제15a조

회원국은 부록 I 또는 부록 II에 열거된 해충 또는 제16(2) 또는 제16(3)조에 따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병해충의 존재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존재를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해

야 한다, 1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원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삭제한다.

제48조

Regulation(EC) No 178/2002의 수정

Regulation (EC) No 178/2002의 58조에서 단락 1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위원회는 식물, 가축, 사양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그 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No 182/2011의 의미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Section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양 및 가축방역에 관한 상임 위원회에 대한 연합법률의 모든 언급은 첫 번째 하위 단락에 언급된 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2011년 2월 1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U) No 182/2011 위원회의 회원국이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통제 메커니즘에 관한 규율 및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OJ L 55, 28.2.2011, p. 13). '

제 49조

Regulation(EC) No 882/2004의 수정

Regulation(EC) No 882/2004의 66조가 삭제된다.

제 50조

Regulation(EC) No 396/2005의 수정

Regulation(EC) No 396/2005의 VII장을 삭제한다.

제 51조

Directive 2008/90/EC 수정

Directive 2008/90/EC의 19조에서 단락 1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위원회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78/2002의 58(1)조에 의해 설립된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그 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EU) No 182/2011에서 의미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제52조

지침 2009/128/EC의 수정

지침 2009/128/EC의 22조가 삭제된다.

제53조

Regulation (EC) No 1107/2009 수정

Regulation (EC) No 1107/2009의 76조가 삭제된다.

제54조

발효 및 적용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부터 발효된다.

201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d) 및 제47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전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강제로 행할 수 있음)이 있으며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된다.

2014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작성.

유럽 의회를 위해 EU 대표 M. SCHULZ

이사회를 위해 D. KOURKOULAS 회장

부록 I

제7조에 따른 동물성 질병

- 우역(Rinderpest cattle plague)
- 양과 염소 전염병
- 돼지 수포성 질환
- 블루팅 (Bluetongue - 반추동물에서 곤충을 매개로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질병)
- 테센병 (Tesch disease - 테스코바이러스 뇌척수염)
- 양두 또는 염소 수두
- 리프트 밸리 열병
- 괴사피부병 (Lumpy skin disease)
- 아프리카 말역(African horse sickness)
- 수포성 구내염
- 베네수엘라 말 바이러스성 뇌척수염
- 사슴의 출혈성 질환
- 고전 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 전염성 소 흉막폐렴
- 조류 인플루엔자
- 뉴캐슬병
- 구제역
- 어류의 Epizootic 조혈 괴사(EHN)
- 어류의 후천성 궤양성 증후군(EUS)
- *Bonamia exitiosa* 감염
- *Perkinsus marinus* 감염
- *Microcytos mackini* 감염
- 갑각류의 타우라 증후군
- 갑각류의 옐로우헤드 질병

부록 II

제 10조에 따른 동물성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 소 결핵
- 소 브루셀라증
- 양과 염소 브루셀라증(*B. melitensis*)
- 풍토병 또는 고위험 지역의 Bluetongue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 수포 질환
- 고전 돼지열병
- 탄저병
- 전염성 소 흉막폐렴
- 조류 인플루엔자
- 광견병
- Echinococcosis
-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TSE)
- 캄필로박테리아증
- 리스테리아증
- 살모넬라증(동물성 살모넬라균)
- 선모충증
- 베로톡신원성 대장균
-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
- 감염성 조혈 괴사(IHN)
- 잉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질병(KHV)
- 전염성 연어 빈혈(ISA)
- *Marteilia refringens* 감염
- *Bonamia ostreae* 감염
- 갑각류의 백반병

부록 III

Title II의 챕터 2의 Section 2, Title II의 챕터 II의 Section 2 및 Section 3에 언급된 위원회 작업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가축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하여 연합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가축 개체군의 잠재적인 확산과 이환율(감염율) 및 사망률을 고려)
- 제3국에서 유럽연합 영토로 도입 및/또는 재도입될 위험이 있는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병;
- 제3국과의 무역 및 EU 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연합 영토 보호를 위한 해충 조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하여 연합 재정 지원의 우선 순위:

- Directive 2000/29/EC에 대한 부속서 I의 파트 A의 Section I 및 부속서 II의 파트 A의 Section I에 나열된 해충으로서 연합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해충;
- Directive 2000/29/EC의 16(3)조에 채택된 연합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해충;
- Directive 2000/29/EC에 나와있지 않고 연합 영토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해충;
-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해충;
- 제3국과의 무역 및 EU 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해충.

외각 지역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연합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 해당 지역의 수입품 및 기후와 관련된 병해충에 대한 조치;
- 해충 퇴치 방법;
- 해당 지역에서 방역 중인 해충에 대한 법률에 제시된 조치

위원회의 성명

수의학 및 식물위생 프로그램 승인 절차

EU 회원국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는 프로그램 평가 절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식물, 동물(가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상임 위원회의 연례 회의를 주선할 것이다. 그 회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해의 11월 30일 이전에 열릴 것이다.

회의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할 것이다. 재정적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은 국가 대표단과 논의되고 그들의 의견이 고려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월 식물, 동물(가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최종 목록,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최종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전달할 것이다.

제9조, 제19조 및 제25조에 언급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은 회원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2월초에 회원국의 전문가와 함께 수행된다.

[첨부 6 -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기준 설문조사 결과]

1. 배경

- 축산단체는 질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 조정과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경감 기준 확대 등 피해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 ⇒ 이에 현행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과 지자체(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관련 기관 등의 의견수렴

2. 설문조사 계획

- 기간 : '22.7.25(월) ~ '22.8.10(수)
- 대상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각 질병 담당자, 제도1계), 검역본부(방역감시과, 역학조사과), 지자체(시도별 10명), 생산자협회(3개소), 민간전문가(3인)
- 조사내용
 - (감액) 살처분 보상금 감액 항목별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을 평가하고, 적정 감액비율 또는 추가 의견 제시
 - (경감)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의견 및 경감 비율 제시
 - ※ ※ 각 항목별 점수를 1~5점 부여(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①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조의 4 제 5항)

㉠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7%	0.7%	6.7%
	2	2.2%	1.5%	3.7%
	3	0.0%	2.2%	3.7%
	4	4.4%	3.0%	3.0%
	5	92.6%	92.6%	83.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0	60	70	80	90	100
2.2%	3.0%	0.7%	5.2%	0.7%	88.1%

- 전체 135개의 설문자료 중 사육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대부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액에 대한 효과도 높게 평가함.
- 현행 감액비율(전액)에 대해 118곳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5.2%에 해당하는 7곳은 80%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8%	0.8%	6.9%
	2	2.3%	1.5%	3.8%
	3	0.0%	1.5%	3.1%
	4	4.6%	3.1%	3.1%
	5	92.3%	93.1%	8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0	60	70	80	90	100
1.6%	3.1%	0.8%	5.4%	0.0%	89.1%

- 전체 130개의 설문자료에 대해 대부분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의성도 108명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0	60	70	80	90	100
0.0%	0.0%	0.0%	0.0%	33.3%	66.7%

- 전문가 3인 모두 중요성부터 고의성까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감액 비율에 있어 1명은 90%가 적당하다고 판단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0%	0.0%	0.0%
	2	0.0%	0.0%	0.0%
	3	0.0%	50.0%	50.0%
	4	0.0%	0.0%	0.0%
	5	100.0%	50.0%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0	60	70	80	90	100
50.0%	0.0%	0.0%	0.0%	0.0%	50.0%

○ 2곳의 생산자 단체 답변에서 질병 차단·확산 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령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효과성 및 고의성은 3단계와 5단계로 각각 답변하였음

②-1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의 제 3항)

㉑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9.4%	18.7%	29.6%
	2	22.4%	18.7%	11.1%
	3	23.9%	29.1%	19.3%
	4	9.7%	14.9%	10.4%
	5	24.6%	18.7%	29.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50	60
5.3%	17.3%	64.7%	10.5%	0.8%	0.8%	0.8%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요성에 대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고의성은 40곳이 각각 1단계와 5단계로 나뉘어 있음. 현재 감액비율 10%에 대해 대부분 적정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9.2%	18.5%	29.2%
	2	23.1%	18.5%	11.5%
	3	23.8%	29.2%	19.2%
	4	9.2%	15.4%	10.0%
	5	24.6%	18.5%	30.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50	60
4.7%	17.8%	64.3%	10.9%	0.8%	0.8%	0.8%

○ 대부분이 감액비율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 반면, 낮추어야 한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33.3%
	2	0.0%	33.3%	0.0%
	3	33.3%	33.3%	33.3%
	4	33.3%	0.0%	33.3%
	5	33.3%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50	60
0.0%	0.0%	100.0%	0.0%	0.0%	0.0%	0.0%

○ 중요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의성은 중요성이나 효과성에 비해 낮게 판단하고 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50	6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는 중요도부터 고의성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액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함

㉔-2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의 제 3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5.9%	7.4%	19.3%
	2	8.1%	5.9%	7.4%
	3	23.7%	25.2%	17.8%
	4	13.3%	18.5%	14.8%
	5	48.9%	43.0%	40.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	2.9%	5.9%	5.2%	7.4%	19.3%	54.1%	0.7%	1.5%	0.0%	1.5%

○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 비해 중요성과 효과성 및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로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6.2%	7.7%	20.0%
	2	7.7%	5.4%	6.2%
	3	23.1%	23.8%	16.9%
	4	13.1%	19.2%	14.6%
	5	50.0%	43.8%	42.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	3.1%	5.4%	3.8%	7.7%	19.2%	55.4%	0.8%	1.5%	0.0%	1.5%

○ 절반 정도의 지자체에서 중요도를 매우 높게 판단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33.3%
	2	0.0%	0.0%	0.0%
	3	33.3%	66.7%	66.7%
	4	33.3%	0.0%	33.3%
	5	33.3%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0.0%	33.3%	0.0%	0.0%	33.3%	33.3%	0.0%	0.0%	0.0%	0.0%

○ 1명의 전문가는 현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2명은 현재의 비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판단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0.0%
	2	50.0%	50.0%	100.0%
	3	50.0%	5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 수준의 절반 정도로 감액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함

②-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의 제 3항)

㉑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4%	15.7%	26.1%
	2	14.2%	10.4%	16.4%
	3	20.9%	29.9%	22.4%
	4	9.7%	13.4%	8.2%
	5	44.8%	30.6%	2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4.5%	14.2%	68.7%	0.7%	6.7%	0.7%	3.0%	1.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소독 실시에 대해 현 10%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5%로 낮추자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50%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8%	16.2%	26.9%
	2	14.6%	10.0%	16.2%
	3	20.0%	30.0%	22.3%
	4	9.2%	13.1%	7.7%
	5	45.4%	30.8%	2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3.8%	14.6%	68.5%	0.8%	6.9%	0.8%	3.1%	1.5%

○ 지자체의 경우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의성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과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33.3%	33.3%
	3	33.3%	0.0%	0.0%
	4	33.3%	33.3%	33.3%
	5	33.3%	33.3%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0.0%	0.0%	100.0%	0.0%	0.0%	0.0%	0.0%	0.0%

○ 모든 전문가가 현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효과성은 보통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③-1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의 제 6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3.4%	11.9%	21.6%
	2	16.4%	16.4%	19.4%
	3	21.6%	32.1%	17.9%
	4	10.4%	11.2%	12.7%
	5	38.1%	28.4%	28.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60
7.5%	11.3%	65.4%	12.8%	1.5%	0.8%

○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많았으나, 효과성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액비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응답함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3.1%	11.5%	21.5%
	2	16.9%	16.9%	17.7%
	3	22.3%	32.3%	18.5%
	4	10.0%	11.5%	13.1%
	5	37.7%	27.7%	29.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60
6.2%	11.6%	65.9%	13.2%	1.6%	0.8%

○ 지자체의 경우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고의성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100.0%
	3	0.0%	33.3%	0.0%
	4	33.3%	0.0%	0.0%
	5	66.7%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33.3%	0.0%	66.7%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은 4~5단계로 평가하였으나 고의성은 모두 2단계로 미흡으로 평가하였음. 감액비율의 경우 1명은 0%로 감액해야 한다고 평가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5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 및 효과성은 매우 미흡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함

③-2 축산관련 종사자가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의 제 6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3.0%	0.7%	15.6%
	2	4.4%	3.7%	13.3%
	3	14.8%	18.5%	10.4%
	4	5.9%	8.9%	11.9%
	5	71.9%	68.1%	48.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7%	1.5%	3.7%	2.2%	6.7%	5.2%	17.0%	57.8%	1.5%	1.5%	2.2%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요성과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의성은 절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3.1%	0.8%	15.4%
	2	3.8%	3.1%	11.5%
	3	14.6%	18.5%	10.8%
	4	5.4%	9.2%	12.3%
	5	73.1%	68.5%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8%	1.5%	3.8%	1.5%	5.4%	5.4%	17.7%	58.5%	1.5%	1.5%	2.3%

○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0%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17.7%를 차지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0.0%
	2	0.0%	0.0%	66.7%
	3	0.0%	0.0%	0.0%
	4	33.3%	0.0%	0.0%
	5	66.7%	100.0%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0%	0.0%	0.0%	33.3%	0.0%	0.0%	0.0%	66.7%	0.0%	0.0%	0.0%

○ 전문가 중 1명은 20%로 감액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든 전문가가 효과성은 5점을 주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50.0%
	2	50.0%	50.0%	50.0%
	3	50.0%	5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고의성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액 비율은 30%로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④-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2제1항, 제2항, 제3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9.0%	5.2%	14.9%
	2	11.2%	12.7%	18.7%
	3	14.2%	22.4%	24.6%
	4	17.9%	15.7%	9.7%
	5	47.8%	44.0%	32.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1.5%	6.8%	67.7%	0.8%	10.5%	6.8%	4.5%	0.8%	0.8%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0%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도록 응답하였으나, 20%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8.5%	4.6%	14.6%
	2	11.5%	13.1%	18.5%
	3	14.6%	23.1%	24.6%
	4	18.5%	14.6%	9.2%
	5	46.9%	44.6%	3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0.8%	7.0%	67.4%	0.8%	10.9%	7.0%	4.7%	0.8%	0.8%

○ 지자체 응답자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중요성 및 효과성 등의 책임소재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66.7%	33.3%
	5	100.0%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전문가들은 모두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의성의 경우 2단계~4 단계로 판단하고 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에서 고의성까지 전 항목을 매우 미흡으로 1단계로 응답을 하였으며,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④-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2제1항, 제2항, 제3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9.0%	5.2%	14.2%
	2	10.4%	11.2%	17.9%
	3	10.4%	23.1%	22.4%
	4	20.1%	14.9%	12.7%
	5	50.0%	45.5%	32.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1.5%	5.3%	64.7%	2.3%	13.5%	8.3%	3.8%	0.8%	0.0%

○ 응답자 86명이 현행대로 10%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행보다 감액비율을 높여야 하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8.5%	4.6%	13.8%
	2	10.8%	11.5%	17.7%
	3	10.8%	23.8%	22.3%
	4	20.8%	15.4%	13.1%
	5	49.2%	44.6%	3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0.8%	5.4%	64.3%	2.3%	14.0%	8.5%	3.9%	0.8%	0.0%

○ 응답자 절반 가까이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나, 고의성은 1/3 정도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액비율도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70%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1건 있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0.0%	0.0%
	5	100.0%	100.0%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전문가는 모두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에서 고의성까지 전 항목을 매우 미흡으로 1단계로 응답을 하였으며,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④-3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2제1항, 제2항, 제3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4.9%	9.7%	23.1%
	2	12.7%	12.7%	14.2%
	3	18.7%	29.1%	23.1%
	4	12.7%	14.9%	9.0%
	5	41.0%	33.6%	30.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1.5%	12.8%	72.2%	8.3%	2.3%	0.8%	2.3%

○ 중요성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효과성 및 고의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4% 및 10.4% 각각 낮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4.6%	9.2%	22.3%
	2	13.1%	13.1%	14.6%
	3	18.5%	30.0%	23.1%
	4	13.1%	13.8%	8.5%
	5	40.8%	33.8%	31.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0.8%	13.2%	72.1%	8.5%	2.3%	0.8%	2.3%

○ 대부분의 응답자가 감액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33.3%
	2	0.0%	0.0%	0.0%
	3	33.3%	0.0%	33.3%
	4	0.0%	66.7%	33.3%
	5	66.7%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0.0%	0.0%	100.0%	0.0%	0.0%	0.0%	0.0%

○ 전문가는 모두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에서 고의성까지 전 항목을 매우 미흡으로 1단계로 응답을 하였으며,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⑤-1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1일째)(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2제1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2.2%	3.7%	21.8%
	2	3.7%	9.0%	9.8%
	3	17.2%	21.6%	29.3%
	4	9.7%	14.9%	6.8%
	5	67.2%	50.7%	32.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5%	5.3%	81.2%	0.8%	5.3%	3.8%	0.8%	1.5%

○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1일을 지연한 경우 2/3 이상의 응답자가 중요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고의성에 있어서는 그 절반 이하의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2.3%	3.1%	22.3%
	2	3.8%	9.2%	10.0%
	3	16.2%	20.8%	27.7%
	4	10.0%	15.4%	6.9%
	5	67.7%	51.5%	3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6%	3.9%	82.9%	0.8%	4.7%	3.9%	0.8%	1.6%

○ 100명이 넘는 지자체 응답자가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33.3%	0.0%
	2	0.0%	0.0%	0.0%
	3	33.3%	33.3%	100.0%
	4	0.0%	0.0%	0.0%
	5	66.7%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0.0%	66.7%	33.3%	0.0%	0.0%	0.0%	0.0%	0.0%

○ 전문가는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효과성 및 고의성은 보통 정도로 평가하여 2/3가 5%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0.0%	0.0%	0.0%	0.0%	10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 및 효과성 등 모두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1일 지연에 대해서는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평가함

㉕-2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2일째)(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2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2%	3.8%
	2	3.0%	6.7%	18.8%
	3	9.0%	17.2%	23.3%
	4	17.2%	19.4%	17.3%
	5	69.4%	54.5%	36.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15	20	30	40	50	60	80
0.8%	6.0%	0.8%	78.2%	6.8%	4.5%	1.5%	0.8%	0.8%

○ 70%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80% 가까이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1.5%	3.8%
	2	3.1%	6.9%	19.2%
	3	7.7%	16.9%	23.1%
	4	17.7%	19.2%	16.2%
	5	70.0%	55.4%	37.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15	20	30	40	50	60	80
0.8%	5.4%	0.8%	78.3%	7.0%	4.7%	1.6%	0.8%	0.8%

○ 70%의 지자체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1일째 보다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33.3%	0.0%
	2	0.0%	0.0%	0.0%
	3	33.3%	0.0%	0.0%
	4	0.0%	33.3%	100.0%
	5	66.7%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15	20	30	40	50	60	80
0.0%	33.3%	0.0%	66.7%	0.0%	0.0%	0.0%	0.0%	0.0%

○ 고의성의 경우 전문가 3인 중 2인이 답을 하였으며, 1인은 답을 하지 않았음. 감액비율의 경우 1인은 현행의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15	20	30	40	50	60	8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 및 효과성 등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

㉕-3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3일째)(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2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1.5%
	2	1.5%	3.7%	3.7%
	3	7.5%	14.2%	26.1%
	4	10.4%	16.4%	11.9%
	5	80.6%	65.7%	56.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70	100
1.5%	1.5%	3.0%	69.9%	12.0%	7.5%	2.3%	1.5%	0.8%

○ 2일째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항목별로 10~20%가 높아졌으며, 30% 현행 감액 비율로 응답한 응답자가 70% 가까이 나왔으나, 그보다 높은 비율로 감액비율 상향을 해야 한다는 비율도 전체의 24.1%로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8%
	2	1.5%	3.1%	3.8%
	3	6.9%	13.8%	26.2%
	4	10.0%	16.9%	12.3%
	5	81.5%	66.2%	5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70	100
0.8%	1.6%	2.3%	70.5%	12.4%	7.8%	2.3%	1.6%	0.8%

○ 중요성과 효과성의 경우 매우 미흡의 응답자가 전혀 없으며, 3일 이상 신고를 지연한 경우를 매우 엄중히 판단하고 있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33.3%
	2	0.0%	33.3%	0.0%
	3	0.0%	0.0%	0.0%
	4	33.3%	0.0%	0.0%
	5	66.7%	66.7%	66.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70	100
33.3%	0.0%	0.0%	66.7%	0.0%	0.0%	0.0%	0.0%	0.0%

○ 고의성의 경우 10%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3을 차지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7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중요성 및 효과성 등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

㉕-4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4일 이후)(가축전염
병예방법 제11조2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40%	1	0.0%	0.0%	0.7%
	2	0.7%	1.5%	2.2%
	3	7.5%	9.7%	9.7%
	4	8.2%	18.7%	22.4%
	5	83.6%	70.1%	64.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7%	3.0%	3.7%	59.0%	17.9%	7.5%	2.2%	3.7%	0.7%	1.5%

○ 감액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비율은 59%에 이르렀으며, 100% 감액을 하자는 비율도 1.5%로 높아졌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40%	1	0.0%	0.0%	0.8%
	2	0.8%	1.5%	2.3%
	3	6.9%	9.2%	9.2%
	4	8.5%	19.2%	23.1%
	5	83.8%	70.0%	64.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8%	1.5%	3.8%	59.2%	18.5%	7.7%	2.3%	3.8%	0.8%	1.5%

○ 전체 응답자의 65% 가까이 매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4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33.3%	0.0%	66.7%	0.0%	0.0%	0.0%	0.0%	0.0%	0.0%

○ 전문가 모두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4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1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으며, 1일째부터 4일째까지 모두 20% 감액으로 응답하였음

⑤-5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2제1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2.2%
	2	0.0%	0.7%	0.7%
	3	5.2%	9.0%	6.7%
	4	5.2%	11.2%	6.0%
	5	89.6%	79.1%	84.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7%	0.7%	0.7%	2.2%	4.5%	61.9%	3.0%	9.7%	16.4%	

○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1.6%
	2	0.0%	0.8%	0.8%
	3	4.7%	7.8%	6.2%
	4	4.7%	11.6%	6.2%
	5	90.7%	79.8%	85.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8%	0.0%	0.0%	2.3%	4.7%	62.8%	3.1%	10.1%	16.3%

○ 감액 비율에 있어 현행 60%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100% 감액으로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0%	0.0%	0.0%	0.0%	0.0%	66.7%	0.0%	0.0%	33.3%

○ 전문가 모두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50.0%
	2	0.0%	0.0%	0.0%
	3	50.0%	100.0%	50.0%
	4	5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20% 감액과 30% 감액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하나씩 나왔음

㉕-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가축전염병예방
법 제13조 제6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4.5%	0.0%
	2	1.5%	2.2%	3.7%
	3	9.7%	13.4%	11.2%
	4	14.9%	17.9%	8.2%
	5	72.4%	61.9%	7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80	100
1.5%	0.8%	51.5%	17.4%	9.1%	9.8%	0.8%	0.8%	8.3%

○ 응답자중 고의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요성보다도 더 문제로 판단되고 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4.6%	0.0%
	2	1.5%	2.3%	3.8%
	3	9.2%	13.1%	10.8%
	4	14.6%	17.7%	7.7%
	5	73.1%	62.3%	77.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80	100
0.8%	0.8%	51.6%	17.2%	9.4%	10.2%	0.8%	0.8%	8.6%

○ 감액 비율의 경우 절반 수준만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였으며, 46.9%가 현행 감액비율보다 높여야 한다고 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33.3%	33.3%	33.3%
	4	0.0%	0.0%	0.0%
	5	66.7%	66.7%	66.7%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80	100
0.0%	0.0%	66.7%	33.3%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1/3이 현행보다 감액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100.0%	100.0%	10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15	20	30	40	50	60	8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보다 감액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함(1개 단체)

⑥-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6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2%	0.0%
	2	1.5%	4.5%	3.7%
	3	5.2%	8.2%	7.5%
	4	10.4%	14.2%	8.2%
	5	81.3%	70.9%	80.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7%	42.5%	1.5%	22.4%	9.7%	9.0%	3.0%	11.2%

○ 현행 감액비율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56.7%)을 차지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3%	0.0%
	2	1.5%	4.6%	3.8%
	3	5.4%	8.5%	7.7%
	4	10.0%	13.1%	7.7%
	5	81.5%	71.5%	80.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0%	43.1%	1.5%	21.5%	10.0%	9.2%	3.1%	11.5%

○ 지자체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0% 내외로 모든 항목에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0%	33.3%	0.0%	66.7%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감액비율을 현행 유지하는 것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100.0%	100.0%	10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보다 감액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함(1개 단체)

㉔-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6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3.7%	0.0%
	2	1.5%	1.5%	3.7%
	3	6.0%	11.9%	9.0%
	4	11.2%	12.7%	6.7%
	5	79.9%	70.1%	80.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8%	43.8%	1.5%	23.1%	10.0%	9.2%	3.1%	11.5%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보다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3%	0.0%
	2	1.5%	4.6%	3.8%
	3	5.4%	8.5%	7.7%
	4	10.0%	13.8%	7.7%
	5	81.5%	70.8%	80.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0%	43.1%	1.5%	22.3%	9.2%	9.2%	3.1%	11.5%

○ 80% 이상의 응답자가 고의성이 매우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0.0%	33.3%	0.0%	33.3%	33.3%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100.0%	100.0%	10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4단계로 판단하였으며, 현행보다 10%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함

㉗-1 구제역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㉗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7%	0.7%	3.0%
	2	0.7%	1.5%	1.5%
	3	1.5%	6.0%	6.0%
	4	3.7%	4.5%	5.2%
	5	93.3%	87.3%	84.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20	30	40	50	60	80	90	100
1.5%	0.8%	1.5%	0.8%	6.8%	8.3%	1.5%	0.8%	78.2%

○ 95% 가까운 응답자가 구제역 예방 접종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상당수가 고의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7%	0.7%	3.0%
	2	0.7%	1.5%	1.5%
	3	1.5%	6.0%	6.0%
	4	3.7%	4.5%	5.2%
	5	93.3%	87.3%	84.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20	30	40	50	60	80	90	100
1.5%	0.8%	1.5%	0.8%	6.8%	8.3%	1.5%	0.8%	78.2%

○ 80% 가까운 지자체 응답자들이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20	30	40	50	60	80	90	100
0.0%	0.0%	0.0%	0.0%	0.0%	33.3%	0.0%	33.3%	33.3%

○ 전문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0%	1	0.0%	0.0%	0.0%
	2	0.0%	0.0%	0.0%
	3	0.0%	50.0%	50.0%
	4	0.0%	0.0%	0.0%
	5	100.0%	50.0%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20	30	40	50	60	80	90	100	
0.0%	0.0%	0.0%	0.0%	50.0%	0.0%	0.0%	0.0%	5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곳과 현행 전액 감액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곳으로 나뉘었음

㉕-2 검사· 주사· 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6.7%	8.2%	7.5%
	2	5.2%	10.4%	6.0%
	3	10.4%	14.9%	16.4%
	4	13.4%	12.7%	17.9%
	5	64.2%	53.7%	52.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80	100
0.8%	54.1%	28.6%	1.5%	8.3%	2.3%	2.3%	0.8%	0.8%	0.8%

○ 절반 이상 감액비율에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28.6%는 10%로 감액비율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6.9%	8.5%	7.7%
	2	5.4%	10.8%	6.2%
	3	9.2%	13.8%	15.4%
	4	13.1%	12.3%	17.7%
	5	65.4%	54.6%	5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80	100
0.0%	53.5%	29.5%	1.6%	8.5%	2.3%	2.3%	0.8%	0.8%	0.8%

○ 절반 이상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33.3%	33.3%	33.3%
	4	33.3%	33.3%	33.3%
	5	33.3%	33.3%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80	100
33.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 현행 감액비율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1/3로 나타났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70	80	1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㉗-3 검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㉗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9.0%	10.4%	12.7%
	2	9.7%	15.7%	8.2%
	3	17.9%	18.7%	20.1%
	4	13.4%	9.7%	13.4%
	5	50.0%	45.5%	45.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80
3.8%	65.4%	21.8%	1.5%	5.3%	1.5%	0.8%

○ 대부분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9.2%	10.8%	13.1%
	2	9.2%	15.4%	8.5%
	3	17.7%	18.5%	18.5%
	4	13.1%	9.2%	13.8%
	5	50.8%	46.2%	46.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80
3.1%	65.1%	22.5%	1.6%	5.4%	1.6%	0.8%

○ 절반 이상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33.3%	33.3%	0.0%
	3	0.0%	0.0%	66.7%
	4	33.3%	33.3%	0.0%
	5	33.3%	33.3%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80
33.3%	66.7%	0.0%	0.0%	0.0%	0.0%	0.0%

○ 현행 감액비율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80
0.0%	10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㉕-4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9.7%	13.4%	13.4%
	2	8.2%	11.2%	6.0%
	3	16.4%	17.2%	22.4%
	4	12.7%	12.7%	11.9%
	5	53.0%	45.5%	46.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70	80
2.3%	65.4%	21.8%	1.5%	6.8%	0.8%	0.8%	0.8%

○ 대부분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0.0%	13.8%	13.8%
	2	7.7%	10.8%	6.2%
	3	16.2%	16.9%	2.8%
	4	12.3%	12.3%	12.3%
	5	53.8%	46.2%	4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70	80
2.3%	65.1%	22.5%	1.6%	6.2%	0.8%	0.8%	0.8%

○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성 항목을 평가했으며, 감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33.3%	33.3%	0.0%
	3	0.0%	0.0%	66.7%
	4	33.3%	33.3%	0.0%
	5	33.3%	33.3%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70	80
0.0%	66.7%	0.0%	0.0%	33.3%	0.0%	0.0%	0.0%

○ 전문가 중 1명은 감액비율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응답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50	70	8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현행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㉕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㉖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2%	3.0%	3.0%
	2	1.5%	3.7%	5.2%
	3	14.2%	18.7%	23.9%
	4	16.4%	20.9%	20.9%
	5	65.7%	53.7%	47.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25	30	40	50
1.5%	2.3%	8.3%	66.9%	1.5%	9.8%	1.5%	4.5%

○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3%	3.1%	3.1%
	2	1.5%	3.8%	4.6%
	3	13.8%	18.5%	23.8%
	4	16.9%	20.8%	20.0%
	5	65.4%	53.8%	48.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25	30	40	50
0.8%	2.4%	8.1%	71.0%	0.8%	10.5%	1.6%	4.8%

○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성 항목을 평가했으며, 감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0.0%
	4	0.0%	33.3%	66.7%
	5	100.0%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25	30	40	50
0.0%	0.0%	33.3%	33.3%	33.3%	0.0%	0.0%	0.0%

○ 전문가 모두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액비율은 10~2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25	30	40	5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음

㉕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㉖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8.2%	14.2%	14.2%
	2	9.7%	12.7%	15.7%
	3	23.1%	23.9%	24.6%
	4	12.7%	19.4%	17.2%
	5	46.3%	29.9%	28.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80
3.8%	66.9%	19.5%	6.8%	0.8%	0.8%	0.8%	0.8%

○ 효과성과 고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가 넘지 않았으며, 중요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가 절반을 넘지 않았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8.5%	14.6%	13.8%
	2	10.0%	13.1%	15.4%
	3	22.3%	23.1%	24.6%
	4	13.1%	20.0%	16.9%
	5	46.2%	29.2%	29.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80
2.3%	67.4%	20.2%	7.0%	0.8%	0.8%	0.8%	0.8%

○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액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로 비율을 높인 비율도 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33.3%
	2	0.0%	0.0%	33.3%
	3	33.3%	33.3%	0.0%
	4	0.0%	0.0%	33.3%
	5	66.7%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80
33.3%	66.7%	0.0%	0.0%	0.0%	0.0%	0.0%	0.0%

○ 3명의 전문가 중 2명은 중요성과 효과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8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음

⑩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3제1항, 제2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1.5%	0.0%
	2	3.7%	5.2%	9.7%
	3	22.4%	24.6%	27.6%
	4	15.7%	21.6%	18.7%
	5	56.7%	47.0%	44.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40	50
1.5%	21.6%	64.9%	7.5%	2.2%	2.2%

○ 감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절반으로 줄이자는 비율도 20%를 넘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1.5%	0.0%
	2	3.8%	5.4%	9.2%
	3	21.5%	23.8%	26.9%
	4	15.4%	22.3%	18.5%
	5	57.7%	46.9%	45.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40	50
1.5%	20.8%	65.4%	7.7%	2.3%	2.3%

○ 중요성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33.3%
	3	33.3%	33.3%	33.3%
	4	33.3%	0.0%	33.3%
	5	33.3%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40	50
0.0%	33.3%	66.7%	0.0%	0.0%	0.0%

○ 고의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미흡부터 중요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40	50
0.0%	10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보통을 나타냄

㉕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영을 하거나 축산관계 시설,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3제2항)

㉖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3.0%	3.7%	0.7%
	2	3.7%	3.0%	6.7%
	3	14.9%	20.1%	15.7%
	4	13.4%	18.7%	13.4%
	5	64.9%	54.5%	63.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100
2.3%	0.8%	15.0%	63.9%	9.8%	2.3%	4.5%	0.8%	0.8%

○ 85명의 응답자가 고의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중요성 측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3%	3.1%	0.0%
	2	3.8%	3.1%	6.9%
	3	13.8%	20.0%	16.2%
	4	13.8%	19.2%	12.3%
	5	66.2%	54.6%	64.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100
2.3%	0.8%	14.0%	64.3%	10.1%	2.3%	4.7%	0.8%	0.8%

○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그 다음은 10%로 줄이자는 답변과 30%로 늘리자는 답변 순이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66.7%	33.3%	0.0%
	4	0.0%	0.0%	66.7%
	5	33.3%	66.7%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100
0.0%	0.0%	33.3%	66.7%	0.0%	0.0%	0.0%	0.0%	0.0%

○ 현재 감액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10%로 줄이자는 의견도 1/3이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비율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응답함

㉕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3제5항)

㉖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4%	11.9%	12.7%
	2	11.9%	9.7%	14.2%
	3	33.6%	36.6%	36.6%
	4	14.9%	11.2%	11.9%
	5	29.1%	30.6%	24.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4.5%	7.5%	20.3%	1.5%	62.4%	2.3%	1.5%

○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0%	11.5%	12.3%
	2	12.3%	10.0%	14.6%
	3	33.8%	36.9%	36.2%
	4	15.4%	11.5%	11.5%
	5	28.5%	30.0%	25.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4.7%	7.8%	19.4%	1.6%	62.8%	2.3%	1.6%

○ 지자체 대부분이 현행 감액비율을 지지하지만 낮추기를 원하는 비율도 33.5%에 이릅니다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33.3%	33.3%	66.7%
	4	0.0%	0.0%	33.3%
	5	66.7%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50
0.0%	0.0%	33.3%	0.0%	66.7%	0.0%	0.0%

○ 현재 감액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10%로 줄이자는 의견도 1/3이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비율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응답함

㉓-1 전실(닭, 오리 한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6제1항)

㉓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4.5%	6.0%	6.7%
	2	4.5%	6.7%	11.2%
	3	27.8%	24.6%	28.4%
	4	12.8%	20.9%	16.4%
	5	50.4%	41.8%	37.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2.3%	1.5%	16.5%	2.3%	66.9%	0.8%	6.8%	1.5%	1.5%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요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3.9%	5.4%	6.2%
	2	4.7%	7.0%	10.9%
	3	28.7%	25.6%	28.7%
	4	13.2%	20.9%	16.3%
	5	49.6%	41.9%	38.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1.6%	1.6%	16.3%	2.3%	67.4%	0.8%	7.0%	1.6%	1.6%

○ 전체 67.4%이 지자체에서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33.3%	33.3%
	5	100.0%	66.7%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 현재 감액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10%로 줄이자는 의견도 1/3이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비율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응답함

㉓-2 일제 입식· 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6제1항)

㉓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2%	4.5%	5.2%
	2	6.0%	3.7%	7.5%
	3	20.1%	22.4%	25.4%
	4	13.4%	17.9%	11.9%
	5	58.2%	51.5%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50
1.5%	0.7%	14.2%	0.7%	68.7%	0.7%	9.0%	0.7%	1.5%	2.2%

○ 절반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액비율도 현행이 가장 많았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3%	4.6%	5.4%
	2	6.2%	3.8%	6.9%
	3	20.0%	22.3%	24.6%
	4	13.8%	18.5%	12.3%
	5	57.7%	50.8%	50.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1.5%	0.8%	13.1%	0.8%	69.2%	0.8%	9.2%	0.8%	1.5%

○ 전체 69.2가 현행 감액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감액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았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0.0%	0.0%
	5	100.0%	100.0%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 현재 감액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10%로 줄이자는 의견도 1/3이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감액비율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응답함

㉓-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6제1항)

㉓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2.7%	12.7%	15.7%
	2	9.7%	13.4%	13.4%
	3	16.4%	17.2%	22.4%
	4	13.4%	23.1%	12.7%
	5	47.8%	33.6%	35.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3.8%	69.7%	19.7%	3.8%	2.3%	0.8%

○ 현행 감액 비율에 대해 전체의 69.7%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로 증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19.7%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2.3%	12.3%	15.4%
	2	10.0%	13.8%	13.1%
	3	16.9%	17.7%	22.3%
	4	13.8%	23.1%	13.1%
	5	46.9%	33.1%	36.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2.3%	70.3%	20.3%	3.9%	2.3%	0.8%

○ 감액비율로 지자체의 70% 이상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33.3%	0.0%
	5	100.0%	66.7%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33.3%	66.7%	0.0%	0.0%	0.0%	0.0%

○ 모든 전문가가 중요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냈으나, 고의성은 매우 높은 답변이 1개에 불과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10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감액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㉓-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6제1항)

㉓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1.9%	11.2%	16.4%
	2	5.2%	13.4%	9.0%
	3	35.1%	30.6%	32.1%
	4	10.4%	16.4%	7.5%
	5	37.3%	28.4%	35.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30	40
3.1%	80.9%	14.5%	0.8%	0.8%

○ 4/5 이상의 응답자가 현행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12.3%	11.5%	16.9%
	2	5.4%	13.1%	7.7%
	3	34.6%	30.0%	31.5%
	4	10.8%	16.9%	7.7%
	5	36.9%	28.5%	36.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30	40
3.1%	80.5%	14.8%	0.8%	0.8%

○ 효과성의 측면에서 보통의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0.0%	33.3%	0.0%
	5	100.0%	66.7%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30	40
0.0%	100.0%	0.0%	0.0%	0.0%

○ 모든 전문가가 현재의 감액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응답함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30	40
0.0%	10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⑭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1호, 2호)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7%	2.2%	0.0%
	2	3.0%	2.2%	2.2%
	3	5.2%	10.4%	9.0%
	4	9.0%	11.9%	9.0%
	5	82.1%	73.1%	79.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80	100
1.5%	58.6%	1.5%	22.6%	6.0%	4.5%	2.3%	0.8%	2.3%

○ 80% 가까운 응답자가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액비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만, 늘리자는 비율이 줄이자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8%	2.3%	0.0%
	2	3.1%	2.3%	1.5%
	3	5.4%	10.8%	8.5%
	4	8.5%	11.5%	9.2%
	5	82.3%	73.1%	80.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80	100
0.0%	58.9%	1.6%	23.3%	6.2%	4.7%	2.3%	0.8%	2.3%

○ 감액비율에서 30%로 하자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3명의 응답자가 100%로 응답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33.3%
	3	0.0%	0.0%	33.3%
	4	33.3%	33.3%	0.0%
	5	66.7%	66.7%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80	100
33.3%	66.7%	0.0%	0.0%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지자체와 달리 감액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은 없고, 줄이자는 의견이 33%로 나타났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25	30	40	50	60	8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감액 비율은 현행보다 10% 줄인 응답을 하였음

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2제1항)

㉖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3%	0.7%
	2	2.2%	3.0%	3.0%
	3	14.9%	15.8%	20.1%
	4	10.4%	12.8%	12.7%
	5	70.9%	66.2%	63.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25	30	40	50	60	80	100
0.8%	7.5%	66.2%	0.8%	14.3%	3.8%	2.3%	1.5%	1.5%	1.5%

○ 모든 항목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5%	2.3%	0.8%
	2	2.3%	3.1%	3.1%
	3	15.4%	16.2%	19.2%
	4	10.8%	13.1%	13.1%
	5	70.0%	64.6%	63.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25	30	40	50	60	80	100
0.8%	7.0%	65.9%	0.8%	14.7%	3.9%	2.3%	1.6%	1.6%	1.6%

○ 감액 비율이 현행 2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로 14.7%가 응답을 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66.7%
	4	0.0%	0.0%	0.0%
	5	100.0%	100.0%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25	30	40	50	60	80	1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고의성은 2명이 보통으로 응답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25	30	40	50	60	80	1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감액 비율은 현행보다 10% 줄인 응답을 하였음

㉕-1 살처분 명령을 24시간이상 48시간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20조 제1항)

㉕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8.3%	9.1%	12.8%
	2	9.0%	10.6%	14.3%
	3	24.8%	31.1%	33.1%
	4	10.5%	8.3%	11.3%
	5	47.4%	40.9%	28.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50	60
5.3%	84.1%	6.1%	3.0%	0.8%	0.8%

○ 고의성의 경우 보통의 답변이 가장 높았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7.7%	8.5%	12.3%
	2	9.2%	10.8%	13.8%
	3	25.4%	30.8%	33.8%
	4	10.8%	8.5%	11.5%
	5	46.9%	40.0%	28.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50	60
5.5%	84.4%	6.3%	2.3%	0.8%	0.8%

○ 감액 비율이 현행 10%로 84.4%가 응답을 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5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50	60
0.0%	10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고의성은 1명은 미흡, 1명은 매우 중요로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20	30	50	60
0.0%	0.0%	0.0%	100.0%	0.0%	0.0%

○ 생산자 단체에서 감액 비율을 30%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

⑩-2 살처분 명령을 48시간이상 72시간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
법 제20조 제1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1.5%	1.5%	5.3%
	2	5.3%	6.8%	9.8%
	3	20.3%	25.8%	24.8%
	4	18.0%	15.9%	25.6%
	5	54.9%	50.0%	34.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0.8%	3.0%	0.8%	12.0%	0.8%	73.7%	5.3%	2.3%	0.8%	0.8%

○ 48시간이상 72시간미만 살처분을 지연한 경우 감액비율 30%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20%로 12.0%를 나타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8%	0.8%	4.6%
	2	5.4%	6.9%	10.0%
	3	20.8%	26.2%	24.6%
	4	18.5%	16.2%	26.2%
	5	54.6%	49.2%	34.6%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0.0%	3.1%	0.8%	11.6%	0.8%	74.4%	5.4%	2.3%	0.8%	0.8%

○ 중요성에서 높음과 매우높음의 비율이 73.1%로 중요한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생각하고 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50.0%
	4	0.0%	0.0%	0.0%
	5	100.0%	100.0%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0.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감액비율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10%	1	100.0%	100.0%	10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에서 감액 비율을 30%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

⑩-3 살처분 명령을 72시간이상 살처분을 지연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7%	0.8%	4.5%
	2	0.7%	0.8%	3.0%
	3	11.9%	12.0%	18.7%
	4	14.9%	22.6%	13.4%
	5	71.6%	63.9%	60.4%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30	40	50	60	70	80
0.8%	2.3%	0.8%	1.5%	5.3%	3.8%	11.3%	63.9%	0.8%	5.3%

○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치로 매우 중요라고 응답했으며, 감액 비율도 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3.8%
	2	0.8%	0.8%	3.1%
	3	12.3%	12.3%	17.7%
	4	15.4%	22.3%	13.8%
	5	71.5%	63.8%	61.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0.8%	2.3%	0.8%	1.6%	3.9%	3.9%	11.7%	64.1%	0.8%	5.5%

○ 중요성에서 높음과 매우높음의 비율이 86.9%로 중요한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생각하고 있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50.0%
	4	0.0%	0.0%	0.0%
	5	100.0%	100.0%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60%	1	50.0%	50.0%	50.0%
	2	0.0%	0.0%	50.0%
	3	0.0%	0.0%	0.0%
	4	0.0%	50.0%	0.0%
	5	5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5	10	15	20	25	30	40	50	60	8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에서 감액 비율을 30%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

⑰-1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1항, 제2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2%	2.3%	1.5%
	2	6.7%	6.0%	9.7%
	3	11.9%	18.8%	25.4%
	4	17.9%	24.1%	21.6%
	5	61.2%	48.9%	41.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60
0.8%	3.0%	11.4%	1.5%	68.9%	0.8%	6.8%	3.8%	2.3%	0.8%

○ 중요성이 매우 높음의 비율이 61.2%임에 비해, 고의성은 매우 높음의 비율이 20% 가까이 낮아졌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3%	2.3%	1.5%
	2	6.9%	6.2%	10.0%
	3	11.5%	18.5%	23.1%
	4	18.5%	24.6%	22.3%
	5	60.8%	47.7%	43.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60
0.8%	3.1%	10.2%	1.6%	69.5%	0.8%	7.0%	3.9%	2.3%	0.8%

○ 감액비율에서 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증액하고자 하는 비율과 감액하고자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100.0%
	4	0.0%	0.0%	0.0%
	5	100.0%	10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6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6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에서 감액 비율을 10%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

⑰-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3조제1항, 제2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2%	2.3%	1.5%
	2	6.7%	7.5%	10.4%
	3	9.0%	15.8%	20.1%
	4	23.1%	26.3%	25.4%
	5	59.0%	48.1%	42.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80
0.8%	3.0%	10.6%	1.5%	68.9%	0.8%	7.6%	3.8%	2.3%	0.8%

○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흡의 경우 2% 전후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2.3%	2.3%	1.5%
	2	6.9%	7.7%	10.8%
	3	8.5%	15.4%	17.7%
	4	23.8%	26.9%	26.2%
	5	58.5%	46.9%	43.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80
0.8%	3.1%	9.4%	1.6%	69.5%	0.8%	7.8%	3.9%	2.3%	0.8%

○ 감액비율에서 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증액하고자 하는 비율과 감액하고자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100.0%
	4	0.0%	0.0%	0.0%
	5	100.0%	10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8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0.0%
	2	0.0%	0.0%	0.0%
	3	100.0%	10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25	30	40	50	6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생산자 단체에서 감액 비율을 10%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

⑱-1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6.0%	3.0%	26.3%
	2	10.4%	10.5%	18.0%
	3	18.7%	26.3%	19.5%
	4	18.7%	18.8%	9.8%
	5	46.3%	41.4%	26.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00	
4.5%	0.7%	17.2%	1.5%	64.2%	6.7%	2.2%	2.2%	0.7%	

○ 고의성의 경우 매우 중요와 매우 미흡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5.4%	2.3%	26.2%
	2	10.8%	10.0%	17.7%
	3	18.5%	26.2%	19.2%
	4	18.5%	19.2%	9.2%
	5	46.9%	41.5%	2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00
4.6%	0.8%	16.2%	1.5%	64.6%	6.9%	2.3%	2.3%	0.8%

○ 감액비율에서 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로 낮추자는 응답이 1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0.0%	0.0%	33.3%
	2	0.0%	33.3%	33.3%
	3	33.3%	33.3%	0.0%
	4	33.3%	0.0%	33.3%
	5	33.3%	33.3%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00
0.0%	0.0%	66.7%	0.0%	33.3%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감액 비율이 10%로 응답한 비율은 66.7%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20%	1	100.0%	100.0%	0.0%
	2	0.0%	0.0%	0.0%
	3	0.0%	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15	20	30	40	50	100	6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 중요성과 효과성은 가장 낮은 단계인 매우 미흡으로 응답했음

⑱-2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0%	1	4.5%	1.5%	22.0%
	2	3.7%	6.0%	14.4%
	3	13.4%	15.8%	22.0%
	4	24.6%	25.6%	15.2%
	5	53.7%	51.1%	26.5%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7%	0.7%	0.7%	19.4%	7.5%	5.2%	56.7%	3.7%	3.0%	1.5%	0.7%

○ 2회 발생한 경우보다 매우 중요 비율이 중요성 및 효과성에서 각각 7% 및 10% 증가하였으나, 고의성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0%	1	3.8%	0.8%	21.5%
	2	3.8%	5.4%	13.8%
	3	13.1%	16.2%	22.3%
	4	25.4%	25.4%	15.4%
	5	53.8%	51.5%	26.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0.8%	0.8%	0.8%	18.5%	6.9%	5.4%	57.7%	3.8%	3.1%	1.5%	0.8%

○ 감액비율에서 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로 낮추자는 응답이 1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0%	1	0.0%	0.0%	0.0%
	2	0.0%	33.3%	50.0%
	3	33.3%	0.0%	0.0%
	4	0.0%	33.3%	0.0%
	5	66.7%	33.3%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0.0%	0.0%	33.3%	33.3%	33.3%	0.0%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감액 비율이 10%로 응답한 비율은 66.7%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50%	1	100.0%	100.0%	0.0%
	2	0.0%	0.0%	0.0%
	3	0.0%	0.0%	100.0%
	4	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중요성과 효과성은 가장 낮은 단계인 매우 미흡으로 응답했음

㉔-3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4회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80%	1	4.4%	1.5%	19.4%
	2	3.0%	3.0%	7.5%
	3	8.1%	10.4%	20.9%
	4	12.6%	16.4%	9.0%
	5	71.9%	68.7%	4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7%	0.7%	0.7%	3.7%	8.9%	3.7%	7.4%	5.9%	3.0%	55.6%	3.0%	6.7%

○ 3회 발생한 경우보다 중요성과 효과성의 매우 중요한 비율이 20% 가까이 상승. 고의성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상승했으나 50.0% 이하로 나타남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80%	1	3.8%	0.8%	19.2%
	2	3.1%	2.3%	7.7%
	3	7.7%	10.0%	20.0%
	4	12.3%	16.9%	9.2%
	5	73.1%	69.2%	43.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8%	0.8%	0.8%	3.3%	9.1%	3.3%	7.4%	6.6%	3.3%	61.2%	3.3%	6.7%

○ 감액비율에서 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로 집계됨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80%	1	0.0%	0.0%	0.0%
	2	0.0%	33.3%	0.0%
	3	33.3%	0.0%	50.0%
	4	0.0%	0.0%	0.0%
	5	66.7%	66.7%	5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0.0%	0.0%	0.0%	33.3%	0.0%	33.3%	0.0%	0.0%	33.3%	0.0%	0.0%

○ 전문가의 경우 감액 비율이 현행보다 낮게 응답한 비율은 2/3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80%	1	50.0%	50.0%	50.0%
	2	0.0%	0.0%	0.0%
	3	0.0%	50.0%	50.0%
	4	50.0%	0.0%	0.0%
	5	0.0%	0.0%	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 감액 비율을 현행인 80%의 1/4과 1/2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㉔-1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축산법 제22조)

㉔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7%	3.0%	2.2%
	2	6.0%	7.5%	6.0%
	3	13.4%	15.8%	19.4%
	4	11.2%	20.3%	14.2%
	5	68.7%	53.4%	58.2%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80	100
5.3%	4.5%	55.6%	5.3%	12.8%	5.3%	3.0%	8.3%

○ 모든 항목에 대해 과반 이상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을 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8%	3.1%	2.3%
	2	6.2%	7.7%	6.2%
	3	12.3%	15.4%	20.0%
	4	11.5%	20.8%	14.6%
	5	69.2%	52.3%	56.9%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80	100
5.4%	4.7%	55.0%	5.4%	12.4%	5.4%	3.1%	8.5%

○ 감액비율에서 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로 12.4%가 응답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범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66.7%	33.3%	0.0%
	4	0.0%	0.0%	0.0%
	5	33.3%	66.7%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80	100
0.0%	0.0%	66.7%	0.0%	33.3%	0.0%	0.0%	33.3%

○ 전문가의 경우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응답하였음. 이에 따라 감액 비율은 현행 및 현행보다 높은 50%로 응답하였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10	20	30	40	50	60	80	100
0.0%	0.0%	100.0%	0.0%	0.0%	0.0%	0.0%	33.3%

○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점수로 응답하였음

㉑-2 단위면적당 적정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축산법 제22조)

㉑ 전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초과두수 전액	1	2.3%	3.8%	4.5%
	2	4.5%	7.6%	3.8%
	3	30.1%	25.8%	27.8%
	4	15.0%	21.2%	15.8%
	5	48.1%	41.7%	48.1%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50	60	100	120	140	150	200
3.8%	2.3%	1.5%	3.0%	7.5%	0.8%	78.2%	0.8%	0.8%	0.8%	0.8%

○ 감액 비율에 대해 초과두수 전액에 대해 78.2%가 100%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㉞ 지자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초과두수 전액	1	2.3%	3.9%	4.7%
	2	4.7%	7.8%	3.9%
	3	28.7%	24.8%	27.1%
	4	15.5%	21.7%	15.5%
	5	48.8%	41.1%	48.8%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50	60	100	120	140	150	200
3.9%	2.3%	1.6%	3.1%	7.0%	0.8%	78.3%	0.8%	0.8%	0.8%	0.8%

○ 모든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어느 항목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였음

㉟ 전문가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66.7%	33.3%	33.3%
	4	0.0%	0.0%	33.3%
	5	33.3%	66.7%	33.3%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50	60	100	120	140	150	200
0.0%	0.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 전문가의 경우 감액 비율을 초과 두수 전액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명, 50%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가 1명이었음

㉔ 생산자 단체

현재감액 비율	점수*	중요성	효과성	고의성
		※ 질병 차단· 확산 방지 관련 여부	※ 감액에 따른 농가 준수 유도 여부	※ 고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30%	1	0.0%	0.0%	0.0%
	2	0.0%	0.0%	0.0%
	3	0.0%	0.0%	0.0%
	4	0.0%	0.0%	0.0%
	5	100.0%	100.0%	100.0%

*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감액비율(%)										
0	10	20	30	50	60	100	120	140	150	2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점수로 응답하였음